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779-01

2024. 9.

농식품 FTA 원산지규정 해설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기관 : ICTC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식품 FTA 원산지규정 해설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 김석오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자 | ICTC 이사장/경영학박사 김석오 |
| 연구참여자 | ICTC 자문위원 김민지 |
| 연구보조자 | ICTC 책임연구원 김진영 |

<목 차>

| | |
|---------------------------------|----|
| 요약 | 1 |
| 본문 | 7 |
| 제1장 서론 | 8 |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8 |
| 1. 연구의 배경 | 8 |
| 2. 연구의 필요성 | 12 |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 14 |
| 1. 연구의 목적 | 14 |
|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 15 |
| 제2장 원산지규범 체계 | 17 |
| 제1절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연혁 | 17 |
| 1. 원산지의 개념 | 17 |
| 2. 원산지규정의 분류 | 18 |
| 3. 원산지규정의 연혁 | 20 |
| 제2절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기능 | 27 |
| 1.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 27 |
| 2. 원산지규정의 기능 | 28 |
| 제3절 원산지규정의 적용분야 | 33 |
| 1. 특혜무역의 관세결정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 33 |

| | |
|--------------------------------|------------|
| 2. 비특혜 무역조치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 35 |
| 3. 우리나라의 원산지규범 체계 | 41 |
| 제3장 FTA 원산지규정 | 43 |
|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의의 | 43 |
| 1.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 | 43 |
| 2. FTA 원산지규정의 의의 및 효과 | 45 |
| 3.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체계 | 48 |
| 4. HS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결정기준 | 53 |
| 제2절 원산지물품의 결정원칙 | 69 |
| 1. FTA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결정원칙 | 69 |
| 2. 주요 FTA의 원산지결정원칙 | 70 |
| 3. 직접운송원칙 | 74 |
| 제3절 완전생산기준 | 81 |
| 1. 완전생산기준의 의의 | 81 |
| 2. 완전생산품의 원산지결정 | 86 |
| 제4절 충분생산기준 | 105 |
| 1. 충분생산 원칙의 개념 | 105 |
| 2. 불인정공정 | 110 |
| 3. 세번변경기준 | 118 |
| 4. 부가가치기준 | 132 |
| 5. 가공공정기준 | 145 |
| 제5절 원산지결정 보충기준 | 154 |
| 1. 보충기준의 필요성 | 154 |
| 2. 누적기준 | 157 |
| 3.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 162 |

| | |
|---|------------|
| 4. 중간재 물품의 원산지결정 | 169 |
| 5.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 174 |
| 6.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 179 |
| 7.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의 원산지결정 | 181 |
| 8. 포장·용기의 원산지결정 | 183 |
| 9.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 185 |
| 10.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 190 |
| 11. 제3국 보세전시물품의 원산지결정 | 192 |
| | |
| 제4장 FTA 원산지규정과 농식품 수출영향 분석 | 194 |
| 제1절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 194 |
| 1. FTA 원산지규정과 FTA 관세특혜와의 관계 | 194 |
| 2.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역내 교역에 미치는 영향 | 196 |
| 제2절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원산지규정 특성 | 200 |
| 1. 농식품의 FTA 품목별 원산지규정 | 200 |
| 2. 주요 FTA의 농식품 원산지규정 특징 | 203 |
| 3. 주요 수출농식품의 원산지규정 적용 사례 분석 | 210 |
| 제3절 FTA 발효 이후 농식품의 교역변화 및 FTA 활용실태 | 222 |
| 1. FTA 체결이후 농식품 교역변화 | 222 |
| 2. 주요 FTA 별 농식품의 수출입 동향 | 231 |
| 3. FTA 이행 20년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 | 240 |
| 4. 농식품의 FTA 활용률 및 시사점 | 244 |
| | |
| 제5장 FTA 농식품 분야 원산지규정 개선방향 | 249 |
| 제1절 FTA 원산지규정 개선의 필요성 | 249 |
| 1.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평가 | 249 |

| | |
|----------------------------------|------------|
| 2. 국내 농업의 FTA 경쟁력 향상 | 250 |
| 3. FTA 원산지규정 개선협상 방향 | 252 |
| 제2절 FTA 원산지규정 개선방향 | 254 |
| 1. 기본 추진방향 | 254 |
| 2. FTA 원산지규정 개선대상 협정 | 255 |
| 3. 최소허용기준 완화 | 257 |
| 제3절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 검토 | 261 |
| 1. 주요 농식품의 수출 및 원산지기준 현황 | 261 |
| 2. 주요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 263 |
| | |
| 제6장 결론 | 276 |
| | |
| 참고문헌 | 280 |

<표 차례>

| | |
|---|----|
| <표 1-1> 우리나라 FTA 현황 | 8 |
| <표 1-2> FTA 20년 농식품 수출변화 | 9 |
| <표 1-3> 협정별 수출관세 절감효과 요약 | 9 |
| <표 1-4> 품목별 수출관세 절감효과 요약 | 10 |
| <표 1-5> 발효후 10년이상 된 FTA | 12 |
| <표 2-1> 원산지규정의 분류 | 19 |
| <표 2-2> 김치 원산지별 국내시장 판매가격 | 29 |
| <표 2-3> 농수산물 품목별 소비자의 원산지확인 구매비율 | 30 |
| <표 2-4> 한국의 20대 주요 수출국의 독자적 원산지 기준 유무 | 39 |
| <표 2-5> 우리나라의 원산지규범체계 | 42 |
| <표 3-1> 시기별 FTA 발효 현황 | 44 |
| <표 3-2> 전체교역 대비 FTA 비중 | 44 |
| <표 3-3> FTA 수출입활용률 | 44 |
| <표 3-4> 농림수산물 연도별 FTA 수출입활용률 | 45 |
| <표 3-5> 한-페루 FTA 녹두의 연차별 FTA 특혜관세율 | 47 |
| <표 3-6> HS 국제분쟁 발생 현황 | 55 |
| <표 3-7> HS 코드 분류표의 종류 | 56 |
| <표 3-8> HS협약의 조문 구성 및 주요내용 | 56 |
| <표 3-9> HS 품목분류 류별 속건표 | 59 |
| <표 3-10> 농식품의 HS 품목분류 구조 | 60 |
| <표 3-11> HS의 분류 기준 | 61 |
| <표 3-12> HS 통칙 요약표 | 62 |
| <표 3-13> 본질적 특성에 관한 주(Note) 예시 | 64 |
| <표 3-14>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가공의 유형 | 65 |
| <표 3-15> 제2류와 제16류의 분류 기준 | 65 |

| | |
|--|-----|
| <표 3-16> 고추의 가공 공정에 따른 품목분류 | 66 |
| <표 3-17> 초절임 고추의 초산 및 소금 함량에 따른 품목분류 | 67 |
| <표 3-18> 대두와 콩나물의 품목분류 | 67 |
| <표 3-19> 한-미 FTA, 한-EU FTA, RCEP의 원산지물품 비교 | 73 |
| <표 3-20> 주요 협정별 경유국에서의 허용작업 범위 | 77 |
| <표 3-21> 주요 협정별 경유국 세관통제 입증서류 | 78 |
| <표 3-22> 완전생산품의 유형 | 81 |
| <표 3-23> FTA 별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해당여부 | 86 |
| <표 3-24> 주요 협정별 완전생산품의 범위 | 87 |
| <표 3-25> 주요 협정별 식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 88 |
| <표 3-26> 주요 협정별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 90 |
| <표 3-27> 협정별 산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의 완전생산기준 | 92 |
| <표 3-28> 협정별 영역 내 어획물의 완전생산기준 | 94 |
| <표 3-29> 협정별 영역 내 양식물의 완전생산기준 | 95 |
| <표 3-30> 협정별 역내선박 인정요건 | 97 |
| <표 3-31> 협정별 광물성 생산품 완전생산품 인정요건 | 98 |
| <표 3-32> 영역 밖 채취상품의 완전생산기준 비교 | 99 |
| <표 3-33> 폐품·부스러기·고물의 협정별 완전생산기준 비교 | 99 |
| <표 3-34>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상품의 협정별 완전생산품 인정범위 | 101 |
| <표 3-35> 주요 협정별 생산의 정의 | 105 |
| <표 3-36> 주요 협정별 불인정공정의 유형 | 111 |
| <표 3-37> 전 세계 주요 FTA의 세번변경기준 적용 현황 | 118 |
| <표 3-38> 농식품의 원산지기준 유형별 사용 현황 | 119 |
| <표 3-39> 농식품의 세번변경기준 사용 현황 | 119 |
| <표 3-40> 감자 및 감자 관련제품의 가공에 따른 세번변경 | 122 |
| <표 3-41> 한-미 FTA HS 제2류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 123 |
| <표 3-42> 주요 협정별 HS 제2류(쇠고기)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 124 |

| | |
|---|-----|
| <표 3-43> 한-미 FTA 1704.90호의 캔디 품목별 원산지기준 | 125 |
| <표 3-44> 한-미 FTA 0712호의 건조양파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 126 |
| <표 3-45> 한-인도 CEPA 가공식품의 원산지기준 | 127 |
| <표 3-46> 카페인을 제거한 볶은 커피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 | 127 |
| <표 3-47> 양념소스의 주요 협정별 원산지기준 | 128 |
| <표 3-48> 세번변경기준의 종류별 해석 | 129 |
| <표 3-49> 한-인도 CEPA 가공식품의 원산지기준 | 134 |
| <표 3-50> 한-아세안 FTA 커피제품과 김치의 원산지기준 | 135 |
| <표 3-51> 협정별 부가가치 계산공식 | 136 |
| <표 3-52> 주요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비교 | 138 |
| <표 3-53> 주요 협정별 상품가격 계상기준 | 139 |
| <표 3-54> 매입경로별 재료비 계상기준 | 141 |
| <표 3-55> 원산지재료비 가산요소 | 142 |
| <표 3-56> 비원산지재료비 공제요소 | 143 |
| <표 3-57> 수출식품 부가가치기준 적용 예해 | 144 |
| <표 3-58>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6부 주 | 148 |
| <표 3-59> FTA별 섬유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 | 153 |
| <표 3-60> FTA 협정에서 사용되는 원산지결정 보충기준의 유형 | 155 |
| <표 3-61> 협정 별 누적기준 유형별 채택 현황 | 160 |
| <표 3-62> 원산지 누적조항의 유형 및 특징 | 161 |
| <표 3-63> 양념소스 누적조항 적용사례 | 161 |
| <표 3-64>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비교 | 164 |
| <표 3-65> 농수산물의 최소허용기준 유형 | 164 |
| <표 3-66> 한-미 FTA 최소허용수준 적용배제 농수산물 | 166 |
| <표 3-67> 한-미 FTA 오메기떡 최소허용기준 적용 사례 | 168 |
| <표 3-68> 주요 협정별 중간재 규정 도입여부 | 171 |
| <표 3-69> CCTV의 한-EU FTA 중간재 규정 적용사례 | 172 |

| | |
|--|-----|
| <표 3-70> 재고관리기법 원산지결정의 유형 | 177 |
| <표 3-71> 간접재료(중립재) 예시 | 179 |
| <표 3-72> 간접재료의 원산지 규정 | 180 |
| <표 3-73> 부속품·예비부품·공구 예시 | 181 |
| <표 3-74> 협정별 부속품 등의 원산지 취급 | 181 |
| <표 3-75>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포장재료 및 용기 | 183 |
| <표 3-76> 협정별 소매 포장용기의 원산지 취급 | 185 |
| <표 3-77>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예시 | 186 |
| <표 3-78> 세트물품 불인정 사례 예시 | 187 |
| <표 3-79> 협정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특례 | 188 |
| <표 3-80> 재수입물품 원산지특례 인정 협정과 불인정 협정 비교 | 191 |
| <표 3-81> 제3국 보세전시물품 원산지특례 인정 협정과 불인정 협정 비교 | 193 |
| <표 4-1> 부류별 우리나라 기체결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건수) | 201 |
| <표 4-2>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HS 2단위별 현황 | 204 |
| <표 4-3>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HS 2단위별 현황 | 206 |
| <표 4-4>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HS 2단위별 현황 | 208 |
| <표 4-5>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HS 2단위별 현황 | 209 |
| <표 4-6> 김치(2005.99)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 210 |
| <표 4-7> 한·EU와 한·미 FTA를 활용한 원산지규정 적용 사례(예시) | 211 |
| <표 4-8> 김치 한·미 FTA 활용 시 미국 관세절감 혜택 | 213 |
| <표 4-9> 김치 한-EU FTA 활용 시 네덜란드 관세절감 혜택 | 213 |
| <표 4-10> 냉동김밥 및 냉동덮밥(1905.90)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 214 |
| <표 4-11> 덮밥류(1905.90) 한·미 FTA 활용시 미국 관세절감 혜택 | 215 |
| <표 4-12> 떡볶이(1901.90)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 215 |
| <표 4-13> 떡볶이(1901.90) 한·미 FTA 활용시 미국 관세절감 혜택 | 217 |
| <표 4-14> 고추장(2103.90)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 217 |
| <표 4-15> 고추장(2103.90)의 원재료명세서(BOM) | 218 |

| | |
|---|-----|
| <표 4-16> 고추장(2103.90) 한-미 FTA 활용시 미국 관세절감 혜택 | 219 |
| <표 4-17> 아이스바(2105.00)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 220 |
| <표 4-18> 아이스바(2105.00) 한-미 FTA 활용시 미국 관세절감 혜택 | 221 |
| <표 4-19> 주요 FTA의 농업부분 시장개방률(%) | 223 |
| <표 4-20> FTA 발효 20년 간 농식품 교역액 및 무역수지 동향 | 223 |
| <표 4-21> 주요 농식품 품목별 수출 동향 | 226 |
| <표 4-22> 주요 농식품 품목별 수입 동향 | 229 |
| <표 4-23> 주요 FTA 발효일 | 231 |
| <표 4-24>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 추세 | 239 |
| <표 4-25> 주요 축산업 생산 및 생산성 동향 | 242 |
| <표 4-26> 주요 과수산업 및 생산성 동향 | 243 |
| <표 4-27> FTA별 우리나라 농식품 FTA 수출활용률 | 244 |
| <표 4-28> 수출규모별 FTA 원산지규정 미활용 이유 | 245 |
| <표 4-29> 국가별 FTA 미활용 이유 중 '원산지요건 미충족' 응답률 | 246 |
| <표 4-30> 주요품목별 FTA 미활용 이유 중 '원산지요건 미충족' 응답률 | 246 |
| <표 4-31> aT의 농식품 기업 FTA 관세특혜 활용지원 사업 실적 | 247 |
| <표 5-1> 농식품 주요 수출상대국가의 관세율 비교 | 251 |
| <표 5-2> 농식품 원산지규정 개선 추진방향 | 254 |
| <표 5-3> 발효 10년 이상된 FTA의 수출실적 및 수출활용률 | 255 |
| <표 5-4> FTA 원산지규정 검토대상 협정 비교 | 256 |
| <표 5-5> 최소허용기준 협정문 문안 | 258 |
| <표 5-6> 한-미 FTA 최소허용기준 적용배제 대상 제품 | 259 |
| <표 5-7> 한-미 FTA 최소허용기준 조항 개선방안 | 260 |
| <표 5-8> K-푸드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현황 | 261 |
| <표 5-9> 농식품 원산지기준 비교 | 262 |
| <표 5-10> 2023년 주요 국가별 김치 수출 현황 | 264 |
| <표 5-11> 김치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 | 264 |

| | |
|---|-----|
| <표 5-12> 김치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 265 |
| <표 5-13> 2023년 주요 국가별 떡볶이 수출 현황 | 266 |
| <표 5-14> 떡볶이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 | 266 |
| <표 5-15> 떡볶이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 268 |
| <표 5-16> 2023년 주요 국가별 쌀가공품 수출 현황 | 268 |
| <표 5-17> 쌀가공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 269 |
| <표 5-18> 쌀가공품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 270 |
| <표 5-19> 2023년 주요 국가별 떡볶이 수출 현황 | 271 |
| <표 5-20> 고추장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 271 |
| <표 5-21> 고추장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 272 |
| <표 5-22> 2023년 주요 국가별 아이스크림 수출 현황 | 273 |
| <표 5-23> 아이스크림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 274 |
| <표 5-24> 아이스크림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 275 |

<그림 차례>

| | |
|--|----|
| [그림 1-1] 산업별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 11 |
| [그림 1-2] 산업별 수출의 취업유발 효과 | 11 |
| [그림 1-3] 연구의 주요 구성내용 | 15 |
| [그림 2-1] WTO에 통보된 RTA 통계 | 27 |
| [그림 2-2] FTA 원산지규정이 필요한 이유 | 34 |
| [그림 3-1] 우리나라의 FTA 현황 | 43 |
| [그림 3-2]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 결정 요소 | 46 |
| [그림 3-3] 원산지규정의 효과 | 46 |
| [그림 3-4] 국가별 녹두 수입량 변화 | 48 |
| [그림 3-5] 원산지결정 2대 원칙 | 49 |
| [그림 3-6] 원산지재료생산품의 원산지결정 | 49 |
| [그림 3-7] FTA 원산지결정기준 체계 | 51 |
| [그림 3-8] HS 품목분류의 목적 | 53 |
| [그림 3-9] 모차렐라 치즈의 HS 품목분류 구조 | 54 |
| [그림 3-10] HS 품목분류 구조 | 57 |
| [그림 3-11] HS 품목분류 21개의 부 구조 | 58 |
| [그림 3-12] 농식품 원재료와 조제품의 전환점 | 63 |
| [그림 3-13] 삶은 갑각류와 삶은 골뱅이의 품목분류 | 66 |
| [그림 3-14] FTA 원산지결정기준 컨셉 | 74 |
| [그림 3-15] 직접운송 및 제3국 경유 운송 비교 | 76 |
| [그림 3-16] 프랑스산 와인 한-EU FTA 직접운송요건 적용 | 80 |
| [그림 3-17] 영역의 범위 | 83 |
| [그림 3-18] 식품의 완전생산품 판정 | 89 |
| [그림 3-19] 쇠고기의 완전생산기준 | 90 |
| [그림 3-20] 계란의 원산지 판정 | 91 |

| | |
|--|-----|
| [그림 3-21] 쇠고기의 원산지 판정 | 92 |
| [그림 3-22]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기준 | 106 |
| [그림 3-23] 실질적 변형 구성요소 | 108 |
| [그림 3-24] 불인정공정의 예시 | 109 |
| [그림 3-25] 불인정공정 생산물품의 예시 | 111 |
| [그림 3-26] RCEP 원산지국가별 차등세율 적용 사례(예시) | 116 |
| [그림 3-27] 곡물의 가공에 따른 세번변경 | 120 |
| [그림 3-28] 배추김치의 가공에 따른 세번변경 | 120 |
| [그림 3-29] 대두의 가공에 따른 세번변경 | 121 |
| [그림 3-30] 고추의 가공에 따른 세번변경 및 적용세율 | 122 |
| [그림 3-31] 한-미 FTA 냉장 쇠고기 원산지기준 | 124 |
| [그림 3-32] 한-미 FTA 1704.90호의 캔디 원산지 판정 | 125 |
| [그림 3-33] 한-미 FTA 건조양파(HS 0712) 원산지 판정 | 126 |
| [그림 3-34] 볶은 커피(HS 0901.21) 한-미 FTA 원산지 판정 | 127 |
| [그림 3-35] 산업유형별 부가가치 발생 수준 | 133 |
| [그림 3-36] 부가가치기준 구조 | 134 |
| [그림 3-37] 수출제품의 원가구성 | 139 |
| [그림 3-38] 가공공정기준의 유형 | 145 |
| [그림 3-39] 가솔린 제품의 가공공정기준 | 147 |
| [그림 3-40] 옥살산나트륨의 화학반응 공정 적용사례 | 150 |
| [그림 3-41] 99.9% 순도의 에틸렌 정제공정기준 적용사례 | 150 |
| [그림 3-42] 섬유의 제조공정 | 151 |
| [그림 3-43] 섬유·의류의 HS 품목분류 구조 | 152 |
| [그림 3-44] 섬유산업의 공정단계에 따른 원산지기준 | 153 |
| [그림 3-45]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흐름도 | 156 |
| [그림 3-46] 원산지 누적의 경제적 효과 | 157 |

| | |
|---|-----|
| [그림 3-47] RCEP 누적기준의 효과 | 158 |
| [그림 3-48] 토마토케첩의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적용사례 | 167 |
| [그림 3-49] 중간재 조항 적용 예해 | 170 |
| [그림 3-50]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특례 | 190 |
| [그림 3-51] 제3국 보세전시물품 원산지결정 특례 | 193 |
| [그림 4-1] 무역굴절현상 예시 | 195 |
| [그림 4-2]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무역창출효과 간의 관계 | 196 |
| [그림 4-3]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지수 | 202 |
| [그림 4-4] FTA 체결 여부에 따른 농식품 수출입 동향 | 224 |
| [그림 4-5] 對칠레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 232 |
| [그림 4-6] EU산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 234 |
| [그림 4-7] 對미국산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 236 |
| [그림 4-8] 미국산 호밀, 옥수수, 감자 수입 추세 | 237 |
| [그림 4-9] 미국산 대두, 녹두, 팥 수입 추세 | 238 |
| [그림 4-10] 미국산 오렌지, 체리 수입 추세 | 239 |
| [그림 4-11] 농업 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 241 |
| [그림 4-12] FTA활용 중 애로사항 경험 여부 | 247 |
| [그림 5-1] 서울세관의 품목별·협정별 원산지검증 비율 | 253 |

요약(要約)

요 약

FTA와 원산지규정

-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지난 20년간 21건 59개국과의 FTA가 체결·시행되면서, 전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관세장벽을 완화하였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80%를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FTA 체결 효과로 인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른 K푸드 수요 증가와 FTA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6개 FTA 활용 수출에 따른 농식품 분야 관세절감액은 1억 9천만불로서, 식품 수출액의 3.3%에 달했으며, 이는 식품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3.1% 보다 높은 수치로 FTA 관세절감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음.
- FTA 특혜관세의 범위는 FTA 특혜관세율과 FTA 원산지규정에 의해 좌우됨.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될 거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제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어야 최종적으로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인 한-미 FTA, 한-EU FTA,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지 10년 이상을 경과하면서 상당수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특혜관세율을 결정짓는 원산지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FTA 원산지기준은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관건이 되므로 어떠한 형태, 어느 수준의 원산지기준을 어떻게 설계하고 도입하느냐에 따라 수출입 기업의 원재료 소싱, 생산공정, 가격결정, 해외 판로 개척 및 영업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는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음. 원산지규정은 FTA 무역갈절을 막고, 역내간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됨.

- 원산지규정은 그 목적에 따라 국내외 거래상품의 가격, 관세율,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및 안전보호, 생산자 보호, 산업 및 무역정책, 교역과 투자 등 다양한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침. 원산지규정은 수출입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되며, FTA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에 속함. 국내 법상 FTA 원산지규정은 FTA관세특례법으로 규율되고 있음.

FTA 원산지결정기준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원산지기준은 역내생산원칙과 충분생산원칙, 직접운송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HS 코드 단위의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역내생산원칙’이란 원산지물품은 FTA체결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충분생산원칙’이란 역내에서 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임. 충분생산원칙은 각 품목별로 특정재료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 등 다양한 방식의 세부기준이 적용됨.
- ‘직접운송원칙’이란 FTA 체결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원칙으로서 국제 운송과정에서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할 수 밖에 없거나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상품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FTA 원산지규정은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이 정해지며, 품목별 원산지기준

을 보완하기 위해 불인정 생산공정,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규정, 대체가능재료, 포장용기,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등 다양한 보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품목별 원산지기준 중 전 품목에 걸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임. 세번변경기준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최종제품의 세번과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가 달라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세번이 변경되면 충분한 생산공정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임. 부가가치기준은 역내 생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며, 주요공정기준은 특정공정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임.

우리나라 농식품 FTA 원산지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 HS 제1류에서 제24류에 속하는 농식품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건의 FTA의 원산지기준을 보면, 14,700개 중에서 세번변경기준이 7,940개(54.0%)로 가장 많고, 완전생산기준 6,539개(44.5%), 부가가치기준 140개(1%)로 분석되고 있음. 각 협정에서는 특정제품의 민감도 또는 교역구조에 따라 세번변경기준과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 등 다양한 기준과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음.
- 제1류에서 제14류까지 기초농수산물의 경우 대부분의 FTA에서 완전생산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매우 까다로운 원산지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15류~제22류에 속하는 가공식품 중에서도 곡물, 채소, 과일 또는 인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 등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 국내외 학자들이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수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역외산 원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이 기체결 21건의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바탕으로 FTA 원산지규정이 농식품 수출과 FTA 수출활용률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농식품 수출 및 수출활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증되었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수출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FTA 활용 애로 요인 중 원산지 기준 불충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발효된지 10년 이상된 FTA 중 농식품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한-미 FTA, 한-아세안 FTA, 한-EU FTA의 품목별 농식품 원산지기준을 살펴 보면 완전생산재료 사용요건 또는 역내산 재료 사용요건과 같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재료 수급여건상 불가피하게 역외산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최근 해외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김치, 떡볶이, 냉동 김밥, 고추장, 아이스크림 등 대표적인 K푸드 제품들이 미국, 유럽 및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때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미국, EU 등 주요국가와의 FTA 협상 당시 농업 분야 시장개방에 대한 반발로 인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데 치중하면서 역내산 재료 사용요건 중심의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도입하였음.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원산지규정 개선방향

- FTA 농업분야 시장 개방 이후 지난 20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피해의 우려가 높았던 축산 부문과 과수 부

문에서 생산성의 증대와 농업 체질 개선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년간 연평균 6.2%의 농업분야 수출증대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였음.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의 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국내농업 보호 위주로 도입했던 농식품 분야의 원산지기준을 변화된 무역구조와 상황에 맞게 수출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발효된지 10년 이상된 협정 중에서 K푸드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EU, 아세안과의 FTA를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원산지규정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원산지규정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은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보호무역주의적 원산지규정에서 수출친화적 원산지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역내산 재료 사용조건 원산지기준에서 역내에서 충분한 생산공정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완전 생산 재료 또는 특정 세번제외 요건을 축소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실질 변형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선 대상품목은 수출이 급증하는 가공식품(18류, 19류 20류, 21류)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하되, 대표적인 수출 유망 K푸드인 김치, 떡볶이, 기타 곡물가공품, 고추장, 아이스크림의 원산지기준을 CTH와 RVC 40% 중심의 RCEP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한-미 FTA의 최소허용기준 중 특정 재료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스와 재료가 사용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기준을 완화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수출유망

농식품 중 원산지기준이 불합리하여 수출장애가 되는 품목 중심으로 원산지기준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원산지규정 개선협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향후 개정 협상에서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불인정공정 기준과 같은 규정도 수출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1건의 FTA 원산지규정이 모두 이질적이어서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 사용에 따른 ‘스파게티 볼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전체 FTA 원산지규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가급적 심플한 원산지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출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취업 유발 효과는 반도체·자동차·조선업 등 주력 산업보다 농수산물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농식품 수출 진흥이 주력 산업 못지않게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하여 K-컬처 영향으로 해외수출의 전성기를 맞은 K-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이 늘고 있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수출친화적인 원산지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선행될 경우 2027년 농식품 수출목표 15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본문(本文)

제1장 : 서론

제2장 : 원산지규범 체계

제3장 : FTA 원산지규정

제4장 : FTA 원산지규정과 농식품 수출영향 분석

제5장 : FTA 농식품 분야 원산지규정 개선방향

제6장 : 결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아세안, EU 등 주요 경제권의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발효 중에 있고, 필리핀·과테말라·에콰도르·아랍에미리트·GCC (걸프협력회의) 등 5건의 FTA를 타결·서명한 상태임. 아울러 몽골, 조지아 등과 FTA 신규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칠레·인도·영국과 FTA 개선협상을 추진하고 있음.(<표 1-1>)

<표 1-1> 우리나라 FTA 현황

| 구 분 | FTA |
|----------------|--|
| 발효 중인 FTA |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아세안(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중남미(5개국), 영국, RCEP(15개국),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 최근 타결·서명 FTA | 과테말라(한-중미 FTA),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GCC, 필리핀 |
| 신규 또는 개선협상 FTA | (개선) 칠레, 인도, 영국 등 (신규) 몽골, 조지아 등 |

자료: FTA 강국, 코리아(<https://www.fta.go.kr>)

-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관세장벽을 완화하였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80%를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출증진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2000년대 초 한-칠 FTA, 한-미 FTA 체결 당시만 해도 값싸고 다양한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었음. 그러나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부의 지속적인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국내 농업 피해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K푸드의 수출이 큰 성장을 이루고 있음.

- 한-칠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3년 18억 5980만 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액은 2014년 61억 8270만 달러, 2019년 70억 2570만 달러, 2022년 88억 2370만 달러, 2023년 91억 6200만 달러로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지난 20년간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1-2>

<표 1-2> FTA 20년 농식품 수출변화(금액: 백만불)

| 년도 | 2003 | 2014 | 2019 | 2022 | 2023 | 2003/2023 증가율 |
|-----|-------|-------|-------|-------|-------|------------------|
| 수출액 | 1,859 | 6,182 | 7,025 | 8,823 | 9,162 | 483% |

자료: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통계자료(<https://www.kati.net/>)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한-EU, 한-중, 한-인도, 한-베트남, 한-아세안 등 6개 FTA 활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2021년 1년간 약 58억불(한화 약 6.6조원)의 수출관세 절감혜택을 누린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3> 협정별 수출관세 절감효과 요약

(단위 : 억불)

| 구 분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6위 | 6개협정계 |
|------------------------|--------------------------|-------|-------|-------|-------|-------|------|--------------|
| 수출액 | 협정명 | 중국 | 미국 | EU | 베트남 | 아세안 | 인도 | - |
| | 수출액(A) | 1,629 | 959 | 636 | 567 | 521 | 156 | 4,469 |
| | 비중 | 36.5% | 21.5% | 14.2% | 12.7% | 11.7% | 3.5% | 100% |
| FTA 활용 관세절 감액 | 협정명 | 미국 | EU | 중국 | 인도 | 베트남 | 아세안 | - |
| | 관세절감액(B) | 16.8 | 15.5 | 9.1 | 6.9 | 4.9 | 4.8 | 58.0 |
| | 비중 | 29.0% | 26.8% | 15.7% | 11.8% | 8.4% | 8.3% | 100% |
| | 수출액 대비 관세절감액 (B/A) | 1.8% | 2.4% | 0.6% | 4.4% | 0.9% | 0.9% | 1.3%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4.2.),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

- 이는 정부가 FTA 체결·이행·활용을 위해 투입한 연간예산(2022년 기준 199억원)과 비교해도 약 330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당사국들 간 무역·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확인한 것임.¹⁾<표 1-3>

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 2023.4.2.

- 수출관세 절감효과가 가장 큰 수출상대국은 미국(16.8억불)이고, 이어서 EU(15.5억불), 중국(9.1억불), 인도(6.9억불), 베트남(4.9억불), 아세안(4.8억불) 순으로 나타났음.
- 농림수산물의 FTA 활용 관세절감액은 1.9억불로서 수출액 대비 관세절감액 비중이 3.3% 수준으로 전기전자, 기계, 화학공업 등 여타 산업제품에 비해 그 효과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1-4>)

<표 1-4> 품목별 수출관세 절감효과 요약

(단위 : 억불, '21년도 6개 FTA 체결국향 관세청 수출신고액 기준)

| 구 분 | 전자 전기 | 기계 | 화학 공업 | 철강 금속 | 광산물 | 플라스틱 고무·가죽 | 섬유 | 농림 수산물 | 생활 용품 | 기타 | 6개협정계 |
|------------------------------|------------|-------------|-------------|-------------|------------|---------------|------------|------------|------------|------------|-------------|
| 수출액 (A) | 1,764 | 995 | 750 | 353 | 275 | 115 | 91 | 59 | 57 | 10 | 4,469 |
| FTA 활용 관세절감액 (B) | 3.5 | 19.4 | 12.0 | 12.1 | 1.1 | 3.6 | 2.8 | 1.9 | 1.6 | 0.0 | 58.0 |
| 수출액 대비 관세절감액 (B/A)*100 | 0.2% | 2.0% | 1.6% | 3.4% | 0.4% | 3.1% | 3.0% | 3.3% | 2.8% | 0.2% | 1.3%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4.2.),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

- 가성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품산업의 특성상 수출금액 대비 3.3%의 관세절감액은 수출식품의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음.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의 평균영업이익률 3.1%와 비교할 때 수출식품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²⁾
- 농식품 수출은 농식품 생산기반 강화 및 수급 안정과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생산,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우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산업 부문별 수출부가가치율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이 76.4, 의약품 74.3, 자동차 70.7, 반도체 67.2, 선박 66.3 등으로 농수산식품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1-1])

2)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영업이익률은 5.7%이다. 자료: 한국은행(2022), 연간기업경영분석.

[그림 1-1] 산업별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 구분 | 반도체 | 자동차 | 선박 | 석유 | 화학제품 | 의약품 | 농수산물 |
|-------|-------|------|------|------|------|------|------|
| 부가가치율 | 67.2% | 70.7 | 66.3 | 34.9 | 64.8 | 74.3 | 76.4 |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 “수출의 국민경제 효과 분석”.

- 취업유발효과도 수출 백만 달러당 농수산물식품은 18.9명, 자동차 9.13명, 의약품 8.1명, 선박 7.94명, 화학제품 7.34명 등으로 농수산물식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³⁾[그림 1-2])

[그림 1-2] 산업별 수출의 취업유발 효과

| 구분 | 반도체 | 자동차 | 선박 | 철강 | 화학제품 | 의약품 | 농수산물 |
|---------------|-------|------|------|------|------|------|------|
| 수출 백만달러당 취업유발 | 2.47명 | 9.13 | 7.94 | 5.72 | 7.34 | 8.10 | 18.9 |

자료: 한국무역협회(2020), “수출의 국민경제 효과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해외에서의 K-푸드 인기에 힘입어 2023년에는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한 후 2027년에는 150억 달러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웠음.
- 이를 위해 정부는 농식품 주요 수출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함께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이 돼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등의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관협력사업 발굴을 직접 챙길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⁴⁾
- 아울러 농식품 수출을 넘어 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 산업까지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 식품기술인 푸드테크를 신성장 분야로 추진하고 있음.

3)한국무역협회(2020), “수출의 국민경제효과 분석”.

4)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1.26.),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출범”.

- 농식품의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미국, EU, 중국, 아세안 등 기존의 FTA 체결국 이외에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시장 지역과의 신규 FTA를 계속해서 체결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존 21개의 FTA 중 10년 이상된 FTA도 수출증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품양허 및 원산지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00년대 초 FTA 협상 추진 당시의 경제상황, 산업 및 무역구조, 국내 농식품의 수급동향과 현재의 제반 상황이 현저히 변화되었으므로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게 협정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표 1-5>)

<표 1-5> 발효후 10년이상 된 FTA

| | | | | | |
|-----|-------|-------|-------|-------|--------|
| 협정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 발효일 | '04.4 | '06.3 | '06.9 | '07.6 | '10.1 |
| 협정 | EU | 페루 | 미국 | 튀르키예 | 호주 |
| 발효일 | '11.7 | '11.8 | '12.3 | '13.5 | '14.12 |

자료 : FTA 강국, 코리아(<https://www.fta.go.kr>)

2. 연구의 필요성

- FTA 특혜관세는 상품양허와 함께 원산지규정으로 결정되는데, FTA 발효 10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대부분 0%로 인하됨에 따라 특혜관세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원산지규정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음. 그 이유는 농식품의 원산지기준이 대부분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FTA 활용 수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관세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임.
- 또한 각 협정마다 품목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원산지의 증명 및 검증 절차가 달라서 FTA 관세혜택 보다 FTA 원산지규정 준수비용이 더 많아서 FTA 활용을 포기하는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⁵⁾도 나타나고

5) ‘스파게티 볼 효과’란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본연의 기대효과가 반감

있음. 이러한 스파게티 볼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FTA 원산지 규정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FTA 원산지규정은 국회에서 정해지는 국내법과 달리 각 중앙부처의 실무자로 구성된 FTA 원산지분과 협상 테이블에서 여러차례 협상을 통해 대부분 결정됨. 따라서 원산지규정 협상 담당자의 전문성, 통찰력, 순발력과 국익우선 중심의 협상 테크닉이 요구됨. 무엇보다 협상 담당자는 원산지규정의 의미, 효과에 대한 고도의 역량이 요구되며, 국내 및 상대국 농식품 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국내 협회·단체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공감대를 통한 협상 준비가 요구됨.
- 이런 관점에서 개선협상 FTA 추진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은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농식품 수출 기회는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존 FTA의 원산지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여 협상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신규 또는 개선 FTA 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FTA 원산지규정 해설서 및 연구자료는 공공기관 및 전문가들이 다수 발표한 바 있으나, 농식품을 대상으로 한 FTA 원산지규정 해설서 및 적용사례 연구자료는 찾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농식품 분야 FTA 원산지규정 중심으로 체계적인 설명과 분석, 무역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그 문제점을 정리하여 향후 FTA 개선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편찬이 필요함.

되는 것을 말함. 즉, 스파게티 그릇 안에 국수 가닥이 얽히듯 기업들이 각각 다른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를 파악하는 데 시간 및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소요돼 기업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임. 스파게티 볼 효과는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바그와티 교수가 동시다발적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해 처음 사용했던 용어임. 자료: 한국은행 인천본부. <http://www.bok.or.kr>.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1.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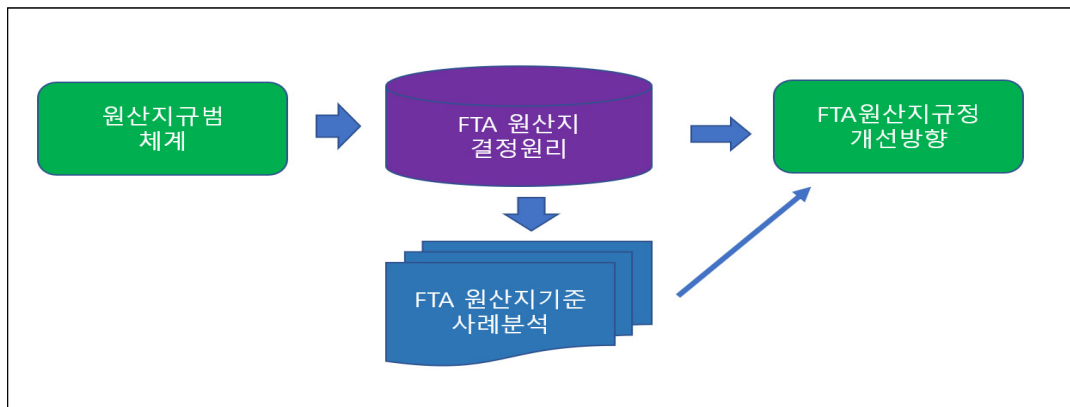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FTA 역사가 20년이 넘어서면서 우리 농식품의 대부분이 FTA 체결국으로 수출됨에 따라 FTA의 관세철폐 범위의 확대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원산지의 인정범위에 따라 FTA 관세특혜율이 달라지고 기업의 생산방식, 원재료의 조달 및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활용에 따른 수출관세 절감액은 수출원가의 3.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만큼 FTA 활용 수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농식품 분야의 FTA 수출활용률은 2022년까지 평균 50% 수준으로 매우 저조했으나, 2023년부터 FTA 수출활용률이 78.7%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고무적임.
-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건의 FTA는 각각 독립적인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하려는 국가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다르고 원산지증명 절차도 상이하여 중소기업에게는 FTA 활용 수출이 쉽지 않은 상태임.
- FTA 협상 테이블에서 짧은 시간 안에 협상 담당자들 간의 협상을 통하여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과 관련 산업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원산지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불인정공정 등 원산지결정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
-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를 마련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의 정책·협상 담당자의 협상 능력을 강화하고, 협상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일관적인 원산지 협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를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엄격한 FTA 원산지규정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수출품목의 FTA 활용사례 분석을 통해 FTA 원산지규정의 수출 장애 요인을 조사함. 이를 토대로 발효된 지 10년이 넘는 FTA 중 K푸드의 수출확장에 장애가 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수출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코자 함.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①원산지 규범체계, ②FTA원산지결정원리, ③ FTA 원산지기준 사례분석 ④FTA원산지규정 개선방향 순으로 구성하였음. ([그림 1-3])

[그림 1-3] 연구의 주요 구성내용



자료 : 연구자가 작성

- ① 원산지 규범체계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개념, 원산지규정의 분류, 원산지규정의 연혁을 정리하고,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기능을 분석함. 아울러 원산지규정의 적용분야를 특혜무역의 관세결정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비특혜 무역조치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으로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체계를 서술함.
- ② FTA원산지결정원리에서는 FTA 원산지규정의 의미, 원산지물품의 결정원칙, 완전생산기준, 충분생산기준, 보충기준을 서술하고, 충분생산기

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주요공정기준을 적용사례 중심으로 설명함. 아울러 보충기준으로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기준 등 11개 유형의 개념을 서술함.

- ③ FTA 원산지기준 사례분석에서는 FTA 원산지규정의 역할, 농식품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과 적용사례 분석 및 FTA 활용실태와 미활용 이유를 분석함.
- ④ FTA원산지규정 개선방향에서는 한-미 FTA, 한-EU FTA,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에 엄격한 원산지기준으로 인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원산지규정 개선협상 방안 제시을 제시함.
- 아울러 농촌 인구의 감소화 및 고령화로 인해 국내 농식품 원재료 수급이 부족한 가공식품의 최소허용기준을 확대하고, 역내산 재료 또는 완전 생산재료 사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단일 세번변경기준을 완화하는 선택 기준 또는 대체기준 도입 방안 등 수출친화적인 방향의 원산지기준 도입 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과제는 산업통산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에서 생산·발표한 자료와 관세인재개발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민간전문가들이 발표한 각종 강의자료와 연구자료를 기초로 수행함.

제2장 원산지규범 체계

제1절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연혁

1. 원산지의 개념

- ‘원산지(原產地, 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물품의 생산국적을 의미함.⁶⁾
- 원산지의 기준이 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나 한 나라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이 국가가 아닌 특정지역도 독립관세 영역이나 자치권 보유 여부에 따라 원산지가 될 수 있음.⁷⁾
- 원산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의 생산국’을 의미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⁸⁾ 「FTA관세특례법」에서는 ‘원산지’란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음.⁹⁾
- 미국에서도 “원산지”란 “미국에 반입되는 외국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성장한 나라”(Country of Origin means the country of manufacture, production, or growth of any article of foreign origin entering the United States)로 규정.¹⁰⁾하고 있어, ‘물품의 생산국’임을 말함.

6)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FTA분야 원산지관리기본서 원산지결정기준」, p.2

7) 이영달(2017),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세인북스. p.16.

8)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10) 19 CFR 134.1(b), 동 조항은 무역법(Trade Act) 제301조 적용을 위한 비특혜원산지 규정임

- 원산지 개념에 따르면 물품의 지역적 생산범위는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한 나라의 영역(territory)에서 원료의 조달 및 제품의 생산이 모두 이루어졌거나 한 나라의 영역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식물이나 동물성 생산품은 그 생산범위가 한 나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산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음.¹¹⁾
- 이에 반해 원재료의 조달과 제품의 생산공정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역적 생산범위를 기초로 원산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됨. 예를 들어 중국산 절임배추와 혼합양념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한 김치의 경우 김치 주재료의 생산국인 중국을 원산지로 결정해야 할지, 완제품인 김치 생산국인 한국을 원산지로 결정해야 할지 모호할 수 있음.
- 세계화와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과 글로벌 생산체제(Global Manufacture)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 될수록 물품의 생산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의 결정은 어렵게 됨
- 어디까지 생산해야 그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할지 판단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국가 간에 수출입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명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인 원산지기준이 필요함. 원산지규정에 따라 관세, 산업과 무역, 기업 및 소비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2. 원산지규정의 분류

- 원산지와 유사하게 ‘제조국’, ‘조립국’, ‘수출국’, ‘생산국’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그러나 원산지는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통해 결정되고, 관세, 반덤핑,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무역정책 수단에 사용되는 법적·행정적 개념임

11)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FTA분야 원산지관리기본서 원산지결정기준」, 2023.7.1. p.2

- 여기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의 무역조치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국제법규, 법률, 규칙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WTO 원산지규정협정(제1조)에서는 원산지규정을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으로 정의하고 있음¹²⁾.
-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증명서류의 발급 및 관세당국의 원산지의 확인 등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됨.
-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 목적에 따라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원산지표시, 쿼터 등 관세혜택 이외의 목적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됨.(<표 2-1>)

<표 2-1> 원산지규정의 분류

| 구분 | 목적 | 적용예 |
|----------|--------------------------------|-----------------------|
| 특혜원산지규정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특혜 부여 | FTA, NAFTA, GSP, GSTP |
| 비특혜원산지규정 | 원산지표시, 수입제한 및 무역구제조치 등 무역정책 목적 | WTO원산지협정, 원산지표시제도 |

자료: 연구자가 작성

-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에 관세편익을 제공하는 개별국가간 FTA,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공동체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인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등으로 관세혜택 부여를 위한 목적의 원산지규정임.¹³⁾

12)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Agreement of Rules of Origin) 제1조

13)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3

-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 무역정책상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임.

3. 원산지규정의 연혁

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883)

- 원산지가 최초로 규정화된 것은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임.¹⁴⁾
- 동 협정에 따른 공업소유권의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명칭 및 부당경쟁의 방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동 협정 제10조에 원산지 또는 생산지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한 수입물품은 압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⁵⁾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10조 원산지 또는 생산자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부착한 상품의 수입 등에 관한 압류

1. 전조의 규정은 상품의 원산지 또는 생산지, 제조자 혹은 판매인에 관하여 허위 표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사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생산자, 제조자 또는 판매인으로서 원산지라고 허위로 표시된 지역, 그 지역이 있는 지방, 원산국이라고 허위로 표시된 국가 또는 원산지에 관한 허위의 표시가 행하여지고 있는 국가에 있는 자는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다.

1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15)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우리나라는 1979년에 가입하였음.

- 이후 1890년 미국 관세법을 비롯 유럽국가들의 관세법에서도 원산지규정이 입법화되었음.¹⁶⁾

나. GATT 제9조(원산지표시)

- 2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무역질서의 확립과 관세인하 및 무역장벽의 제거로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1947년 제정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제9조에 원산지표시(Marks of Origin) 규정이 마련되었음.¹⁷⁾ 그러나 동 협정에서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미비하여 국가마다 상이한 원산지규정 적용에 따른 무역장벽의 우려가 제기되었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9조 원산지 표시

1. 각 체약국은 표시요건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 영역의 제품에 대하여 제3국의 동종 제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체약국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제정 또는 실시에 있어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의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 후, 이러한 조치가 수출국의 상업과 산업에 미칠지 모를 곤란과 불편을 최소한으로 감소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3. 체약국은, 행정상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소정의 원산지 표시를 수입시에 붙이는 것도 허가하여야 한다.
4. 수입산품의 표시에 관한 체약국의 법률 및 규칙은 산품의 현저한 손상이나 그 가치의 실질적인 감소, 또는 그 비용의 부당한 증대없이 이행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16) 이영달,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세인북스, 2017.6. p.18.

17)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14일 조약 243호로 가입하였음.

5. 체약국은 수입전에 표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정의 표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허위의 표시가 붙여졌거나 또는 소정의 표시가 고의적으로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원칙으로 특별세 또는 처벌을 과할 수 없다.

6.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영역의 상품의 특수한 지역적 또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그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상호의 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이 자국에 통고한 상품의 명칭에 대한 전기 조항에서 규정한 약속의 적용에 관하여 동 체약국이 행하는 요청 또는 사정의 설명에 대하여 충분하고 또한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다. 1973년 교토협약 부속서

- 1973년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신인 관세협력이사회(CCC) 주관으로 마련된 교토협약의 부속서에 원산지규정(D.1, D.2, D.3)이 도입되었음.¹⁸⁾
- 동 협약에는 원산지결정 기준으로 ① 완전생산 기준과 ②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criteria) 및 주요 공정 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을 규정하였음.
- 그러나 교토협약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규정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였고, 동 협약의 가입국 수도 적은데다가¹⁹⁾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적인 무역규범으로 활용되지는 못하였음.

18) 교토협약의 정식 명칭은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이며, 1973년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서 채택되어서 일명 교토협약으로 불리어 지고 있음. 아국은 1983년 10월, 조약 821호로 가입하였음.

19) 2005년 6월말 현재 기존 교토협약 가입국은 63개국에 불과하였음. 2006.2.6.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개정 교토협약(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라. WTO 원산지규정협정(1995)

- 1995년 GATT 체제가 WTO로 국제무역질서가 전환됨에 따라 WTO에서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을 마련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정 협상을 시도하였음.
- WTO 원산지협정의 제정은 경제활동의 세계화(globalization) 및 지역주의(regionalism)의 동시 진행으로 각국의 무역정책상의 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임.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지역경제 통합확대로 역외국의 우회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판정 수요가 증대되었음. 그러나 각국의 원산지규정의 상이성,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무역장벽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세계적인 통일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특히, EC의 자의적인 원산지규정 적용과 관련, 명료하고 통일성있는 원산지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WTO 원산지규정 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음.
- 이렇게 태동된 WTO 원산지규정협정은 전문, 4부 9개 조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되었으며, 적용범위는 비특혜 무역부문으로 한정²⁰⁾하였음.

WTO 원산지규정 협정의 구성

| | |
|-------|-------------------------------|
| 제1부 | : 정의 및 적용 범위 |
| 제2부 | :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
| 제3부 | :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
| 제4부 | : 원산지규정의 조화 |
| 부속서 1 | :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
| 부속서 2 | :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

- WTO는 각국 대표가 참여하는 원산지위원회를 구성하고 1995년부터 '조화된 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 제정을 목표로 품목별 통일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을 진행해왔으나 방대한 작업량과 기술적

20) WTO원산지규정협정 제1조

쟁점의 복잡성 및 주요국가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임.²¹⁾

마.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의 연혁

1) 관세법

- 우리나라 관세법령체제에 원산지 관련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64년으로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및 증명서 요건이 관세법시행령에서 규정된 것임²²⁾.
- 1973년 관세법시행령에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경기준)이 마련되었고, 1976년 개정령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원산생산기준 적용물품 6개 유형이 지정되고, 실질변형의 구체적 판단기준으로서 세번변경기준이 채택되었음. 촬영된 필름의 원산지를 당해 영화 제작자가 속한 나라도 결정하는 규정도 이때 신설되었음.
- 1993년 관세법에서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의 통관 불허,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보세구역 리콜제도가 마련되었고,²³⁾ 포장·용기·부속품 등에 대한 원산지결정 특례, 단순가공품 원산지 불인정 조항과 직접운송원칙이 도입되었음.²⁴⁾
- 1996년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환적화물 등에 대한 유치제도가 관세법에 도입되었고,²⁵⁾ 관세법시행규칙에 수입신고 전 원산지확인요청제도가 신설되었음.²⁶⁾

21) 이영달(2017),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세인북스, p.19.

22) 관세법시행령 제1조(원산지증명). 1964. 9. 1.

23) 관세법 제43조의16(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에 대한 조치), 172조(보세구역 반입명령). 1993. 12.31.

24) 관세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제31조의2. 1993.12.31.

25) 관세법 제43조의 16 제2항 내지 제8항. 1996.12.30

26) 관세법시행규칙 제31조의3. 1996.6.29.

- 2000년 관세법에 개별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확인기준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동법에서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²⁷⁾
- 2004년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²⁸⁾ 2005년 FTA 관세분야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FTA와 관련된 모든 특혜 원산지규정은 동법 체제로 통합·시행된 후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²⁹⁾ .

2)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에서도 원산지표시 등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규정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7년임. 대외무역법시행령은 특정국으로부터 특정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음.
- 1991년 대외무역관리규정(상공부 고시)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및 표시·확인 대상물품과 원산지결정기준이 도입되었음.
- 1992년 대외무역법에 원산지표시의무·표시방법·원산지확인(법 제31조의2), 원산지증명서 제출(법 제31조의3) 및 원산지판정기준(법 제31조의4)이 마련되었음.
- 1996년 대외무역법에 원산지판정제도 도입(법 제24조), 동법 시행령에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판정제도(영 제56조)가 마련되었음.³⁰⁾

27) 관세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2000.12.29.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및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28)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7172호, 2004.4.1.)

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2호, 2005.12.2.)

30) 최흥석·류원택(2004), 「원산지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p.8.

- 2024년 8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³¹⁾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3조의2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등
 제36조 수입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3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38조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 1991년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되고, 농수산물의 대외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1993년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가 도입되었음.³²⁾
- 2010년 2월 4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³³⁾된 후 21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³⁴⁾ 동법 제5조에서 제10조에서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 원산지 표시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제8조 영수증 등의 비치
 제9조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제9조의2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10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31) 법률 제20319호. 2024.8.21. 시행

3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표시의무), 제22조(처벌)

3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 2010. 8. 5.] [법률 제10022호, 2010. 2. 4.,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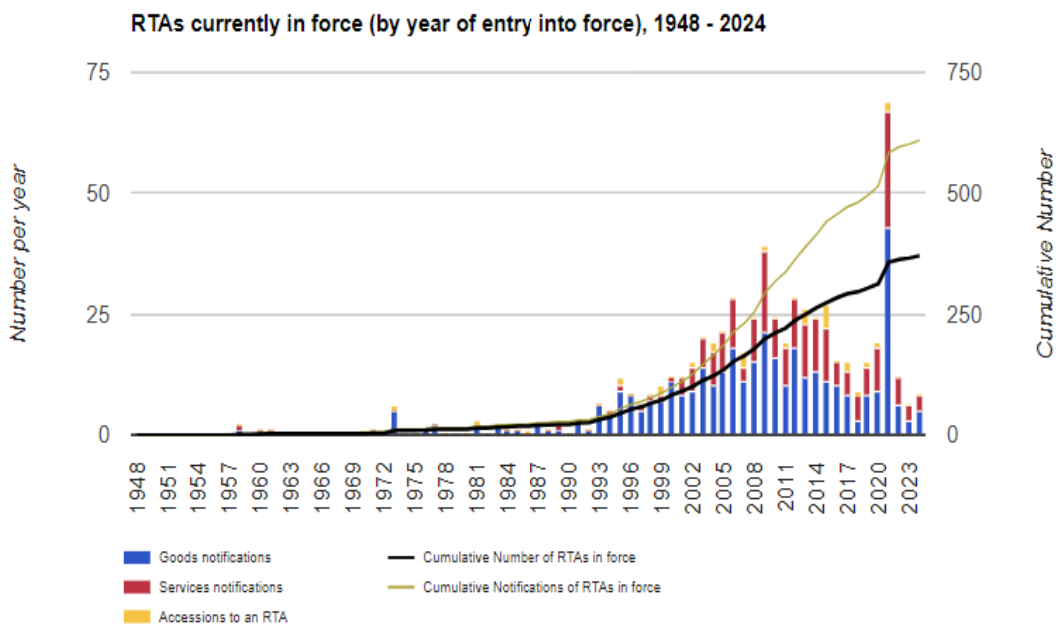
34)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22호. 2010.8.5.

제2절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기능

1.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 이후, 세계경제가 WTO를 중심으로 다자적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FTA의 확산 및 심화가 지속되어 왔음.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FTA 체결이 급속히 늘었으며, 2024년 8월 기준 WTO에 통보된 RTA(지역무역협정)는 602건, 발효누적 건수는 371건에 달하고 있음.([그림 2-1])

[그림 2-1] WTO에 통보된 RTA 통계



자료: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 <https://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 FTA가 확산됨에 따라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대두됨. 원산지의 인정범

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이 달라지고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생산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³⁵⁾

- 원산지규정은 체결상대국 이외 국가의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 특혜관세 부과에 따른 체결국 간 교역 확대, 관세혜택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 규정은 오히려 교역과 생산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원산지규정 준수비용의 증가로 상품의 원가를 인상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야기함.³⁶⁾
- 위와 같이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병행하므로 원산지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내산업과 교역, 투자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2. 원산지규정의 기능

- 원산지규정은 그 목적에 따라 국내외 거래상품의 가격 결정, 관세율의 결정, 산업 및 무역정책, 교역과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가. 가격결정 기능

- 원산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동일한 브랜드 또는 품질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에 따라 그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있음. 쇠고기의 경우 한우 또는 호주산 쇠고기인지 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있고, 소금도 국내산 천일염 또는 중국산 천일염인지 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있고, 고춧가루도 국내산 또는 중국산인지 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의 차이가 있음.

35) John J. Barcelo III(2006), "Harmon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WTO System," Cornell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No.06-049, Cornell Law School, pp.2-3

36) Richard Baldwin(2060), "Multilaterilising Regionalism :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k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Working Paper 12545, National Breau of Economic Research, pp.22-31

<표 2-2> 김치 원산지별 국내시장 판매가격

| 원산지 | 품명 | 1kg 당 판매가격 |
|-----|-----------------------|------------|
| 국내산 | 풀무원 사계절 아삭 포기김치 | 4,361 |
| | CJ제일제당 비비고 베이직 포기배추김치 | 4,266 |
| | 착한식탁 전라도 맛김치 | 2,475 |
| | 대상 종가 행복이온 포기김치 | 5,213 |
| | 종가집 국산 포기김치 | 5,200 |
| | 풀무원 톡톡 포기김치 | 4,230 |
| | 이종임김치 포기김치 | 3,861 |
| | 대북영농조합 경원재 포기김치 | 3,518 |
| 중국산 | 중국산 수입컷김치 | 1,330 |
| | 하나둘셋 중국산 수입 배추 김치 | 1,290 |
| | 맛김치 업소용 중국산 | 1,200 |
| | 중국산 포기김치 | 1,040 |
| | 작품김치(중국산) | 1,800 |
| | 중국산 포기김치 | 1,000 |
| | 중국산 슬라이스김치 | 1,200 |
| | 중국산 알찬 배추김치 | 1,334 |

출처 : 네이버쇼핑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예컨대, 중국산 포기김치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은 1kg 당 1,000~1,800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 국내산 포기김치는 3,109~5,213원 수준으로 중국산에 비해 1.7~5.2배 더 고가임.<표 2-2> 이와 같이 원산지는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함.

나. 국민건강 및 안전보호 기능

- 상품의 원산지는 일반국민들의 위생·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을 차별화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함. 후쿠시마 수산물은 대표적인 사례임.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산³⁷⁾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의 소비 를 꺼려하고 있음.³⁸⁾

37)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현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www.kamis.or.kr, 2023.9.28.

38) 현대건강식품(2023.9.28),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가공품은 먹어도 되나”.

- 또 다른 사례로 2021년 3월 중국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절인 배추를 휘적이고, 절인 배추는 녹슨 굴삭기로 옮긴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³⁹⁾ '중국산 김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중국산 김치를 쓰는 외식업체에게 큰 피해를 준 바 있음.⁴⁰⁾

다. 소비자 보호 기능

-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9월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일 39.0% ~ 50.0%, 축산물 61.0% ~ 80.3%, 수산물 53.7% ~ 66.0%, 가공식품 33.7% ~ 66.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2-3>)

<표 2-3> 농수산물 품목별 소비자의 원산지확인 구매비율

| 품목군 | 품목(응답자 수) | 원산지 확인 응답자비율(%) |
|---------|--------------------|-----------------|
| 수입 과일 | 체리(300) | 47.7 |
| | 바나나(300) | 40.0 |
| | 오렌지(300) | 43.7 |
| | 키위(300) | 45.3 |
| | 포도(300) | 50.0 |
| | 망고(300) | 47.0 |
| | 아보카도(300) | 39.0 |
| 수입 축산물 | 쇠고기(300) | 80.3 |
| | 돼지고기(300) | 61.0 |
| 수입 수산물 | 새우(300) | 53.7 |
| | 연어(300) | 66.0 |
| | 바닷가재(300) | 61.7 |
| 수입 가공식품 | 모짜렐라치즈(300) | 39.0 |
| | 아이스크림(300) | 31.3 |
| | 조제분유(240) | 66.3 |
| | 초콜릿(300) | 33.7 |
| | 토마토소스(300) | 51.7 |
| | 올리브유(300) | 53.7 |
| 수입 견과류 | 아몬드(300) | 47.3 |

자료: 한국소비자원(2019), “FTA소비자 후생 체감도 조사분석”.

-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위생·안전에 대한 우려, 품질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할 수 있음. 따라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39) 서울신문(2021.3.11.), “물까지 절인 김치”...중당국 “알물 절임배추, 수출용 아냐”.

40) 이데일리(2021.3.21.), “옷통 벗고 배추 ‘뒤적’...중국산 ‘알물 절임’ 김치 쇼크”.

라. 생산자 보호 기능

- 원산지규정은 국내산 제품과 수입 제품을 구별함으로써 국내산 제품이 수입산 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과 품질의 우위를 인정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특성은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제도로 발전되고 있음.⁴¹⁾ 특정지역 생산품의 지리적 표시는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과 같은 권리가 인정되므로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
-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평판이나 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경우 그 상품이 해당국가의 영역, 그 영역 내의 일정지역 또는 지방을 상품에 표시하고, 그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보호해주는 제도임.
- 한-미 FTA에서는 안동소주, 경주법주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받았고,⁴²⁾ 한-EU FTA에서는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진도홍주, 고창복분자 등 64개 품목을 지리적 표시로 인정받았음.⁴³⁾

마. 자국산업 보호 및 무역정책

- 최근 미-중 무역갈등 등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및 EU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입규제를 위해 다양한 무역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미국 정부가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불공정무역관세를 비롯하여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수입수량 제한 등의 보호무역조치 또는 무역구제조치는 수출국이나 생산국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41)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7.

42) 한-미 FTA 제2.13조(특산품), “미합중국은 안동소주와 경주법주를 대한민국의 특산품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미합중국은 그 제품이 안동소주와 경주법주의 제조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제품도 안동소주나 경주법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43) 한-EU FTA 제10장 부속서 10-가(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따라서 특별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규정은 보호무역조치를 위한 핵심적인 무역정책 기능을 수행함.⁴⁴⁾

바. FTA 체결국간 교역과 투자 촉진 기능

- 국가간 FTA의 체결은 관세철폐·인하로 인해 당사국간 무역을 창출하는 한편 제3국에서 수입하던 물품을 당사국으로 변경하는 등 무역전환 효과를 야기하고 있음.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의 크기는 원산지규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⁴⁵⁾
- FTA 체결국이 아닌 역외국가는 경쟁력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역내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직접 투자를 검토하게 됨. 이 경우 역외 투자기업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재료의 수급, 생산공정 및 기술 등 생산요소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할 것임.

44) 최흥석·류원택(2004) > 전게서. p.13.

45) 이영달(2017), 전게서. p.23.

제3절 원산지규정의 적용분야

- 원산지규정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그 목적에 따라 특혜무역의 관세결정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의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 무역조치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의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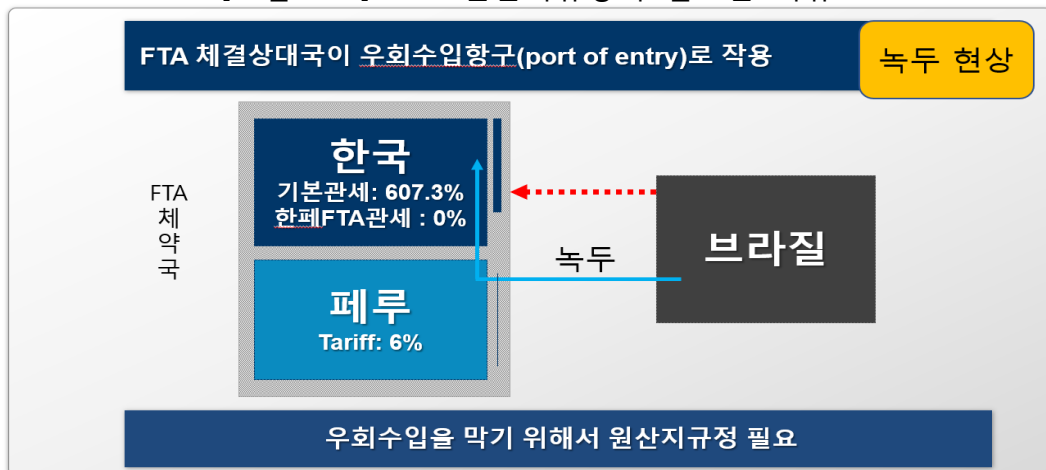
1. 특혜무역의 관세결정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각국은 관세법규에 편익관세규정을 두고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양허하고 있음. 특혜무역은 쌍방향 특혜무역과 일방적 특혜무역으로 구분함.
- 쌍방향 특혜무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유무역협정(FTA)를 들 수 있음. FTA는 아니지만 쌍방향 특혜무역협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TNDC),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등이 있음.
- 일방적 특혜무역협정은 쌍방향 특혜무역제도와 달리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들 수 있음.⁴⁶⁾
-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의 확인 등의 원산지규정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특혜관세 대상물품에 대해 FTA 관세특례법과 관세법(제229조, 제232조 등)에 원산지결정기준을 비롯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음.

46) GSP는 UNCTAD 주관으로 개도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으로 수입하는 농산품, 공산품의 제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1971년부터 시행되었다.

- 특혜무역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특혜관세 수혜대상 물품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에만 한정하기 때문임. 원산지규정이 미비하거나 느슨할 경우 역외국 제품이 FTA 체약국을 통해 우회수입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FTA 체약상대국이 우회수입항구(port of entry)가 될 수 있음.
- 한-페루 FTA에 의거 2021년부터 페루산 녹두에 대해서는 607.3%의 관세가 완전철폐됨에 따라 제3국산 녹두가 페루산 녹두로 원산지를 세탁하여 한국으로 수입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세관이 페루 현지까지 가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음.⁴⁷⁾

[그림 2-2] FTA 원산지규정이 필요한 이유



자료: Eki Kim(2013), Free Trade Agreements and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 법무법인 올춘.

- [그림 2-2]에서 브라질산 녹두를 한국으로 직수입할 경우에는 607.3%의 초고관세가 부과되지만 브라질에서 수확한 녹두를 저세율(6%)로 페루로 수입한 후 세척, 등급분류, 소분 및 포장 작업을 거친 후 페루산으로 원산지를 변경하여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 0%의 한-페루 FTA 특혜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의 우회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이 필수임.

47) 관세청은 지난 2021년 9월 페루산 녹두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개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607.5%의 관세가 부과되던 페루산 녹두는 2021년 관세가 0%로 철폐됐으며, 2021년 한해에만 8천561톤이 국내 수입됐다. 이는 전년도 133톤에 비해 약 63배가 증가한 규모다. 한국세정신문. 2023.4.3.

- 특혜원산지규정은 역내산 상품과 역외산 상품을 차별하는 기준이 되어 특혜관세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됨. 즉, 역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고, 역내국 간에는 교역 및 투자를 증대하는 효과를 갖게 함.
-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당사국의 수출입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산지규정이 엄격해 지면 이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비용 및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특혜관세의 자유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 또한 FTA 간에 서로 상이한 원산지규정은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현상을 야기하여 FTA 효과를 감소시키고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됨.

2. 비특혜 무역조치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가.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목적

- 관세특혜 목적 이외에 각 국가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민감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의 확립 등 원산지별로 차별적 대우를 적용하기 위해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규정을 활용하고 있음.⁴⁸⁾

1) 원산지표시제도

-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물품에 대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 자신이 상품을 구매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임.
- 원산지표시제도는 표시대상물품의 지정과 표시방법의 구체화로 구성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오인표시는 금지하고 위반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음.⁴⁹⁾

48) 산업통상자원부(2019), 주요 교역국의 일반원산지제도 조사. pp.4-6.

49)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93조에서 정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규정

-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품품 등
-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제78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 제81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 제83조(원산지 표시의 확인·조사)
- 제84조(원산지 표시의 확인 및 이의제기)

2) 불공정무역구제조치

- 특정국가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보복관세를 발동하기 위해서도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규정이 필요함.
- 해당 조치를 취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조치대상물품과 그 수출국을 지정하기 때문임.⁵⁰⁾ 관세청은 원산지제도운영고시⁵¹⁾를 제정하여 불공정 무역조치 우회 수입의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음.

50)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과세법 제57조), 보복관세(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관세 비적용 신청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 신청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에 대해선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원산지제도운영고시 제39조제2항)

51) 관세청고시 제2017-41호, 2017. 7. 25

원산지제도운영고시

제39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②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의8 서식의 일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법 제65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용 신청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3) 무역정책 수립

- 무역정책 수립과 통계작성을 위해서도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규정이 필요함. 효과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역통계의 정확성이 요구됨.
- 이에 따라 각국은 물품의 수출·수입신고서에 원산지를 기재⁵²⁾토록 하고 있음.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신고로 물품의 원산지별 국제적인 무역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대내외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4) 정부 조달물품의 수입

- 정부 조달물품의 구매를 위해서도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규정이 필요함. 정부나 정부의 통제를 받은 기관이 정부조달물자 구매시 차별적인 구매 관행 등 비관세장벽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무역에서 조달시장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1994년 4월 WTO 정부조달협정⁵³⁾이 마련되었음.

52) 수입신고서 46번 항목, 수출신고서 41번 항목에 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함.

53)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서명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 PTA)」 중의 하나이다. 「정부조달협정」인 「WTO-GPA」는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관행은 자국산 물품과 서비스 또는 자국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채택되거나 국내외 물품과 서비스 또는 국내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외

- 동 협정 제4조(일반원칙-원산지규정)에는 조달물품 수입시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적용하는 원산지규정과 다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WTO 정부조달협정

제4조 일반원칙

원산지규정

5. 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목적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시점에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같은 당사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같은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산지규정과 다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주요국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운영 현황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국제법상 통일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각 국은 자국법에 따라 독자적인 비특혜 원산지의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 20대 주요 수출국 중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일본, 대만 등 14개 국가로 조사되었음.⁵⁴⁾ (<표 2-4>)

국산 물품 또는 서비스 간에 또는 외국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된다. 우리나라는 1994년 4월 UR 최종안에 서명하여 GPA의 24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이 협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42개의 중앙행정기관(13만 SDR이상), 지방정부 6개 도시 및 9개 도(20만 SDR 이상), 23개 정부투자기관(물품 45만 SDR이상)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구매도 정부조달의 범주에 포함되어 WTO체제하에서 정보통신을 포함한 정부조달시장이 97년부터 개방되었다.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조달 및 물자관리.

54) 산업통상자원부(2019), 주요 교역국의 일반원산지제도 조사. pp.6-7.

<표 2-4> 한국의 20대 주요 수출국의 독자적 원산지 기준 유무⁵⁵⁾

(순위: 2018년 9월 누계, 수출금액 기준 선정)

| 순위 | 국가명 | 비특혜 원산지 기준 유무 | 비고 |
|----|------------|---------------|--|
| 1 | 중국 | ○ | |
| 2 | 미국 | ○ | |
| 3 | 홍콩 | ○ | |
| 4 | 베트남 | ○ | |
| 5 | 일본 | ○ | |
| 6 | 대만 | ○ | |
| 7 | 인도 | × | |
| 8 | 필리핀 | × | |
| 9 | 멕시코 | ○ | |
| 10 | 싱가포르 | × | |
| 11 | 호주 | ○ | |
| 12 | 독일 (EU) | ○ | 유럽연합(EU) 통일 관세법(Union Customs Code) 적용 |
| 13 | 말레이시아 | × | |
| 14 | 인도네시아 | × | |
| 15 | 태국 | × | |
| 16 | 러시아 (EAEU) | ○ | 유라시아 관세동맹(EAEU)의 비특혜원산지 규정 적용 |
| 17 | 터키 | ○ | |
| 18 | 캐나다 | ○ | |
| 19 | 영국 (EU) | ○ | 유럽연합(EU) 통일 관세법(Union Customs Code) 적용 |
| 20 | 브라질 | ○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 「주요 교역국의 일반원산지제도 조사」, p.7

-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제5조는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 내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있을 경우, 동 협정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 WTO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기존에 시행 중이던 기준의 개정 또는 새로운 기준의 제정 시에는 동 기준의 발효일 60일 전까지 WTO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5)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정책리뷰(Trade Policy Review) 참조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제5조 수정 및 새로운 원산지규정 도입을 위한 정보 및 절차

1.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동일 현재 유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기나라의 원산지규정 및 이와 관련한 사법 결정 및 행정판정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부주의로 원산지규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련 회원국은 이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를 제출한다. 사무국에 접수되고 이용가능한 정보의 목록은 사무국에 의하여 회원국에 배포된다.

2. 제2조에 언급된 기간중에 사소한 내용의 규정 수정은 제외하고 자기나라의 원산지규정의 수정을 도입하거나 이 조의 목적상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규정을 포함하나 사무국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회원국은, 회원국에 대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가 원산지규정의 수정이나 새로운 원산지규정의 도입 의도를 수정된 또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하기 적어도 60일 이전에 공표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수정된 또는 새로운 원산지규정을 공표한다.

3. 우리나라의 원산지규범 체계

- 우리나라의 원산지규범체계는 그 적용범위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목적에 따라 특혜무역에 적용되는 원산지규범과 비특혜무역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국제법 성격의 원산지규정으로는 WTO 원산지규정 협정, WCO교토협약(부속서 K), 미국·EU 등과의 FTA가 있음. 이 중 WTO 원산지규정협정은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규정이고, FTA는 특혜 목적의 원산지규정이지만 WCO 교토협약의 원산지규정은 특혜·비특혜 목적의 원산지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국내법으로는 관세특혜를 주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음.
-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법률로는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관세법」에는 특혜무역 목적의 원산지규정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조사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관세청의 하위규정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⁵⁶⁾에서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양쪽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법률 간 특혜, 비특혜 규정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⁵⁷⁾

56) 관세청고시 제2022-22호, 2022. 5. 25.,

57) 관세청에서는 국가간 무역분쟁 등으로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편 원산지제도가 상이한 특혜 원산지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종전의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새로이 마련하여 2021.1.1.부터 시행중.

<표 2-5> 우리나라의 원산지규범체계

| 구분 | 국제법 | | 국내법 | |
|------------|---|---|---|--|
| | FTA 특혜 | 일반특혜 | FTA 특혜 | 일반특혜 |
| 특혜 원산지 규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24.7월 기준 21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PTA) ▪ WTO개도국 간 협정 (TNDC) ▪ UN개도국간 협정(GS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관세특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기준등에 의한 규칙 |
| 비특혜 원산지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원산지규정협정 ▪ GATT 제9조 ▪ WCO 교토협약(부속서 K)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 대외무역법 ▪ 남북교류협력법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 등에 관한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8에서 인용.

제3장 FTA 원산지규정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의의

1.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

- 2004년 4월 최초로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가 체결·발효되었음.([그림 3-1])

[그림 3-1]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 FTA 현황 한눈에 보기



자료 : FTA 강국, 코리아(<https://www.fta.go.kr/main>)

-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보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GDP의 85%를 포괄하는 거대경제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FTA를 발효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2004년 ~ 2010년에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등 5개의 FTA가 발효되었고, 2011년 ~ 2015년에는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캐나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9개의 FTA가 발효되었음. 2016년~2023년에는 콜롬비아, 중미 5개국, 영국, 캄보디아, 이스라엘, RCEP, 인도네시아 등 7개 FTA가 발효되었음.(<표 3-1>)

<표 3-1> 시기별 FTA 발효 현황

| 시기별 | 2004~2010 | 2011~2015 | 2016~2023 |
|------|-------------------------|--|---|
| 발효협정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캐나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 콜롬비아, 중미(5국), 영국, 캄보디아, 이스라엘, RCEP, 인도네시아 |
| 협정수 | 5개 | 9개 | 7개 |

자료: 연구자가 작성

-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액은 2023년 기준 77.9%에 달하고 있음.(<표 3-2>)

<표 3-2> 전체교역 대비 FTA 비중

| 년도 | 2010 | 2013 | 2016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비중 | 14.7% | 36.0% | 67.8% | 69.4% | 72.0% | 71.7% | 77.2% | 77.9% |

자료: Yes FTA, 한눈에 보는 2024년 1분기 FTA활용지도.

- FTA 수출활용률⁵⁸⁾은 2024년 3월 기준 85.1%에 달하고 있고, FTA 수입활용률은 83%에 달하고 있음.(<표 3-3>)

<표 3-3> FTA 수출입활용률

| | 수출 | 수입 |
|------------|------|------|
| FTA 활용률(%) | 85.1 | 83.0 |

자료: Yes FTA, 한눈에 보는 2024년 1분기 FTA활용지도

58) FTA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대상수출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되었는지 백분율로 환산한 통계. FTA수출활용률 = FTA 대상품목의 CO발급액/FTA특혜대상품목 수출액 x100

- 농림수산물의 FTA 수출활용률⁵⁹⁾은 2022년까지 50%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부터 78.7%로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2024년 1분기에도 83.6%에 이르고 있음. 반면 농림수산물의 FTA 수입활용률은 90%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이 FTA 관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표 3-4>)

<표 3-4> 농림수산물 연도별 FTA 수출입활용률

| 년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Q1 |
|----------|------|------|------|------|------|---------|
| 수출활용률(%) | 58.9 | 54.7 | 55.8 | 55.4 | 78.7 | 83.6 |
| 수입활용률(%) | 91.6 | 92.2 | 92.7 | 92.1 | 92.9 | 93.1 |

자료: Yes FTA, 한눈에 보는 2024년 1분기 FTA활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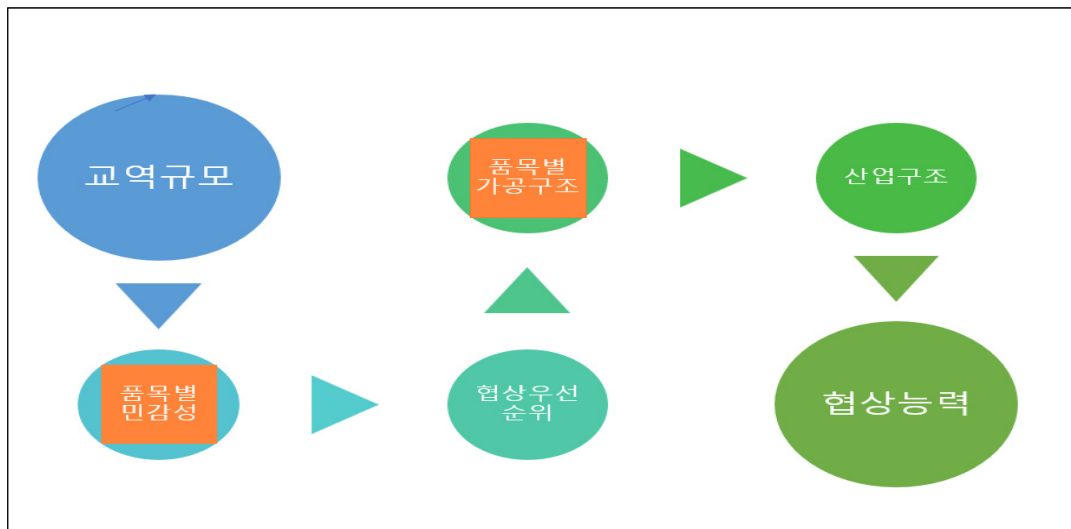
2. FTA 원산지규정의 의의 및 효과

-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건의 FTA에는 모두 예외없이 원산지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FTA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FTA 관세특혜대상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상품인 ‘원산지상품’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임.
- FTA 특혜관세율과 원산지규정은 젓가락 세트처럼 특혜관세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지렛대가 되고 있음. FTA 협상결과에 따라 상품의 관세가 100% 철폐되었더라도 해당 상품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FTA 원산지규정 협상은 FTA 상품양허 협상 못지않게 중요함. FTA 원산지규정은 각 품목별 국내생산산업 및 원재료의 수급구조, 품목별 수출입경쟁력, 해당품목의 민감성, 생산가공과정, 세번변경의 구조, 부가가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FTA 협상 테이블에서 상호 협상을 통해 결정됨.([그림 3-2])

59) FTA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대상수출품목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되었는지 백분율로 환산한 통계. FTA수출활용률 = FTA 대상품목의 CO발급액/FTA특혜대상품목 수출액 x100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엄격히 정할 것이냐, 느슨하게 정할지 여부에 따라 무역공급망, 교역과 투자의 확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그림 3-2]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 결정 요소



자료: 김석오(2021), “원산지결정기준 이해”, 관세인재개발원.강의자료.

-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FTA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입원료보다 역내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FTA 발효 이후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역내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무역전환은 더 많이 발생하지만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할 수 있음.

[그림 3-3] 원산지규정의 효과



자료: 김석오(2024), “FTA 원산지규정·결정기준 이해”, 관세인재개발원 강의자료.

- 반면 완화된 원산지규정은 국내의 민감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역외국으로부터 저렴한 원재료 소싱을 가능해지므로 교역의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그림 3-3])
- FTA 체결이후 발생한 무역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페루산 녹두(HS 0713.31.9000)을 들 수 있음. 한-페루 FTA 체결로 2020년부터 607.3%에 달하는 초고관세품목인 녹두의 FTA 특혜관세율이 0%로 철폐되자 중국과 미얀마에서 수입되던 녹두가 2021년부터 페루산으로 전면 대체되었음.(<표 3-5>)

<표 3-5> 한-페루 FTA 녹두의 연차별 FTA 특혜관세율

| 적용년도 | 2011 | 2014 | 2016 | 2018 | 2019 | 2020 |
|-------|--------|--------|------|--------|-------|-------|
| FTA세율 | 546.7% | 364.5% | 243% | 121.5% | 60.7% | 0% |
| 발효년차 | 1차년도 | 4차년도 | 6차년도 | 8차년도 | 9차년도 | 10차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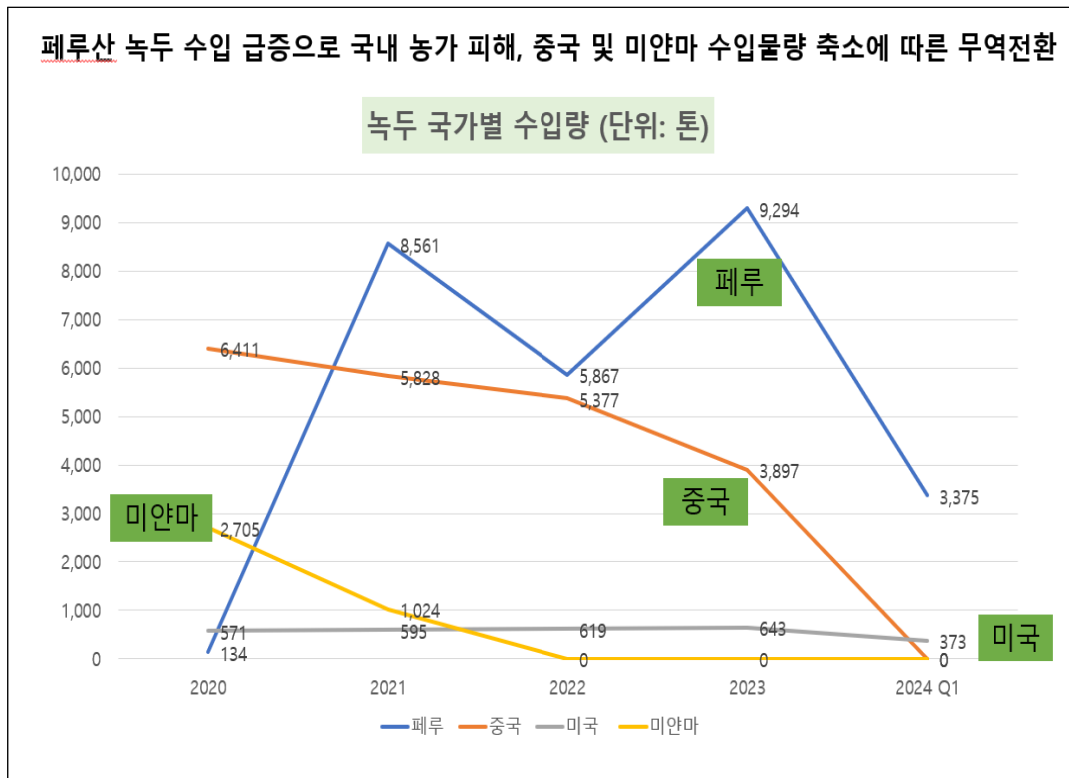
자료 : 관세법령포탈(<https://unipass.customs.go.kr/>)

- 미얀마산 녹두의 수입은 2022년부터 완전 중단되었고, 중국산 녹두의 수입도 급격히 감소하여 2024년 1분기에는 완전 중단된 상태임. 국내로 수입되는 녹두는 FTA 특혜관세율 0%가 적용되는 페루산과 미국산으로 대부분 대체되었음. 즉, FTA로 인해 무역전환이 발생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음.([그림 3-4])
- 한-페루 FTA 녹두의 원산지기준은 가장 엄격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Rule)으로서 페루에서 재배·수확한 것이 입증되는 녹두에 대해서만 0%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2020년부터 페루산 녹두의 수입량이 2020년 571톤에서 2021년 8,561톤으로 14배까지 폭증하자, 관세청에서 페루산 녹두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에 착수해 원산지가 입증되지 않은 녹두에 대해서는 원산지불인정 및 특혜관세 배제처분을 한 바 있음.⁶⁰⁾ 이와 같이 FTA 원산지기준은 국내 농가 및 국가간

60) 농민신문(2022.9.28.), “페루산 녹두·팥 추정세액 1000억원대 전망…농산물 원산지 위반 역대 최대”.

교역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4] 국가별 녹두 수입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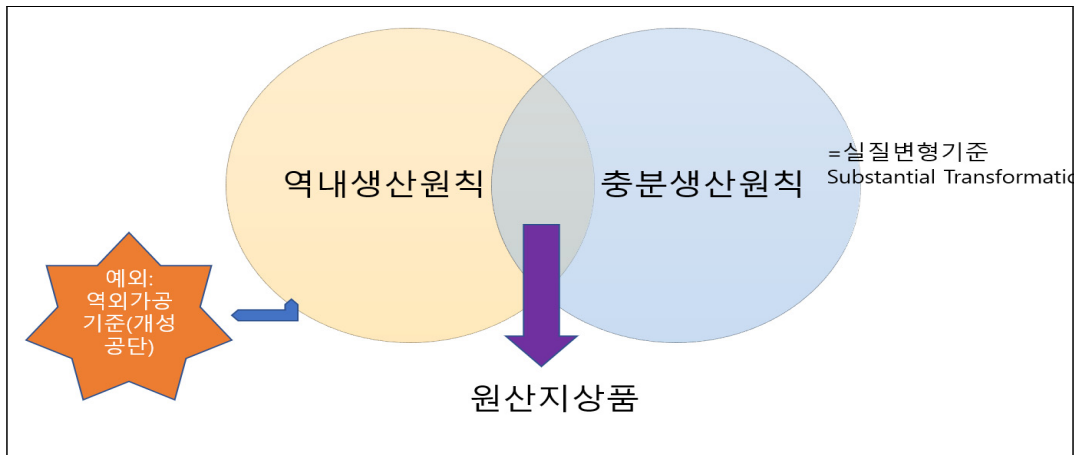


자료: 김석오(2024), “원산지결정기준 이해”, 관세인재개발원 강의자료.

3.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성 체계

-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역내생산원칙과 충분생산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역내생산원칙은 원산지를 판정하려는 물품이 FTA 체결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함을 말함. 충분생산원칙은 수입원료나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한 경우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할 정도로 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쳐야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원칙임.
- 일부 협정에서 개성공단과 같이 FTA 체결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역내생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역외가공기준이 마련되어 있음.([그림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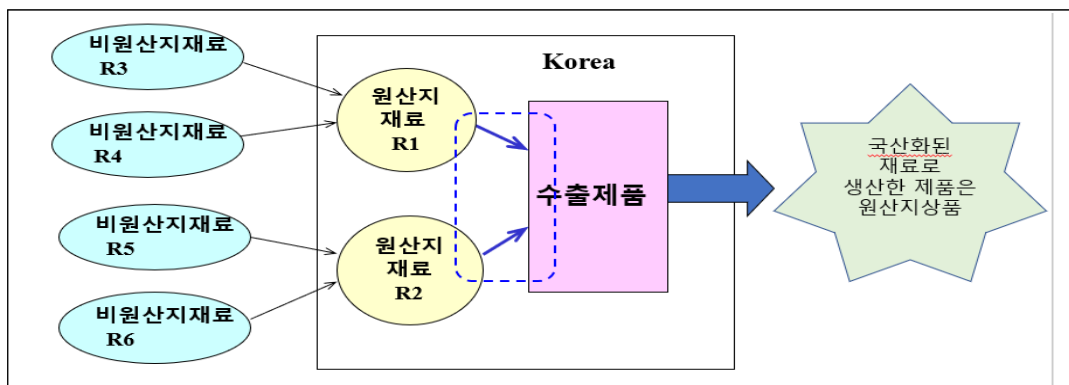
[그림 3-5] 원산지결정 2대 원칙



자료: 김석오(2021), “원산지결정기준 이해”, 관세인재개발원.강의자료.

-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건의 FTA는 FTA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마다 원산지상품을 결정하는 기준은 조금씩 상이함. 그러나 원산지상품을 결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완전생산품, 불완전생산품 및 원산지재료생산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원산지재료생산품은 비원산지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쳐 국산화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말함.([그림 3-6]) 엄밀한 의미에서 불완전생산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일부 협정에서는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적용되는 불완전생산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원산지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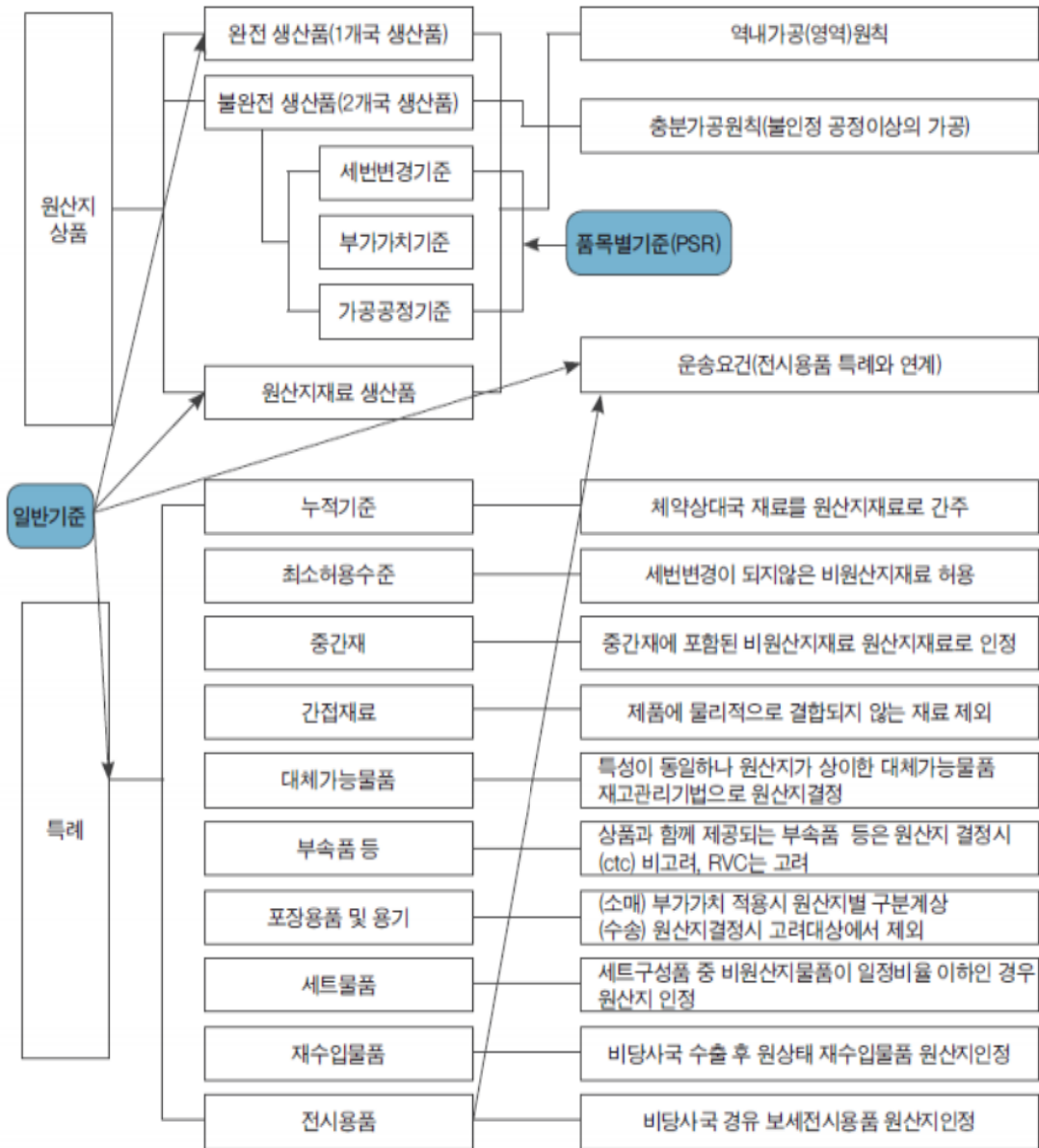
[그림 3-6] 원산지재료생산품의 원산지결정



자료: 이영달(2023), “원산지결정기준”, FTA미래설계과정, 관세인재개발원.

- 원산지결정기준의 규정방식으로는 원산지 결정에 관한 총칙 성격의 일반 기준과 HS코드 단위의 품목별원산지기준으로 구분됨. 일반기준은 다시 공통기준과 보충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공통기준에서는 역내생산원칙, 완전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및 직접운송 요건과 같은 원산지상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룰을 규정하고 있음. 보충 기준에서는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수적으로 사용하여 원산지 충족을 원활하게 하는 보완적 규정임.
- 보충기준에는 계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취급하는 누적기준, 세 번변경기준을 완화하는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재료비 산정기준을 완화 하는 중간재 규정, 원산지결정 편의를 위한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부속품·예비품·공구, 소매포장·용기, 운송 포장·용기 및 세트물품 등에 관한 원산지결정 규정이 있음.([그림 3-7])
- 품목별원산지기준은 불완전생산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대부분의 협정은 제1류~제97류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2·4·6 단위 별로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설정함. 생산한 최종제품의 HS코드를 확인한 후 해당물품의 품목별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게 됨.

[그림 3-7] FTA 원산지결정기준 체계



자료: 이영달(2017), 전거서.p.51.

- FTA 협상 테이블이나 원산지규정 활용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약어를 주로 사용하므로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원산지규정 = ROO(Rules of origin)
- 품목별원산지규정 = PSR(Product specific rule)
-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 국내산재료 = 역내산재료
- 비원산지재료(Non-originating Material)= 국외산재료 = 역외산재료
- 세번변경기준= CTC
- 부가가치기준 = VAC
- 주요공정기준 = SPC
- 완전생산기준 = WO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활용 Tip>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FTA포탈 →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 국가명을 '미국' 선택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4. HS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결정기준

가. HS 품목분류의 의의

- FTA 품목별원산지기준은 HS 품목분류체계를 기초로 규정됨. 품목분류란 나라마다 다른 관세 행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관세 품목을 원료나 제조 과정, 용도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말함. HS 품목분류 협약은 1988년 발효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정식적인 명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⁶¹⁾임.
-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HS 코드는 관세, 무역통계, 보험, 운송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다목적용의 국제 상품분류 코드로서, 관세분야에서는 HS 코드에 따라 적용세율, 적용법령, 감면·분납, 원산지 표시 및 FTA 원산지기준 적용 등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HS 코드의 결정은 매우 중요함.([그림 3-8])

[그림 3-8] HS 품목분류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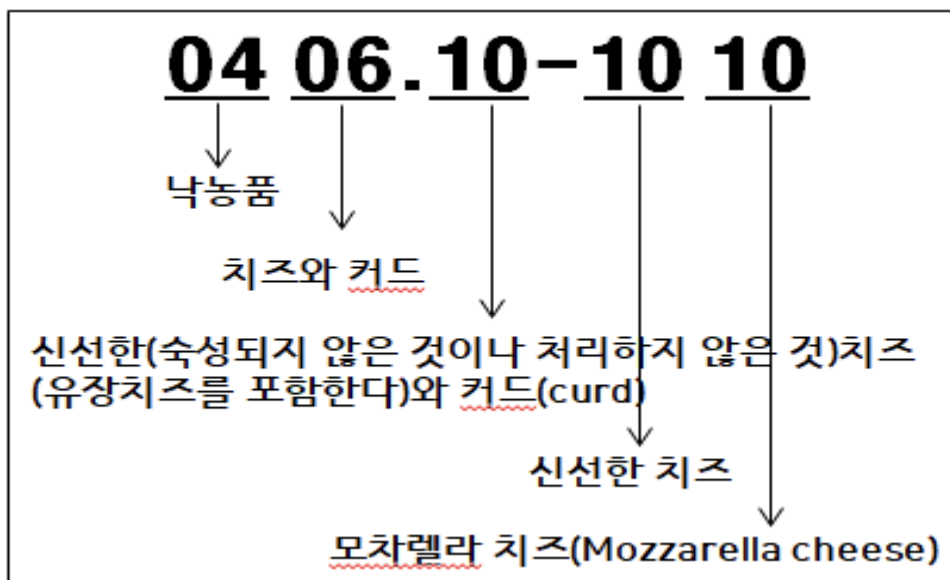


자료: 이창엽(2022),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FTA기초과정, 관세인재개발원.

6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발효일 1988. 1. 1. 다자조약, 제944호, 1987. 12. 28. 전세계 150여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음).

-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코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6자리 소호의 범위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미국은 10자리, 일본은 9자리, 중국과 EU는 8자리까지 사용함.
- 모차렐라 치즈의 HS 코드를 분석해 보면, 04류는 낙농품, 0406호는 치즈와 커드, 0406.10호는 신선한 치즈와 커드, 0406.10-1010호는 모차렐라 치즈를 분류함. HS 코드가 아래로 갈수록 품목이 세분화됨을 알 수 있음.([그림 3-9])

[그림 3-9] 모차렐라 치즈의 HS 품목분류 구조



- FT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HS 코드 6단위를 기본으로 규정됨. 특히,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제품의 HS 코드의 변경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HS 품목분류는 원산지결정의 핵심업무의 하나임. FTA 특혜세율 및 원산지 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함.

- 무역업체들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첫 번째 단계는 수출물품의 HS 코드부터 확인해야 함. 두 번째 단계는 FTA 협정세율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세 번째 단계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네 번째 단계는 원산지판정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순서로 진행됨. 위와 같이 FTA 활용업무의 기초는 품목분류임을 알 수 있음.
- 품목분류는 당해 물품의 재질, 구조 및 작동원리, 기능 및 용도를 파악해야 하지만 첨단 기술제품과 융합제품의 급속한 출현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품목분류 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국가간 통상이슈로 확대되기도 함. 관세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까지 44건의 HS 국제분쟁이 발생하였음.(<표 3-6>)

<표 3-6> HS 국제분쟁 발생 현황

| 년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
| 건수 | 13건 | 12건 | 5건 | 9건 | 13건 | 44건 |

자료 : 관세청 내부자료.

- 관세청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HS품목분류에 대한 분쟁 또는 애로 발생 사실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HS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⁶²⁾

나. HS의 구조와 분류기준

- HS 코드에 따른 상품분류는 ▲품목분류표 ▲관세품목분류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 구분됨. '품목분류표'란 HS협약의 부속서로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라 함)를 말함.(<표 3-7>).

62) 관세평가분류원(<https://www.customs.go.kr/>)

<표 3-7> HS 코드 분류표의 종류

| HS 코드 분류표의 종류 | 법적 근거 |
|-------------------|-------------|
| 품목분류표 | HS 협약 부속서 |
| 관세품목분류표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

자료 : 연구자가 작성

- HS협약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신인 CCC(관세협력이사회)의 주관 하에 1983.6.14. WCO 본부(벨기에 브뤼셀 소재)에서 4단위의 CCCN을 6단위로 확대·개편하여 1988.1.1. 정식 발효되었음. 가입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52개국임.
- HS협약은 5년 주기로 개정되며, 2022년 제7차 개정이 되었음. HS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표 3-8>) 전문에는 HS 제정의 배경·목적 등이 담겨 있으며, HS협약의 부속서가 HS품목 분류표임.⁶³⁾

<표 3-8> HS협약의 조문 구성 및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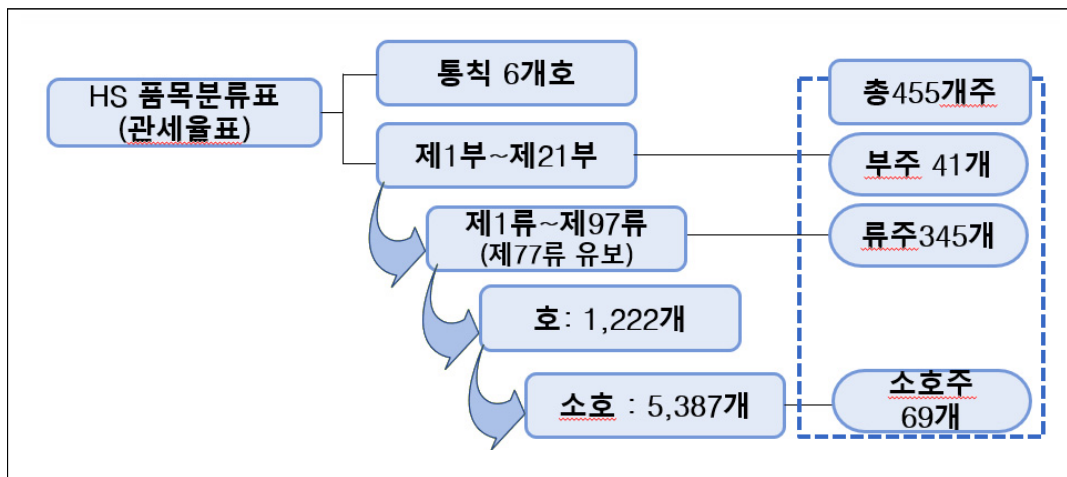
| | | | |
|------|---------------------|------|-------------|
| 제1조 | 용어의 정의 | 제11조 | 체약당사국의 자격 |
| 제2조 | 부속서(HS품목분류표) | 제12조 | 체약당사국의 가입절차 |
| 제3조 | 체약당사국의 의무 | 제13조 | 발효 |
| 제4조 |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분적 적용 특례 | 제14조 | 속령에 대한 적용 |
| 제5조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 제15조 | 폐기 |
| 제6조 | HS위원회(HSC) | 제16조 | 개정절차 |
| 제7조 | HS위원회 직무 | 제17조 | 체약당사국의 권리 |
| 제8조 | 이사회의 역할 | 제18조 | 유보 |
| 제9조 | 관세율 | 제19조 | 사무총장의 통지 |
| 제10조 | 분쟁의 해결 | 제20조 | UN 등록 |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2), 「품목분류」. FTA 분야 원산지관리 기본서. p.5

63) 한국원산지정보원(2022), 「품목분류」. FTA 분야 원산지관리 기본서. p.5

- ‘관세품목분류표’(Customs Tariff Nomenclature)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관세법 제50조 별표에 의거 제정된 ‘관세율표를 말함.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Tariff and Statistical Nomenclature)는 수출입물품의 신고를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 품목분류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함.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에 근거하여 신속한 통관과 통계파악 등을 목적으로 HS와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며, Harmonized System of Korea(HSK)이라 함. 2024년 8월 기준 HSK 10단위는 11,293개임.
- HS 품목분류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품목분류통칙(6개호), 21부, 97류(2단위), 1,222개호(4단위), 5,387개 소호(6단위), 11,293개의 HSK(10단위)로 구성됨.

[그림 3-10] HS 품목분류 구조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2), 「품목분류」. FTA 분야 원산지관리 기본서. p.6

- HS의 분류체계는 상위차원에서 하위차원으로 즉 수직적으로 부→류(2단위)→호(4단위)→소호(5·6단위)로 배열하고 수평적으로 부(1부~21부)·류(1류~.97류)·절 및 호의 배열형태를 취하고 있음. HS의 상품배열을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생산품 등의 기초 원재료로부터 시작하여 산업별 또는 생산단계별로 수평적으로 배열되고 있음.

- 관세율표 21개 부 중에서 농식품이 분류되는 부는 1부에서 4부까지이며, 6단위 소호 기준으로 953개의 상품이 분류됨.([그림 3-11])

[그림 3-11] HS 품목분류 21개의 부 구조

| 1부 | 2부 | 3부 | 4부 | 5부 | 6부 | 7부 |
|---|---|---|---|---|---|---|
|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생산물 | 식물성생산물 | 동물성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식물성 납 | 조제 식료품, 음료, 주류, 식초, 담배, 제 조한 담배 대용물 | 광물성 생산물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물 |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 8부 | 9부 | 10부 | 11부 | 12부 | 13부 | 14부 |
|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 제외한다)의 제품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자조세 공물 |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판지 [웨이 스트와 스크랩],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 방직용 섬유와 방직 용 섬유의 제품 | 신발류 모자류·산류(傘類), 지팡이·시트 스틱·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유리제품 |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반정식용품, 주화 |
| 15부 | 16부 | 17부 | 18부 | 19부 | 20부 | 21부 |
| 비금속(卑)과 그 제품 |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축 정기가·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무기,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잡품 |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HS는 동일한 원재료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물품은 동일한 1개의 류(Chapter)에 함께 분류하고, 그 각 류 내에서는 생산단계별 및 가공단계별 분류기준으로 하여 원재료→반제품(중간제품)→완제품(최종제품) 순으로 수직배열 방식을 택하고 있음.
- 97개 류의 품목분류 속견표 중에서 농식품은 HS 1~24류까지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음.(<표 3-9>, <표 3-10>))

<표 3-9> HS 품목분류 류별 속건표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0 | | 산동물 | 육과식용설육 | 어패류 | 낙농품·조천연 | 기타 동물성산품 | 산수목·꽃 | 채소 | 과실·견과류 | 커피향신료 |
| 10 | 곡물 | 밀가루·전분 | 채유용종자·인삼 | 식물성엑스 | 기타식물성생산품 | 동식물성유지 | 유·어류조제품 | 당류설탕과차 | 코코아초코렛 | 곡물곡분의주제품과빵류 |
| 20 | 채소·과실의조제품 | 기타의조제식료품 | 음료·주료·식초 | 조제사료 | 담배 | 토석류·소금 | 광·슬랙·회 | 광물성연료에너지 | 무기화합물 | 유기화합물 |
| 30 | 의료용품 | 비료 | 염료·안료·페인트·잉크 | 향료·화장품 |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 화·학·성·류·성·양 | 필름인화지·사진용재 | 각종화학공업생산품 | 플라스틱과그제품 |
| 40 | 고무와그제품 | 원피족 | 가죽제품 | 모피·모피제품 | 목재·목탄 | 코르크·짚 | 조물류제 | 펄프 | 지와판지 | 서적·신문·쇄물 |
| 50 | 견·견사견직물 | 양모·수모 | 면·면사면직물 | 마류의사와직물 | 인조필라멘트섬유 | 인조스펠트섬유 | 웨이빙직포 | 양탄자 | 특수·직물 | 침두도포한직물 |
| 60 | 편물 | 의류(편물제) | 의류(편물제 01외) | 기타섬유제품, 냥마 | 신발류 | 모자류 | 우산·팡지이 | 조제우모인조제품 | 석·시멘트·석면제품 | 도자제품·직물 |
| 70 | 유리 | 귀석·반귀석·귀금속 | 철강 | 철강제품 | 동과그제품 | 니켈과그제품 | 알루미늄과그제품 | (유보) | 연과그제품 | 아연과그제품 |
| 80 | 주석과그제품 | 기타의비금속 | 비금속제공구·스프·포크 | 각종비금속제품 | 보일러·기계류 | 전기기기 TV·VTR | 철도차량 | 일반차량 | 항공기 | 선박 |
| 90 | 광학/의류 측정·검사 정밀기기 | 시계 | 악기 | 무기 | 가구류·조명기구 | 완구·운동용품 | 잡품 | 예술품·골동품 | | |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표 3-10> 농식품의 HS 품목분류 구조

| 부 | 류 |
|-------------|--|
|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01류 산동물 02류 육 03류 어류 04류 낙농품 05류 기타의 동물성 생산품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06류 산수목 및 절화 07류 채소 08류 과실·견과류 09류 커피·향신료 10류 곡물 11류 밀가루·곡분 12류 채유용 종자와 과실, 사료용 식물 13류 식물성 수액 14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 |
| 제3부 지방과 기름 | 15류 동식물성 지방 |
| 제4부 조제식료품 | 16류 육·어류 조제품 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8류 코코아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1류 각종 조제식료품 22류 음료·주류 23류 사료 24류 담배 |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상이한 원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산단계별 및 가공단계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무역거래의 특성상 다양한 상품을 각기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임.⁶⁴⁾
- HS 품목분류기준을 분석해 보면, 주기능·주용도 기준, 주특성 기준, 원재료기준, 산업기준, 재질기준, 용도기준, 가공방법 기준, 가공형태 기준, 포장형태 기준, 성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표 3-11>)

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농축산물 품목분류 및 HS 코드 조감. pp.2-3.

<표 3-11> HS의 분류 기준

| 구분 | 내용 |
|------------|--|
| 주기능·주용도 기준 | 복합기계, 다용도기계, 다기능기계, 기능단위기계는 일반적으로 주기능·주용도에 따라 분류 |
| 주특성 기준 | 혼합품·복합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주특성을 기준으로 분류 예시) 플라스틱재료와 가죽으로 된 벨트의 경우 어느 것이 주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분류 |
| 원재료 기준 | 5대 기초자원인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 무기·유기화합약품 |
| 산업 기준 | 식품공업제품(조제식료품·음료·주류 등: 제4부), 피혁공업제품(제41류 제43류), 제지공업 제품(제48류), 신발류산업제품(제64류), 섬유공업제품(제11부: 제50류 제63류), 요업산업 제품(제69류), 유리공업제품(제70류), 귀금속제품(제71류), 철강공업제품(제72류, 제73류), 비철금속제품(제74류 제83류), 기계공업제품(제84류), 전기전자제품(제85류), 자동차산업 제품(제87류), 조선공업제품(제88류), 항공기산업제품(제89류) |
| 재질 기준 | 플라스틱제(제39류), 고무제(제40류), 목제(제9부), 지제(제10부), 비(卑)금속제(제15부), 광물제(제5부, 제13부 등), 섬유제(제11부), 도자제(제68류, 제69류), 가죽제(제8부), 코르크제(제45류) |
| 용도 기준 | 접착제, 광물첨가제, 완성가공제, 살균제, 살충제, 고무배합제, 부동액 조제품 |
| 가공방법 기준 | 커피 차류는 제09류, 엑스·에센스 제품은 제21류, 육과 어류의 훈제는 제02류 또는 제03류 |
| 가공형태 기준 | 운반·보존을 위한 단순가공과 그 외의 가공에 의한 분류 |
| 포장형태 기준 | 소매용포장, 세트용포장, 소매용포장의 연료 등 |
| 성분 기준 | 화학약품, 혼합조제품의 경우 성분에 따라 분류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농축산물 품목분류 및 HS 코드 조감. <표 1-2>에서 재인용

다. HS 품목분류 통칙의 분류 원칙

- HS 품목분류의 국제적인 통일성, 조화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HS 협약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에서는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규정하고 있고, HS 협약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규정하고 있음. 약칭하여 '통칙' 또는 'GRI'라고 하고 함.
- 통칙은 HS 코드 결정시 적용하여야 할 HS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물일처분류(한가지 물품에 한가지 숫자) 원칙을 준수하므로 국제무역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부여하게 됨.

- 통칙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총 6개호로 구성되어 있음. 통칙 제1호는 최우선 분류원칙으로 품목분류는 호(Heading)의 용어와 부(Section)와 류(Chapter)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됨.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함. 통칙 제5호와 제6호는 순서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됨.⁶⁵⁾(<표 3-12>)

<표 3-12> HS 통칙 요약표

| 통칙 | 주요내용 | 성격 | |
|-----|--|---|----------|
| 제1호 |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규정에 따라 분류 - 부·류의 절의 표제는 품목분류를 위한 참조사항 -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통칙 제2호 이하의 규정을 적용 | 최우선 분류규정 | |
| 제2호 | 가 | - 불완전(미완성)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한 물품으로 분류 - 완전(완성)한 물품이 미조립(분해)된 것도 완전(완성) 물품에 포함 | 종속적 분류규정 |
| | 나 | - 각 호의 해당 재료나 물질에는 다른 재료나 물질과의 혼합물이나 복합물을 포함 - 각 호에 열거된 특정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일부가 다른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 | |
| 제3호 | 가 |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후가 우선 분류 | |
| | 나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혼합물, 복합물과 소매용의 세트로 된 물품) | |
| | 다 | 가목과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 | |
| 제4호 |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 | | |
| 제5호 | 가 |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 등의 케이스(용기)가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은 그 내용물과 같이 분류 - 다만, 케이스(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내용물과 케이스(용기)를 각각 분류 | 보충적 분류규정 |
| | 나 |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 - 다만, 그러한 포장 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은 각각 분류 | |

65) 한국원산지정보원(2022), 전계서.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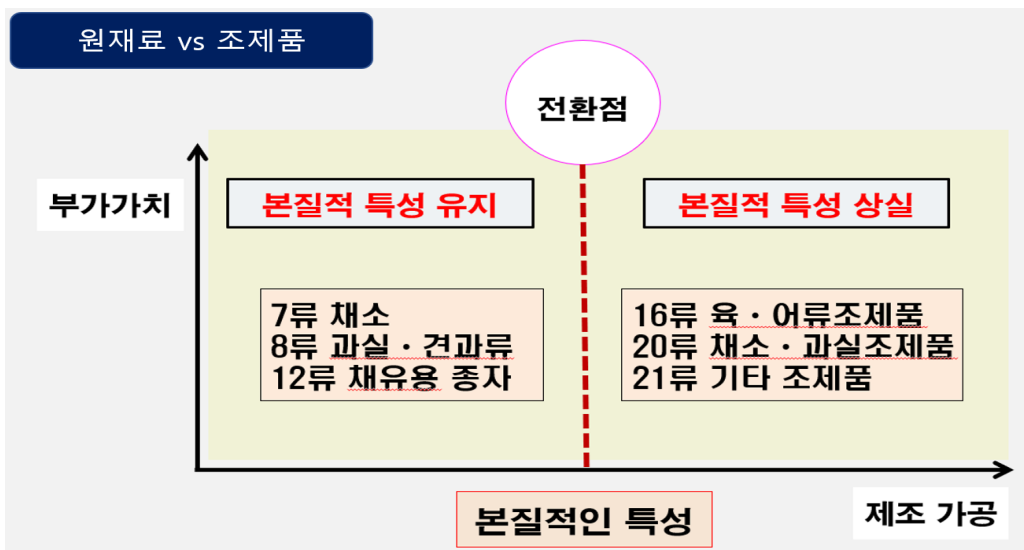
| | |
|-----|--|
| 제6호 | 소호의 품목분류는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Notes)에 따라 분류 - 소호의 품목분류에 상기 제 통칙을 준용 - 관련 부와 류의 주(Notes)도 적용. 다만, 소호주가 관련 부나 류의 주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소호주를 우선 적용. |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2), 「품목분류」, FTA 분야 원산지관리 기본서. p28.

라. 농식품 원재료와 조제품을 구분하는 본질적 특성

- 농식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약간의 조리, 혼합 또는 양념 추가로 비교적 쉽게 식품을 가공할 수 있음. 농식품의 품목분류 이슈는 원재료와 조제품을 판단하는 구분 기분임. 원재료와 조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통칙 3호-나 본질적인 특성 유지 여부임.([그림 3-12])

[그림 3-12] 농식품 원재료와 조제품의 전환점



자료: 최천식(2023), “품목분류 3대 핵심이슈”, 관세인재개발원 강의교재.

- 가령 HS 7류의 채소, 8류의 과실·견과류, 12류 채유용 종자의 경우 제조·가공의 정도가 높으면 원재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여 조제품으로 분류해야 함.

- 본질적 특성에 관한 제4류 주2, 제9류 주1, 제2008호 해설, 제2106호 해설을 검토해 보면,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이드 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표 3-13>

<표 3-13> 본질적 특성에 관한 주(Note) 예시

본질적 특성에 관한 주(Note)

(제4류 주2) 첨가된 물질이 밀크성분의 전부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되고 전체물품은 요구르트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해야

(제9류 주1) 0904부터 0910호까지의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8호 해설) 그 밖의 물질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 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106호 해설) **본질적인 특성**이 제9류에 해당하는 종의 함유량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유형의 물품은 제외한다. (제9류)

자료: 최천식(2023), 전계자료.

- ‘본질적 특성’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 요소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⁶⁶⁾

| | |
|----------|--|
| 객관적 판단요소 | 중량·부피·두께·면적·수량 등 일반적으로 상황이나 조건 또는 판단 주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비교적 적어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적용 가능 |
| 주관적 판단요소 | 성질·가격·역할 등 상황이나 조건 또는 판단주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66) 한국원산지정보원(2022), 전계서. p.52.

- 본질적인 특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품의 생산공정의 내용과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수량, 중량, 기능, 가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제1부(동물성 생산품)과 제2부(식물성 생산품)에 분류되는 기초농축수산물물은 신선, 냉동, 건조, 염장, 자숙, 훈제 등 저장 목적의 가공만 허용하고 있음. 이보다 심한 공정을 할 경우 원재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게 되어 제4부 조제식료품(16류~24류)으로 분류될 수 있음.(<표 3-14>)

<표 3-14>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가공의 유형

| |
|--|
| <p>제1부 및 제2부의 가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설육(제2류) :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갑각류(제3류) :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껍질째 물에 삶아 저장, 훈제 • 채소(제7류) :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처리(염장, 염수장) • 과일(제8류) :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처리 |
|--|

자료: 최천식(2023), 전계자료.

- 제2류의 육류와 제16류의 육류 조제품에 분류되는 물품의 구분 기준을 비교해 보면 <표 3-15>와 같음.

<표 3-15> 제2류와 제16류의 분류 기준

| 제2류에 분류되는 물품 | 제16류에 분류되는 물품 |
|--|--|
| 신선, 냉장, 냉동, 염장, 건조, 훈제한 것 | 제1601호의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단백질 분해효소(예: papain)로 유연처리한 것, 절단한 것, 다진 것(분쇄한 것) |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석쇠로 굽거나 볶는 방법으로 조리(cooked)한 것 |
| 이 류의 서로 다른 호의 혼합물이나 복합물 |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것 |
| 밀폐용기에 포장한 건육통조림 |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한 것 |

자료: 이흥대(2021),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인재개발원 강의교재.

- 제3류 갑각류(게, 새우, 바닷가재 등)는 껍질이 있는채로 삶아도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제3류에 분류함. 그러나 연체동물(굴, 조개, 골뱅이, 오징어 등)은 단순히 삶기만 해도 제16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함.([그림 3-13])

[그림 3-13] 삶은 갑각류와 삶은 골뱅이의 품목분류

| 삶은 갑각류 | 삶은 골뱅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각류는 껍질이 있는채로 삶아도 분류의 영향이 없음 -> 제03류에 분류  <p>* 갑각류 : 게, 새우, 바닷가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동물은 단순히 삶기만 해도 조제품으로 분류 -> 제16류에 분류  <p>* 연체동물 : 굴, 조개, 골뱅이, 오징어 등</p> |

자료: 이흥대(2021), 전계자료.

- 제7류 채소의 경우에도 냉동, 건조 또는 염수장 공정은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고추의 경우 냉동, 건조, 분쇄 공정까지는 제1부에 분류하고 여러 소스를 혼합하여 만든 다대기는 원재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제2103호의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한편, 냉동 고추와 건고추의 품목분류기준은 고추 자체 수분함유량이 80/100 이상일 경우 냉동 고추로 분류하고, 80/100 미만일 경우에는 건고추로 분류함.⁶⁷⁾(<표 3-16>)

<표 3-16> 고추의 가공 공정에 따른 품목분류

| 상 태 | 원 상 | | | 분쇄·파쇄 신선냉장 냉동건조 | 다대기 | | 고추장 |
|-----|----------|------------|----------|-----------------------|-------|----|-----|
| | 신선 냉장 | 냉동 | 건조 | | Paste | 분말 | |
| 청고추 | 0709.60- | 0710.80-70 | 0904.20- | 0904.20- | 2103 | | |
| 홍고추 | 9000 | 00 | 1000 | 2000 | | | |

자료: 이흥대(2021), 전계자료.

67)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 초절임 고추의 경우에는 초산과 소금의 함량을 기준으로 본질적 특성 유지 여부를 판단함. 즉, 초산 0.5% 이상이면서 소금을 12% 미만 함유한 초절임 고추는 원재료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 2001호의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함.(<표 3-17>)

<표 3-17> 초절임 고추의 초산 및 소금 함량에 따른 품목분류

| |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사례 4 |
|-----|-------------------------|-------------------------|-------------------------|-------------------------|
| 함량 | 초산 0.5% 미만 소금 12% 미만 | 초산 0.5% 미만 소금 12% 이상 | 초산 0.5% 이상 소금 12% 미만 | 초산 0.5% 이상 소금 12% 이상 |
| HSK | 0709.60-9000 | 0711.90-5091 | 2001.90-9090 | 0711.90-5091 |

자료: 이흥대(2021), 전계자료.

- 487%의 초고관세가 부과되는 대두(HS 1201)와 27%의 저관세가 부과되는 콩나물(HS 0709)의 품목분류를 위한 본질적 특성 판정기준은 콩나물의 싹이 2cm³ 이상 자랐는지 여부임.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⁶⁸⁾에 따르면, 대두를 발아시켜 싹의 길이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은 제0709호의 콩나물에 분류하고, 싹의 길이가 2센티미터 미만인 것은 제1201호 대두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표 3-18>)

<표 3-18> 대두와 콩나물의 품목분류

| 품명 | 대두 | 콩나물(냉장) |
|-------|-------------------------------|-------------------|
| HSK | 1201.10-1000 | 0709.99-9000 |
| 관세율 | 관세율 487% 또는 956원/Kg 부가세 면세 | 관세율 27% 부가세 면세 |
| 수출입요령 | 식물방역법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법대상 | |
| 분류기준 | 싹이 2cm 이상 자란 것 | |

자료: 이흥대(2021), 전계자료.

68) 기획재정부령제735호, 2019. 5. 31., 일부개정

- 콩나물 싹을 튀운 것과 싹을 튀우지 않은 물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콩나물 싹의 길이가 2센티미터 미만인 것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경우는 제0709호 콩나물로 분류하고,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제1201호 대두로 분류함.

- 농식품의 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는 본질적 특성은 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제품에 따라 가공공정의 정도, 첨가제의 함량, 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제품 및 원재료의 정확한 품목 분류는 원산지기준 확인 및 세번변경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FTA 원산지 규정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제2절 원산지물품의 결정원칙

1. FTA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결정원칙

- “원산지”란 상품의 생산국적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각 FTA에서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원산지 결정기준이라 함.
-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원산지물품”(originating goods) 또는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s)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물품은 “비원산지상품”(non-originating goods) 또는 “비원산지재료(non-originating materials)라고 함.⁶⁹⁾
- FTA관세특례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토록 하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⁷⁰⁾

- ① 해당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 ② 해당물품의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i)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 ii)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 iii)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 ③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 위 규정을 정리하면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칙은 해당 물품이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된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을 충족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한다는 것임.

69)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5호 및 제6호

70) FTA관세특례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제1항

- 동 법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원산지로 결정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⁷¹⁾
- FTA관세특례법은 FTA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므로 법률 체계상 협정이 우선해서 적용됨.⁷²⁾ 따라서 특정품목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먼저 검토해야 함.

2. 주요 FTA의 원산지결정원칙

-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건의 협정 중 가장 대표적인 한-미 FTA, 한-EU FTA, 메가 FTA로 불리는 RCEP의 원산지물품결정원칙을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제6.1조에서는 원산지상품을 결정하는 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원산지 재료 생산기준을 정하고 있음.⁷³⁾ 아울러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영역의 범위를 '상대국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는 후술하는 누적기준(Accumulation)과 관련되는 개념임.

한-미 FTA 원산지상품

제6.1조 원산지상품(Originating Goods)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71) FTA관세특례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제2항

72) FTA관세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73) 한-미FTA 제6.1조(원산지상품)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조에서는 원산지 제품을 결정하는 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 충분생산기준 또는 원산지재료 전용 생산기준을 정하고 있음.⁷⁴⁾ 다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영역의 범위는 한-미 FTA와 달리 "당사자내"로 제한하고 있음. .

○ FTA관세특례법과 한-미 FTA에서 불완전생산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한-EU FTA는 충분가공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미 FTA와 같이 원산지재료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카테고리를 추가한 것은 공통적임.

한-EU FTA 원산지제품

제2조 원산지제품(Originating Products)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되다.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74)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조

- 2022년 2월 1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조에서는 원산지상품을 결정하는 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 원산지재료 전용 생산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⁷⁵⁾ 원산지를 인정하는 영역의 범위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로 제한하고 있음. .
- RCEP에서는 FTA관세특례법, 한-미 FTA 또는 한-EU FTA와 달리 원산지물품을 결정하는 원칙을 명시하지 않고, 불완전생산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RCEP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없음. 원산지재료생산품 기준은 미국, EU와의 FTA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카테고리 규정하고 있음.

RCEP 원산지상품

제3.2조 원산지상품(Originating Goods)

협정의 목적상,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 가.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3개 협정별로 원산지물품의 결정원칙을 정한 규정을 비교해 보면 완전생산기준과 원산지재료 생산기준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문면상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한-미 FTA에서는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고, 한-EU FTA에서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며, RCEP에서는

⁷⁵⁾ RCEP 제3.2조(원산지상품)

품목별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한-미 FTA, 한-EU FTA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은 각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기준(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산지상품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원산지물품을 판정하는 최종 생산국의 영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미 FTA는 양 당사국으로 확대하는 반면, 한-EU FTA와 RCEP은 당사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후술하는 누적기준의 범위와도 관련이 있음.(<표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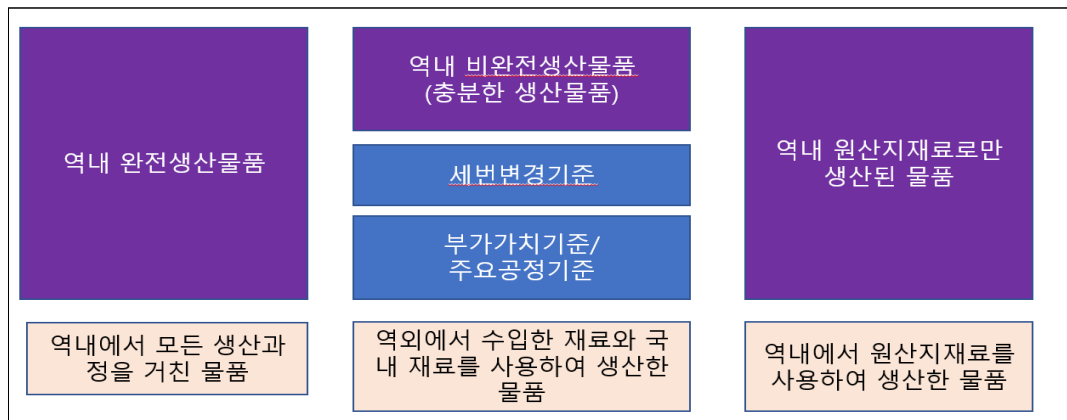
<표 3-19> 한-미 FTA, 한-EU FTA, RCEP의 원산지물품 비교

| 구분 | 한-미 FTA | 한-EU FTA | RCEP |
|-----|------------------------------------|--|-----------------------------------|
| 공통점 | 완전생산물품 | 완전생산물품 | 완전생산물품 |
| | 원산지재료생산물품 | 원산지재료생산물품 | 원산지재료생산물품 |
| 차이점 | 세번변경, 부가가치 또는 기타요건 충족물품; 품목별 원산지규정 | 충분생산물품;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세 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사용 | 품목별원산지규정 적용 :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사용 |
| 영역 | 양 당사국의 영역으로 확대 | 당사자로 한정 | 당사자로 한정 |

자료 : 연구자가 작성.

- 미주형, 유럽형, 아시아형 원산지기준으로 대표되는 한-미 FTA, 한-EU FTA, RCEP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그림 3-14])

[그림 3-14] 주요 FTA 원산지결정기준 컨셉



자료 : 연구자가 작성.

3. 직접운송원칙

가. 직접운송원칙의 의미

- ‘직접운송원칙’이란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비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함.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물품이더라도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수입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FTA관세특례법⁷⁶⁾에서도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직접운송원칙은 FTA 특혜관세의 적용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무역현장에서는 직접운송의 입증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짐.
- 직접운송요건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제운송과정에서 역외국 물품과 혼적되거나 상품 바꿔치기 등 소위 ‘원산지 세탁(origin laundering)’을

76) FTA관세특례법 제7조제2항

통해 역외국 상품이 FTA 특혜관세로 유입되는 무역굴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직접운송요건은 이러한 무역굴절 현상과 우회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협정에서 규정되고 있음.

나. 협정별 운송요건

1) 직접운송 인정요건

- 기체결된 21건의 FTA에서는 모두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수출물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운송되는 경우에는 어느 협정이든지 문제가 없으나 비당사국에서 경유 또는 환적되거나 소비 또는 거래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가 이슈가 되고 있음.
- FTA관세특례법 제7조제2항 단서 조항에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의 예외요건을 분석해 보면 ▲비당사국의 보세구역이라는 장소적 제한요건 ▲운송 목적의 환적 요건 또는 일시적 보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직접운송으로 간주됨. 보세구역 장소요건은 운송물품이 제3국 세관 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환적 또는 보관 요건은 제3국에서 물품의 물리적인 상태를 변경시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떠한 형태의 추가 가공작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 예컨대, 프랑스에서 와인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인 프랑스에서 선적하여 제3국 경유없이 곧장 부산항으로 운송된 경우에는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함. 그러나 비당사국인 싱가포르를 경유하면서 보관·환적된 경우에는 싱가포르를 경유한 목적, 보관·환적장소의 세관통제 여부, 추가 작업의 발생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직접운송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그림 3-15])

[그림 3-15] 직접운송 및 제3국 경유 운송 비교



자료 : 연구자가 작성

- 각 협정에서도 제3국 경유·환적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당국의 통제를 받은 장소 요건과 물품의 원상태 보관 요건 등을 조건으로 직접운송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다만, 비당사국에서 발생하는 허용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협정별로 차이가 있음. 또한 제3국 세관통제 요건 및 입증서류, 제3국 BWT(보세판매) 거래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조금씩 상이함.

2) 제3국 경유·환적시 허용작업의 범위

- 비당사국의 경유·환적 과정에서 물품의 상태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하역·재선적·상품보존에 필요한 공정은 각 협정마다 공통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한-EFTA FTA는 ‘탁송품의 분리’와 ‘파이프라인 운송’을 추가적으로 허용⁷⁷⁾하고 있고, 한-호주 FTA에서는 ‘재라벨링 작업’을 허용하고 있음.⁷⁸⁾ ‘운송상 이유로 인한 분리 작업’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협정으로는 호주,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와의 FTA가 있음.⁷⁹⁾(<표 3-20>)

77) 한-EFTA FTA 제14조(직접운송)

78) 한-호주 FTA 제3.14조(직접운송)

79) 한국원산지정보원, 전게서. P.82.

<표 3-20> 주요 협정별 경유국에서의 허용작업 범위

| 협정 | EFTA | 아세안 | EU/튀르키예/영국 |
|-------|----------------------------------|---------------------------|------------------------|
| 공통 허용 | 하역, 재선적, 상품상태 유지 | 하역, 재선적, 상품상태 유지 | 하역, 재선적, 상품상태 유지 |
| 특별 허용 | 탁송품 분리 파이프라인 운송 허용 | 거래/소비 미허용 | 경유국 유통 미허용 |
| 협정 | 호주 | 중국 | RCEP |
| 공통 허용 | 하역, 재선적, 보관 상품상태 유지 | 하역, 재선적, 상품상태 유지 | 하역, 재선적, 보관 상품상태 유지 |
| 특별 허용 |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목적의 화물 분리 | 운송목적의 화물분리, 최대 6개월간 보관 | - 없음 - |

자료 : 연구자가 각 협정문을 참조하여 작성

3) 제3국 세관통제 요건 및 입증서류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세관당국의 관리를 받는 보세구역에 있었다는 것을 수입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입증의 범위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 안에서 있었다는 것과 비당사국에서 허용되는 작업을 넘어서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임.
- 한-아세안 FTA에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부분 ▲기타 직접운송 요건 증빙서류를 세관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⁰⁾
- 한-EU FTA에서는 ▲제3국에서 원산지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 증거 ▲수출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경유국의 세관당국이 발행한 비조작증명서(제품명, 하역 및 재선적일자, 운송수단, 경유국 체류 상태)⁸¹⁾를 세관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²⁾(<표 3-21>)

80) 한-아세안 FTA 부록1 제19조

81) 비조작증명서 또는 비가공증명서는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세관당국이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자료 : <https://www.customs.go.kr/kcs>

<표 3-21> 주요 협정별 경유국 세관통제 입증서류

| 협정 | 아세안 | EU/튀르키예/영국 | 페루 |
|------|--|---|--|
| 입증서류 | 수출당사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 환적·보관 상황증거 단일운송서류 경유국 관세당국 발행 비조작증명서 | 전체운송 경로가 포함된 운송서류, 경유국 관세당국 발행 비조작증명서 |
| 협정 | 중미 | 중국 | RCEP |
| 입증서류 | 수출당사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경유국 관세당국 발행 비조작증명서 | 전체운송 경로가 포함된 운송서류 경유국 관세당국 발행 비조작증명서 | 경유국 통관서류 운송서류, 상업송장, 경유국 관세당국 발행 비조작증명서 |

자료 : 연구자가 각 협정문을 참조하여 작성.

- 아세안 및 EU와의 FTA 이외에 제3국 세관통제 서류 제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정으로는 인도, 페루, 튀르키예,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의 FTA가 있음.
- 입증서류에 관한 협정상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수입국의 국내규정에 따른 입증서류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입증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제3국 세관통제 입증서류의 종류에 대해 국내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예시하고 있음.⁸³⁾

- ①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 ②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③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④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4)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 허용여부

- 대부분의 협정에서 직접운송요건의 예외인정 범위는 제3국 경유·환적의 사유를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만으로 제한하고, 제3국에서 거래 또

82)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제2항.

83)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방법)

는 소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지리적 사유는 당사국이 내륙국으로 항구가 없어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며, 운송상 사유는 직항노선이 없거나 운송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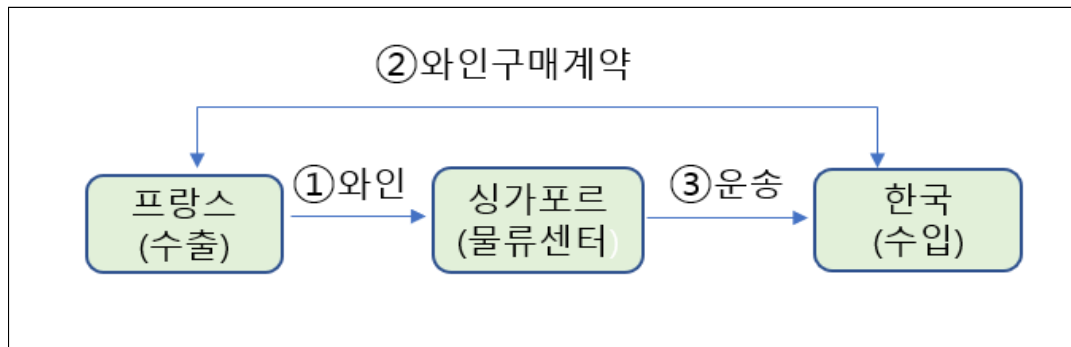
- 경유국에서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직접운송의 예외로 허용하지 않는 협정과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아세안, 베트남, 인도, 페루, 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는 경유국에서 거래나 소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EU, 튀르키예, 영국과의 FTA에서는 경유국에서 거래나 소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단일탁송화물에 대해서만 경유·환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일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하며, 이는 운송 중 물품 분할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유국에서 거래나 소비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함.⁸⁴⁾

다. 직접운송 요건 적용 예해

- **[거래상황]** 우리나라 수입자 A는 프랑스 수출자 B와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와인(HS 2204.21.1000) 1만병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받았음. 이 와인은 프랑스에서 선적하지 않고, B사의 싱가포르 물류센터에서 출고하여 선적된 것임. B사는 싱가포르 물류센터에 10만병의 와인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음. 와인의 기본관세는 30%이지만 한-EU FTA 특혜관세는 0%임.([그림 3-16])

84) 한국원산지정보원, 전게서. pp.84-85.

[그림 3-16] 프랑스산 와인 한-EU FTA 직접운송요건 적용



자료 : 연구자가 작성

- **[직접운송 요건]** 한국의 수입자 A는 프랑스에서 수입한 와인은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므로 0%의 특혜관세를 기대하였음.
- 본 사례의 직접운송 요건 검토를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수출국에서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 탁송화물인지 여부 ②경유국에서 수행된 작업이 허용 가능한 공정인지 여부 ③수출당사국에서 경유국 통과를 증명하는 단일 운송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세가지 요건을 분석해야 함.
- 본 사례는 경유국에서 탁송화물이 분할되었으므로 단일 탁송화물로 볼 수 없음. 경유국인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화물의 분할·재포장은 한-EU FTA의 허용 가능작업을 초과하였으며, 수출당사국에서 경유국 통과를 증명하는 단일 운송서류 발급도 불가함. 따라서 본 사례의 프랑스산 와인은 한-EU FTA의 직접운송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30%의 기본관세 납부대상임.⁸⁵⁾

85) 한국원산지정보원, 전게서. pp.86-87.

제3절 완전생산기준

1. 완전생산기준의 의의

가. 완전생산품의 개념

- 완전생산품은 다른 나라의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을 말하며,⁸⁶⁾ 완전생산품은 그 어떤 협정에서도 예외없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 완전생산품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취, 수확, 채굴 등을 하여 생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천연상태의 물품을 기초로 새로운 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도 완전생산품에 포함됨. 완전생산품은 주로 천연상품·광산물·농축수산물 등 1차 생산품에 적용되고, 공산품의 경우 재료 조달 또는 생산공정의 글로벌화로 인해 완전생산기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⁸⁷⁾
- 각 협정의 완전생산기준 조항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완전생산품은 1국 완전생산품, 역내완전생산품, 완전생산간주물품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표 3-22>)

<표 3-22> 완전생산품의 유형

| 유형 | 내용 |
|----------|---|
| 1국 완전생산품 | 1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 역내완전생산품 | 2개 이상의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 완전생산간주물품 | 역외에서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또는 원산지 미상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15.

86)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8호.

87)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15.

- 1국 완전생산품은 수출당사국 1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을 말하며, 역내완전생산품은 협정 당사국 2개국 이상의 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을 말함.
- 완전생산 간주물품은 주로 고물 및 부산물 등에 해당되는데, 고물의 경우 최초 원산지와 관계없이 원재료 회수용으로 수집된 국가의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됨.⁸⁸⁾
- 역내완전생산품을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협정은 한-미 FTA 원산지규정임. 동 협정에서는 완전생산품을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양 당사국의 영역"이란 의미는 한국과 미국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 반면 한-EU FTA와 RCEP에서는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물품"이라고 규정하여 역내완전생산품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EU의 경우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RCEP의 경우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1국 완전생산품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영역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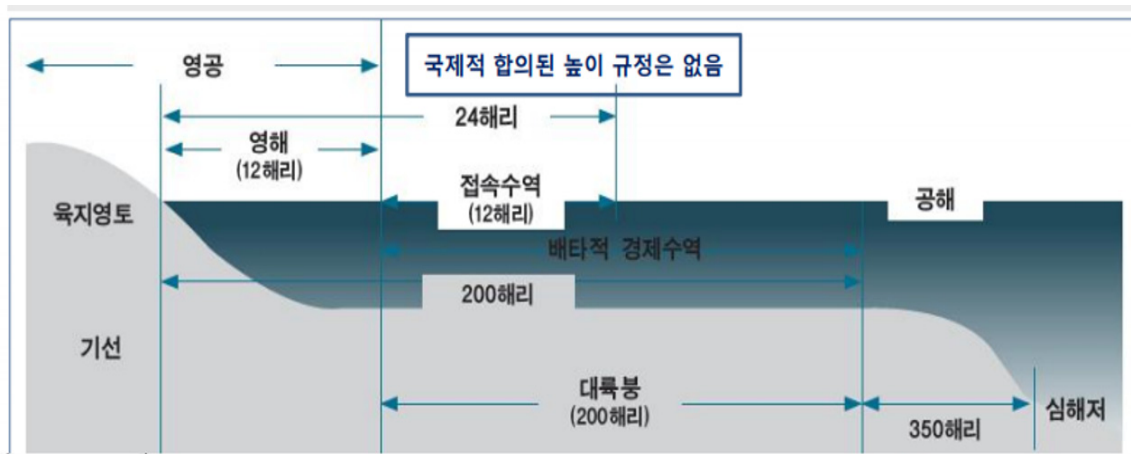
- 완전생산품은 협정 당사국의 '영역(territory)'에서 전부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을 의미하므로 생산국가 영역의 범위는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영역은 영토, 영공, 영해를 포함하지만 원산지결정을 위한 영역의 범위는 각 협정별로 차이가 있음.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88)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15.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을 말함.⁸⁹⁾

- 영해(territorial sea)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으며,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됨.⁹⁰⁾ 영해와 인접한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이 영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음.([그림 3-17])
-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함.⁹¹⁾ 접속수역에서도 그 영토 및 영해상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보건·위생관계 규칙위반을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통제권을 행사하는 수역이긴 하지만 공해에 속함.⁹²⁾

[그림 3-17] 영역의 범위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개서. p.16.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가리킴. 연

89)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호.

90)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9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 2

9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짐. 그러나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음.⁹³⁾

- 영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륙붕(continental shelf)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대륙붕은 수심이 35m ~ 240m인 대륙의 연장 부분으로 해수면의 상승과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으로, 영해의 밖에 있는 비교적 얇은 공해의 해저 부분을 말함.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大陸邊界)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짐.⁹⁴⁾([그림 3-18])
- 미국의 영역은 50개의 주, 콜롬비아 특별구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영역, 미합중국과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대외무역지대 및 국제법과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미합중국이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호주의 영역은 호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킬링)제도, 애쉬모어·카르티에 제도, 허드 섬·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를 포함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영역은 육지·내수·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9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9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영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FTA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영역의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임.
-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칠레·인도·호주·캐나다·베트남·뉴질랜드·중미·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는 상대국측 영역의 범위에 EEZ와 대륙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음. 그 외의 협정에서는 상대국의 영역의 범위에 EEZ와 대륙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역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

다.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포함여부

- 각 협정에서는 영역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일부 자치령 및 도서지역은 영역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고 있음.
- 한-미 FTA는 미국의 영역에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영역으로 정의하면서, 미국령에 속하는 괌과 사이판 및 그 밖의 자치령은 제외하고 있음.⁹⁵⁾
- 한-EU FTA에서는 <제31조 의정서의 적용>, <안도라공국에 관한 공동선언>, <산마리노공화국에 관한 공동선언> 등에서 세우타 및 멜리야,⁹⁶⁾ 안도라공국,⁹⁷⁾ 산마리노공화국⁹⁸⁾도 EU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⁹⁹⁾

95)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호 사목.

96) 세우타(Ceuta)와 멜리야(Melilla)는 아프리카 북단의 모로코에 있는 스페인의 역외 영토임. 세우타의 면적은 18.5km²으로 서울 종로구보다 좁고, 인구는 8만5천명 정도임. 멜리야의 면적은 세우타보다 좁은 12.3km²이고, 인구는 8만6천명임.

97) 안도라공국은 유럽에 존재하는 미니국가 중 하나로,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공국. 국토 면적은 약 470km², 인구는 85,000명 안팎으로 면적과 인구 면에서 전북 김제시와 비슷함.

98) 산마리노공화국은 이탈리아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유럽에서 중세 이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공화국임. 국토 면적은 60km²로 울릉도보다도 작고, 인구는 2016년 기준 33,285명임.

99)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1조, 안도라공국에 관한 공동선언, 산마리노공화국에 관한 공동선언.

- 한-호주 FTA에서는 <제1.4조 정의>에서 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킬링)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를 호주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음.¹⁰⁰⁾ 반면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토켈라우를 뉴질랜드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음.¹⁰¹⁾
- 한-중 FTA에서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는 별도의 관세영역으로 중국의 영역에 포함하지 않음.¹⁰²⁾(<표 3-23>)

<표 3-23> FTA 별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해당여부

| FTA | 내용 |
|----------|---|
| 한-미 FTA | 괌, 사이판은 미국의 영역에서 제외 |
| 한-EU FTA | EU 영역에 안도라공국, 산마리노공화국, 셔우타 및 멜리야도 포함 |
| 한-호주 FTA | 호주의 영역에 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킬링)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 포함 |
| 한-뉴 FTA | 뉴질랜드 영역에서 토켈라우는 제외 |
| 한-중 FTA | 홍콩 및 마카오는 중국 본토와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한-중 FTA의 적용대상 영역이 아님 |

자료: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및 협정문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2. 완전생산품의 원산지결정

가. 완전생산품의 범위

- 완전생산품이란 해당 물품의 전부가 한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의미하지만¹⁰³⁾ 각 협정별로 완전생산품의 범위를 체약상대국의 영역까지 확장

100)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호 차목
 101)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호 타목
 102)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호 하목
 103) FTA관세특례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제1항제1호

하는 협정과 당사국 1개국만 인정하는 협정으로 구분됨.

- 완전생산품의 범위를 계약상대국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은 후술하는 누적기준과 연계되는 개념으로 미국, 칠레, 싱가포르, 페루,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와의 FTA에서 채택되었음. 유럽 및 대부분의 아시아지역과의 FTA에서는 완전생산품의 범위를 당사국으로 제한하고 있음.(<표 3-24>)

<표 3-24> 주요 협정별 완전생산품의 범위

| 한-미 FTA | 한-EU FTA | RCEP |
|---------------------------------------|-------------------|--------------------------|
|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당사자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 당사자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자료: 각 협정문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 완전생산품은 협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협정에서 다음과 같이 9가지 유형의 품목으로 구분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정하고 있음.

- (1)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 (2) 산동물 및 산동물의 부산물
- (3) 영역 내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
- (4) 영역 밖 바다 어획물 및 이들의 가공품
- (5) 광물성 생상품
- (6) 영역 밖 채취상품
- (7) 폐물·부스러기·고물·재생품
- (8)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 (9)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나.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은 곡물, 채소, 과실, 꽃, 나무 등을 말함. 모든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재배(grown, cultivated)되고 수확(harvested), 채집(picked or gathered)된 것은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함.(<표 3-25>)

<표 3-25> 주요 협정별 식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 구분 | 칠레 | EU | 아세안 | 미국 | 호주 | 캐나다 | RCEP |
|----|----------------------------------|---------------------------------------|---|------------------------------------|-----------------------------------|-----------------------------------|-------------------------------------|
| 요건 | 역내 재배수확 (grown and harvested) | 당사자 영역내 재배수확 (grown and harvested) | 당사국내 재배 후 수확 (harvested after grown) | 역내 재배·수확 (grown, and harvested) | 역내 재배·수확 (grown and harvested) | 역내 재배·수확 (grown and harvested) | 당사국내 재배·수확 (grown and harvested) |

자료: 협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 식물성 생산품의 생산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파종 → 재배 → 수확의 단계를 거침. 모든 협정에서 재배 이전의 생산단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자는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한-미 FTA에서도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함.¹⁰⁴⁾
- 한-아세안 FTA에서도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된 씨·봉우리·대목·잘라진 가지·접지 또는 다른 살아 있는 부분으로부터 재배되었더라도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함.¹⁰⁵⁾
- 식물성 생산품의 완전생산기준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은 재배요건과 수확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임.¹⁰⁶⁾ 재배요건과 수확요건중 한 요건만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난초 등 화훼상품은 절화 작업만으로 완전생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됨. 절화 작업을 수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대만에서 재배한 난초(오키드)를 싱가포르에서 절화하여 한국

104)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규정 제2부 주(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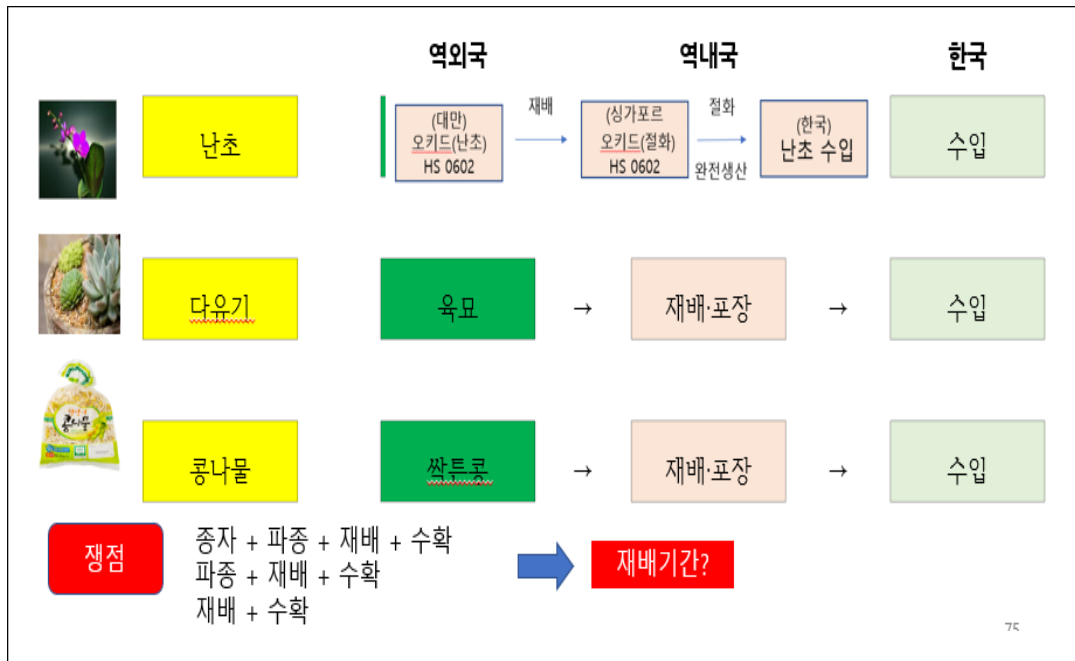
105)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석) 제3조(농산물 및 원예상품)

106) CPTPP와 USMCA에서는 재배 또는 수확 중 한쪽 요건만 충족하면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함.

으로 수입한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수확요건으로만 규정한다면 싱가포르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됨. 또한 대만에서 육묘 상태의 다유기를 수입하여 싱가포르에서 재배·포장한 후 한국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짝이 튼 콩나물을 대만에서 수입하여 싱가포르에서 재배·포장한 후 한국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그림 3-18]).

- 품목별 재배기간 및 수확에 대한 명확한 해석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완전생산품의 인정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림 3-18] 식품의 완전생산품 판정



자료: 김석오(2023), "FTA 원산지규정·결정기준". 관세인재개발원 강의자료.

다. 산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

1) 산동물

- 산 동물은 소, 말, 돼지, 닭처럼 살아 있는 동물을 말하며,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goods obtained from a live animal)은 우유, 계란, 고기 등과 같은 물품을 예로 들 수 있음.

- 산 동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출생 + 사육의 동시 충족요건을 정하고 있음. 어느 정도의 사육을 의미하는지, 사육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사육기간¹⁰⁷⁾이 원산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사육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어느 나라에서 출생을 한 것인지 출생지국이 원산지 판단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음.(<표 3-26>)

<표 3-26> 주요 협정별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 구분 | 칠레 | 싱가폴 | 아세안 | 미국 | 호주 | 캐나다 | RCEP |
|----|----------------------------|---------------------------------|------------------------------|----------------------------|----------------------------|---------------------------|------------------------------|
| 요건 | 역내 생육 요건 (born and raised) | 당사자 내 역내 생육 요건(born and raised) | 당사국내 생육 요건 (born and raised) | 역내 생육 요건 (born and raised) | 역내 생육 요건 (born and raised) | 역내 생육요건 (born and raised) | 당사국내 생육 요건 (born and raised) |

자료: 협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2) 산동물의 부산물

- 산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의 경우 완전생산물품 인정요건은 ①출생+사육+획득, ②사육+획득, ③획득의 세 종류로 구분됨.
- ①번 요건은 해당국가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동물로부터 획득된 것만 완전생산물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한-호주 FTA에서 수입한 쇠고기는 호주 영역에서 송아지를 출생시키고, 송아지를 성체(소)로 사육하고, 호주에서 도축하여 생산한 소고기만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음.([그림 3-19])

[그림 3-19] 쇠고기의 완전생산기준



107)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에서는 원산지를 인정하는 사육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소 6개월, 돼지 2개월, 기타 1개월.

자료: 김석오(2023), 전계자료.

- 반면 ②번 사육+획득 요건은 출생과 관계없이 해당국에서 사육된 산 동물로부터 획득하면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됨. 사육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석·운영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③번 획득 요건은 한-미 FTA에서만 도입된 것으로 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이 되지 않더라도 산 동물로부터 획득만 하여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가장 완화된 요건임. 예를 들어 미국에서 멕시코 산 암탉을 수입하고 그 암탉이 계란을 낳은 경우 그 계란은 미국산으로 인정받게 됨.([그림 3-20])

[그림 3-20] 계란의 원산지 판정



미국에서 멕시코산 암탉이 낳은 계란을 한국으로 수입할 경우 한-미 FTA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 | | |
|-----------|-------------------------------|--------------|
| 쟁점 | 출생 + 사육 + 획득 사육 + 획득 획득 | 사육기간? |
|-----------|-------------------------------|--------------|

자료: 김석오(2023), 전계자료.

- 산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의 완전생산기준은 협정별로 차이가 심함.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27>과 같음. 한-미 FTA가 가장 완화된 획득기준인 반면 아세안, 인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FTA는 가장 엄격한 출생+사육+획득 3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유럽지역 FTA는 사육+획득 기준을 적용함.

<표 3-27> 협정별 산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의 완전생산기준

| 출생+사육+획득 | 사육+획득 | 획득 |
|--|--------------|----|
| EFTA, 아세안, 인도, 튀르키예, 페루,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 EU, 영국, RCEP | 미국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계서. p.27.)

- 쇠고기의 원산지기준은 FTA 협상 테이블에서 늘 뜨거운 감자가 되는 쟁점 품목임. 쟁점은 쇠고기의 원산지 판정을 도축국, 사육국 또는 출생국 중 어느 나라로 결정할지 문제임. 한-미 FTA는 도축기준, 한-칠레 FTA는 사육기준, 한-EU FTA는 출생+사육기준으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그림 3-21])

[그림 3-21] 쇠고기의 원산지 판정



자료: 김석오(2023), "FTA 원산지규정·결정기준". 관세인재개발원 강의자료.

- 캐나다산 소를 한국에서 도축한 쇠고기를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함. 한-미 FTA 원산지규정에 따르면, 쇠고기 제품이 원산지상품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완전생산기준에 부합하거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이나 미국의 영역에서 생산하면 됨. 즉, 캐나다산 소를 수입하여 한국이나 미국에서 도축·가공하여 생산한 쇠고기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됨.

- 한-EU FTA를 활용하여 쇠고기가 원산지상품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규정의 완전생산기준에 부합하거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01류와 02류(육과 식용설육)의 모든 원재료가 한국이나 EU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쇠고기여야 함. 따라서 한국이나 EU의 역내에서 살아있는 소를 도축,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일지라도 쇠고기 생산에 사용된 소가 비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사육된 경우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를 활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라. 영역 내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

- 영역 내에서 수렵·덧사냥에 의해 획득한 동물은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해당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출생했는지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포획했는지가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 됨.
- 어로에 의한 생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영역에서 잡힌 수산물은 어획한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영해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 어획 선박국적을 불문하고 연안국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연안국주의'라고 함.
- 예외적으로 페루·콜롬비아와의 FTA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어획한 물품이라도 비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획득된 어획물은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되지 않음.¹⁰⁸⁾ 즉, 자국선박이 자국 영해에서 어획한 수산물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임.(<표 3-28>)

108) 한-페루 FTA 제3.2조 각주, “ 비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양당사국의 영역내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은 이 조에 따라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표 3-28> 협정별 영역 내 어획물의 완전생산기준

| 연안국주의 채택 FTA | 선박국적주의 채택 FTA |
|---|---------------|
| 칠레, 싱가포르, EFTA, 캐나다, 아세안, 미국, EU, 인도, 튀르키예,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영국 | 페루, 콜롬비아 |

자료: 협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 양식에 의해 획득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라 치어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수산물의 완전생산여부를 판단함. 쟁점은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치어를 양식하여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할지 여부임.
- EU·튀르키예·영국과의 FTA에서는 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 제품만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므로 당사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 치어를 사용하여 양식한 경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되지 않음. 즉 산동물의 완전생산기준처럼 출생+양식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4조 완전획득물품

1.(e)(ii)

당사자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 제품
 products of aquaculture, where the fish, crustaceans and mollusc
 are born and raised there;

- 아세안¹⁰⁹⁾, 미국, 인도, 중국, RCEP 등 여타 FTA에서는 역외산 치어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양식한 경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함. 수산물의 출생지 여부와 관계없이 치어를 영역내에서 양식만 하면 원산지를 인정받

109)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부록 3(부속서 3에 대한 해석 주석) 제4조(양식수산물):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길러진 수산물은 보통 플랑크톤, 알테미어와 같은 시원 사료로 사육된 알, 치어, 유어, 새끼뱀장어 또는 새끼 굴로부터 길러졌다하더라도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을 수 있음.

| |
|--|
| <p>한-미 FTA 제6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p> <p>제6.22조 정의(DEFINITIONS)</p> <p>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덫사냥·어로·양식으로부터 획득한 상품 goods obtained from hunting, trapping, fishing, or aquaculture conduc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p> |
|--|

- 치어의 출생 + 양식 기준을 채택한 FTA와 치어의 양식 기준을 채택한 FTA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표 3-29>)

<표 3-29> 협정별 영역 내 양식물의 완전생산기준

| 치어 출생+양식 기준 채택 FTA | 치어 양식 기준 채택 FTA |
|--------------------|--|
| EU·튀르키예·영국 | 칠레, 싱가포르, EFTA, 캐나다, 아세안, 미국, 인도,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페루, 콜롬비아 |

자료: 협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마. 영역 밖 바다 어획물 및 이들의 가공품

- 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에서 선박으로 잡은 어획물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선박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선박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여기서 '선박의 국적'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협정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름. 국제법상 선박의 국적¹¹⁰⁾은 당사국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

110) UN해양법 제91조 선박의 국적: ①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의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어느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은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다. 그 국가와 선박 간에는 진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②모든 국가는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한 선박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서류를 발급한다.

박이라 규정하면서 국기 게양 조건은 당사국이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¹⁾ 따라서 외국에서 차용한 선박이라도 당사국에 등록이 가능하면 국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당사국 선박으로 간주될 수 있음.¹¹²⁾

- 대다수의 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국적은 당사국에 등록되고 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상태에서 운항하는 등록주의+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그러나 한-EFTA FTA는 선박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기게양, 즉 기국주의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국에 등록되지 않은 선박, 즉 타국에 등록된 선박을 임차하여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획득한 어획물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됨.
- EU, 튀르키예 및 영국과의 FTA는 선박이 당사국에 등록되고, 조업 당시 당사국 국기를 게양하는 것과 더불어 선박의 소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소유요건은 양 당사국 중 한쪽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선박 및 가공선박으로 그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음.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4조 완전획득물품

2.“당사자의 선박’과 ‘당사자의 가공선박’ 용어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등록된 것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그리고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1)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또는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111)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의 국적은 소유권의 일부가 한국인에게 속하면 한국 국적 선박으로 인정함. 미국은 소유권의 정부가 자국민에게 속하고 승무원도 일정수가 자국민인 경우에만 미국적 선박으로 인정하며, 일본이나 영국은 소유권의 전부(주)가 자국민에게 속하는 경우에만 자국적 선박으로 인정하고 있음.

112)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적취득부 나용선에 대해 국제선박등록을 허용하여 한국 선박으로 간주하나, 단순 나용선은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자국민 소유권주의)

| |
|--|
| <p>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있는 회사</p> <p>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 퍼센트가 소유되는 회사</p> <p>The terms ‘its vessels’ and ‘its factory ships’ in paragraph 1(f) and (g) shall apply only to vessels and factory ships:</p> <p>(a) which are registered in on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or Korea;</p> <p>(b) which sail under the flag of on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or Korea;</p> <p>(c) and which meet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p> <p>(i) they are at least 50 percent owned by nationals of on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or Korea; or</p> <p>(ii) they are owned by companies:</p> <p>(A) which have their head office and their main place of business in on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or in Korea; and</p> <p>(B) which are at least 50 percent owned by on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or by Korea, public entities of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or Korea, or nationals of on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or Korea.</p> |
|--|

- 역내선박의 인정요건을 당사국 국기계양, 당사국 등록 + 당사국 국기계양, 당사국 등록+당사국 국기계양+소유요건으로 채택한 FTA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표 3-30>)

<표 3-30> 협정별 역내선박 인정요건

| 당사국 국기계양 | 당사국 등록+당사국 국기계양 | 당사국 등록+당사국 국기계양+소유요건 |
|----------|---|----------------------|
| EFTA | 칠레, 싱가포르, 캐나다, 아세안, 미국, 인도,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 EU, 튀르키예, 영국 |

자료: 협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바. 광물성 생산품

- 광물성 생산품은 석탄, 철광석, 구리, 아연 등 천연자원에 해당하는 물품이 주류임. 광물성 생산품의 생산을 나타내는 용어가 협정별로 채취, 추출, 취득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지만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음.
- 한-미 FTA에서는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 또는 채취된 천연자원은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함. 한-EU FTA에서는 "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을 완전생산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아세안 FTA에서는 "당사국 영역 내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 또는 취득된 광물 및 자연 발생물질"을 완전생산품으로 규정하고 있음.(<표 3-31>)

<표 3-31> 협정별 광물성 생산품 완전생산품 인정요건

| 구분 | 칠레/싱가포르 | 아세안 | 미국/호주 | EU/터/영 | 중국 | RCEP |
|----|---------|------------------|----------------|------------|------------------|------------------|
| 요건 | 역내 채취요건 | 당사국내 추출 또는 취득 요건 | 역내 추출 또는 채취 요건 | 당사국내 추출 요건 | 당사국내 추출 또는 채취 요건 | 당사국내 추출 또는 채취 요건 |

자료: 협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사. 영역 밖 채취상품

- 당사국 영역(영해) 밖의 바다 밑에서 채취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개발권' 또는 국제법상 천연자원을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국에서 채취된 경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함.(<표 3-32>)
-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EFTA FTA는 다른 협정과 달리 '독점적 개발권'을 요건으로 하여 합작 개발인 경우 완전생산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표 3-32> 영역 밖 채취상품의 완전생산기준 비교

| 구분 | 칠레/싱가포르 | EFTA | 미국 | EU/튀/영 | 중국 | 호주/캐 | 아세안 |
|----|---------|-------|-----|--------|-----|------|-----|
| 요건 | 탐사권리 | 독점적권리 | 개발권 | 개발권 | 개발권 | 개발권 | 탐사권 |

자료: 협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아. 폐물·부스러기·고물 재생품

- 대부분의 협정에서 생산과정 및 중고품에서 얻어진 폐물 및 부스러기 (waste and scrap), 고물(used goods) 등은 비원산지재료의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함. 다만, 이러한 폐기물·부스러기·고물은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함.(<표 3-33>)

<표 3-33> 폐품·부스러기·고물의 협정별 완전생산기준 비교

| 협정 | 완전생산기준 |
|---------|---|
| 칠레/싱가포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생산에서 얻어진 폐기물과 부스러기 • 역내 수집된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중고품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제조에서 얻어진 폐기물과 부스러기 • 역내 수집된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중고품 • 역내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생산에서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역내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회수된 부분품 + 성능 유지에 필요한 가공 |
| EU/터/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원재료 회수용 또는 폐기물 용도에 적합한 중고물품 • 당사자 내 생산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 아세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원재료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중고물품 •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 RCE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에서 생산 또는 소비에서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 • 당사자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 |

자료: 협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협정과 달리 재제조상품(remanufactured goods)과 생산에 소요되는 재생상품(recovered goods)도 원산지와 관계없이 완전생산품으로 간주함.
- ”재제조상품“이란 HS 제84류(기계), 제85류(전기·전자), 제87류(자동차부품) 또는 제90류(광학·의료기계)로 분류되는 상품 중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재생용품¹¹³⁾으로 구성되고, 그러한 신상품과 유사한 제품수명을 가지면서, 유사한 공장품질보증을 향유하는 것을 말함.¹¹⁴⁾ ”재생상품“이란 중고물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여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세척·검사·테스트 등을 거쳐서 나온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함.¹¹⁵⁾
- 한-캐 FTA에서는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회수된 부품품(재생부품)이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공을 거친 경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함.

자.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 완전생산품을 재료로 생산한 최종물품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됨. 예를 들어 완전생산한 A재료와 B재료를 결합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됨.
- 협정별로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상품에 대해서만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그 파생품으로 생산한 상품까지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113) 한-미 FTA 제6.22조에서 정의된 재생용품을 말함

114) 한-미 FTA 제1.4조 정의

115) 한-미 FTA 제6.22조 정의

<표 3-34>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상품의 협정별 완전생산품 인정범위

|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상품 한정 | 파생품까지 확대 |
|---|---|
| EFTA, 아세안, EU, 튀르키예, 영국, 페루, 중국, 베트남, 중미,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 칠레,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RCEP |

자료: 협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상품까지만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는 협정과 그 파생품으로 만든 상품까지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는 협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참고] 한-미 FTA, 한-EU FTA 및 RCEP의 완전생산기준

한-미 FTA 제6.22조 완전생산물품 정의

- 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 나.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다.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라.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덫사냥·어로 또는 양식으로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으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
- 바.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해저 및 하부토양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 사. 바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그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아.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러한 해저나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또

는

- 2)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 제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고상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재제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 그리고
- 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 내지 차호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한-EU FTA 원산지상품 정의

제4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1. 제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당사자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자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 나. 당사자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 다. 당사자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당사자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 마. 1) 당사자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덧사냥 또는 당사자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
2) 당사자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 제품
 - 바. 당사자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 사. 바호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제품
 - 아. 당사자의 영해 밖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당사자는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 차. 당사자 내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또는,
 - 카. 이 항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 내에서 생산된 제품
 1. 제2항 바호 및 사호에서 '당사자의 선박'과 '당사자의 가공선박' 용어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 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등록된 것
 -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그리고
 -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2. 제1항 바호 및 사호에서 '당사자의 선박'과 '당사자의 가공선박' 용어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 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 등록된 것
-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그리고
-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 1)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 50도 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또는,
 -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하나에 있는 회사 그리고,
 - 나)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 대한민국 또는,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또는,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퍼센트가 소유되는 회사

RCEP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조(원산지 상품)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 가. 당사자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 꽃, 채소, 나무, 해초, 균류,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나. 당사자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다. 당사자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라. 당사자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농작, 양식,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마. 당사자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바. 국제법에 따라 당사자들 및 비당사자들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에서 그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에 의하여 획득된 그 밖의 상품. 다만, 어떠한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의 경우,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은 그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개발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밖의 상품의 경우,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인은 국제법에 따라

- 그러한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를 개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 사. 그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른 공해로부터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아. 그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바호 또는 사호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가공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자. 다음의 상품
- 1) 당사자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 2) 당사자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차. 가호부터 자호까지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그 당사자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4절 충분생산기준

1. 충분생산원칙의 개념

- 충분생산원칙은 역내에서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할 경우 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쳐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기본원칙임. 여기서 '충분한 생산'이란 물품의 실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을 의미함.¹¹⁶⁾
- 물품의 실질을 변형할 정도로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충분생산기준을 '실질적변형기준'이라고 일컬음. '생산'의 용어에 대해 각 협정에서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두고 있음. 한-칠 FTA 및 한-미 FTA에서는 '생산'이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사육,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분해하는 것'으로 정의함. 한-EU FTA에서는 '생산'이란 재배, 어로, 사육, 수렵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함.(<표 3-35>)

<표 3-35> 주요 협정별 생산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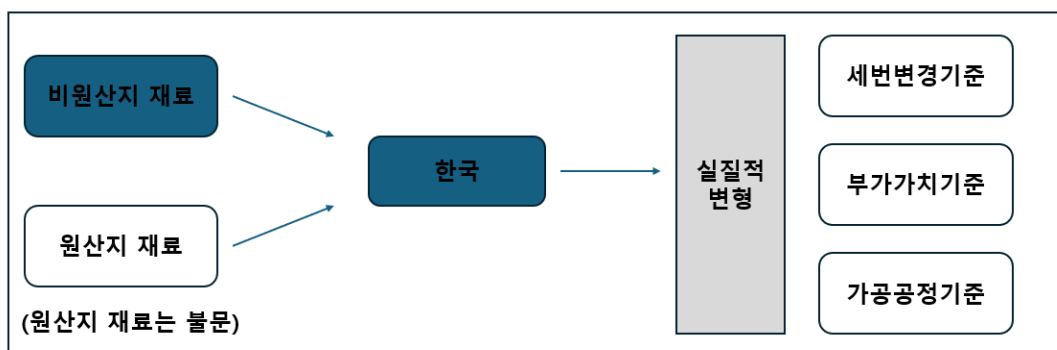
| | |
|-------------|---|
| 한칠FTA | 생산이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및 사육,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
| 한미FTA | 생산이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사육,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
| 한EUFTA | 생산이란,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
| RCEP | 생산이란 재배, 채굴, 수확, 농작,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양식, 덧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의 방법을 말한다. |
| 한인니 CEPA |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

자료: 연구자가 각 협정문을 참조하여 작성.

116)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거서. p.59.

- 가장 최근에 발효된 RCEP 및 한-인도네시아 CEPA 에서는 '생산'이란 재배, 채굴, 수확, 농작,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양식, 덧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의 방법' 이라고 규정하여 더욱 상세히 정의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기준은 생산과정이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음.¹¹⁷⁾
- 실질적 변형기준은 WCO의 교토협약 부속서, WTO 통일원산지규정,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국내외 원산지규범에 따른 원산지규정에서도 적용하는 원산지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임.
- 다만, 실질적 변형기준을 품목별로 적용할 때는 협정별로 각기 다른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이들의 다양한 조합기준이 적용됨. 실질변형 여부는 비원산지재료를 기준으로 생산과정에서 생산제품과 세번변경이 발생했는지,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 특정공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함.([그림 3-22])

[그림 3-22]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기준



자료: 이영달(2023), "원산지결정기준". FTA미래설계과정. 관세인재개발원.

117)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 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

-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이란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의 세번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그러한 세번 변경이 초래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로 간주하는 기준을 의미함.
- 세번은 HS(Harmonized System) code¹¹⁸⁾라고도 하며, 이는 물품을 원재료에서 가공공정이 복잡해지는 순서대로 1차 분류하고 물품의 형태나 기능을 추가 분석해 분류하고 있으므로, 자연과학적인 물품분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세번이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물품의 성질이 변형되었다는 것을 뜻함.
- 세번변경기준은 특정 국가에서 제조 또는 가공을 통해 세번이 어느 정도로 변해야 그 제조 또는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2단위 기준(CC), 4단위 기준(CTH), 6단위 기준(CTSH)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개별품목에 따라 다양한 파생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기준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①세번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산된 물품과 생산된 물품에 투입되는 ‘비원산지재료’라는 점과, ②당해 국가에서 단순한 제조 또는 가공만 이루어진다면 비록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제조 또는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이란 물품의 가공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국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함. 이는 원산지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대상국가에서 해당 물품에 기여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18)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무역거래 상품을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

- 가공공정기준이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주요 공정을 파악한 후 가장 중요하면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공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간주하는 기준을 의미함. 동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것이 특징이며, 주로 섬유제품이나 화학제품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임.
- 실질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은 특정 세번을 제외하거나 선택기준 또는 결합기준 등 협정별 품목에 따라 다양한 파생기준이 사용됨.([그림 3-23])

[그림 3-23] 실질적 변형 구성요소



자료 : 김석오(2023), 전계자료...

- 한편 충분가공원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충분공정이 있음. 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도 그것이 단순한 공정의 수행 결과라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를 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 최소공정(Minimal operation), 불충분 작업 또는 가공(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등이라 함. 119)

119) 이영달(2017). 전계서. p.140.

- 호주산 소(HS 0102)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도축하여 쇠고기(HS 0201)를 가공할 경우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며, 러시아산 활어(HS 0301)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선박에서 냉동한 어류(HS 0303)도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함.([그림 3-24])

[그림 3-24] 불인정공정의 예시

| 투입원료 | 생산공정 | 생산제품 |
|--------------------------|------|---------------|
| 소(0102) | 도축 | 쇠고기(0201) |
| 활어(0301) | 냉동 | 냉동어류(0303) |
| 밀(1001) | 제분 | 밀가루(1101) |
| 화강암(2516) | 분쇄 | 자갈(2517) |
| 페니실린(3003) | 포장 | 소매용페니실린(3004) |
| 물(2201) 설탕(1701) | 혼합 | 음료수(2202) |
| 원목(4403) | 절단 | 제재목(4407) |
| 안경테(9003)/ 안경렌즈(9001) | 조립 | 안경(9004) |

자료 : 김석오(2023), 전계자료.

- 외국에서 밀(HS 1001)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분한 밀가루(HS 1101)도 HS 2단위가 발생함. 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도축, 냉동 또는 제분 작업만으로도 2단위 또는 4단위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게 됨.
- 간단한 포장작업, 혼합, 절단 및 조립작업을 통해서도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 부가가치도 발생함 이와 같이 비교적 단순·경미한 가공작업만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할 경우 우회수입을 유발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하고, 특혜관세 혜택이 제3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관점에서 FTA 체결당사국 간의 FTA 이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FTA에서 불인정공정 조항을 도입하고 있음.

2. 불인정공정

가. 불인정공정의 의의

- 대부분의 협정에서 불인정공정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미국·캐나다와의 협정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음.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캐나다 측은 불인정공정 조항이 세관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집행될 수 있다며 이를 일반기준에 넣지 말고 품목별원산지기준에 최대한 반영하여 원산지규정 해석·집행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을 반영한 결과임.¹²⁰⁾
-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는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제1류~제40류 상품에 대한 단순희석공정, 제20류 주석에서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하여 포장하였거나 볶음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과일 및 견과류 등은 원산지를 불인정하고 있음.

나. 불인정공정의 유형

1) 주요 협정별 불인정공정의 유형

- 각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의 유형으로 건조 또는 보존 공정, 포장 작업(소분), 혼합·희석 작업, 단순조립 또는 분해, 탈피·탈각·제분·도정·연마·표백, 페인팅·광택, 세척·세탁·녹제거, 당류의 착색, 동물의 도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사리를 삶아서 건조할 경우 4단위 세번이 변경되고, 귀리를 탈피하면 2단위 세번이 변경되며, 무색의 당시럽에 색소를 첨가하면 2단위 세번이 변경됨. 벌크 상태의 탈지면을 소매용을 소분할 경우에도 2단위 세번이 변경됨.([그림 3-25])

¹²⁰⁾ 이영달(2017), 전게서. p.142.

[그림 3-25] 불인정공정 생산물품의 예시



자료 : 김석오(2023), 전계자료.

- 불인정공정 조항을 도입한 FTA 중 아세안, EU, 호주 및 중국과의 주요 불인정 공정의 유형을 비교하면 <표 3-36>과 같음.

<표 3-36> 주요 협정별 불인정공정의 유형

| 한·아세안 | 한·EU | 한·호주 | 한·중국 |
|---|---|---|---|
| 운송·저장 작업(건조, 냉동 등) 포장·재포장, 포장상태 변경 | 운송·저장 위한 보존 작업 포장상태 변경, 포장 해체/조립 | 운송·보관 위한 보존공정 포장 변경, 포장물 해체·조립 | 운송·보관 위한 보존공정 포장 변경, 포장물 해체·조립 |
| 먼지·녹 등의 세척·세정·제거 단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 세탁, 세척, 먼지 등 제거 섬유 다림질 또는 압착 단순페인트칠/광택작업 | 세탁, 세척, 먼지 등 제거 | 세탁, 세척, 먼지 등 제거 단순페인팅 및 광택 |
| 탈피, 표백, 연마, 도정 | 탈각, 표백, 연마, 도정 | - | 탈각, 표백, 연마 및 도정 |
| 당류 착색, 각설탕 작업 | 당류 착색, 착향, 각설탕 작업 | - | 당류 착색, 착향, 각설탕 작업, 결정당의 부분/전체 제분 |
| 과일 등 탈피, 씨제거, 탈각 | 과일 등 탈피, 씨제거, 탈각 | - | 과일 등 탈피, 씨제거 및 탈각 |
| 연마, 단순분쇄 / 단순절단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세트구성, 단순혼합 | 연마, 단순분쇄 / 단순절단 감별·체질·선별·분류·등급, 세트구성, 단순혼합 | 연마, 단순분쇄, 단순절단 | 단순분쇄, 단순절단,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세트구성, 단순혼합, 쪄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
| 동물도축 | 동물도축 | - | 동물도살 |
| 단순조립, 제품분해, 단순시험 또는 측정, 포장에 상표의장·라벨 부착 등 | 부분품 단순조립, 제품분해 시험/측정, 표시·라벨·로고 등 포장에 부착, 병 등에 단순적입 및 단순포장 | 분해, 상품 재분류 병 등에 단순적입, 단순포장, 표시·라벨·로고 등 부착 | 병 등에 단순넣기, 카드 등 붙이기 그밖의 모든 단순 포장, 라벨 등 부착·인쇄, 시험/측정, 단순희석, 단순조립 |
| 상기 작업의 조합 | 상기 작업의 조합 | 상기 작업의 조합 | 상기 작업의 조합 |
| <섬유 및 의류 불인정공정> 다림질, 프레싱, 중형재단, 끝단봉제, 스티칭, 오버로킹 트리밍, 탈색, 방수, 줄임 등 | | |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압착 |

자료: 이영달(2023), 전계자료.

2) 운송 및 보관을 위한 공정

- 운송 및 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은 불인정공정에 해당됨. 건조·냉동·냉장·염장¹²¹⁾·염수장·통풍·소금 또는 이산화유황에 담그기, 손상된 부분의 제거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신선한 고사리(0709)를 건조한 고사리(0712)로 가공하는 공정, 신선한 명태(0302)를 냉동명태(0303) 또는 건명태(0305)로 가공하는 공정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3) 포장 또는 재포장 공정

- 포장, 재포장, 포장 상태의 변경(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하는 작업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됨. 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트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함.
- 벌크 상태의 곡물이나 과일, 채소, 육류 등을 소분하거나 소매용으로 포장하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4) 세정 또는 이물질 제거작업

-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이물질의 세척·세정 또는 제거작업은 불인정공정에 해당됨. 곡물, 채소, 과일, 열매 등을 세척하거나 먼지, 흙 등 이물질을 선별하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5) 외피제거, 연마 및 도정작업

- 곡물을 탈각하거나 표백, 연마 및 도정하는 작업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됨. 쌀을 제외하고 제10류에 분류되는 곡물을 탈각하거나 표백, 연마 및

121) 염장은 소금에 저린 것(예: 새우젓)을 말하며, 염수장은 소금물에 절인 것을 말함.

도정을 할 경우 제11류에 분류됨. 예컨대 껍질을 벗기지 않은 귀리는 제1004호에 분류되지만 탈피한 귀리는 제1104호에 분류됨. 이와 같이 탈피 작업을 통해서 2단위 세변경이 발생되더라도 불인정공정에 해당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함.

6) 당류의 착색 또는 각설탕 작업

- 당류에 색소를 첨가하거나 각설탕 작업은 불인정공에 해당됨. 제1702호에 해당되는 당시럽에 색소를 첨가하면 제2106호의 당시럽(착색)으로 2단위 세변이 변경되지만 불인정공정에 해당되므로 원산지를 인정 받지 못함.

7)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탈피, 씨제거 및 탈각

-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껍질이나 가죽을 벗기는 작업, 씨를 제거하는 작업은 불인정공정에 해당됨. 제8류의 식용과일과 견과류 등은 탈피 여부 따라 소호(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음. 미탈각 상태의 호두는 제0802.31호에 분류되지만 탈각한 호두는 제0802.32호에 분류됨.
- 한-베트남 FTA에서는 예외적으로 제0801.32호의 캐슈너트 껍데기 벗긴 것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¹²²⁾ 캐슈너트의 껍데기 벗기는 공정이 손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캐슈너트의 생산과 수출이 많은 베트남 측의 요구사항이 원산지규정에 반영되었음.

8) 연마, 단순분쇄 또는 단순절단

- 곡물과 채소의 연마, 단순분쇄 또는 단순절단은 불인정공정에 해당됨. 신선고추(제0709호)를 분쇄하면 향신료(제0904호)도 2단위 세변이 변경되지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충분한 공정으로 보지 않음. 마찬가지로 곡물

122) 한-베트남 FTA 원산지규정 제3.7조(불인정공정) 각주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HS 0801.32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10류)를 분쇄하면 제1104호로 2단위 세번이 변경되지만 이또한 불인정공정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음.

9) 체질·선별·분류·등급·세트 작업

- 가루를 곱게 치거나 액체를 고르는 체질, 물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 구분, 분류 및 등급화 하는 작업과 세트 구성하는 작업도 불인정공정에 해당함. 주로, 식물의 종자나 곡물, 과일 등에서 적용될 수 있음.

10) 단순 혼합 공정

- 곡물, 채소, 과일, 육류와 같은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는 작업은 불인정공정에 해당됨. 예컨대 대두유(제1507호), 해바라기씨유(제1512호), 유채유(제1514호)를 혼합하여 가공한 혼합식용유(제1517호)는 4단위 세번이 변경되지만 충분한 공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또한 질소비료(제3102호), 인산비료(제3103호) 및 칼륨비료(제3104호)를 혼합한 복합비료(제3105호)도 4단위 세번이 변경되지만 불인정공정에 해당됨.

11) 단순한 희석 공정

- 상품의 특성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물 또는 다른 성분으로 단순히 희석하는 공정은 불인정공정에 해당됨. 단순한 혼합 공정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불인정공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희석 공정은 협정마다 차이가 있음. 음료, 주류, 화학품, 의약품 등과 같이 물품에 따라 혼합 또는 희석 공정이 실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공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단순혼합’의 의미에 대해 한-페루 FTA에서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생산 또는 설치된 기계, 도구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하나, 화학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함.

- 한-중 FTA에서는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한 경우 불인정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음.¹²³⁾ 다른 물질을 희석한 경우 상품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됨.

12) 동물의 도축

- 대부분의 협정에서 ‘동물의 도축 또는 도살’은 불인정공정에 포함하고 있으나 호주·뉴질랜드와의 협정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만,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소고기등 (HS 제2류)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을 채택하면서 산동물(HS 제1류)로부터 변경은 제외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도축은 불인정공정에 포함됨.
- 그러나 미국·캐나다와의 FTA에서는 도축공정으로 인한 세번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불인정공정으로 보지 않음. 한-미 FTA 원산지규정 협상 테이블에서 ‘도축공정’은 최대 협상쟁점 중의 하나였으나 미국과 캐나다 축산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반영되었음.

다. ‘단순한’의 용어 정의

- 불인정공정은 협정별로 예시하거나 열거하는 형태로 규정되는데, 대부분의 협정에서 ‘단순절단’, ‘단순조립’ 등과 같이 ‘단순’(simple)이라는 용어와 특정 공정을 조합하여 불인정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단순’의 의미는 협정에 따라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작업 또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 도구 또는 설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¹²⁴⁾ 즉 특별히 고안된 기계·도구·생산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 손으로 생산공정으로 수행하면 불인정공정에 해당될 수 있음.¹²⁵⁾

123) 한-중 FTA 제3.7조 제1항

124) 한-페루 FTA 제3.5조(불인정공정) 3호.

125)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거서. p.61.

- 협정에 ‘단순한’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 협정으로는 EFTA, 아세안, 인도, EU, 튀르키예, 페루,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및 RCEP 등 14개임.

RCEP 제3.6조(최소공정 및 가공) 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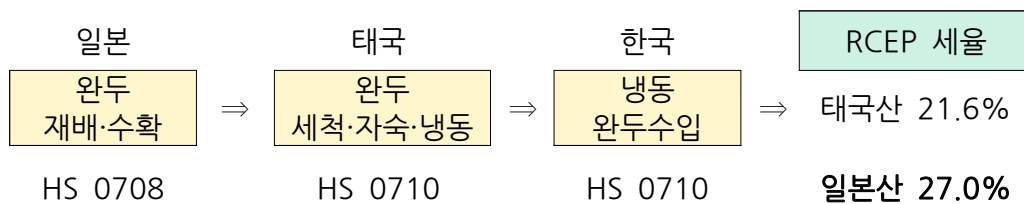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 반면 칠레, 싱가포르, 호주, 중국, 뉴질랜드와의 협정에서는 ‘단순한’의 조항이 미비되어 있어 ‘단순절단’, ‘단순조립’ 등의 해당 여부 판단시 논란이 되고 있음.

라. RCEP 최소 공정 및 가공

-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각 당사국별로 양허표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특정 회원국에 대해서는 차등관세 또는 미양허하는 품목이 존재함. 이에 따라 동일한 상품에 대해 회원국별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이 발생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세안,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산 물품에 상이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함. 예컨대, 일본에서 재배·수확한 완두(HS 0708.10-0000)를 RCEP 역내국인 태국에서 세척 및 냉동작업(HS 0710.21-0000) 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아세안(태국) 원산지 완두는 21.6%(2024기준)의 RCEP 특혜관세율이 적용되나, 일본산은 기본관세율(27.0%)이 적용됨.¹²⁶⁾([그림 3-26])

[그림 3-26] RCEP 원산지국가별 차등세율 적용 사례(예시)



자료: 연구자가 RCEP 원산지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126)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75.

- 원산지 판정에 따라 RCEP의 국가별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¹²⁷⁾ 원산지 기준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위 완두의 사례처럼 RCEP 회원국의 원산지 물품을 재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최소공정 외의 생산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하여야 수출당사국을 원산지로 결정할 수 있음.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외의 생산공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비의 최대 기여국이 원산지로 결정됨.¹²⁸⁾ 위 냉동 완두의 사례에서 세척·자숙·냉동은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으로서 RCEP 원산지규정 제3.6조에 따른 최소 공정에 해당하므로 태국에서 수입한 완두의 원산지는 일본으로 볼 수 있음.

RCEP 제3장 원산지규정

제3.6조 최소 공정 및 가공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 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수행된 경우 그 상품에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여겨진다.

- 가. 운송 또는 보관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 나.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 다. 감별, 체질,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쪄개기, 분
- 라.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 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사. 동물의 도살
- 아.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자.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차.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또는
-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127) RCEP 제2.6조(관세차별)

128) RCEP 제2.6조(관세차별)

3. 세번변경기준

가. 세번변경기준의 개요

- ‘세번변경기준’이란 역외산(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일종으로서 역내 가공과정에서 역외산 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HS 분류체계가 당해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정해진 품목의 경우 세번이 변경되면 당해물품의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한 원산지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세계관세기구(WCO)에 따르면, 전세계 20개 FTA의 세번변경기준 적용율은 평균 73.41%이며, 11개 협정은 95% 이상으로 조사되었음. 세번변경기준이 가장 보편적인 원산지결정기준임을 알 수 있음.¹²⁹⁾(<표 3-37>).

<표 3-37> 전 세계 주요 FTA의 세번변경기준 적용 현황

| Agreement Name | Percentage of CTC-based rules | Number of CTC-based rules | HS version used | Type |
|---|-------------------------------|---------------------------|-----------------|--------------------|
| ASEAN-Japan | 95.73% | 5,001 | HS 2002 | General rule + PSR |
| Australia-Singapore | 0.00% | 0 | - | General rule |
| Australia-Thailand | 97.78% | 5,108 | HS 2002 | PSR |
| Australia-United States | 99.79% | 5,213 | HS 2002 | PSR |
| China-Hong Kong, China | 0.53% | 27 | HS 1996 | PSR |
| China-Singapore | 2.45% | 124 | HS 2007 | General rule + PSR |
| EU-Mexico | 56.07% | 2,867 | HS 1996 | PSR |
| EU-Korea (Republic of) | 59.26% | 2,994 | HS 2007 | PSR |
| EU-Turkey | 52.47% | 2,741 | HS 2002 | PSR |
| India-Japan | 70.07% | 3,540 | HS 2007 | General rule + PSR |
| India-Singapore | 100.00% | 5,224 | HS 2002 | General rule + PSR |
| Japan-Mexico | 99.52% | 5,199 | HS 2002 | PSR |
| Japan-Singapore | 99.18% | 1,385 | HS 2002 | PSR |
| Japan-Thailand | 98.32% | 5,136 | HS 2002 | PSR |
| Korea (Republic of)-Singapore | 99.41% | 5,022 | HS 2007 | PSR |
| Korea (Republic of)-Turkey | 59.26% | 2,994 | HS 2007 | PSR |
| Korea (Republic of)-United States | 99.35% | 5,190 | HS 2002 | PSR |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 99.51% | 5,027 | HS 2007 | PSR |
| Singapore-Chinese Taipei | 83.17% | 4,202 | HS 2007 | PSR |
| United States-Singapore | 96.25% | 5,028 | HS 2002 | PSR |

자료: 세계관세기구(WCO), <https://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aspx>

129)WCO(2015), “Study on the use of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based rules” i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건의 FTA 농식품 품목별(HS 1~24류) 원산지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4,700개 중에서 세번변경기준이 7,940개로 전체의 54.1%를 차지하였음.(<표 3-38>)

<표 3-38> 농식품의 원산지기준 유형별 사용 현황

| 유형 | 완전생산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기타 | 계 |
|----|--------|--------|--------|-----|--------|
| 개수 | 6,539 | 7,940 | 140 | 81 | 14,700 |
| 비중 | 44.5 | 54.0 | 1.0 | 0.5 | 100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FTA원산지규정 활용방안'. P.98.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재정리.

- 세번변경기준 중에서 CC 유형은 5,082개, CTH 유형 2,451개, CTSH 유형 407개로 나타나, CC 유형이 가장 많은 64%를 차지하였음. 세번변경기준을 엄격성의 정도로 분류할 경우 CC → CTH → CTSH 순서임.(<표 3-39>)
- CC 유형이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은 농식품의 원산지기준이 그만큼 엄격하다는 것을 시사함.

<표 3-39> 농식품의 세번변경기준 사용 현황

| 유형 | CC 유형 | CTH 유형 | CTSH 유형 | 계 |
|----|-------|--------|---------|-------|
| 개수 | 5,082 | 2,451 | 407 | 7,940 |
| 비중 | 64.0 | 30.9 | 5.1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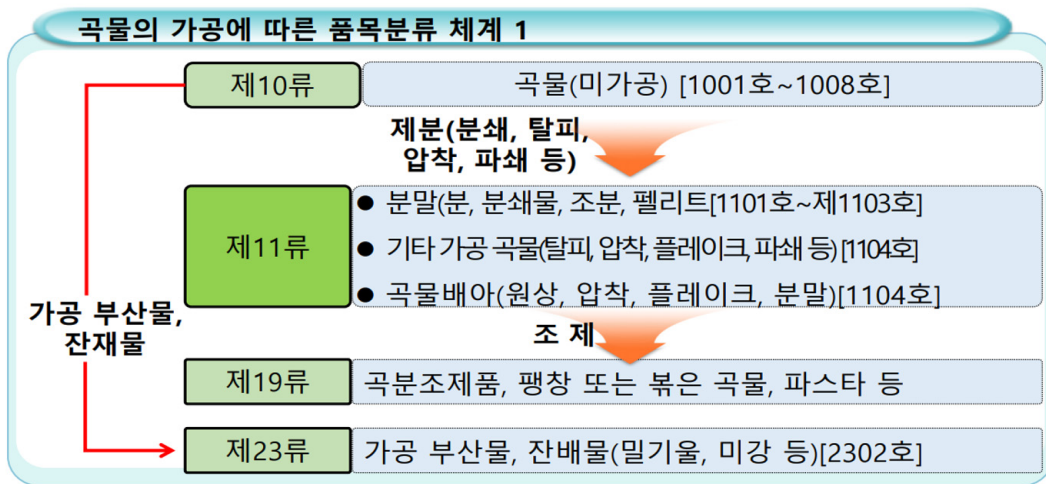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서. p.98.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재정리.

나. 세번변경기준과 HS 품목분류

- 세번변경은 주로 2단위(CC), 4단위(CTH) 또는 6단위(CTSH)를 바탕으로 일부 세번 제외 등 품목별로 다양한 파생기준이 사용됨.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과 사용한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수임

- HS 품목분류 코드는 일반적으로 가공도에 따라 세번이 분류됨. 곡물의 경우 미가공 곡물은 제10류에 분류되는데, 제분·탈피 또는 파쇄 공정을 거친 곡물 분은 제11류에 분류되고, 조제한 곡물은 제19류, 밀기울 등 가공 부산물은 제23류에 분류됨. 이와 같이 가공단계 별로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함을 알 수 있음.([그림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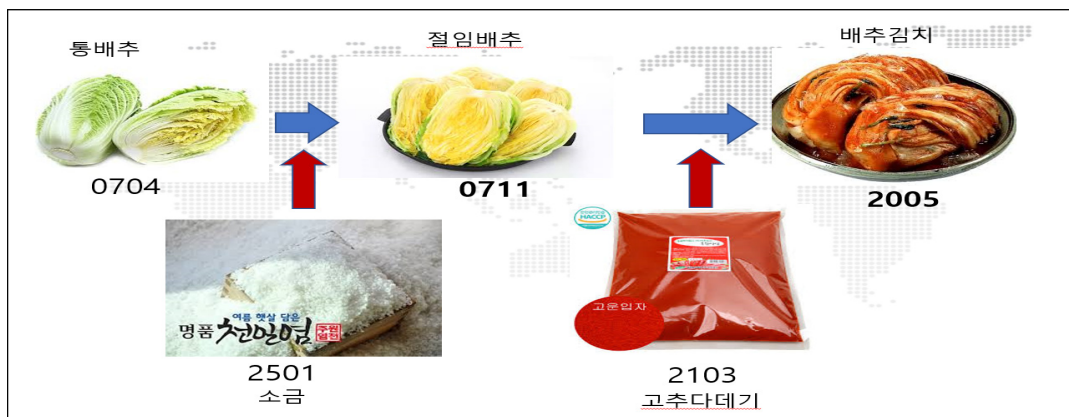
[그림 3-27] 곡물의 가공에 따른 세번변경



자료 : 김석오(2023), 전계자료.

- 우리나라 대표 푸드인 김치(HS 2005.99)의 가공도별 세번변경 발생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통배추(HS 0704), 절임배추(HS 0711), 고추다데기(HS 2103), 소금(HS 2501)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그림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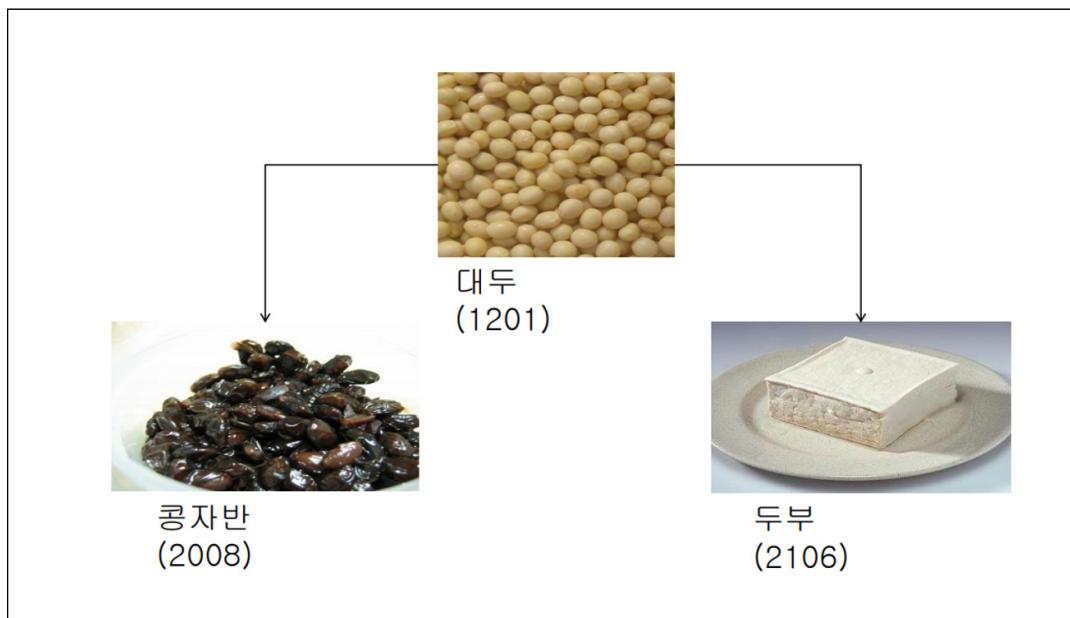
[그림 3-28] 배추김치의 가공에 따른 세번변경



자료 : 김석오(2023), 전계자료.

- 통배추(HS 0704)를 소금물에 단순히 절인 배추(HS 0711)은 4단위 세번변경(CTH)만 발생함. 이 절임배추를 고추다데기(HS 2103) 등 다른 재료와 버무려서 최종상품인 김치(HS 2005)를 만들면 2단위 세번변경(CC)이 발생함.
- 또 다른 사례로 제1201호에 분류되는 대두를 조제하여 콩자반(HS 2008)과 두부(HS 2106)로 가공하면 2단위 세번변경(CC)이 발생함을 알 수 있음. ([그림 3-29])

[그림 3-29] 대두의 가공에 따른 세번변경



자료 : 김석오(2023), 전개자료.

- 고추다데기(HS 2103)와 고추장(HS 2103)의 기초재료인 고추의 가공단계별 품목분류 사례를 분석해 볼 수 있음. 농장에서 갓 수확한 청고추·홍고추는 제 0709에 분류되고, 이를 냉동한 냉동고추는 제0710호, 이를 건조한 건고추는 제0904.20호, 이를 파쇄한 고춧가루도 제0904.20호에 분류됨.

[그림 3-30] 고추의 가공에 따른 세번변경 및 적용세율

| 상태 | 원상 | | | 분쇄.파쇄 | 다대기 | | 고추장 |
|-----|------------|------------|------------|------------|---|----|-----|
| | 신선냉장 | 냉동 | 건조 | | Paste | 분말 | |
| 청고추 | 0709.60- | 0710.80-70 | 0904.20- | 0904.20- | 2103 | | |
| 홍고추 | 9000 | 00 | 1000 | 2000 | | | |
| 관세율 | 270%/6210원 | 27% | 270%/6210원 | 270%/6210원 | 8%, 조정45%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각각 20% 이상 혹은 합이 40% 이상) | | |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파쇄, 분쇄

자료: 이흥대(2021),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인재개발원 강의교재.

○ 신선고추를 냉동하면 4단위(CTH) 세번변경이 발생하지만 이를 건조하거나 파쇄하면 2단위 세번변경(CC)이 발생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건조고추를 파쇄해서 고춧가루로 만들면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은 발생하지 않음.

○ 감자와 감자를 이용한 가공식품 분류체계를 보면 생산·가공 정도에 따라 <표 3-40>과 같이 HS 품목분류 코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음. 감자(0701)를 냉동하면 제0710호로 변경되고, 생감자를 찌서 으갠다음 분말화한 것은 제1105호, 감자전분은 제1108호, 감자를 기름에 조리한 감자튀김은 제2004호로 변경됨.(<표 3-40>)

<표 3-40> 감자 및 감자 관련제품의 가공에 따른 세번변경

| 품명 | 세부내용 | HS |
|------|---|------|
| 감자 | 모든 종류의 감자(종자용, 햇감자용 포함) | 0701 |
| 냉동감자 |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감자 | 0710 |
| 감자분 | 생감자를 찌서 으갠다음 이를 분, 분말, 입상이나 소편상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시킨 것 | 1105 |
| 감자전분 | 백색무취의 분말 | 1108 |
| 감자튀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름에 조리 또는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 감자분을 기재로한 "Knodel, Klose, Hockerin" | 2004 |

자료 : 연구자가 작성

- 곡물, 김치, 콩, 고추 및 감자의 가공도별 HS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번변경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도입하거나 원산지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각 가공단계별 HS 품목분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HS 품목분류체계에 대한 충분한 선행지식과 식품의 가공·생산공정 및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함.

다. 세번변경기준의 유형

1)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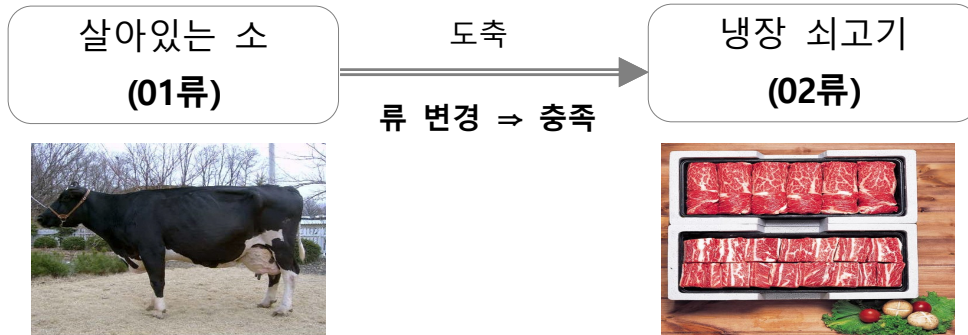
- 2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제품의 최종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역외산 재료의 세번과 최종제품의 세번의 2단위가 모두 변경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임. 농식품의 세번변경기준 중 CC 유형이 가장 많음. 그 이유는 농식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유지하려는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르면 제2류의 원산지기준은 다음과 같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임. 단, 제0105호의 닭은 제외하고 있음.

<표 3-41> 한-미 FTA HS 제2류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 HS 번호 | 원산지결정기준 |
|-------------|--|
| 0201호-0210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제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 change to heading 02.01 through 02.10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chickens) of heading 01.05. |

- 이 규정의 의미는 가령 캐나다에서 재배·사육한 소(제1류)를 미국으로 수입한 후 도축한 냉장 소고기(HS 0201)의 원산지는 CC기준을 충족하므로 미국산으로 판정한다는 것임.([그림 3-31])

[그림 3-31] 한-미 FTA 냉장 쇠고기 원산지기준



자료 : 김석오(2023), 전계자료.

- 쇠고기의 2단위 세번변경을 발생시킨 생산공정은 도축 공정임. 도축 공정은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 아세안, EU, 중국과의 FTA에서는 불인정공정으로 규정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도축공정을 충분한 생산공정으로 인정한 협정은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 뿐이며,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CC 기준에서 제1류의 것은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거나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축공정으로 인한 CC 변경을 인정하지 않음. (<표 3-42>)

<표 3-42> 주요 협정별 제2류(쇠고기)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 HS 번호 | 원산지결정기준 |
|-------|--|
| 한-캐나다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칠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싱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아세안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한-EU | 제1류 및 제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한-호주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뉴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중 | 완전생산기준 |
| RCEP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01류의 것은 제외한다) |

자료: 각 협정문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소를 도축하여 생산한 쇠고기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2)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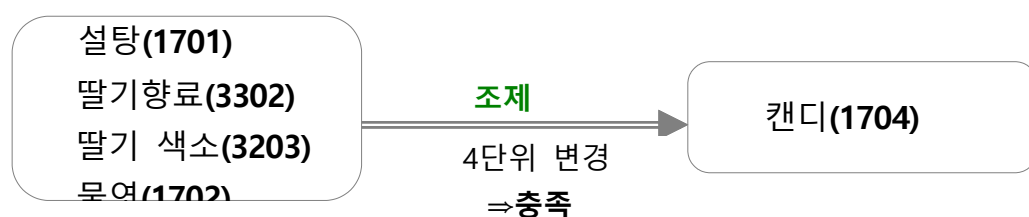
-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제품의 최종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역외산 재료의 세번과 최종제품의 세번의 4단위가 모두 변경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임.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건의 FTA 원산지규정 1~24류에 해당하는 농식품 중 CTH 유형이 30.9%의 비중을 차지함.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르면 HS 제1704.90호의 캔디의 원산지기준은 <표3-43>과 같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임. 이 규정은 캔디의 역외산 재료 중 HS 코드 4단위가 캔디의 4단위 세번과 달라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의미임.

<표 3-43> 한-미 FTA 1704.90호의 캔디 품목별 원산지기준

| HS 번호 | 원산지결정기준 |
|----------------|--|
| 1704.90호 캔디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 change to heading 17.04 from any other heading. |

- 예컨대, 한국의 제과업체가 미국 수출용 캔디를 생산하기 위해 제조원료인 설탕(HS 1701), 딸기향료(HS 3302), 딸기색소(HS 3203), 물엿(HS 1702)를 모두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 CTH 기준을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그림 3-32])

[그림 3-32] 한-미 FTA 1704.90호의 캔디 원산지 판정



자료 : 김석오(2023), 전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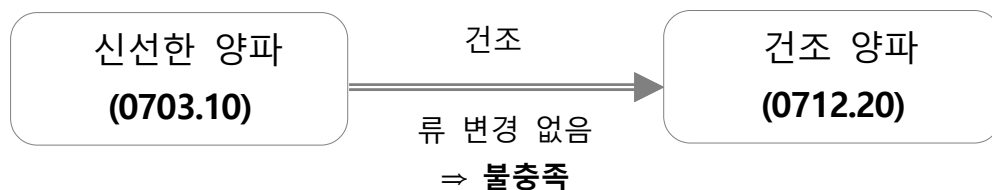
- 이를 위해 최종생산품인 캔디의 세번(HS 1704)과 수입원재료의 세번을 비교해 보면 4단위가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CTH 기준을 충족하였음.
- CTH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르면 건조양파(HS 0712)의 원산지기준은 다음과 같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임.

<표 3-44> 한-미 FTA 0712호의 건조양파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 HS 번호 | 원산지결정기준 |
|---------------|--|
| 0701호 - 0714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701호 내지 0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 change to heading 07.01 through 07.14 from any other chapter |

- 중국에서 수입한 신선양파(HS 0703)을 한국에서 건조한 양파(HS 0712)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C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그림 3-33])

[그림 3-33] 한-미 FTA 건조양파(HS 0712) 원산지 판정



자료 : 김석오(2023), 전계자료.

3)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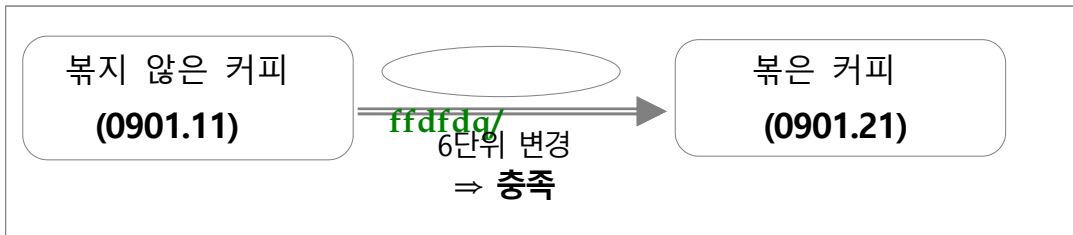
- 6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제품의 최종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역외산 재료의 세번과 최종제품의 6단위 세번이 모두 변경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임. 농식품의 세번변경기준 중 CTSH 유형이 5.1%로 가장 적게 활용되고 있음. 그 이유는 농식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유지하려는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 한-미 FTA의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르면 볶은 커피는 CTSH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볶지 않은 생두(HS 0901.11)를 콜롬비아에서 수입한 후 로스팅(roasting) 공정을 거쳐 HS 0901.21에 분류되는 볶은 커피로 가공한 경우 6단위 세번이 변경이 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게 됨.(<표 3-45>)

<표 3-45> 한-인도 CEPA 가공식품의 원산지기준

| HS 번호 | 원산지결정기준 |
|-----------------------|---|
| 0901.21 카페인 미제거 커피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 change to subheading 0901.21 from any other subheading |

[그림 3-34] 볶은 커피(HS 0901.21) 한-미 FTA 원산지 판정



자료: 이영달(2017), 전게서. p.355.

- 한편, 카페인을 제거한 볶은 커피(HS 0901.22)의 경우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0901.2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901.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표 3-46>).

<표 3-46> 카페인을 제거한 볶은 커피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

| HS 번호 | 원산지결정기준 |
|-----------------------|--|
| 0901.22 카페인 제거한 커피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0901.2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901.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 change to subheading 0901.22 from any other sub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 0901.21. |

- CTSH 기준을 적용하면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카페인을 미제거한 볶은 커피(HS 0901.21)에서 카페인만 제거하면 6단위 세번이 변경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는 충분한 생산공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임. 이와 같이 품목별 세번변경기준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세번의 재료는 역내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라. 협정별 세번변경기준 적용 예해

- 한국의 K식품기업은 국내 공장에서 양념소스(HS 2103.90)를 제조하여 중국, 미국, EU 시장에 수출할 계획임. 각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표 3-47>과 같음.

<표 3-47> 양념소스의 주요 협정별 원산지기준

| 품목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양념소스 HS 2103.90 | 한-중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 한-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될 것 |
| | 한-EU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될 것 |

| 구분 | 품명 | HS | 원산지 | 가격(원) |
|-----|------|-----------|-----|-------|
| 원재료 | 간장 | 제2103.10호 | 태국 | 200 |
| | 물엿 | 제1702.90호 | 한국 | 300 |
| | 시즈닝 | 제2103.90호 | 베트남 | 100 |
| | 변성전분 | 제3505.10호 | 한국 | 400 |

- K식품기업은 양념소스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태국, 베트남, 한국에서 조달하며, 각 원재료별 품명, HS코드, 원산지는 위 <표 3-47>의 내용과 같다고 전제함. 이 양념소스가 한-중 FTA, 한-미 FTA 및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한-중 FTA와 한-미 FTA에 따른 양념소스의 원산지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이 적용됨. 양념소스의 원재료 중 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수입한 간장(HS 2103.10)과 시즈닝(HS 2103.90)이 양념소스(HS 2103.90)의 세번과 동일한 4단위 세번으로 분류되므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한편, 한-EU FTA 원산지기준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일한 4단위 세번에 분류되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불인정공정 이상의 충분한 생산 공정을 거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므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양한 소스를 사용하여 특정한 맛을 내기 위한 생산공정은 한-EU FTA 원산지규정상의 불충분공정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¹³⁰⁾ 그러므로 위 양념소스를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FTA 관세특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EU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관세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마. 세번변경기준의 종류별 해석기준

- 세번변경기준의 유형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6단위 세번변경기준은 각 협정별로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세번변경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적용되고 있음.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표 3-48>)

<표 3-48> 세번변경기준의 종류별 해석

| 구분 | 해석 |
|----------|--|
| 2단위 세번변경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해석] 2단위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 |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의 것은 제 |

130)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제1항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 | |
|---------------------|--|
| | <p>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해석] 2단위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함. 단, 괄호 안의 제외되는 세번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해야 함</p> |
| <p>4단위 세번변경</p> | <p>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해석] 2단위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함. 단, 제3류의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동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원산지가 인정됨</p> |
| | <p>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석] 4단위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 제3701호부터 제3703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석] 제3701호부터 제3703호의 비원산지재료를 제외한 4단위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 제3701호부터 제3703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만을 사용해야 함.</p> |
| | <p>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해석] 괄호 안의 제외되는 세번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 받을 수 있음.</p> |
| | <p>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해석] 제12류의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동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음</p> |
| | <p>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해석]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완전생산품이거나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음.</p> |
| | <p>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한다.</p> |

| | |
|----------|--|
| | <p>[해석]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 중 하나인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원산지가 인정됨.</p> |
| 6단위 세번변경 |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p> <p>[해석] 6단위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p> |
| |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2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p>[해석] 제2711.21호의 비원산지재료를 제외한 6단위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p> |
| |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유효 성분이 전 중량의 50%이상인 원산지물품인 경우에 한정한다.</p> <p>[해석] 6단위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유효성분의 50%이상은 원산지물품을 사용해야 원산지 인정</p> |
| | <p>제7304.4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p> <p>[해석] 제7304.49호의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원산지 인정</p> |
| | <p>제7325.10호부터 제7326.2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p> <p>[해석] 제7325.10호 내지 제7326.20호의 비원산지재료를 제외한 6단위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원산지 인정</p> |
| | <p>같은 소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p> <p>[해석] 6단위 세번은 동일하나 물품이 상이한 비원산지재료 또는 4단위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되어야 원산지 인정</p> |
| | <p>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아세안 FTA 제8517.70호, 제8523.52호, 제8529.90호)</p> <p>[해석] 모든 비원산지재료 사용이 가능하며, 역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면 원산지 인정</p> |

자료: 이영달(2017), 전게서. pp.358-359.

4. 부가가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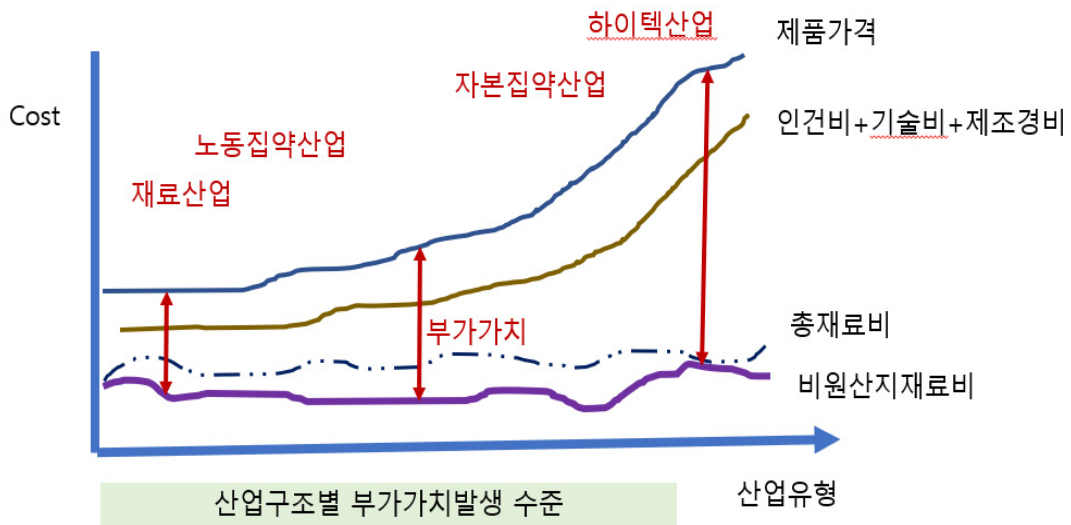
가. 부가가치 기준의 의의

- 부가가치기준(Value Contents Criterion)은 불완전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한 종류로써 해당 물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함.¹³¹⁾ 이는 역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충분 가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의 수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20~80%까지 다양하게 규정됨.
-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생산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품목별로 요구되는 부가가치 비율, 부가가치비율 계산공식, 부가가치비율 계산을 위한 상품 및 재료가격의 기준은 각 협정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각종 재료의 가치나 제조경비의 조작을 통해 부가가치비율을 왜곡할 수 있으며, 원재료의 가격등락, 환율의 변동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이와 연동하여 제품의 원산지 지위도 변동될 수 있음.¹³²⁾
- 부가가치는 산업구조에 따라 그 폭이 달라짐. 수입재료에 의존하는 석유·화학·철강 등 재료산업의 경우 인건비 보다 재료비의 비중이 크므로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음. 반면 전기전차·반도체·IT 등 인건비와 기술비의 비중이 높은 하이텍 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남.([그림 3-35])

131) FTA관세특례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제1항

132)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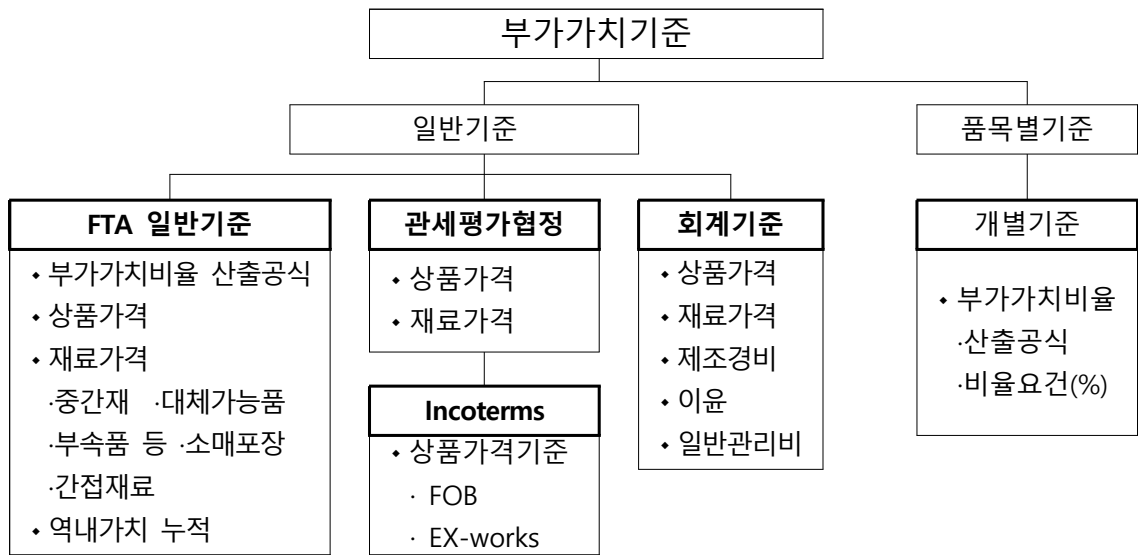
[그림 3-35] 산업유형별 부가가치 발생 수준



자료 : 김석오(2021), "원산지결정기준 이해", 관세인재개발원 강의교재.

- 이와 같이 부가가치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쉽게 연동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고 이를 증명·확인하는 과정에서 세관당국과 무역업체 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실무적으로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많은 재료 또는 부품의 소요량과 가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원가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회계기준도 나라마다 달라 부가가치기준 적용상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협정에서는 재료비에 포함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 제조경비·이윤 및 일반경비 등의 계상기준은 관세평가협정, 인코텀즈 및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림 3-36)

[그림 3-36] 부가가치기준 구조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140.

-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을 보면 한-인도 CEPA 및 한-아세안 FTA에서 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기준을 다수 적용하고 있음. 특히, 한-인도 CEPA에서는 제19류에 분류되는 곡물제품, 제20류의 김치 등 채소조제품 및 제21류에 분류되는 각종 조제식료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 동시 충족요건을 규정하고 있음.<표 3-49>

<표 3-49> 한-인도 CEPA 가공식품의 원산지기준

| HS 코드 | 한-인도 CEPA 품목별 원산지기준 |
|------------------------------|---|
| 1902.11-1905.20 곡물가공제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11호부터 제190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2005.90-2006.00 채소·과일가공식품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5.90호부터제2006.0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발생이 40퍼센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2101.11-2106.10 조제식료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1.11호부터 제2106.1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발생이 40퍼센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자료: 한-인도 CEPA 품목별 원산지기준.

- 한-아세안 FTA에서는 커피제품에 대해서는 45%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김치에 대해서는 60%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음.<표 3-50>

<표 3-50> 한-아세안 FTA 커피제품과 김치의 원산지기준

| | | | | |
|-----|----|---------|----------------------|---|
| | | 0901.1 |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182 | | 0901.11 |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 183 | | 0901.12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역내가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일 것 |
| | | 0901.2 |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184 | 커피 | 0901.21 |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역내가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일 것 |
| 185 | | 0901.22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역내가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일 것 |
| 186 | | 0901.90 | -- 기타 | 역내가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일 것 |
| 291 | 김치 | 2005.99 | -- 기타 | 한국의HS 제2005.99.1000호에 대해서는: 역내가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역내가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에 한한다. |

자료: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나. 역내부가가치비율 산출방식

-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에서 부가가치 계산방식은 일반적으로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RVC법(regional value contents)과 역외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MC법(import contents)으로 구분됨.
- RVC의 계산방식은 공제법(build-down method), 집적법(build-up method), 순원가법(net cost method)으로 구분되며, 각 협정별로 위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거나 선택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미주지역

과 아시아 지역과의 FTA는 주로 공제법과 집적법을 사용하고, 유럽 지역은 MC법을 사용하고 있음. 국가별로 부가가치비율 계산 공식 사용 유형을 미주, 유럽, 중동 및 아시아로 구분해 보면 <표 3-51>과 같음.

<표 3-51> 협정별 부가가치 계산공식

| 지역 | 미주형 | | | 유럽 | 중동 | 아시아 | |
|-------|------------------------|----------------|------------------------|--------------------------|------|---|----------------|
| 산출 공식 |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 법 | 공제법 집적법 | MC법 순원가 법 집적법 | MC법 | MC법 | 공제법 집적법 | 공제법 |
| 협정 | 미국 콜롬비아 | 칠레 페루 중미 | 캐나다 | EFTA EU 튀르키예 영국 | 이스라엘 | 아세안,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인도,중국, 싱가포르 |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142.

① 공제법(build-down method)

- 공제법은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가치를 역내가치로 간주하는 방식임. 원산지재료비의 비율이 낮으나 가공비 비율이 높은 기업과 산업에 유리할 수 있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임.

$$\text{부가가치비율 (RVC)} = \frac{\text{상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상품가격}} \times 100$$

② 집적법(build-up method)

- 집적법은 생산자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비가 상품의 수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임. 투입 원재료 중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할 수 있음.

$$\text{부가가치비율 (RVC)} = \frac{\text{원산지재료비(VOM)}}{\text{상품가격}} \times 100$$

③ 순원가법(net cost method)

- 순원가법은 공제법의 일종으로 순원가 기준의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가치를 역내가치로 간주하는 방식임. 순원가(Net cost)는 총비용에서 판촉비, 마케팅비, 판매후서비스비(A/S), 로열티, 운송·포장 관련 비용,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것을 말함.

$$\text{부가가치비율 (RVC)} = \frac{\text{상품가격(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순원가)}} \times 100$$

- 순원가법은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와의 FTA에서 자동차 및 일부 자동차 부품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음.¹³³⁾ 다만, 캐나다의 순원가 산출방식은 미국 및 콜롬비아 협정과는 달리 아래 공식과 같이 비원산지재료비에서 순원가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함.¹³⁴⁾

$$\text{부가가치비율 (RVC)}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상품가격(거래가격, 공장도가격 또는 순원가)}} \times 100$$

④ MC법(import contents method)

- MC법은 수출제품의 공장도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MC가 일정비율 이하일 때 원산지를 인정함.¹³⁵⁾

$$\text{부가가치비율 (MC)}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상품가격(공장도가격)}} \times 100$$

133) 한-미 FTA 제6.2.3조, 한-캐 FTA 제3.4.4조, 한-콜 FTA 제3.3.4조

134) 한-캐나다 FTA 제3.4.2조,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또는 그 상품의 순원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135) 한-EFTA FTA 및 한-EU FTA에서는 부가가치 계산 방식을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함.

⑤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비교

-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비율은 협정 및 품목에 따라 충족요구 비율이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음.<표 3-52> RVC는 부가가치비율이 일정 %이상 일 때 원산지를 인정하고, MC는 일정 %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임.

<표 3-52> 주요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비교

| 구 분 | 싱가포르 | 인도 | 칠레 | ASEAN | 미국 | EFTA | EU |
|--------------|----------------|----------------|----------------|----------------|-----------------|----------------|----------------|
| 부가가치 요건 | RC (45~55%) | RC (25~40%) | RC (45~80%) | RC (35~60%) | RC (35~60%) | MC (30~60%) | MC (20~50%) |
| 산출공식 | 공제법 | 공제법 | 공제/집적법 | 공제법/집적 법 | 공제/집적법/ 순원가법 | MC | MC |
| 상품가격 계상기준 | 과세가격 | FOB | 조정가격 | FOB | 조정가치 | EX-works | EX-works |

자료: 각 협정문을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다. 상품가격 계상기준

-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분모 값인 상품가격이 결정되어야 함. 그런데 상품가격은 협정에 따라 공장도 기준가격(Ex-works), FOB 기준가격, 조정가치(Adjusted Value)¹³⁶⁾ 또는 과세가격(customs value) 등 다양한 기준가격이 사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유럽지역 FTA에서는 공장도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아시아 지역 FTA에서는 FOB 기준가격, 미국과의 FTA에서는 FOB 가격 기반의 조정가치(adjusted value)를 적용함.<표 3-53>

136) 조정가치라 함은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그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부과금 또는 경비를 제외하기 위하여 조정된 가치를 말한다. (한-미 FTA 4.1조)

<표 3-53> 주요 협정별 상품가격 계상기준

| FTA | 기준가격 | 공제요소 | 협정문근거 |
|------------|-------------|---------|--------|
| 칠레 | 과세가격(실제지급액) | 국제 운송비용 | 제4.1조 |
| 미국 | 조정가격(실제지급액) | 국제 운송비용 | 제6.22조 |
| 싱가포르 | 과세가격(실제지급액) | - | 제4.1조 |
| EFTA·EU·영국 | 공장도가격 | 환급 내국세 | 제1조 |
| 아세안 | FOB | - | 제1조 |
| 인도 | FOB | - | 제3.4조 |

자료: 각 협정문을 참조하여 연구자 작성

- 부가가치비율 산출을 위한 제품의 기준가격은 EFTA, EU, 영국, 튀르키예, 이스라엘과의 FTA를 제외하곤 FOB 가격에 기초하고 있음. 부가가치 산정 상품의 가격(FOB)의 단계별 원가구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3-37] 수출제품의 원가구성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 150.

- FOB 기준가격에서 부가가치 계산시 역내산재료비+역외산재료비[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원가]+제조간접비[제조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총원가]+목표이익[공장도가격(Ex-Work)]+국내운송비 및 기타경비[FOB]가 포함됨.

- EFTA, EU, 영국, 튀르키예 및 이스라엘과의 FTA에서는 제품기준가격으로 공장도 기준가격이 사용됨에 따라 위의 FOB 가격에서 국내운송비 및 기타경비가 제외됨.
- 한-미 FTA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순원가 방식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순원가는 총원가에서 로열티, 운송비, 포장비, 비허용이자, AS 비용, 마케팅 비용이 제외된 가격임.¹³⁷⁾

라. 재료비 가격

- 재료는 통상 부품이나 원료와 같이 상품의 생산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직접재료를 말함. 촉매나 윤활유와 같은 간접재료 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제조간접비용에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재료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s : OM)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재료(non-originating materials : NOM)를 말함. 비원산지재료에는 원산지를 알 수 없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없는 ‘원산지 미상재료’도 포함됨.
- 재료비를 규정하는 방식은 매입경로별로 규정하는 방식과 재료의 원산지 지위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매입 경로별 재료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재료, 국내에서 매입하는 재료, 자체 생산시설에서 자가생산하는 재료가 있음. 각 재료별로 원산지재료인지 비원산지재료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함.

① 매입경로별 재료비 계상

- 수입재료의 기준가격은 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칠레 및 미국과의 FTA는 관세평가협정상 실제지급가격에서 국제운송비를 공제한 가격인

137) 한-미 FTA 제6.22조(정의) : “원가라 함은 총비용에서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고,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국제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임. 호주·콜롬비아·뉴질랜드와의 FTA는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임.

- 국내에서 구입한 재료의 가격도 협정마다 동일하지는 않음. 칠레·미국·호주·콜롬비아·뉴질랜드와의 FTA의 경우 실제지급가격으로 하고, 한-싱가포르 FTA는 매입제비용을 포함함. 매입제비용을 포함할 경우 자사로 운반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국내재료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자체 생산시설에서 자가생산한 재료(중간재) 또는 외국이나 국내에서 무료·할인가격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생산 제비용에 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기준으로 함.(<표 3-54>)

<표 3-54> 매입경로별 재료비 계상기준

| 협정 | 수입재료 | 국내조달재료 | 자가생산재료 무상(할인)재료 |
|------------|---|----------------------------------|--------------------|
| 한-칠(제4.1조) | 조정가격(실제지급 가격 - 모든 국제운송비 ¹³⁸⁾) | 실제지급가격 | 생산제비용, 이윤 가산 |
| 한-미(제6.3조) | | | |
| 한-싱(제4.1조) | 실제지급가격+국제 운송비 | 실제지급가격+매 입제비용 ¹³⁹⁾ | |
| 한-호(제3.4조) | CIF | 실제지급가격 | |
| 한-콜(제3.4조) | | 실제지급가격 | |
| 한-뉴(제3.5조) | | 거래가격 |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 160.

② 원산지재료의 가산요소

- 원산지재료의 가산요소는 국내외 운송비, 환급 받은 것을 제외한 조세, 통관수수료, 재활용분을 제외한 폐기물 가격임. 즉 자사가 처분 가능한 상태로 취득하는데까지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138) 국제운송시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서비스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

139)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외 비용

- 즉, 수입한 재료, 국내에서 구입한 재료 또는 자가생산한 원재료가 원산지재료인 경우 매입 경로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위 가산요소를 더한 가격이 원산지재료비로 조정됨. 주요 협정별 원산지재료비에 가산하는 요소를 정리하면 <표 3-55>와 같음.

<표 3-55> 원산지재료비 가산요소

| FTA | 가 산 요 소 | | | |
|------------|----------------|----------------|-----------|---------------------------------------|
| 한-칠(제4.1조) | 운송비 (국제+국내) | 조세 (환급액 제외) | 통관 수수료 | 폐기물비용 (재활용분 제외) * 한-호는 규정 없음 |
| 한-미(제6.4조) | | | | |
| 한-호(제3.4조) | | | | |
| 한-뉴(제3.5조) | | | | |
| 한-콜(제3.4조) | | | | |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 161.

③ 비원산지재료의 공제요소

- 비원산지재료의 획득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외 운송비, 조세¹⁴⁰⁾, 통관수수료, 폐기물 비용 및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의 가치¹⁴¹⁾는 공제될 수 있음. 다만, 협정에 따라 공제요소의 범위는 차이가 있음. (<표 3-56>)
-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가급적 적게 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유리하게 하려는 정책적 취지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140) 부가가치세는 통상 환급을 받게 되고, 관세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를 공제할 수 없고, 비원산지재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141) 비원산지물품을 수입하여 원산지재료와 결합하여 생산한 '재료'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그 재료비 전체를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하고(roll up),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재료비 전체를 비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roll down), 비원산지재료비에 포함된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공제하여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불완전 roll down'이 인정된다.

<표 3-56> 비원산지재료비 공제요소

| FTA | 공 제 요 소 | | | | |
|--------------|----------------|-------------------|-----------|---------------------------------------|--------------------------------|
| 한-칠(제4.1조) | 운송비 (국제+국내) | 조세 (환급액 제외) | 통관 수수료 | 폐기물비용 (재활용분 제외) * 한-호는 규정 없음 | 비원산지재료 에 포함된 원산지재료 가치 |
| 한-미(제6.4조) | | | | | |
| 한-호(제3.4조) | | | | | |
| 한-뉴(제3.5조) | | | | | |
| 한-콜(제3.4조) | | | | | |
| 한-아세안(제3.4조) | 운송비 (국내) | |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161.

마. 수출식품 부가가치기준 적용 예해

- 최근 전세계적인 한류 바람으로 K-푸드에 대한 해외소비자들의 관심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음. 이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님.
- 국내의 한 식품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오메기떡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려고 함. 오메기떡의 HS 코드는 제1901.90호이며, 동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부가가치(RVC) 40% 기준임.
- 오메기떡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는 떡반죽, 팥앙금, 빵가루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투입 재료별 단가는 아래 <표 3-57>와 같음.

〈표 3-57〉 수출식품 부가가치기준 적용 예해

| 수출품목 |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
| 오메기떡 HS 제1901.90호 | | 한-베트남 | CC 또는 역내부가가치(공제법)40% | | |
| 구분 | 품명 | HS | 원산지 | 가격(원) | |
| 투입원재료 | 소매포장봉지 | 제3923.10호 | 미상 | 100 | |
| | 떡반죽 | 제1901.90호 | 태국 | 3,000 | |
| | 가당팥앙금 | 제2005.51호 | 중국 | 1,100 | |
| | 정제수 | 제2201.90호 | 한국 | 200 | |
| | 빵가루 | 제1905.90호 | 미국 | 1,500 | |
| 노무비 및 경비 | | | | 5,000 | |
| 제조이윤 | | | | 2,000 | |
| 공장도 가격 | | | | 12,900 | |
| FOB가격(조정가치) | | | | 15,000 | |
| 역내산 재료비 | | | | 200 | |
| 역외산 재료비 | | | | 5,700 | |

자료: 김석오(2023), 전계자료.

- 동 제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해 보면 우선 CC 기준은 충족할 수 없음. 원재료 중 태국산 떡반죽의 2단위 세번(HS 1901.90)이 완제품인 오메기의 2단위 세번(HS 1901.90)과 동일하기 때문임. 따라서 대체기준인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해야함.
- 오메기떡 제조에 투입된 역외산 재료비는 5,700원, 제품의 수출가격(FOB)는 15,000원이므로 공제법 기준으로 RVC를 계산해 보면, RVC는 62%가 산출됨. RVC 40% 이상일 경우 원산지기준 충족이므로 본 제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판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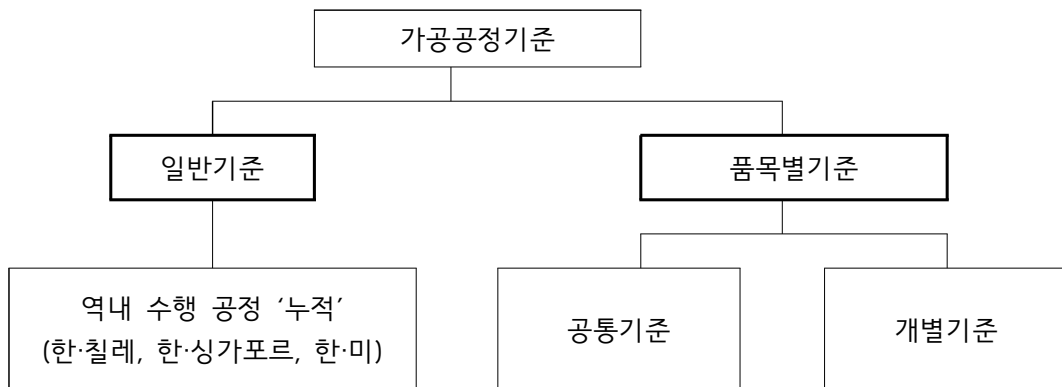
| | | |
|-----------------|---|---|
| 부가가치비율 (RVC) | = | $\frac{\text{상품가격}(15,000) - \text{비원산지재료비}(5,700)}{\text{상품가격}(15,000)} \times 100 = 62\%$ |
|-----------------|---|---|

5. 가공공정기준

가. 가공공정기준 개념

- 가공공정기준은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¹⁴²⁾ 주로 어류·석유·석유화학·플라스틱 및 섬유제품에서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임
- 가공공정기준은 개별기준으로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협정에 따라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기준이나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동시에 충족토록 하는 조합기준 방식이 있음. 또한 품목의 부(Section), 류(Chapter) 등에 주(Note)로 일괄기준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그림 3-38])

[그림 3-38] 가공공정기준의 유형



자료: 이영달(2017), 전개서. p.466

142) FTA관세특례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제1항

나. 어류·식물성 생산품 가공공정기준

1) 어류

- 한-미 FTA는 어류(제3류)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두면서 또한 제3류 ‘주(Note)’에서 공통기준으로 “비원산지 치어 또는 유생으로부터 양식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행 무척추동물”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³⁾

제3류 주(Note)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치어라 함은 후기자어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 ‘양식’이라는 생산공정을 거친 어류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역외산 치어를 역내에서 양식한 경우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2) 식물성 생산품

- 한-미 FTA는 제2부 식물성 생산품에 대하여 개별기준으로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하지만 제2부 ‘주’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인경·근경·삽수·접목, 싹, 봉오리 또는 기타 산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식물성 생산품은 그 재배한 나라의 원산지물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⁴⁴⁾

제2부(제6류~24류) 주(Note)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된다.

143)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3류 주(Note)

144)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2부 주(Note)

- 역외산 씨앗 등을 심어 역내에서 재배한 경우 세번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재배’라는 공정기준의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석유제품 가공공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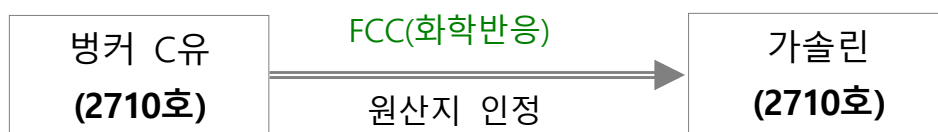
- 미국, 캐나다, 페루,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및 이스라엘과의 FTA에서는 제27류의 석유제품에 대해, 품목별 세번변경기준 이외에 화학반응 공정 및 석유정제 공정과 같은 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27류 주(Note)에서 제2710호의 물품의 경우 상압증류 또는 감압증류 공정을 거쳐 생산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제27류 주(Note)
 제2710호의 목적 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로 간주한다.

1.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되고 증기를 냉각하면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2.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 예컨대, 벙커C유(HS 2710)를 수입하여 가솔린(HS 2710)을 생산한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지 않지만 상압 또는 감압 증류공정을 거쳐 가솔린을 생산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그림 3-39])

[그림 3-39] 가솔린 제품의 가공공정기준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126.

4) 화학제품 가공공정기준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6부(화학공업제품) 및 제7부(프라스틱제품, 고무제품) 주(Note)에서 화학반응, 정제, 혼합, 입자 크기의 변환, 표준물질, 이성체분리, 분리금지 등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음.<표 3-58>
- 위의 주규정은 품목별로 정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 협정에서 정한 특정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라는 의미임.

<표 3-58>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6부 주

주 1 : 따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제6부의 규칙 제1항 내지 규칙 제7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로 간주한다.

주 2 : 주1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이 부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 적용이 되거나 부가가치 요건에 충족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규칙 1 : 화학 반응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물품(제3823호의 것을 제외한다)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주: 이 부의 목적 상, 화학 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에서 원자의 입체자리 변경에 따라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 포함)을 말한다.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물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 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2.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규칙 2 : 정제

정제 조건에 충족하는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정제는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

1.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 제거된 경우

2.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의 물품에 알맞게 된 경우:

- 가. 의료용품, 의약품, 화장품, 수의약, 또는 식품 등급 물질
- 나. 분석, 진단,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 다. 미량원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 라. 특수 광학용
- 마.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 바. 생명공학용
- 사.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담체
- 아. 핵 등급용

규칙 3 : 혼합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 내지 제38류의 물품(제3808호는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계획적이고 비율적으로 관리되는 혼합 또는 융합(분산을 포함한다)의 결과로 물품의 목적 또는 용도에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제품이 제조되어 원료 물질과 다르게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로 간주한다.

규칙 4 : 입자 크기의 변화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의 물품은 계획적이고 조절된 물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수지 용해와 다음에 수반되는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의 결과로 원료와 다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진 물품으로 되어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로 간주된다.

규칙 5 : 표준 물질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표준 물질의 생산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이 표시된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를 말한다.

규칙 6 : 이성체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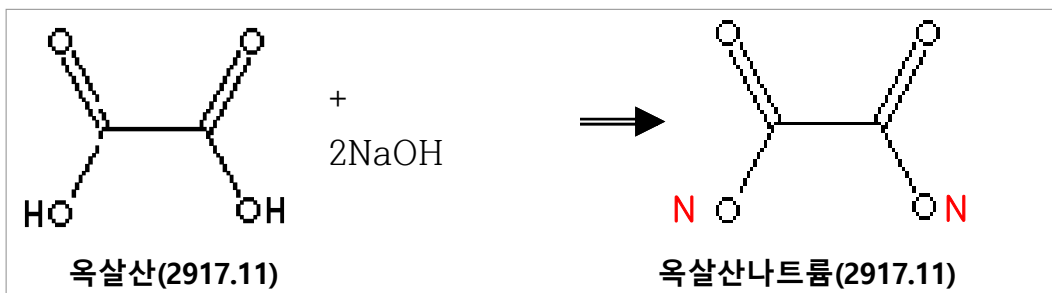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협정의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역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규칙 7 : 분리 금지

제28류 내지 38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질로 분리된 결과로서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품목분류 변경된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 공정의 적용사례로 옥살산나트륨을 들 수 있음. 외국에서 수입한 옥살산(HS 2917.11)은 화학반응을 거쳐 옥살산나트륨(HS 2917.11)으로 변함. 이 경우 세번은 변경되지 않지만 화학반응 공정을 거친 것이므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임.([그림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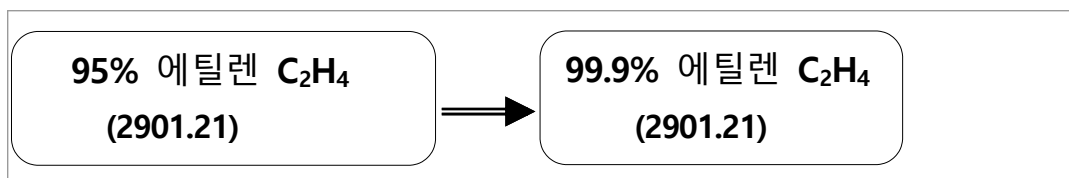
[그림 3-40] 옥살산나트륨의 화학반응 공정 적용사례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129.

- 정제공정(Purification)의 적용사례로 에틸렌을 들 수 있음. 순도 95%의 에틸렌을 수입하여 정제공정을 거쳐 순도 99.9%의 에틸렌을 제조한 경우 세번은 변경되지 않음. 하지만 정제공정을 거친 것으로 원산지를 인정함.([그림 3-41])

[그림 3-41] 99.9% 순도의 에틸렌 정제공정기준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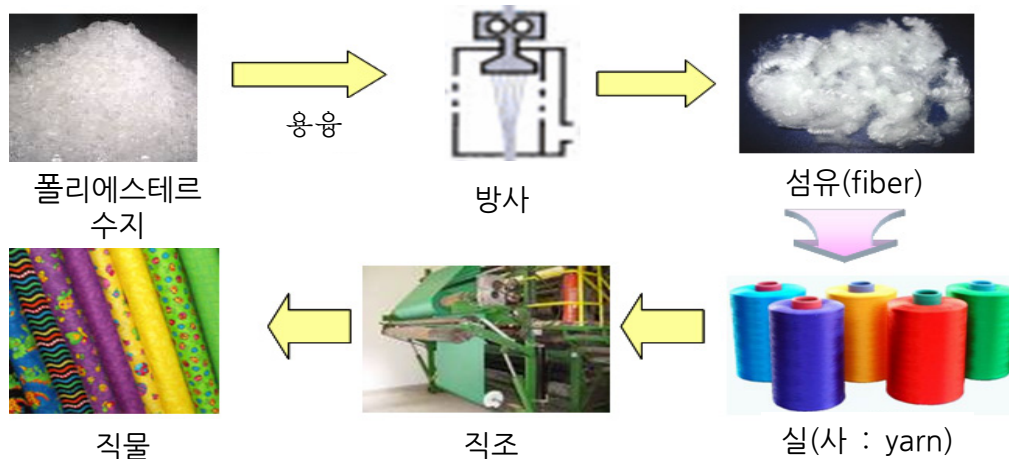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129.

5) 섬유제품의 가공공정기준

- 일반적으로 섬유제품은 제50류~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하며, 기타 섬유제품으로는 제42류 가방류, 제7019호 유리섬류, 제94류 침구류 등이 있음.
- 섬유제품은 폴리에스테르 수지원료에서 최종제품이 제조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생산과정을 거치게 됨. 원료를 섬유(fibers) 상태로 만들어 방적공정을 거치면 실(Yarn)이 되고, 제직공정을 거치면 직물(woven fabrics) 또는 편물(knit fabrics)이 됨.([그림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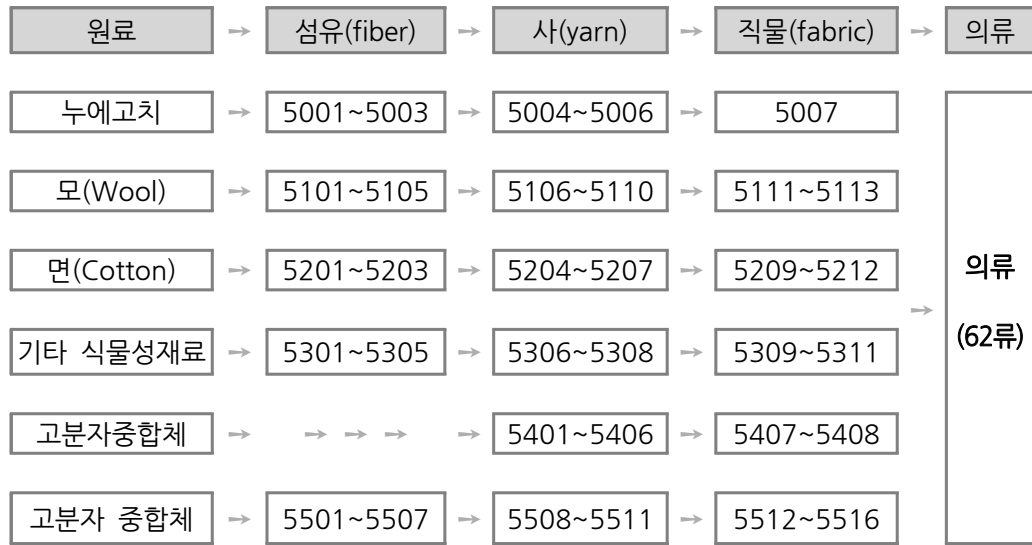
[그림 3-42] 섬유의 제조과정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계서. p.130.

- 직물을 용도에 따라 크기와 형태로 자르는 재단공정(cutting)을 거쳐 실로 박음질하는 봉제공정(sewing)을 마치면 의류가 생산됨. 이와 같이 섬유제품은 특정 공정을 거칠 때마다 물품의 실질이 변화되므로 제조공정을 기초로 원산지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섬유·의류제품의 품목분류체계는 가공도에 따른 제품의 변화가 반영됨. 제50류~제55류의 분류체계는 **섬유** → **사** → **직물**의 가공도 순으로 배치되어 있음. 직물은 재단·봉제가공을 거쳐 제62류의 의류가 되며, 실은 편직공정을 거쳐 제60류로, 그 후 재단·봉제 공정을 거쳐 제61류에 분류되므로 공정이 수행되면서 세번이 변경됨.([그림 3-43])

[그림 3-43] 섬유·의류의 HS 품목분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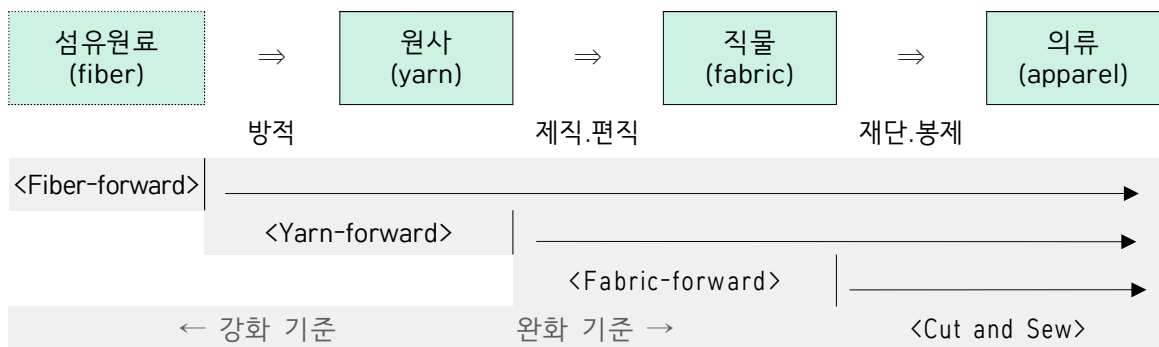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131.

- 각 국가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품목에 비해 매우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적용함. 미국을 비롯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는 직물 및 의류의 원산지기준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적용하고 있음. 의류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실(yarn)을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직물 생산공정, 의류의 재단·봉제공정까지 해당국에서 수행되어야 함.
- EU·튀르키예·영국과의 FTA는 두가지 공정 이상을 수행하는 이중실질변형기준(Double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적용하고 있음. 실의 경우 용융 및 방사과정을 거쳐 섬유 생산 및 방적공정을 거쳐 실을 생산해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음. 직물의 경우 역외산 섬유원료로 실(방적공정)을 만들고 제직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최종제품인 의류를 기준으로 역내에서 섬유원료→원사→직물→의류 등 4단계 생산공정을 모두 거쳐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fiber forward rule(섬유기준)’로서 가장 엄격한 기준임.

- 실→직물→의류 등 3단계 생산공정을 모두 거쳐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yarn-forward-rule(원사기준)’, 직물→의류 등 2단계 생산공정을 거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fabric-forward-rule(직물기준)’이라 함.
- 의류제품의 재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재단(cutting), 봉제(sewing) 또는 편물(knitting)만 거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협정도 있는데, 가장 완화된 기준이라 할 수 있음.([그림 3-44])

[그림 3-44] 섬유산업의 공정단계에 따른 원산지기준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세서. p.132.

- 주요 협정별 섬유제품의 원산지기준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원사기준(yarn forward)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유럽은 2단계 실질변형기준, 아세안은 부가가치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표 3-59>)

<표 3-59> FTA별 섬유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

| 구 분 | 인도 | 싱가포르 | EFTA | ASEAN | 칠레 | 미국 | EU |
|------------------|----------------|-----------|----------|--------------------------|---------------------|-----------------------|----------|
| 직물 (50~60류) | CTH + RVC40% | CTH | 2단계 실질변형 | CTH or 염색/날염 or RVC 40%* | CTH | CC/CTH | 2단계 실질변형 |
| 의류제품 (61~62류) | fabric forward | CC+ 재단/봉제 | 2단계 실질변형 | (CC+ 재단/봉제) or RVC 40%** | CC+ 역내 원단 + 재단/봉제 | CC+ 재단/봉제 + Lining 요건 | 제작기준 |
| 비 고 | - | - | - | - | 의류 위주의 yarn forward | yarn forward 기본원칙 | - |

* 품목번호 제5007호, 제5111호~제5113호, 제5309호~제5311호 해당 물품 한정

** 제62류 중 제6213호, 제6214호 해당 품목은 다른 기준 적용

제5절 원산지결정 보충기준

1. 보충기준의 필요성

- FTA 원산지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또는 충분생산기준이라는 원칙하에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생산공정기준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생산공정의 발전으로 다양한 상품이 출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따라 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쳤음에도 세번변경이 미발생되었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생산의 자동화, 첨단화, 인공지능화에 따라 과거의 원산지기준이 안맞는 경우도 있음.
- 특히, 세번변경기준의 기초가 되는 HS 세번분류체계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가공도를 기준으로 구성되지만 용도, 기능, 재질 또는 통계 등의 목적에 따라 가공도와 관계 없이 배열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세번변경기준이 FTA 활용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부품 또는 중간재를 수입하여 실질적인 변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였다 라도 HS 품목분류 체계상 제품과 부품 또는 중간재가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발생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임.
- 또한 부가가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된 원재료의 범위, 회계기준, 자가생산여부 등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생산기준의 적용을 보완해 주는 보충기준이 필요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협정에서는 상대국 재료를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누적조항,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중간재의 원산지 취급,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취급, 간접재료의 원산지 취급,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포장재료 및 용기, 세트물품, 재수입물품, 제3국전시물품 등의 원산지 취급에 관한 보충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표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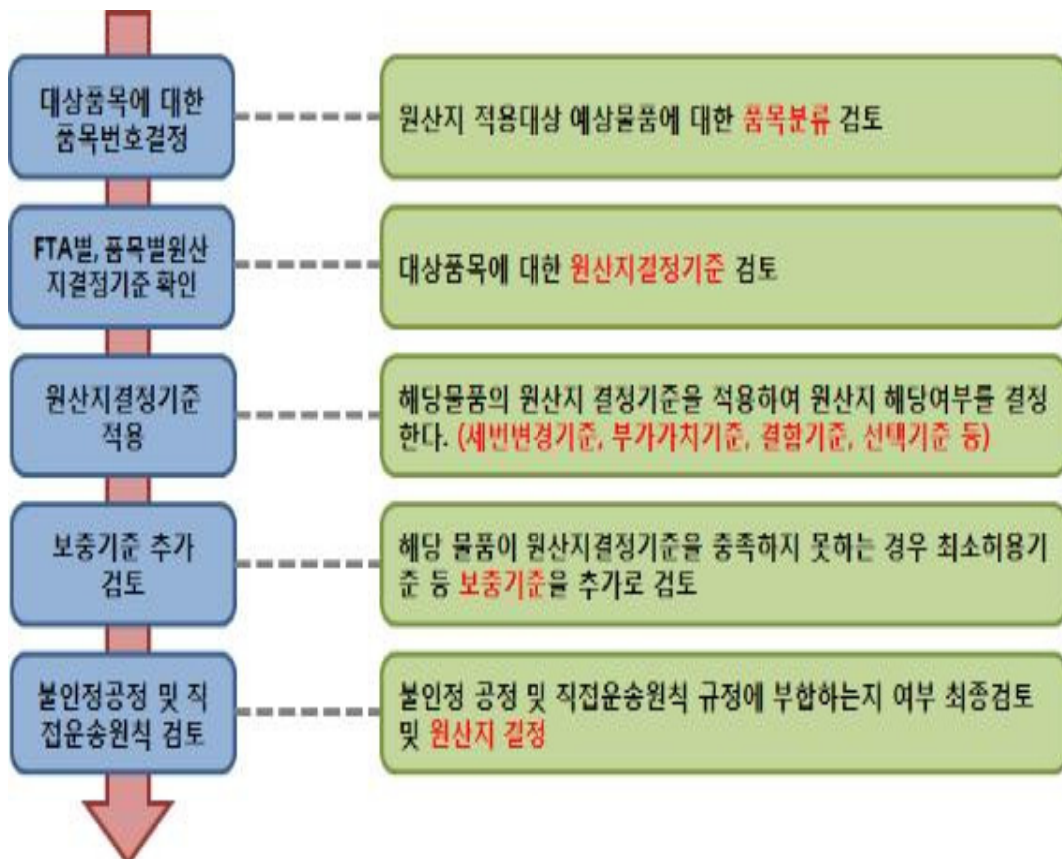
<표 3-60> FTA 협정에서 사용되는 원산지결정 보충기준의 유형

| 특례기준 | 정의 |
|--------------------------------|--|
| 누적 (Acumulation) |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 원산지재료 등을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재료로 간주 하여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Rule (재료누적/공정누적/교차누적) |
| 최소허용수준 (De Minimis) | 역외산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한 경우 세번변경기준 등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원산지 인정 |
| 중간재 (Intermediate Material) |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단계의 부품이 그 자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 중간부품 전체 (비원산지재료 포함)를 원산지재료로 간주하여 최종제품의 역내가치비율 산정 |
| 대체가능물품 (Fungible Goods) |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징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회계적인 재고관리/구분회계 기법(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평균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 간접재료 (Indirect Material) |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한 재료로 일반적으로 상품의 원산지결정시 미고려 |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일반적으로 상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일 경우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예는 원산지/비원산지 고려 |
| 포장재료 및 용기 | 소매용의 경우 상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일 경우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원산지/비원산지 고려 운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결정시 고려하지 아니함 |
| 세트물품 | 일부 협정에서 HS통칙 3의 적용에 따른 세트물품 원산지결정시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비원산지 상품가치가 세트전체 가격에서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세트 전체를 원산지로 인정 |
| 재수입물품 | 일부 협정에서 영역원칙의 예외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재반입된 경우 동 물품이 수출된 상품 과 동일하고,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 인정 (영역 원칙 예외) |
| 전시용품 | 일부 협정에서 운송원칙 예외로 비당사국에서 보세전시 후 반입되는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

자료: 이영달(2023), "FTA 원산지결정기준", 관세인재개발원 강의자료.

- 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의 HS품목번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해야함.
- 이 때 세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충기준을 통해 원산지 인정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최종적으로는 불인정 공정에 저촉하는지 직접운송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모든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판정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3-45] 과 같음.

[그림 3-45]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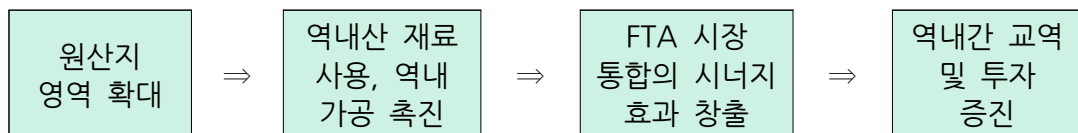
자료: 김석오(2023), "FTA 원산지결정기준", 관세인재개발원 강의자료.

2. 누적기준

가. 누적기준의 의의

- 누적(accumulation)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요소를 자국의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임. 예컨대,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생산 과정에 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한국산 원재료, 즉 역내산 재료로 인정하여 원산지 인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 이와 같이 누적기준은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재료를 생산국의 원산지재료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원산지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와 함께 FTA 체약 당사국 재료의 사용과 역내 가공을 촉진함으로써 FTA 시장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음.([그림 3-46])

[그림 3-46] 원산지 누적의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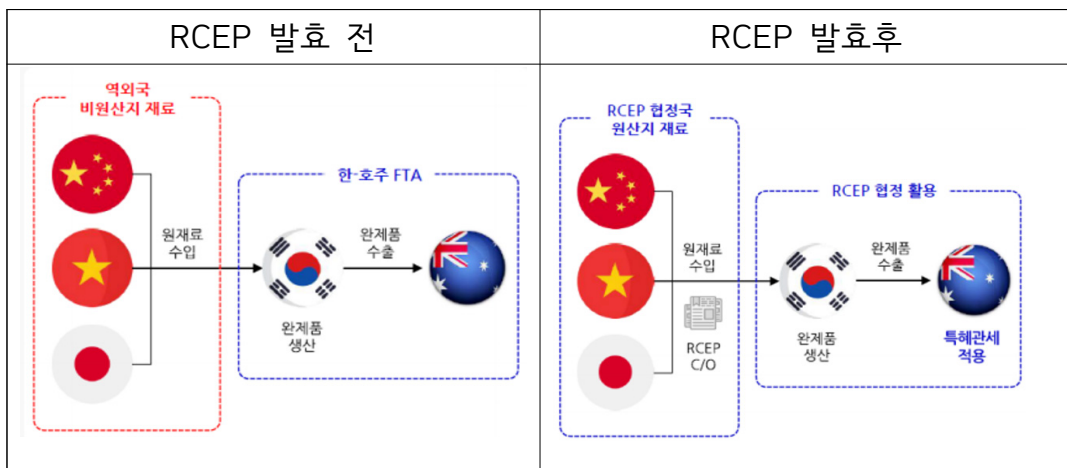
자료 : 이영달(2017), 전게서. p.209.

- 기업들은 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원재료 및 부품 생산이나 특정 공정작업을 해외에 아웃소싱하고 있어 단일 국가 내에서 원산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 변형이나 충분한 공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경우가 빈번함. 이런 경우 원산지 누적조항을 통해 각각의 생산단계에서 투입되는 재료의 부가가치 또는 제품의 공정과정을 누적하여 원산지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¹⁴⁵⁾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는 누적조항을 도입하고 있으며, 아세안, EFTA, RCEP 등 다자간 FTA에서 그 유용성과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음.

145) 이영달(2017), 전게서. p.208.

- 누적기준의 효과가 가장 큰 협정으로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를 예로 들 수 있음. 한-호주 FTA 적용시 중국산, 베트남산, 일본산 원재료는 모두 비원산지재료에 해당하여 수출물품의 역내산 원산지 충족이 어려웠음. 그러나 RCEP 협정을 활용하여 중국산, 베트남산, 일본산 등 RCEP 협정국의 원산지재료에 대해 누적기준을 적용하면 수출제품의 원산지 충족이 용이해짐. 이처럼 수입원재료 사용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누적기준이 역내간 무역을 촉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그림 3-47])

[그림 3-47] RCEP 누적기준의 효과



자료: 김석오(2023), 전개자료

-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재료를 통칭하여 실무상 ‘역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협정 당사국 이외의 비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 물품을 통칭하여 ‘역외산’이라고 함.
- 생산과정에 누적하는 요소는 ‘재료’와 ‘공정’이 있음.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보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¹⁴⁶⁾ 이는 재료누적을 말함. 재료누적은 상대국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므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용이해 짐.

146) 한-미 FTA 제6.5조(누적) 제1항

한-미 FTA 제6.5조(누적)

1.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 공정누적은 역내에서 복수의 생산자에 의해 여러 단계의 생산공정을 거치는 상품에 대해 각 생산단계별 발생한 공정이나 부가가치를 최종제품의 원산지에 누적하는 것임. 한-미 FTA 원산지규정에 따르면,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라는 규정이 있음.¹⁴⁷⁾ 이는 공정누적을 의미함.

한-미 FTA 제6.5조(누적)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6.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 공정누적은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상대국에서 수행된 공정까지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음. 재료누적과 달리 공정누적의 경우 상대국에서 수행된 공정을 무역현장에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는 않음. 생산 기업들은 제조 또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임.¹⁴⁸⁾
- 협정에 따라 한-미 FTA와 같이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을 모두 규정하는 것도 있고, 한-EU FTA와 같이 재료누적만 인정하는 협정도 있음. 미국을 비롯한 미주형 원산지체계를 채택하는 협정은 재료누적과 공정누적 모두 도입하고 있으나, 유럽 및 아시아형 원산지체계를 채택하는 협정은 재료누적만 규정하고 있음.<표 3-61>

147) 한-미 FTA 제6.5조(누적) 제2항

148)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누적을 증빙하기 위해 전단계 생산자가 '국내제조확인서'를 발급하여 다음 공정 생산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은 아니다.

〈표 3-61〉 협정 별 누적기준 유형별 채택 현황

| 협정 | 재료누적 | 공정누적 |
|--|------|------|
|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 ○ | ○ |
| 인도, 아세안, EFTA, EU, 튀르키예,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 | × |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189.

나. 누적의 형태

- 협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누적기준의 형태로는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완전누적(full cumulation), 교차누적(cross cumulation)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양자누적은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할 때 상대국의 원산지재료를 최종제품의 원산지재료에 누적하는 것을 말함.
- 완전누적은 단일의 특혜영역으로 간주되는 복수 국가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협정 당사국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이나 가공을 최종물품의 원산지결정시 고려함. 따라서 추가적인 작업이나 가공을 위해 한쪽 당사국에서 다른쪽 당사국으로 수출시 양자누적과 달리 누적대상 재료나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않아도 됨. 한-아세안 FTA, RCEP, 한-중미 FTA 와 같이 여러 당사국이 참여하는 협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교차누적은 협정 당사국이 아닌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 조건 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함. 한-캐나다 FTA 자동차 생산에 사용된 미국산 부품(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4류)에 대해서만 교차누적을 인정함.¹⁴⁹⁾(〈표 3-62〉)

149) 한-캐나다 FTA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표 3-62> 원산지 누적조항의 유형 및 특징

| 유형 | 특징 | 비고 |
|--------------------------------|---|--------------------|
| 양자누적 (bilateral cumulation) | 상대국 원산지재료를 자국의 것으로 인정 | 모든 FTA 채택 |
| 완전누적 (full cumulation) | 역내국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이나 가공(역내 공정 및 부가가치)을 최종제품에 누적 인정 | 일부 다자협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
| 교차누적 (cross cumulation) | 특정 역외국의 재료를 일정 조건하에 역내산으로 인정 | 한-캐 FTA 자동차 적용 |

자료 : 연구자가 작성.

다. 누적조항 적용 사례

- 한국의 K식품기업은 국내 공장에서 양념소스(HS 2103.90)를 제조하여 베트남 시장에 수출할 계획임.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다음과 같이 CTH 또는 RVC 40% 선택기준임. 베트남의 기본관세는 45%이지만 FTA 특혜관세는 0%임. 양념소스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간장, 물엿, 시즈닝 및 변성전분이고, 수출가격(FOB)은 1,330원이라고 가정함.

<표 3-63> 양념소스 누적조항 적용사례

| 품목 | 협정 | 베트남 관세율 | 원산지결정기준 |
|-------------------|------------|-------------------------|---|
| 양념소스 제2103.90호 | 한-베 FTA | 기본세율 45% FTA 특혜세율 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상대국 내 발생한 부가가치가 40%이상일 것 |

| 구분 | 품명 | HS | 원산지 | 가격(원) |
|---------------|------|-----------|-----|-------|
| 원재료 | 간장 | 제2103.10호 | 베트남 | 200 |
| | 물엿 | 제1702.90호 | 한국 | 100 |
| | 시즈닝 | 제2103.90호 | 중국 | 600 |
| | 변성전분 | 제3505.10호 | 한국 | 200 |
| 노무비 및 경비 | | | | 100 |
| 이윤 | | | | 80 |
| 선적과 관련된 국내운송비 | | | | 50 |
| 수출가격(FOB) | | | | 1,330 |

- 먼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해 보면, 베트남과 중국에서 각각 수입한 간장과 시스닝의 4단위 세번이 양념소스의 4단위 세번과 동일함. 따라서 CTH 기준은 충족하지 못함.
- 대안으로 부가가치기준을 검토해 보면, 베트남산 간장은 누적조항에 따라 한국산 원산지재료로 간주되므로 비원산지재료비에서 제외됨. 다음과 같이 RVC를 계산해 보면 54.9%가 산출되므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함.

$$\text{부가가치비율 (RVC)} = \frac{\text{상품가격}(1,330) - \text{비원산지재료비}(600)}{\text{상품가격}(1,330)} \times 100 = 54.9\%$$

- 누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RVC는 39.8%가 되어 RVC 40% 이상 기준에 미달하므로 원산지기준 불충족 결과가 나오게 됨.

$$\text{부가가치비율 (RVC)} = \frac{\text{상품가격}(1,330) - \text{비원산지재료비}(800)}{\text{상품가격}(1,330)} \times 100 = 39.8\%$$

- 위 적용사례를 통해 누적기준이 FTA 체결당사국간의 원재료 사용촉진과 교역창출을 위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3.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가. 최소허용기준의 의미

- 최소허용기준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혹은 중량)이 미소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 비원산지재료 사용금지 등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임. 이를 미소기준(De Minimis)이라고도 함.

- 세번변경기준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생산물품의 세번과 일정 수준 변경되어야 하는 기준임. 따라서 여러개의 비원산지재료 중 극히 일부라도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게됨.
- 세번변경기준에서는 특정 세번의 재료는 반드시 완전생산재료 또는 원산지재료만을 사용토록 하는 특정 세번 제외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함.
-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극히 일부분의 비원산지재료 사용으로 인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FTA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또한 산업구조 및 원료 수급 상황에 따라 역내에서 모든 원재료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의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이 최소허용기준의 취지라고 할 수 있음.
-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특정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각 협정별로 7~10% 내외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 농업 보호 차원에서 최소허용기준이 제한적으로 사용됨.

나. 최소허용기준의 유형

- 최소허용수준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일반품목, 농수산물, 섬유류 제품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아세안, RCEP, EU 등과의 협정에서는 일반품목군과 농수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함.
- 농수산물은 HS 코드 제1류~제24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하며, 섬유류는 제50류~제63류에 해당하는 품목임. 일반품목군은 농수산물과 섬유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임. 일반품목과 농수산물은 상품의 가격기준으로

8~10% 내외, 섬유류는 중량기준으로 7~10% 범위에서 역외산 재료의 최소허용수준을 규정함.(<표 3-64>)

<표 3-64>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비교

|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RCEP 캄보디아 | 베트남 인니 | 인도 | EFTA | 미국 | EU/ 터키/ 영국 | 페루 | 호주 | 캐나다 | 콜롬비아 | 중국 중미 | 뉴질랜드 | 이스라엘 |
|-------|-------|-----------------------|------------------------------------|--------|----------|-------------|-------------------------------|------------|----------------|-----------------------|-----------------------|-------------------------------|------------------------|-----------------------|-----------------------------------|
| 가격 기준 | 일반 품목 | 8% | 10% | | | 10% | 10% | 10% | | 10% | 10% | 10% | 10% | 10% | 10% |
| | 농수산물 |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 가능 | 1~14류 적용 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 가능 | 10% | 10% | 1~14류 적용 제외 |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 가능 (일부 제외) | 10% | 1~14류 적용 제외 | 1~14류 CTSH 충족하면 적용 가능 | 1~21류 CTSH 충족하면 적용 가능 |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 가능 (일부 제외) | 15~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 가능 | 1~14류 단순 혼합 이상인 경우 적용 | 1~14류 적용 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
| | 기준 가격 | 조정 가격 | 관세 가격 | FOB | FOB | FOB | EX-Works | 조정 가치 | EX-Works | FOB | 조정 가치 | 공장 도가 격 | 조정 가치 | FOB | FOB |
| 중량 기준 | 섬유 | 8% | 8% | 10% | 10% (가격) | 7% | 10% | 7% | 8~30% 일부 가격 기준 | 10% | 10% | 10% | 10% | 10% (가격) | 10% (가격) |

자료: 김석오(2023), 전계자료.

- 역외산 재료의 최소허용수준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은 협정에 따라 수출제품의 공장도 기준가격(Ex-Works), 본선인도가격(FOB) 또는 조정가격(Adjusted value) 등을 사용함.
- 각 협정에서 사용하는 농수산물의 최소허용기준을 분석해 보면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됨.(<표 3-65>)

<표 3-65> 농수산물의 최소허용기준 유형

| 유형 | 농수산물의 최소허용기준 | 협정 |
|-----|-------------------------------|--|
| 유형1 | 10% 이하 | 미, 아세안, RCEP, 캄, 인니, 베, EU, 튀르키예, UK, 뉴질랜드 |
| 유형2 | 1-24류 CTSH 조건부 10% (칠 8%) | 칠, EFTA, 콜롬비아 |
| 유형3 | 1-21류 CTSH 조건부 10% | 캐 |
| 유형4 | 1-14류 CTSH 조건부 10% 15-24류 10% | 호주 |

| | | |
|-----|---------------------------------------|----------|
| 유형5 | 1-14류 적용제외, 15-24류 10% | 인도, 페루 |
| 유형6 | 1-14류 적용제외, 15~24류 CTSH 충족 조건부 10% | 싱, 이스라엘, |
| 유형7 | 1-14류 10%이하 15-24류 CTSH 충족 조건부 10% | 중국, 중미 |

자료: 각 협정문을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① [유형1]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10%이하까지 인정하는기준으로 아시아 및 유럽과의 협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② [유형2], [유형3]은 6단위 세번변경(CTSH) 조건부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10%까지 인정하는 조건으로 칠레, EFTA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에서 주로 사용됨.
 - ③ [유형4]는 1~14류의 농수산물은 6단위 세번변경(CTSH) 조건부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10%까지 인정하고, 15~24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10%까지만 인정하는 조건으로 호주와의 협정에서 사용함.
 - ④ [유형5]는 1-14류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 배제하고, 15-24류의 농식품에 대해서만 비원산지재료가치 10%까지 인정하며, 인도 및 페루와의 협정에서 사용함.
 - ⑤ [유형6]은 1-14류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 배제하되, 15~24류는 6단위 세번변경조건부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10%까지 인정하며, 싱가포르 및 이스라엘에서 도입되었음.
 - ⑥ [유형7]은 1-14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10%까지 인정하되, 15-24류는 6단위 세번변경조건부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10%까지 인정하며, 중국 및 중미와의 협정에서 사용됨.
- 한-미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수출제품가격의 10% 이하일 때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지만¹⁵⁰⁾ 예외적으로 일부 민감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을 아예 배제함.

150)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6.6조(최소허용수준)

한-미 FTA 제6.6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6-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한-미 FTA에서 농수산물 중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료는 수산물, 우유 성분, 채소류, 곡물류 및 곡물조제품, 과실류, 과실조제품 및 과실음료, 과일, 동식물성 유지, 당류 및 코코아조제품 등임.¹⁵¹⁾(<표 3-66>)

<표 3-66> 한-미 FTA 최소허용수준 적용배제 농수산물

- 수산물(제3류)
- **우유 성분의 제품:** 제4류(낙농품), 우유고형분을 들어간 조제품(1901.10, 1901.90, 2105), 우유드링크(2202.90), 사료(2309.90)
- **채소류:** 0703.10, 0703.20, 0709.59, 0709.60, 0710.21-0710.80, 0711.90, 0712.20, 0712.39 - 0713.10, 0714.20
- **곡물류 및 곡물조제품:** 1006, 1102, 1103, 1104, 1901.20, 1901.90
- **과실류, 과실조제품, 및 과실음료:** 0805, 2009.11 - 2009.39, 2106.90, 2202.90
- **복숭아, 배, 살구:** 2008
- **동식물성 유지(15류):** 1501-1508, 1512, 1514, 1515
- **당류(17류) 및 코코아 조제품:** 1701 - 1703, 18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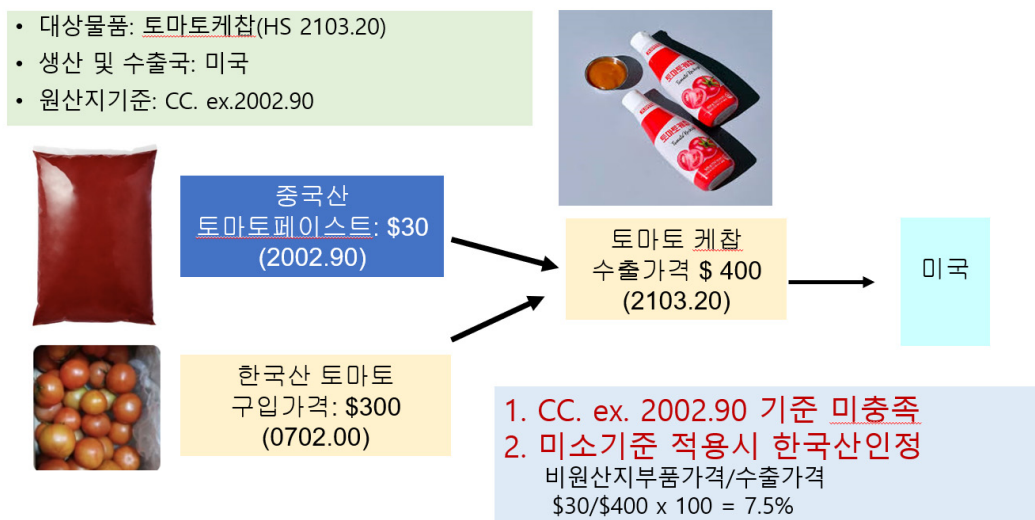
자료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부속서 6-나(제6.6조에 대한 예외)

151)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부속서 6-나(제6.6조에 대한 예외)

다. 최소허용기준 적용사례

- 한국의 T기업이 토마토케찹(HS 2103.20)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함. 토마토케찹의 원료는 중국산 토마토페이스트(HS 2002.90)와 한국산 토마토(HS 0702.00)을 사용함. 중국산 토마토페이스트의 구입 단가는 \$30이고, 한국산은 \$300이라고 가정함.
- 토마토케찹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단 HS 20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T기업이 수출하는 토마토케찹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해 보면, 역외산 사용이 금지된 제2002.90호의 토마토페이스트를 사용한 것이므로 원산지기준 불충족에 해당함.([그림 3-48])
- 이 경우 한-미 FTA 10%의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중국산 토마토페이스트의 비중은 7.5%이므로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함. 따라서 본 제품은 최소허용기준 적용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음.

[그림 3-48] 토마토케찹의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적용사례



자료: 김석오(2023), 전계자료.

-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국의 K식품기업이 오메기떡(HS 1901.90)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함. 오메기떡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중 가당팥앙금(HS 2005.51)은 중국산, 쌀가루(HS 1103.19)는 베트남산임. 한-미FTA 원산지기준은 CC(2단 위세번변경기준)이지만 쌀가루 등 쌀 제품의 것은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이 적용됨.(<표 3-67>)

<표 3-67> 한-미 FTA 오메기떡 최소허용기준 적용 사례

| 수출품목 | 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 |
|--------------------------|--------|---|-----|--------|
| 오메기떡 HS 제1901.90 호 | 한-미FTA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 제1102.30호 및 제1103.19호·제1103.20호·제1104.19호·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에 해당하는 쌀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구분 | 품명 | HS | 원산지 | 가격(원) |
| 투입원재료 | 소매포장봉지 | 제3923.10호 | 미상 | 100 |
| | 떡반죽 | 제1901.90호 | 한국 | 3,000 |
| | 가당팥앙금 | 제2005.51호 | 중국 | 1,100 |
| | 정제수 | 제2201.90호 | 한국 | 300 |
| | 쌀가루 | 제1103.19호 | 베트남 | 1,400 |
| 노무비 및 경비 | | | | 5,000 |
| 제조이윤 | | | | 2,000 |
| 공장도 가격 | | | | 12,900 |
| FOB가격(조정가치) | | | | 15,000 |

- 오메기떡의 재료 중 쌀가루(HS 1103.19)는 사용이 금지되는 역외산 재료에 해당되어 CC 기준 충족이 불가함. 그러나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 역외산 쌀가루의 가격(1,400원)이 수출제품 가격의 9.3%¹⁵²⁾에 불과하므로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함.

- 한-미 FTA에서 농수산물의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음.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비원산지 곡물 및 곡분조제품(HS 1006,

152) MC = 세번변경 미발생 비원산지재료 가치/수출제품의 가격 ≤ 10%

1102, 1103, 1104, 1901.20, 1901.90)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이 배제됨. 따라서 본 사례에서 베트남산 쌀가루는 최소허용기준의 적용배제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원산지기준 충족이 불가함.

4. 중간재 물품의 원산지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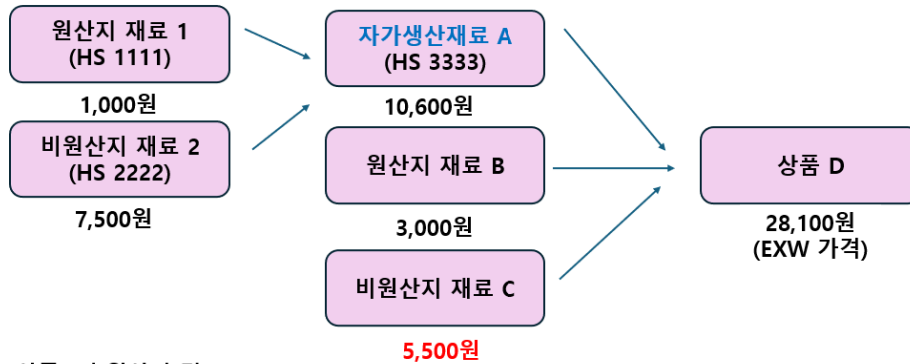
가. 중간재 원산지규정의 의의

-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란 최종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단계의 부품이 그 자체로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국산화 된 경우 중간부품 전체를 원산지재료로 간주하여 최종제품의 원산지재료비에 포함하는 것을 말함.
- 중간재 조항은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원산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고, 역내 중간재 제조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됨.
- 중간재 규정의 취지는 중간재를 역내의 다른 업체에서 조달한 경우와 직접 생산한 경우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중간재 규정이 없다면 최종제품의 원산지 결정시 자가생산한 부품을 최종제품에 투입한 생산자는 동일한 부품을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보다 부가가치기준 충족에 불리할 수 있음.¹⁵³⁾
- 예컨대, MC 40%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는 상품 D를 생산하여 28,100원에 EU에 수출한다고 가정. 이 제품은 자가생산재료 A(10,600원), 원산지재료 B(3,000원), 비원산지재료 C(5,500원)로 생산되고, 자가생산재료 A는 원산지재료1(1,000원)과 비원산지재료 2(7,500원)로 만든다고 가정함. 자가생산재료 A의 원산지기준은 CTH이고, CTH기준을 충족한다고 전제함.([그림 3-49])

153)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거서. p.216.

[그림 3-49] 중간재 조항 적용 예해

• 거래관계(한-EU FTA)



• 상품D의 원산지 검토

- 중간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 부가가치 기준 불충족.

MC법 = 46.26% (((7,500 + 5,500) / 28,100)*100%)

- 중간재 규정을 적용 할 경우

: 부가가치 기준 충족.

MC법 = 19.57% ((5,500/28,100)*100%)

자료: 이영달(2023), 전계자료.

○ 먼저 중간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상품 D의 MC는 46.26%(MC = (7,500+5,500)/28,100×100)로서 부가가치기준을 불충족함. 반면 중간재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MC가 19.57%(MC= 5,500/28,100×100)로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게 됨. 이와 같이 중간재 규정의 적용여부에 따라 원산지 결정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중간재 규정의 유형

○ 중간재 규정은 협정에 따라 도입한 협정과 그렇지 않은 협정으로 구분 됨.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정에서는 중간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반면 미국, 칠레, 싱가포르, 페루, 호주, 콜롬비아, 중미,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은 중간재 규정을 별도로 두어 적용범위 및 적용품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중간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자가생산품에 대해서는 중간재를 인정하는 반면, 페루, 호주, 콜롬비아, 중미,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는 자가생산품 이외에 ‘역내생산품’까지도 인

정하고 있음. 역내생산품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최종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품, 즉 역내에서 생산되어 공급받은 물품도 포함하여 중간재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임.

- EFTA, EU, 튀르키예,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영국, 이스라엘, 캄보디아와의 FTA 및 RCEP에서는 중간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산지규정에서 ‘비원산지재료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결과물인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이 이후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원재료로 사용될 때 그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간재 조항과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음. 자가생산한 재료는 물론이고, 역내에서 생산된 원산지재료를 역외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롤업(Roll up)¹⁵⁴⁾을 인정함.¹⁵⁵⁾(<표 3-68>)

<표 3-68> 주요 협정별 중간재 규정 도입여부

| 구분 | 칠레 싱가포르 | 미국 | 페루 콜롬비아 | EFTA | EU· 터키 | 호주 | 캐나다 | 베트남 | 중국 | 뉴질랜드 | 중미 | 아세안 인도 |
|-----------|------------|-----------|------------|-----------|-----------|-----------|-----------|-----------|-----------|-----------|-----------|-----------|
| 중간재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 | 자가 생산품 | 자가 생산품 | 역내 생산품 | 역내 생산품 | 역내 생산품 | 역내 생산품 | 역내 생산품 | 역내 생산품 | 역내 생산품 | 역내 생산품 | 역내 생산품 | × |
| 중간재 지정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이영달(2023), “FTA 원산지결정기준”, 관세인재개발원 강의자료.

-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는 중간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제품 생산자가 사전에 해당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간재로 지정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 부가가치기준 적용 품목인 재료는 중간재로 중복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재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임.

154)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투입하여 생산한 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그 재료비 전체를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하는 것을 롤업(roll up)이라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재료비 전체를 비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하는 것을 롤다운(roll down)이라 한다.

155) 한국원산지정보원, 「FTA분야 원산지관리기본서 원산지결정기준」, 2023.7.1. p.218.

다. 중간재 적용 사례

- 한국의 K기업은 CCTV(HS 8525)를 생산하여 EU로 수출하려고 함. CCTV의 원산지기준은 MC 50%이며, 중간재인 PCB 어셈블리(HS 8529)는 자가생산되었으며, 동 제품의 원산지기준은 MC 50%임. CCTV의 공장도가격은 \$260이고, 원재료명세표(BOM)은 <표 3-69>와 같음.

<표 3-69> CCTV의 한-EU FTA 중간재 규정 적용사례

| 구분 | HS 코드 | 품명 | 원산지 | 가격(\$) | |
|-----------|-------|---------------|------|-----------------------|----|
| 1 | 8529 | Main PCB Assy | 자가생산 | 130 (원재료 ①+②+③) | |
| | ① | 8542 | IC | 중국 | 40 |
| | ② | 8541 | 다이오드 | 인도 | 20 |
| | ③ | 8534 | PCB | 한국 | 70 |
| 2 | 8525 | Barrel Assy | 일본 | 100 | |
| 이윤 | | | | | |
| | | 노무비+경비+이윤 | | 30 | |
| 공장도 가격 | | 공장도가격 | | 260 | |

| | |
|-------------|---------------------------------------|
| 한-EU FTA | 8525(CCTV): MC 50%, 8529(중간재): MC 50% |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계서. p. 220.

① 중간재 규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중간재 규정을 사용하지 않고, 원산지를 판정할 경우 원산지재료는 PCB \$70만 인정되고 나머지 원재료는 모두 비원산지재료(40+20+100=\$160)임. 수출제품의 공장도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보면 MC=61.5%(MC = 160/260 ×100)로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MC 50%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음.

② 중간재 규정을 사용한 경우

- 자가생산한 PCB 어셈블리의 원산지를 판정해 보면, 한-EU FTA의 HS 8529(중간재)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은 MC 50%임. 중간재 가격은 \$130에서 비원산지재료(중국산 IC + 인도산 다이오드)의 가치가 \$60으로 MC는 46.1%(60/130×100)로서 MC 50%을 충족하므로 원산지재료로 인정됨. 중간재가격 \$130에는 중국산 IC(\$40) 및 인도산 다이오드(\$20)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간재 규정에 따라 중간재가격 전체인 \$130을 원산지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간재 규정 사용시 최종제품의 MC=38.4%(100/260×100)이므로 최종제품도 한-EU FTA의 원산지기준 충족하게 됨.¹⁵⁶⁾ 이와 같이 중간재 조항은 원산지 인정범위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동차, 석유, 철광석처럼 원재료-중간재-최종제품을 동일한 업체가 생산하는 산업구조를 갖춘 나라에 유리함.

라. 중간재 가격 계상 기준

- 자가생산 재료의 기준가격과 관련하여 중간재 생산에서 발생한 총비용에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이윤을 제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협정마다 차이가 있음.
- 먼저 중간재의 기준가격을 총생산비용+이윤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정은 미국, 싱가포르, EU, 페루, 튀르키예,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과의 협정임. 캐나다와의 협정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총비용”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¹⁵⁷⁾

156) 한국원산지정보원, 「FTA부야 원산지관리기본서 원산지결정기준」, 2023.7.1. pp.220-221..

157) 한-캐나다 FTA 제3.6조 : 자가생산 재료의 가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되어, 그 자가생산 재료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총 비용, 또는 나. 그 자가생산 재료에 대하여 발생되어, 그 자가생산 재료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총 비용을 포함하는 모든 비용의 합

- 한편, 칠레, EFTA, 베트남, 중국,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RCEP 협정에서는 중간재 가격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 경우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¹⁵⁸⁾
-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중간재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때에는 최종제품의 재료비 계산시 중간재 전체 가격을 비원산지재료비로 계상할 필요는 없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재료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와 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각의 재료비 항목에 포함하면 됨.

5.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가. 개념

-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or materials)이란 동종 동질의 곡물, 과일, 원유, 석탄, 철광석, 못, 타이어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함.
- 생산물품의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대체가능물품의 경우 물리적으로 원산지별로 분리·보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협정에서는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대체가능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규정은 각 협정별로 다소 상이함. 한-미 FTA는 재고관리기법을 평균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¹⁵⁹⁾ 한-EU FTA¹⁶⁰⁾와 RCEP¹⁶¹⁾

158)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거서, p.219.

159) 한-미 FTA 원산지규정 제6.7조

160)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1조

에서는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별히 한-EU FTA에서는 재고관리기법 적용시 세관당국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한-미 FTA 원산지규정

제6.7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한-EU FTA 원산지규정

제11조 재료 구분회계

1.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재료는 보관되는 동안 그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된다.
2.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생산자는 재고의 관리를 위하여 이른바 “구분 회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방법은 그 제품이 생산된 당사자에서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적용된다.
4. 이 방법은 특정 참조기간 동안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경우 보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당사자는 이 조에서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이 관세당국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하에 그러한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승인의 이용을 감독하고 수혜자가 승인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161) RCEP 원산지규정 제3.11조

이 의정서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RCEP 원산지규정

제3.11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는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따라, 또는 혼합된 경우 수출 당사자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에 따라 결정되며, 그 회계연도 동안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원산지 구분 없이 보관 또는 사용하는 대체가능물품에 대해서는 특정 날짜에 수출된 상품 또는 생산된 투입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재고관리기법(Inventory management method)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사과, 과일, 배, 딸기, 오렌지, 망고, 쌀, 밀, 콩, 캐쉬넛 등 농산물은 재고관리기법의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이므로 재고관리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능력이 필요함.

나. 재고관리기법에 의한 원산지 결정

- 재고관리기법은 생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및 평균법 등이 있음.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평균법 등 어느 한가지의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하면 당해 회계연도 중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¹⁶²⁾ 각 방법별 재고관리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62) 한국원산지정보원, 「FTA분야 원산지관리기본서 원산지결정기준」, 2023.7.1. p.227.

<표 3-70> 재고관리기법 원산지결정의 유형

| 방법 | 원산지결정방법 |
|-------|--|
| 개별법 | 물품의 원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 선입선출법 |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해 취득한 후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나 가격 등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 후입선출법 | 생산자가 물품의 생산을 위해 취득한 후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나 가격 등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 평균법 |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자료: 이영달(2017), 전게서. p. 273.

- 평균법 적용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함. 취득가격은 총평균법¹⁶³⁾이나 이동평균법¹⁶⁴⁾에 따라 계산함.
-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캐슈넛(0801.32)을 기준으로 재고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¹⁶⁵⁾ 한-베트남 FTA에서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재고관리의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⁶⁾

163)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164)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

165) 이영달, 전게서. p.283.

166) 제3.13조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1.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인지 여부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재고관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사용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2.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이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된다

베트남 P사는 껍데기를 벗긴 캐슈넛(0801.32)을 껍데기가 있는 캄보디아산 캐슈넛(0801.31)과 인도산 캐슈넛을 재료로 하여 생산함.

껍데기를 벗긴 캐슈넛의 원산지기준은 완전생산임.

- ① 재료로 사용되는 캄보디아산 캐슈넛과 인도산 캐슈넛은 대체가능재료로 인정된다. 캐슈넛은 원산지만 상이할 뿐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최종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생산자가 원산지별로 캐슈넛 재고를 구분·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계적인 재고관리방법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재고관리방법은 베트남에서 적용가능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적용·보존되는 것이어야 하며, 회계적으로는 재료의 원산지 및 비원산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④ 이 경우 사용되는 재고관리방법에서 평균법은 사용할 수 없다. 평균법이 원산지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재료에 적용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 ⑤ 재고관리방법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는 원재료수불부, 원재료작업지시서, 제품수불부 등의 서류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자료: 이영달(2017), 전게서. p. 283.

6.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 재료는 일반적으로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을 말하는데,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란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함.¹⁶⁷⁾
- 간접재료는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나 생산설비·생산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 등 아래 <표 3-71>에서 예시하는 물품을 말하며,¹⁶⁸⁾ 협정에 따라 중립재(neutral elements)라고도 함.¹⁶⁹⁾ ‘중립재’는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재료라는 의미임.

<표 3-71> 간접재료(중립재) 예시

- 연료 및 에너지
- 도구, 형판 및 주형
-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상품
-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장갑, 안경, 신발, 의류, 그리고 안전장비 및 보급품
-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촉매제 및 용제
-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 간접재료는 협정에 따라 재료로 보지 않는 경우와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167) RCEP 제3.10조(간접재료)

168) RCEP 제3.10조(간접재료)

169) 중립재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협정: 싱가포르, EFTA, 아세안, EU, 튀르키예, 영국, 중국, 베트남,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 칠레, 호주, 뉴질랜드 및 RCEP에서는 간접재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재료로 간주함. 따라서 최종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고려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간접재료의 가치를 원산지재료비에 계상할 수 있음. 원산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표 3-72>)
- 반면 간접재료를 원재료로 보지 않는 협정으로는 미국, EU, 아세안 등과의 협정이 있음. 그러므로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최종제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대상 원산지가 아니며,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도 원산지재료비 또는 비원산지재료비 어느쪽에도 계상되지 않고, 제조간접비에 포함됨.¹⁷⁰⁾

<표 3-72> 간접재료의 원산지 규정

| 구분 | 재료로 보지 않는 협정 | 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협정 |
|----------|---|--|
| 해당협정 | 싱,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튀르키예,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칠레, 호주, 뉴질랜드, RCEP |
| 원산지규정 적용 | 세번변경기준 :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를 제조간접비에 계상 | 세번변경기준: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불문하고 원산지재료비에 계상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계서, p.243.

170) 한국원산지정보원, 전계서. p.242.

7.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의 원산지결정

-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등은 전자제품의 코드·덮개·매뉴얼, 에어컨의 먼지 수집기, 자동차의 예비타이어 및 차량용 잭(공구)와 같이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수품목 또는 액세서리 품목이라 할 수 있음.<표 3-73>

<표 3-73>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 예시

| 유형 | 대상 물품 |
|-------|-------------------|
| 부속품 | 전자제품 코드, 덮개, 매뉴얼 |
| 예비부분품 | 에어컨 먼지 수집기, 예비타이어 |
| 공구 | 차량용 잭, 자전거 도구세트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250.

- 부속품등은 본체 상품과 함께 제공되므로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거나 별도의 비용이 지불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격 및 수량이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에 인정됨.
- 일반적으로 본체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는 원산지 결정시 고려할 필요가 없음. 다만,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부속품 등의 원산지 지위별로 구분하여 본체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함.
- 예외적으로 아세안, 캐나다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서는 부속품등을 재료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도 부속품 등의 원산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표 3-74>

<표 3-74> 협정별 부속품 등의 원산지 취급

| 구분 | 원산지별로 구분 계상하는 협정 | 미고려 협정 |
|------------|--|---------------|
|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 칠, 싱, EFTA, 인도, 미국, EU, 튀르키예, 페루, 미국,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 중국,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아세안, 캐나다, 베트남 |
|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 모든 협정에서 본체의 원산지결정시 고려하지 않음. |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251.

-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원산지별로 구분 계상토록 하는 협정 중 한-미 FTA와 RCEP의 협정문은 다음과 같음.

한-미 FTA 원산지규정

제6.8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1. 각 당사국은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는지 여부의 결정에서는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 가.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 나. 그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부속품.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RCEP 원산지규정

제3.9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일부로 고려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산정 시 각 경

우에 맞게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
 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8. 포장·용기의 원산지결정

가. 소매용 포장·용기

- 소매용 포장·용기란 와인병, 보석상자 및 향수병과 같이 상품을 소매용
 으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담은 상자 또는 케이스를 말함. 내용품의 원
 산지를 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매용 포장·용기의 원산지를 어
 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협정별로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소매용 포장·용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
 는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서는 “포
 장·용기로서의 용도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용물과 같은 세번에
 분류되고 같이 공급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표
 3-75>)

<표 3-75>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포장재료 및 용기

다음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
 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정 모
 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
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
 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통칙 규정에 따른 소매용 포장·용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¹⁷¹⁾

- 신변장식용품 상자와 케이스(HS 7113)
- 전기면도기 케이스(HS 8510)
- 쌍안경·망원경 케이스(HS 9005)
- 악기의 케이스·상자 및 가방(HS 9202)
- 총케이스(HS 9303)
- 어떤 종류의 금속제 드럼이나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철강제 용기(HS 7309~7311)

- 소매용 포장·용기가 원산지재료 및 비원산지재료인지 여부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협정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음.
- 내용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내용품의 원산지에 따르므로 포장재는 원산지결정의 고려대상이 아님,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한-캐 FTA를 제외하고 모든 협정에서 원산지별로 구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정별로 보면 내용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일 경우 모든 협정이 소매용 포장·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음.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소매용 포장·용기의 원산지가 비원산지재료인 때에는 내용품의 비원산지재료가격에 포함하고, 원산지재료인 때에는 내용품의 원산지재료비에 포함시킴. 다만 캐나다와의 협정에서는 소매용 포장·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음.(<표 3-76>)

171)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257.

<표 3-76> 협정별 소매 포장용기의 원산지 취급

| 구분 | 원산지별로 구분하는 협정 | 미고려 협정 |
|------------|--|--------|
|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 칠, 싱,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튀르키예, 페루, 미국,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캐나다 |
|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 모든 협정 원산지결정시 고려하지 않음. |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257.

나. 운송용 포장·용기

- 운송용 포장 및 용기란 일반적으로 내용품의 보호를 위해 운송시 사용되는 나무박스, 컨테이너 등을 말함.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협정에서 운송용 포장 및 용기는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시 고려하지 않음.¹⁷²⁾
- 미국, 아세안, RCEP 등 협정에서는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를 제외하고 내용물의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EU·EFTA·튀르키예·영국·이스라엘과의 FTA에서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송용 포장재 및 용기는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운영하고 있음.¹⁷³⁾

9.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가. 세트물품의 개념

- 세트물품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으로서 특정 용도의 상품을 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172)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326.

173)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자목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HS 품목분류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세트물품은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구성품을 하나로 구성한 상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차지하는 구성품의 세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세트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재료나 구성요소를 각각의 적절한 품목번호로 분류하게 됨.¹⁷⁴⁾

- ①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세트)
-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세트)
-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 (소매용)

나. 적용사례

-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을 예시하면 샌드위치 세트와 스파게티 세트를 들 수 있음. 샌드위치 세트와 스파게티 세트는 샌드위치와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고 각각 샌드위치(제1602호)와 스파게티(제1902호)로 분류하고 있음.<표 3-77>

<표 3-77>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예시


| 품명 | 품목번호 | 물품설명 |
|---------|--------|--|
| 샌드위치 세트 | 제1602호 |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제1602호)와 프렌치프라이(제2004호)를 소매 포장한 세트 |
| 스파게티 세트 | 제1902호 |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제1902호), 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 및 토마토 소스(제2103호)를 소매 포장한 세트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2), 전거서. p.51

174) 한국원산지정보원(2022), 「품목분류」, FTA 분야 원산지관리 기본서 .p.50

- 한편, 여러 가지 물품을 조합해서 세트로 구성하였으나 아래의 예시물품과 같이 어떤 요구나 특정 활동을 위한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은 세트로서 분류하지 않고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즉 이들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요건 중 ②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각 구성요소들을 그 나름대로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해야 함.¹⁷⁵⁾(<표 3-78>)

<표 3-78> 세트물품 불인정 사례 예시

| 세트물품 설명 | 품목번호 | 품목분류 |
|--|--|-----------------|
| 새우통조림(제1605호), 치즈통조림(제0406호), 얇게 썬 베이컨 통조림(제1602호), 소시지통조림(제1601호)을 세트 포장한 것 |  | 세트 불인정 각각 분류 |
| 포도주(제2204호)와 위스키(제2208호)의 위스키를 선물용으로 포장한 것 |  | 세트 불인정 각각 분류 |
|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 도자제컵(제6912호), 도자제 받침접시(제6912호)를 세트 포장한 것 |  | 세트 불인정 각각 분류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2), 전게서. p.51

다.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특례를 인정하는 협정과 그렇지 않은 협정으로 구분됨. 원산지결정 특례를 인정하는 협정은

175) 한국원산지정보원(2022), 「품목분류」, FTA 분야 원산지관리 기본서.p.51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비원산지물품이 전체 세트물품 가격의 15% 이하 일 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특례를 규정한 협정은 다음 <표 3-79>과 같음. 세트물품의 가격기준은 협정에 따라 공장도가격, 조정가치, 관세가치, FOB가격 등 조금씩 다르게 사용됨.

<표 3-79> 협정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특례

| 구분 | EFTA,EU,튀르키예,캐나다, 영국,이스라엘 | 미국 | | 페루, 중국, 중미 | 콜롬비아 |
|--------------|---------------------------|--------------|--------------|---------------|--------------|
| | | 일반품목 | 섬유류 | | |
| 세트물품 예외 인정여부 | ○ | ○ | ○ | ○ | ○ |
|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 공장도가격의 15%이하 | 조정가치의 15% 이하 | 조정가치의 10% 이하 | FOB가격의 15% 이하 | 조정가치의 15% 이하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265.

-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협정은 품목분류 기준상 세트로 분류되는 세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함. 이는 원산지결정의 기준단위가 HS 코드이기 때문임. 다만, 한-아세안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일부 협정에서는 “세트구성” 작업을 원산지 불인정공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즉, 품목별 원산지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불인정 공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원산지 불인정 공정 규정은 품목별 원산지지기준 보다 우선하기 때문임.
- 한-미 FTA, 한-EU FTA, 한-중국 FTA의 세트물품 원산지결정 조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한-미 FTA 원산지규정

제6.9조 상품의 세트

1. 각 당사국은 상품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 3을 적용한 결과로 세트로 분류되는 경우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가 원산지상품이도록 규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의 세트는 원산지상품이다.

한-EU FTA 원산지규정

제9조 세트

부록 2에 규정된 규칙에 불구하고, HS의 일반통칙 제3조에서 정의된 세트는 그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세트나 원산지상품과 비원산지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비원산지상품의 가치가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세트 전체를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

한-중 FTA 원산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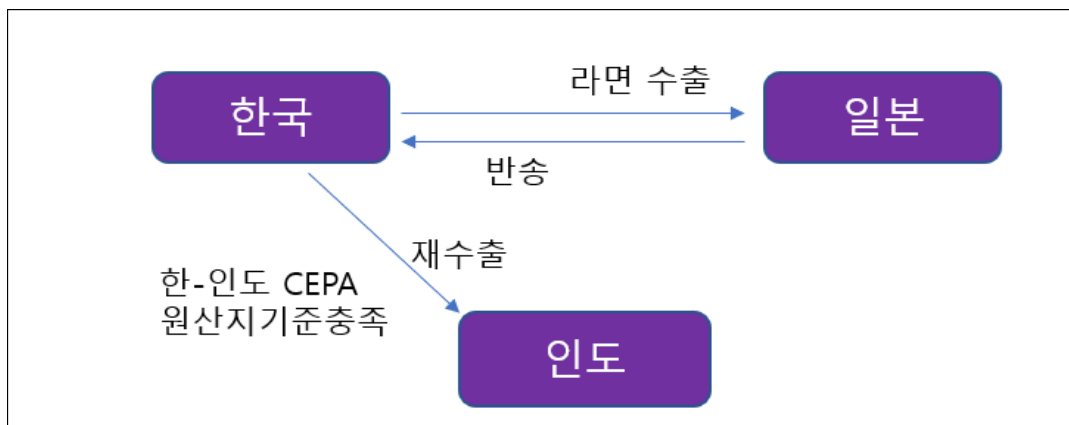
제3.11조 세트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일반해석규칙 3에 정의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상품인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제 3.5조에 따라 결정되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본선인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10.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 원산지물품이 역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원상태로 다시 수입된 경우 이 물품에 대해 여전히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고 FTA 관세특혜 혜택을 부여해야하는지가 문제됨. 협정에서 적용되는 영역원칙상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물품은 재반입시 비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됨.
- 그러나 일부 협정에서는 원상태로 재수입물품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될 때 원산지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채택하고 있음. 예컨대, 한국에서 생산한 라면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가 구매자의 수취거부 또는 폐업으로 인해 원상태로 반송된 물품을 인도로 재수출할 경우 이 라면의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임.([그림 3-50])

[그림 3-50]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특례



자료 : 연구자가 작성

- 재수입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이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상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함. 단,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¹⁷⁶⁾

-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특례를 인정한 협정과 불인정하는 협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 3-80>과 같음

<표 3-80> 재수입물품 원산지특례 인정 협정과 불인정 협정 비교

| 재수입물품 특례 인정 협정 | 재수입물품 특례 불인정 협정 |
|--|--|
| EFTA, EU, 튀르키예, 인도,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아세안, 중미, 영국, 이스라엘 |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 한-EU FTA, 한-인도 CEPA의 재수입물품 원산지결정 특례조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한-EU FTA |
|---|
| <p>제12조</p> <p>2. 제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자로부터 비당사자로 수출된 원산지제품이 재반입될 경우 비원산지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p> <p>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p> <p>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자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p> |

| 한-인도 CEPA |
|--|
| <p>제3.13조</p> <p>2. 제3.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대하여 해당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될 수 없는 경우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p> <p>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p> <p>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p> |

176) 한-인도 CEPA 원산지규정 제3.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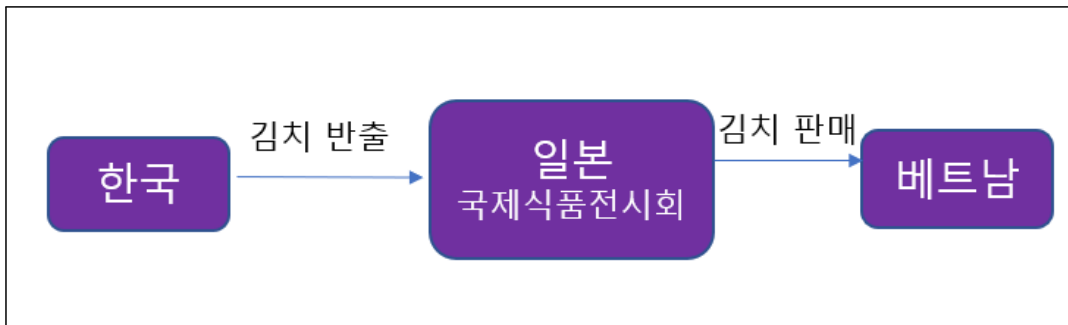
11. 제3국 보세전시물품의 원산지결정

- 제3국에서 개최되는 보세전시회에 출품한 원산지물품을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계약 당사국 간에 직접운송이 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제3국 보세전시물품은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 그럼에도 미국, 아세안, RCEP 등 일부 협정에서는 일정한 요건 준수를 전제로 제3국 보세전시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3국 보세전시물품’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 한-아세안 FTA에 따르면 제3국 보세전시물품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원산지증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수출자가 그 물품을 수출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발송하고 그 물품을 그 국가에서 개최한 사실
 - ② 수출자가 수입당사국의 화주에게 그 물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한 사실
 - ③ 물품이 전시회 기간중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발송된 상태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발송한 사실
 - ④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에는 전시회의 명칭 및 장소가 표시되어야 하고, 전시회를 개최한 국가의 정부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필요.¹⁷⁷⁾
- 위 규정에 따르면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식품전시회에 출품한 김치를 전시회 종료후 한국으로 재반입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베트남으로 수출할 경우 직접운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한국산으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됨.([그림 3-51])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국제식품전시회는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세전시장을 말하는 것임.¹⁷⁸⁾

177)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14조,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4조에서도 제3국 전시물품의 원산지결정 특례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178)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거서. p.274.

[그림 3-51] 제3국 보세전시물품 원산지결정 특례



자료 : 연구자가 작성

- 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원산지결정 특례를 규정한 협정은 미국, 아세안, RCEP 등 11개 협정임.(<표 3-81>)

<표 3-81> 제3국 보세전시물품 원산지특례 인정 협정과 불인정 협정 비교

| 제3국 보세전시물품 특례 인정 협정 | 제3국 보세전시물품 특혜 불인정 협정 |
|---|---|
|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EFTA, 튀르키예, 뉴질랜드, 아세안,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11개) | 인도,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 중미, EU, 영국, 인도네시아 (10개) |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전게서. p.273.

제4장 FTA 원산지규정과 농식품 수출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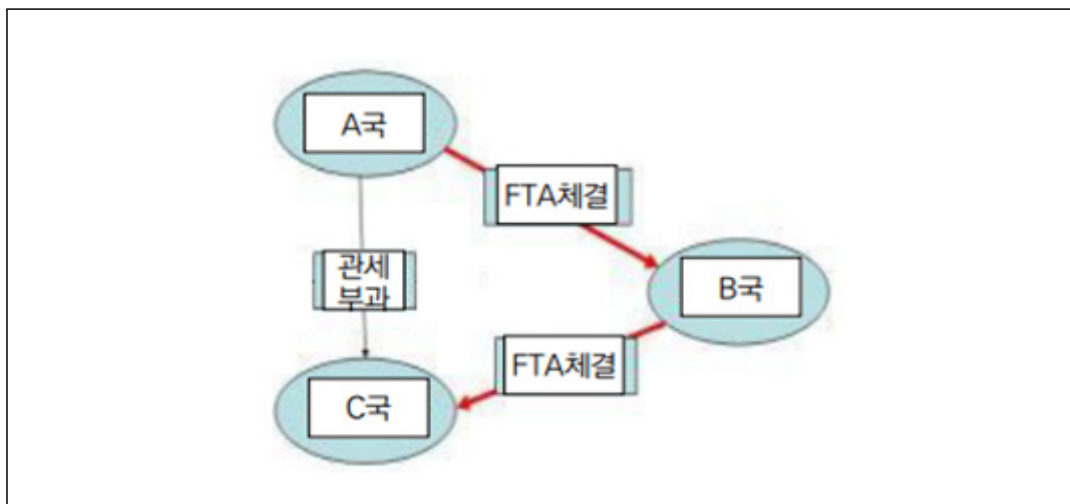
제1절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1. FTA 원산지규정과 FTA 관세특혜와의 관계

-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일반적으로 국가간에 FTA가 체결된 경우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역한 기대를 하게 됨. 하지만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FTA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 FTA를 통한 특혜의 범위를 협정 당사국으로 한정하고 제3국 물품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FTA 원산지규정이 필수적임.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특히 시장접근 확대 효과가 일정부분 원산지규정에 의해 결정되므로 FTA에서 차지하는 원산지규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원산지규정은 역내와 역외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에 따라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다시 말해 역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면서 역내국 간에는 교역과 투자 증대 및 특정 재료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옴.
- 원산지규정이 없는 경우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대국가를 통해서 상품이 수입될 수 있는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무역굴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규정이 요구됨.
- B국은 A국 및 C국과 각각 별도의 양자 FTA를 체결했다고 가정함. A국과 C국간에서는 FTA가 없기 때문에 A국산 물품을 C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0%의 관세가 있으나, B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

다고 전제함. B국과 C국간 FTA에 원산지규정이 없는 경우 A국 상품은 B국을 거쳐 무관세로 C국에 우회수출될 수 있음. 이러한 무역굴절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¹⁷⁹⁾([그림 4-1②])

[그림 4-1] 무역굴절현상 예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서. p.63. [그림 3-2]에서 인용.

- 원산지규정은 FTA의 필수불가결한 규정이지만 원산지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사용된 생산방식과 상충되는 경우 원산지규정은 오히려 FTA 관세특혜 혜택을 무효화시킬 수 있음. 즉,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FTA 체결국가간 원활한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¹⁸⁰⁾ Krueger(1993)는 원산지규정이 ‘숨겨진 무역장벽’(hidden protection)의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¹⁸¹⁾
- 자유무역체제에서 원산지규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역내간 무역을 촉진 또는 제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억제하여 결국 국가 전체의 후생을 유지,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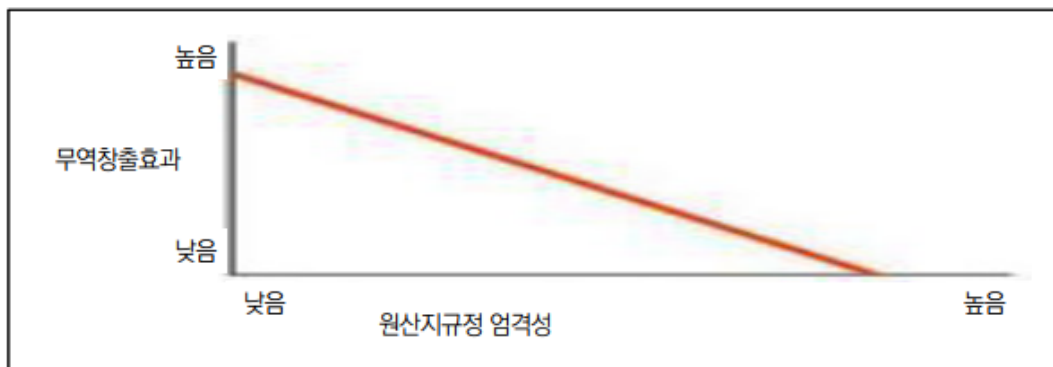
179)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서. pp.62-63..

1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서. pp.48-49.

181) Krueger, A(1993), “Free Trade Agreement as Protective Devices: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N 4352. pp.91-101.

- 다시 말해, 원산지규정이 무역갈절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할 경우 원산지규정은 보호주의 효과를 발생시켜 무역장벽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그림 4-2]와 같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낮을수록 무역창출효과는 높아지고, 반대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높을수록 무역창출효과는 낮아지게 됨. 따라서 자유무역을 증진하려는 FTA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적화된 원산지규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그림 4-2]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무역창출효과 간의 관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개서. p.66

2.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역내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외국에서의 선행연구

- FTA 원산지규정이 역내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NAFTA 원산지규정, 유럽의 원산지규정 및 동아시아의 원산지규정을 대상으로 외국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음. 연구결과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역내 간 교역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원산지규정 준수 비용이 과다하여 FTA 활용을 포기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Krishna and Krueger(1995)¹⁸²⁾는 원산지규정이 교역과 후생,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동 분석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역내 중간재 산업보호 효과, 역내국간 교역확대와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오히려 생산, 교역 및 투자에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¹⁸³⁾
- Cadot et al.(2002)¹⁸⁴⁾는 NAFTA 원산지규정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규정이 엄격한 품목은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이 감소하는 반면 관세특혜 수준이 큰 품목일수록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하였음.¹⁸⁵⁾
- Anson et al.(2005)¹⁸⁶⁾는 멕시코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NAFTA 원산지규정 준수비용을 분석한 결과 관세상당치(ad valorem equivalent)로 평균 약 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었음. 또한 멕시코에 대한 평균 관세특혜폭(margin of preference)이 약 4%임을 감안할 경우 NAFTA 원산지규정이 관세철폐 효과를 상쇄시킨다고 지적하였음.¹⁸⁷⁾
- Carrere & DE Melo(2006), Kunimoto & Sawchuk(2004)은 멕시코 기업이 NA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규정 준수 비용을 추산한 결과, 원산지규정 준수 비용이 수출액의 약 1.05~1.94%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함.
- Cadot et al.(2006)은 EU와 미국의 FTA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비교하고

182) Krishna, K. and A.O. Krueger(1995), "Implementing Free Trade Agreement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A. V. Deardoff and R.M Stern eds.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pp.149-187.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83) 김한성 외(2008.1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53~62.

184) Cadot, O. and J. de Melo, A Estevadeordal, A. Suwa-Eisenmann, and B. Tumurchudur(2002), "Assessing the Effect of NAFTA's Rules of Origin". Mimeo.

185) 김한성 외(2008.12), 전게서. p.65.

186) Anson, J., O.Cadot, A. Estevadordal, J.de Melo, A. Suwa-Eisenmann, and B. Tumurchudur.(2005), "Rules of Origin in North-South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 an Application to NAFT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3, pp. 507-517.

187) 김한성 외(2008.12), 전게서. p.65.

관련 비용을 연구하였음. 품목별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준수 비용과 행정 비용은 각각 EU의 경우 8.0%, 6.8%, 미국의 경우 6.8%, 1.9%인 것으로 추정하였음. 준수비용 또는 행정비용이 미국보다 유럽이 크다는 사실은 유럽의 FTA 원산지규정이 더욱 까다롭다는 점을 시사함.¹⁸⁸⁾

- Manchin & Pelkmans-Balaoing(2007)은 동아시아 FTA의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원산지규정 충족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25% 정도의 특혜관세마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

나. 국내에서의 선행연구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규정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200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되었음. 국내 연구기관 및 학자들의 연구결과도 해외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엄격한 FTA 원산지규정은 농산물 교역의 무역창출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김한성외(2008)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등 4개 FTA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FTA 수출활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잡하고 다양한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원산지를 결정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원활한 상품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음.¹⁸⁹⁾ 아울러 협정 상대국과의 협상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난립함에 따라 무역업자들이 FTA를 활용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였음.
- 이병훈 외(2014, 2016)는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률의 특징과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음. 동 연구결과 원산지규정이 무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1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서. p.15.

189) 김한성외(2008.12), 전게서. pp. 164-172.

특히,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가운데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농산물 교역의 무역창출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음.^{190) 191)}

- 조미진(2020)은 한-미 FTA 원산지규정이 유발하는 준수비용을 분석하였음. 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이 유발하는 산업 전체의 평균 준수비용은 관세상당치 기준 6.2~7.6%이며, 제조업의 경우 중간재는 5.8~6.6%, 자본재는 6.9~7.6%, 소비재는 9.2~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앞에서 제시한 Cadot et al.(2006)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한-미 FTA 원산지규정이 유발하는 준수비용은 NAFTA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EU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¹⁹²⁾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건의 모든 FTA 원산지규정을 바탕으로 FTA 원산지규정이 농식품 수출과 수출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과 수출활용률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이질성이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특혜마진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¹⁹³⁾ 다시말해서 농식품 수출 및 수출활용률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부(-)의 영향을 받고, 특혜마진에 대해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향후 원산지규정 개정 협상에서 미소기준, 누적기준, 수출기업 친화적인 FTA별 원산지규정규정이 허용하는 국내 인증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 전반의 보충적 특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아울러 농식품 수출기업이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완화가 필요하고, FTA 원산지규정 체계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¹⁹⁴⁾

190) 이병훈·어명근·정대희·박한울·윤영석·한보현·서진교(2014),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1) 이병훈·윤영석·박한울(2016),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농식품수출에 미치는 효과 - 분위수 회귀분석방법을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57(2): 1-29, 한국농업경제학회.

192) 조미진(2020), “한-미 FTA의 원산지규정 준수비용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8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서. p.178.

제2절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원산지규정 특성

1. 농식품의 FTA 품목별 원산지규정

- 원산지물품을 결정하는 원칙은 완전생산기준과 충분생산기준으로 구성되고, 충분생산기준은 대부분 각 HS 코드 단위의 품목별로 정해짐. 완전생산기준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재배·수확된 식물, 출생·사육된 동물 또는 국내에서 양식하거나 국내 선박으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임.
- 충분생산기준은 FTA비체결국인 역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임. 충분생산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여부는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과 이들 기준을 조합한 다양한 파생기준을 사용함.
- 아울러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인정공정기준,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중간재, 간접재료(중립재), 대체사용가능재료, 세트물품, 포장용기, 부속품 등 보충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이들 보충기준은 협상결과에 따라 각 협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고 있음.
- HS 제1류~제24류까지 농림수산식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농업을 보호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대부분의 협정에서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산 재료 사용기준 등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채택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건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 제1류~제24류에 분류되는 농식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HS 6단

1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서. p. 179.

위 세번기준으로 분석하였음. 분석에 사용된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은 완전생산(WO)유형, 2단위 세번변경(CC) 유형, 4단위 세번변경(CTH), 6단위 세번변경(CTSH) 유형, 부가가치기준(RVC) 유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¹⁹⁵⁾

<표 4-1> 부류별 우리나라 기체결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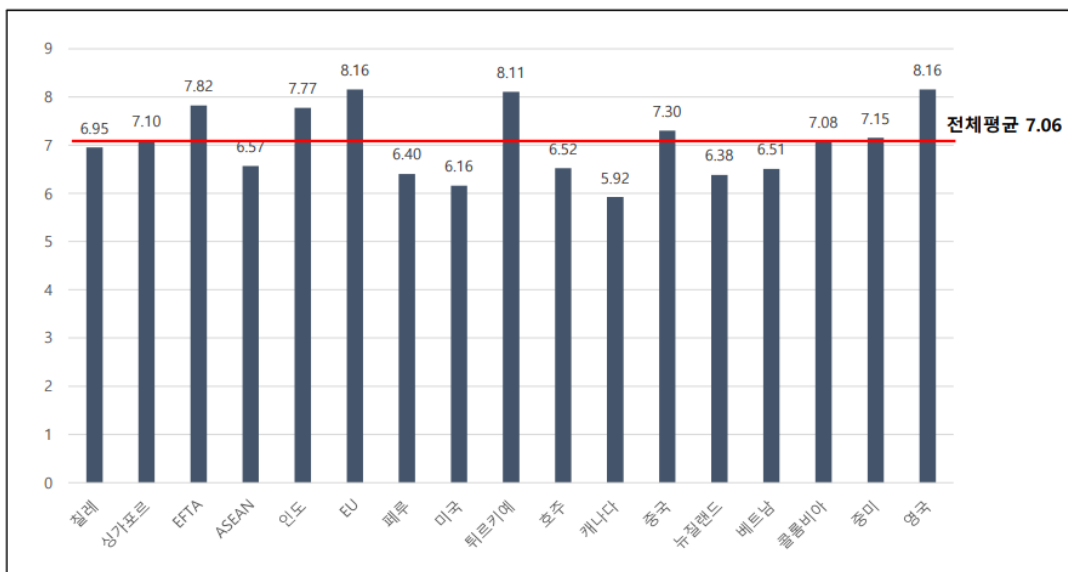
| 류 | CC | CTH | CTSH | RVC | WO | 기타 | 합계 |
|------------|--------------|--------------|------------|------------|--------------|-----------|---------------|
| 01 | 136 | 0 | 0 | 0 | 578 | 0 | 714 |
| 02 | 528 | 0 | 0 | 0 | 858 | 0 | 1,386 |
| 04 | 269 | 9 | 2 | 0 | 392 | 0 | 672 |
| 05 | 108 | 0 | 0 | 0 | 207 | 0 | 315 |
| 06 | 96 | 0 | 0 | 0 | 240 | 0 | 336 |
| 07 | 343 | 0 | 0 | 0 | 1,064 | 0 | 1,407 |
| 08 | 354 | 0 | 2 | 0 | 1,072 | 0 | 1,428 |
| 09 | 140 | 0 | 37 | 23 | 235 | 27 | 462 |
| 10 | 108 | 0 | 0 | 0 | 442 | 0 | 550 |
| 11 | 397 | 0 | 0 | 0 | 167 | 3 | 567 |
| 12 | 285 | 2 | 2 | 0 | 740 | 0 | 1,029 |
| 13 | 141 | 6 | 0 | 20 | 55 | 9 | 231 |
| 14 | 47 | 0 | 0 | 0 | 58 | 0 | 105 |
| 15 | 425 | 243 | 193 | 4 | 128 | 15 | 1,008 |
| 16 | 596 | 69 | 27 | 48 | 138 | 0 | 878 |
| 17 | 151 | 149 | 29 | 8 | 20 | 0 | 357 |
| 18 | 41 | 177 | 13 | 0 | 0 | 0 | 231 |
| 19 | 128 | 245 | 10 | 0 | 16 | 0 | 399 |
| 20 | 428 | 554 | 17 | 18 | 75 | 0 | 1,092 |
| 21 | 51 | 257 | 15 | 7 | 0 | 6 | 336 |
| 22 | 89 | 377 | 28 | 8 | 2 | 0 | 504 |
| 23 | 185 | 254 | 22 | 4 | 12 | 6 | 483 |
| 24 | 36 | 109 | 10 | 0 | 40 | 15 | 210 |
| 합 계 | 5,082 | 2,451 | 407 | 140 | 6,539 | 81 | 14,700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서, p.98. <표 5-1>에서 인용

1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자료, pp.97-98.

- 분석 결과 HS 6단위 기준으로 14,700건의 원산지결정기준 중에서 WO 유형이 6,539건(44.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CC 유형이 5,082건(34.6%), CTH 유형 2,451건(16.7%), CTSH 유형 407건(2.8%) 순이고, RVC 유형은 140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장 엄격한 유형인 WO 유형과 CC 유형을 합치면 무려 79.1%에 달함.
- 부류별 특징을 살펴보면, CC 유형은 01~24류(03류 제외)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고, 02류, 15류, 16류, 20류 등에 많이 적용하고 있음. CTH 유형은 주로 15~24류 등 가공식품에 걸쳐 활용하고 있고, 20류, 22류, 23류 등에 많이 적용됨. CTSH 유형은 09류와 15~24류에 주로 적용됨.
- RVC 유형은 09류, 13류, 15~17류, 20~23류에 걸쳐 부분적으로 적용됨. 가장 많이 사용되는 WO 유형은 18류와 21류 등의 조제품을 제외한 01~24류(03류 제외)에 걸쳐 적용되며, 산 동물인 제1류보다 제7류(식용의 채소·뿌리·괴경) 및 제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등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품목에 중점적으로 적용됨.¹⁹⁶⁾

[그림 4-3]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지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개서. p.105. <그림 5-3>에서 인용.

1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개자료. pp.98-9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이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¹⁹⁷⁾를 바탕으로 FTA별, 품목별, 가공단계별 엄격성지수의 분포를 조사하였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FTA 체결국 중 전체평균 대비 엄격성이 높은 FTA는 EU(영국 포함), 튀르키예, EFTA 등 유럽권 국가들의 엄격성이 높고, 다음으로 인도, 중국, 중미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¹⁹⁸⁾ 유럽권은 전통적으로 농업의 민감성이 강하여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선호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도, 중국, 중미와의 FTA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감농산물 보호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반영한 것임.

2. 주요 FTA의 농식품 원산지규정 특징

- 우리나라가 체결·시행 중인 21건의 FTA 중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부분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 있는 미국, EU, 아세안 및 중국과의 FTA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이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농식품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비교해 봄.

가. 한-미 FTA 농식품 원산지규정 특징

- 한·미 FTA 원산지규정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C 기준의 적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전체 품목 중 CC 또는 CC+ 부가요건(특정 세번 제외 요건)이 있는 세번의 비율이 83%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은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특정재료의 완전생산기준은 규정하지 않지만 제1류~제14류의 신선 농수산물을 CC로 규정해 사실상 완전생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⁹⁹⁾ 다만, 9류의 커피·향신료에 대해서

1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세번변경기준인 CTS, CTH, CC는 엄격성 측정 점수를 2점, 4점, 6점으로, 완전생산기준(WO)은 8점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추가기준으로 포함된 재료에 대한 추가요건, 특정재료 사용의 제약, 특정세번 제외, 중량 또는 함유량에 대한 재료사용 여부, 부가가치 완화기준 및 강화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1점에서 최대 13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엄격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1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제자료. p..99.

는 한·미 양국 모두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특성을 감안하여 CTSH를 채택하고 있음.(<표 4-2>).

<표 4-2>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HS 2단위별 현황

| 부류 | 품목명 | RI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건수) | | | | | | | |
|-----|--------------|-----|-----------------|--------------|--------|----------------------------|-------------------|-----|-----------------------------|--------------|
| | | | CC | CC+TCR, CC+E | CC(01) | CC/CTS _H +E+RVC | CC+E+MR, CC+E+TCR | CTH | CTH+TC _R , CTH+E | CTSH, CTSH+E |
| 01류 | 산 동물 | 8.0 | - | - | 34 | - | - | - | - | - |
| 02류 | 육류 | 7.0 | - | 66 | - | - | - | - | - | - |
| 04류 | 낙농품 | 7.0 | - | 32 | - | - | - | - | - | - |
| 05류 | 기타동물성 생산물 | 6.0 | 15 | - | - | - | - | - | - | - |
| 06류 | 산수목, 꽃 | 6.0 | 16 | - | - | - | - | - | - | - |
| 07류 | 채소 | 6.0 | 67 | - | - | - | - | - | - | - |
| 08류 | 과실, 견과류 | 6.0 | 68 | - | - | - | - | - | - | - |
| 09류 | 커피, 향신료 | 3.3 | 12 | - | - | - | - | - | - | 27 |
| 10류 | 곡물 | 6.0 | 26 | - | - | - | - | - | - | - |
| 11류 | 밀가루, 전분 | 6.5 | 13 | 14 | - | - | - | - | - | - |
| 12류 | 채유용종자, 인압 | 6.0 | 49 | - | - | - | - | - | - | - |
| 13류 | 식물성엑스 | 6.2 | 9 | 2 | - | - | - | - | - | - |
| 14류 | 기타식물성 생산물 | 6.0 | 5 | - | - | - | - | - | - | - |
| 15류 | 동물성유지 | 6.0 | 47 | - | - | - | - | 1 | - | - |
| 16류 | 육 어류조제품 | 6.0 | 41 | 1 | - | - | - | - | - | - |
| 17류 | 당류 설탕과차 | 5.8 | 15 | - | - | - | - | 2 | - | - |
| 18류 | 코코아 | 3.9 | 2 | - | - | - | - | 5 | 1 | 3 |
| 19류 | 곡물 곡분조제품 | 6.4 | 15 | 1 | - | - | 3 | - | - | - |
| 20류 | 채소 과실조제품 | 7.5 | 9 | 8 | - | 1 | 34 | - | - | - |
| 21류 | 기타 조제식품 | 6.0 | 11 | 3 | - | - | - | 1 | 1 | - |
| 22류 | 음료 주류, 식초 | 5.8 | 3 | 12 | - | - | - | 9 | - | - |
| 23류 | 조제사료 | 5.9 | 21 | - | - | - | - | 1 | 1 | - |
| 24류 | 연초 | 5.2 | 6 | - | - | - | - | 4 | - | - |
| | 총합계 | 6.2 | 450 | 139 | 34 | 1 | 37 | 23 | 3 | 30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서. p.110. <표 5-6>에서 인용

1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게자료. p.110.

- CC 기준 채택으로 인해 농수산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분쇄, 혼합(블렌딩), 소분, 세팅 작업과 같은 생산공정은 CC 변경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됨.
- 제19류, 제20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완화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면서 곡류, 낙농품, 채소류, 과실류 등 민감농산물이 분류되는 특정 세번의 원재료는 역내산을 사용토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음. 이는 한-미 FTA 협상 당시 국내 민감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측의 요구로 반영된 측면이 많음.

나. 한-EU FTA 농식품 원산지규정 특징

-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 엄격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엄격성이 높은 만큼 완전생산기준의 비율이 가장 높음. 제1류에서 제14류의 기초 농수산물은 대부분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는 커피·향신료에 대해서만 매우 완화된 4단위 내 세번변경기준 (within CTH)²⁰⁰를 사용하고 있음.
- 떡볶이, 라면, 김치, 고추장 등 최근 한류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19류(곡류 조제품), 20류(채소, 과실조제품)의 경우 특정농산물재료 완전생산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적용함. 예컨대, 김치에 사용되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모든 채소는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200) 동일한 4단위에 속하는 역외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역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생산공정을 거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가장 완화된 원산지기준이다.

<표 4-3>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HS 2단위별 현황

| 부류 | 품목명 | RI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건수) | | | | | | | | | |
|-----|--------------|------|----------------------------|----------------------|-----------------------------------|----------|----|----|-------------------|-----|---------------------------------------|------------------|
| | | | CTH CTH+E CTH+M R | CTH + MC+ P | CTH+M C 30+P+ W O(MR) | MC+ P | MC | RM | Withi n CTH | WO | WO(MR)+ MC30+P WO+MC+P WO+MC | WO (MR) +E |
| 01류 | 산동물 | 8.0 | - | - | - | - | - | - | - | 34 | - | - |
| 02류 | 육류 | 8.0 | - | - | - | - | - | - | - | 66 | - | - |
| 04류 | 낙농품 | 8.3 | - | - | - | - | - | - | - | 30 | 2 | - |
| 05류 | 기타동물성 생산품 | 8.0 | - | - | - | - | - | - | - | 15 | - | - |
| 06류 | 산수목, 꽃 | 12.0 | - | - | - | - | - | - | - | - | 16 | - |
| 07류 | 채소 | 8.0 | - | - | - | - | - | - | - | 67 | - | - |
| 08류 | 과실, 견과류 | 13.0 | - | - | - | - | - | - | - | - | 68 | - |
| 09류 | 커피, 향신료 | 6.4 | - | - | - | - | - | - | 9 | 30 | - | - |
| 10류 | 곡물 | 8.0 | - | - | - | - | - | - | - | 26 | - | - |
| 11류 | 밀가루, 전분 | 8.7 | - | - | - | - | - | - | 1 | 26 | - | - |
| 12류 | 채유용종자, 인삼 | 8.0 | - | - | - | - | - | - | - | 49 | - | - |
| 13류 | 식물성엑스 | 3.2 | 2 | - | - | - | 6 | - | 3 | - | - | - |
| 14류 | 기타식물성 생산품 | 8.0 | - | - | - | - | - | - | - | 5 | - | - |
| 15류 | 동물성유지 | 4.6 | 34 | - | - | - | - | - | 5 | 9 | - | - |
| 16류 | 어류조제품 | 9.0 | - | - | - | - | - | - | - | 42 | - | - |
| 17류 | 당류 설탕과차 | 4.8 | 12 | 2 | - | 3 | - | - | - | - | - | - |
| 18류 | 코코아 | 9.0 | - | 11 | - | - | - | - | - | - | - | - |
| 19류 | 곡분조제품 | 8.1 | 9 | - | 7 | - | - | - | - | - | - | 3 |
| 20류 | 채소 과실조제품 | 10.7 | 1 | 24 | - | 1 | 1 | - | - | - | 25 | - |
| 21류 | 기타 조제식품 | 4.8 | 11 | - | 2 | 1 | - | - | 2 | - | - | - |
| 22류 | 음료 주류, 식초 | 6.0 | 21 | - | 3 | - | - | - | - | - | - | - |
| 23류 | 조제사료 | 5.0 | 17 | - | - | - | - | 2 | - | 4 | - | - |
| 24류 | 연초 | 7.0 | - | - | - | - | - | 5 | - | 5 | - | - |
| 총합계 | | 8.2 | 107 | 37 | 12 | 5 | 7 | 7 | 20 | 408 | 111 | 3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서. p.109. <표 5-5>에서 인용

다. 한-아세안 FTA 농식품 원산지규정 특징

-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 특징은 완전생산기준 활용 빈도가 가장 높으며, 조합 및 선택기준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조합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특히 CTH 또는 RVC를 조합한 기준을 WO 다음으로 많이 규정하고 있으며, 01류에서 14류까지는 WO, 15류부터 24류까지는 CTH/RVC 기준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추가기준(MR)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표 4-4>
- 기초농수산물의 생산이 풍부한 아세안국가의 특성상 국내 민감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완전생산기준 적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RVC 40% 기준을 결합한 조합기준 또는 선택 적용하게 하는 선택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조합기준은 농식품 가공산업의 특성상 4단위 세번변경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가가치기준을 동시 충족토록 하는 엄격한 추가기준을 도입하여 무역굴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아세안 국가 중 기초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국내 생산이 부족한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4-4>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HS 2단위별 현황

| 부류 | 품목명 | RI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건수) | | | | | | | | | | |
|-----|---------------|-----|-----------------|------------|--|------------|---|---------------------------|-------------------|-------------------------------|-----|------------|---|
| | | | CC CC+ MR | CC+ RVC | CC/R VC CC+ MR/ RVC +MR | CTH +MR | CTH/RVC CTH+MR/ RVC CTH+MR/ RVC+MR CTH+W/ RVC | CTH + RVC + P | RVC RVC +MR | RVC +P RVC +P +MR | WO | WO/ RVC | |
| 01류 | 산동물 | 8.0 | - | - | - | - | - | - | - | - | - | 34 | - |
| 02류 | 육류 | 8.0 | - | - | - | - | - | - | - | - | - | 66 | - |
| 04류 | 낙농품 | 7.3 | - | - | - | - | 3 | - | - | - | - | 23 | 6 |
| 05류 | 기타동물성 생산품 | 8.0 | - | - | - | - | - | - | - | - | - | 15 | - |
| 06류 | 산수목, 꽃 | 8.0 | - | - | - | - | - | - | - | - | - | 16 | - |
| 07류 | 채소 | 8.0 | - | - | - | - | - | - | - | - | - | 67 | - |
| 08류 | 과실, 견과류 | 8.0 | - | - | - | - | - | - | - | - | - | 68 | - |
| 09류 | 커피, 향신료 | 7.3 | - | - | - | - | - | - | 7 | - | - | 32 | - |
| 10류 | 곡물 | 8.0 | - | - | - | - | - | - | - | - | - | 26 | - |
| 11류 | 밀가루, 전분 | 6.2 | 2 | - | 16 | - | - | - | - | - | - | 9 | - |
| 12류 | 채유용종자, 인삼 | 8.0 | - | - | - | - | - | - | - | - | - | 49 | - |
| 13류 | 식물성엑스 | 7.8 | - | - | - | - | - | - | - | - | 1 | 10 | - |
| 14류 | 기타식물성 생산품 | 8.0 | - | - | - | - | - | - | - | - | - | 5 | - |
| 15류 | 동물성유지 | 4.3 | - | 2 | - | - | 45 | - | 1 | - | - | - | - |
| 16류 | 육 어류조제품 | 5.1 | - | - | 23 | - | 9 | - | 9 | 1 | - | - | - |
| 17류 | 당류 설탕과자 | 4.0 | - | - | - | - | 17 | - | - | - | - | - | - |
| 18류 | 코코아 | 4.0 | - | - | - | - | 11 | - | - | - | - | - | - |
| 19류 | 곡물, 곡분조제품 | 4.5 | - | - | 3 | - | 15 | - | - | - | - | 1 | - |
| 20류 | 채소, 과실조제품 | 4.4 | 2 | - | 7 | - | 38 | 1 | 3 | 1 | - | - | - |
| 21류 | 기타 조제식료품 | 4.2 | - | - | - | - | 15 | - | 1 | - | - | - | - |
| 22류 | 음료, 주류, 식초 | 4.4 | - | - | 6 | - | 14 | - | 4 | - | - | - | - |
| 23류 | 조제사료 | 4.2 | - | - | 3 | - | 19 | - | 1 | - | - | - | - |
| 24류 | 연초 | 5.3 | - | - | - | 1 | 6 | - | - | - | - | 3 | - |
| 총합계 | | 6.6 | 4 | 2 | 58 | 1 | 192 | 1 | 26 | 3 | 424 | 6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세서, p.108. <표 5-4>에서 인용.

라. 한·중 FTA 농식품 원산지규정 특징

- 한·중 FTA는 한·EU FTA 다음으로 품목별 엄격성지수가 높지만, 다른 FTA와 비교하여 간소화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완전생산기준이 전체의 7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하고 있음(<표 4-5>)

<표 4-5>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HS 2단위별 현황

| 부류 | 품목명 | RI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건수) | | | | | |
|-----|------------|-----|-----------------|----------|------|-----|-----|-----|
| | | | CC | CC/RVC+P | CC+E | CTH | RVC | WO |
| 01류 | 산 동물 | 8.0 | - | - | - | - | - | 34 |
| 02류 | 육류 | 8.0 | - | - | - | - | - | 66 |
| 04류 | 낙농품 | 8.0 | - | - | - | - | - | 32 |
| 05류 | 기타동물성생산물 | 8.0 | - | - | - | - | - | 15 |
| 06류 | 산수목, 꽃 | 8.0 | - | - | - | - | - | 16 |
| 07류 | 채소 | 8.0 | - | - | - | - | - | 67 |
| 08류 | 과실, 견과류 | 8.0 | - | - | - | - | - | 68 |
| 09류 | 커피, 향신료 | 8.0 | - | - | - | - | - | 39 |
| 10류 | 곡물 | 8.0 | - | - | - | - | - | 26 |
| 11류 | 밀가루, 전분 | 8.0 | - | - | - | - | - | 27 |
| 12류 | 채유용종자, 인삼 | 8.0 | - | - | - | - | - | 49 |
| 13류 | 식물성엑스 | 8.0 | - | - | - | - | - | 11 |
| 14류 | 기타식물성생산물 | 8.0 | - | - | - | - | - | 5 |
| 15류 | 동물성유지 | 8.0 | - | - | - | - | - | 48 |
| 16류 | 육,어류조제품 | 4.6 | 12 | - | - | - | 30 | - |
| 17류 | 당류, 설탕과자 | 8.0 | - | - | - | - | - | 17 |
| 18류 | 코코아 | 5.7 | 6 | 5 | - | - | - | - |
| 19류 | 곡물, 곡분조제품 | 6.1 | 18 | - | 1 | - | - | - |
| 20류 | 채소, 과실조제품 | 6.1 | 46 | - | 6 | - | - | - |
| 21류 | 기타 조제식료품 | 4.0 | - | - | - | 16 | - | - |
| 22류 | 음료, 주류, 식초 | 4.5 | 6 | - | - | 18 | - | - |
| 23류 | 조제사료 | 5.8 | 21 | - | - | 2 | - | - |
| 24류 | 연초 | 8.0 | - | - | - | - | - | 10 |
| 총합계 | | 7.3 | 109 | 5 | 7 | 36 | 30 | 530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서, p.111. <표 5-7>에서 인용

- 01~15류까지 원산지규정은 WO만 인정하고 있으며, 특이점은 17류 당류, 설탕과자의 원산지규정 또한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해 엄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완전생산기준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제16류(육류 및 어류의 조제품), 제19류(곡물조제품), 제20류(채소 및 과실의 조제품), 제23류(사료 조제품)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수출국인 중국과의 FTA에서 무역갈절 현상을 방지하고 국내 민감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 목적 보다는 방어 목적의 원산지기준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3. 주요 수출농식품의 원산지규정 적용 사례 분석

-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 K푸드인 ▲김치 ▲김밥 ▲떡볶이 ▲소스류(고추장) ▲아이스바 등 5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한-미 FTA, 한-EU FTA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와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함.

가. 김치

- 국내 D회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멸치액젓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를 미국, 네덜란드에 수출하고자 함. 한-EU FTA와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4-6> 김치(2005.99)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 기본세율/ FTA | 원산지결정기준(HS 2005.90) |
|-------------|--------------|--|
| 한-EU FTA | 17.6%/0% |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 | |
|--------|----------|---|
| 한-미FTA | 11.2%/0% |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과 제 07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001호 내지 제2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p> <p>※ Chapter 20 Note : 냉동하거나, 물·간수 또는 천연 주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하거나, 또는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 내지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과실과 혼합되어 포함되어 있는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
|--------|----------|---|

- 수출김치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다고 전제함. 먼저, 김치(HS 2005.99)의 원재료명세서(BOM) 상의 수출가격을 10,000원/kg이라고 가정하고,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원재료의 원산지는 미상으로 기재함. 원재료명세서는 <표 4-7>과 같음.

<표 4-7> 한·EU와 한·미 FTA를 활용한 원산지규정 적용 사례(예시)

| No. | 원재료명 | HS 코드 | 원산지 | 사용비율 | 구매처 |
|-----|------|---------|-----|----------|-----|
| 1 | 배추 | 0704.90 | 한국산 | 60% | A |
| 2 | 무 | 0706.90 | 한국산 | 5% | B |
| 3 | 고춧가루 | 0904.22 | 미상 | 10% | C |
| 4 | 배 | 0808.30 | 한국산 | 2% | D |
| 5 | 마늘 | 0703.20 | 미상 | 5% | E |
| 6 | 양파 | 0703.10 | 미상 | 5% | |
| 7 | 소금 | 2501.00 | 미상 | 3% | F |
| 8 | 멸치액젓 | 2103.90 | 미상 | 7% | G |
| 9 | 설탕 | 1701.99 | 미상 | 3%(200원) | H |

자료 : 연구자가 작성

- 첫째,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김치(HS 2005.99)

의 경우 비원산지재료인 07류(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에 해당하는 배추, 무채, 양파, 마늘 등과 0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에 해당하는 배는 한국에서 재배·수확해야 하고, 17류(당류와 설탕과자)에 해당하는 설탕의 가격은 김치의 공장도가격(EXW)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역외가치비율(MC))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비원산지재료인 설탕의 역외가치비율(MC)은 2%($MC = (200\text{원}/10,000\text{원}) \times 100 = 2\%$)로 30%이하 수준으로 MC 기준을 충족함. 반면, 고춧가루, 마늘, 양파는 한국산이 아니거나 한국산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재배·수확되었다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상품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이런 경우 수출기업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재배·수확된 고춧가루, 양파, 마늘을 입증하는 원산지확인서를 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해야 함.
- 둘째,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비원산지재료와 완제품인 김치의 HS 세번 2단위가 달라야 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에 부합하고, 제조공정이 HS 20류(채소, 과실, 견과류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에서 규정한 단순공정(냉동, 포장, 볶음)에 해당하지 않으며, HS 0701호에 해당하는 신선 및 냉장 감자가 원산지재료일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을 수 있음.
- 제시된 김치의 BOM에 따르면 비원산지재료와 완제품인 김치의 HS 2단위 세번이 모두 다르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김치를 만드는 공정은 단순한 가공공정이 아니고, 원재료 가운데 감자가 없으므로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 이처럼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하여 김치의 원산지를 인증받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표 4-8>과 같이 김치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4개년(2020~2023년) 전체 1,348만 달러(한화 약 184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표 4-8> 김치 한·미 FTA 활용 시 미국 관세절감 혜택

| 수출년도 | 수출금액 (1,000달러) | 기본관세 (A)% | FTA특혜관세 (B)% | A-B | 관세혜택 (1,000달러) |
|-------|-------------------|--------------|-----------------|------|-------------------|
| 2020년 | 23,059 | 11.2 | 0.0 | 11.2 | 2,582 |
| 2021년 | 28,254 | 11.2 | 0.0 | 11.2 | 3,164 |
| 2022년 | 29,098 | 11.2 | 0.0 | 11.2 | 3,259 |
| 2023년 | 39,989 | 11.2 | 0.0 | 11.2 | 4,479 |
| 합계 | 120,400 | | | | 13,484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기초로 연구자 작성

- 반면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김치는 최근 4개년(2020~2023년) 간 네덜란드에 수출된 24,402천 달러의 수출금액에 대해 429만 4천 달러(한화 약 58억원)의 관세를 부담해야 함.(<표 4-9>)

<표 4-9> 김치 한-EU FTA 활용 시 네덜란드 관세절감 혜택

| 수출년도 | 수출금액 (1,000달러) | 기본관세 (A)% | FTA특혜관세 (B)% | A-B | 관세혜택 (1,000달러) |
|-------|-------------------|--------------|-----------------|------|-------------------|
| 2020년 | 5,146 | 17.6 | 0.0 | 17.6 | 906 |
| 2021년 | 5,447 | 17.6 | 0.0 | 17.6 | 958 |
| 2022년 | 6,429 | 17.6 | 0.0 | 17.6 | 1,131 |
| 2023년 | 7,380 | 17.6 | 0.0 | 17.6 | 1,299 |
| 합계 | 24,402 | | | | 4,294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기초로 연구자 작성

나. 냉동김밥·냉동덮밥

- 국내 K회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쌀을 사용하여 가공한 냉동 김밥과 냉동 덮밥을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고자 함. 한-미 FTA와 한-EU FTA와 원산지규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표 4-10>과 같고, 쌀을 제외한 김밥과 덮밥의 재료는 모두 국내산을 사용했다고 전제함.

<표 4-10> 냉동김밥 및 냉동덮밥(1905.90)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 기본세율/FTA | 원산지결정기준(HS 1905.90) |
|----------|--------------------|--|
| 한-미FTA | 14%/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EU FTA | 8.36%+46EUR /100kg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8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과 곡분(듀럼밀과 경립종옥수수 및 그들의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상대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김밥·덮밥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C 기준이지만 주재료인 쌀(HS 1006)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주재료인 쌀은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김밥·덮밥의 주재료인 쌀은 국내산 또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지 않는 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함. 한-미 FTA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김밥·덮밥은 0%의 관세특혜를 적용하지 못하고, 14%의 고관세를 지불해야 함.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한-미 FTA 보다 더욱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음. 김밥·덮밥의 주재료인 쌀(HS 1006) 또는 쌀가루(HS 1102.90)는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것만 사용하는 조건임. 따라서 유럽으로 수출되

는 김밥·덮밥도 해외에서 수입한 쌀을 사용한 경우 한-EU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8.36%+46 유로/100Kg의 고관세 부담..

- 냉동 김밥 및 냉동덮밥은 2020년~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17.2%의 대미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인기품목임. 지난 4년간 국내산 쌀을 사용하여 만든 냉동김밥 및 냉동덮밥을 미국에 수출한 경우 5,706만 달러(약 770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표 4-11> 덮밥류(1905.90) 한-미 FTA 활용시 미국 관세절감 혜택

| 수출년도 | 수출금액 (1,000달러) | 수출 증감율 | 기본관세 (A)% | FTA 특혜관세 (B)% | 관세혜택 (1,000달러) |
|-------|-------------------|-----------|--------------|---------------------|-------------------|
| 2020년 | 90,128 | 30.9 | 14.0 | 0.0 | 12,617 |
| 2021년 | 101,793 | 12.9 | 14.0 | 0.0 | 14,251 |
| 2022년 | 93,163 | -6.5 | 14.0 | 0.0 | 13,042 |
| 2023년 | 122,558 | 31.6 | 14.0 | 0.0 | 17,158 |
| 합계 | 407,642 | 17.2 | | | 57,068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기초로 연구자 작성

다. 떡볶이

- 국내 K회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쌀과 밀가루를 사용하여 가공한 떡볶이를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고자 함. 한-미 FTA와 한-EU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표 4-12>와 같고, 쌀과 밀가루를 제외한 떡볶이의 재료는 모두 국내산을 사용했다고 전제함.

<표 4-12> 떡볶이(1901.90)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 기본세율/ FTA | 떡볶이 원산지결정기준(HS 1901.90) |
|------------|--------------|---|
| 한-미 FTA | 6.4%/ 0% |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 |

| | | |
|----------|---------|---|
| | | <p>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p> <p>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p> |
| 한-EU FTA | 7.6%/0% | <p>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p>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p> <p>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 제1006호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p> <p>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p> |

- 떡볶이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CC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재료인 쌀(HS 1006)과 제11류에 분류되는 쌀가루 등 쌀 관련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주재료인 쌀은 반드시 역내산을 사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떡볶이의 주재료인 쌀은 국내산 또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지 않는 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함. 이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6.4%의 관세를 지불해야 함.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떡볶이의 주재료인 쌀뿐만 아니라 첨가되는 우유도 완전생산된 것만 사용해야 하고, 재료로 투입되는 설탕의 경우에도 수출제품 가격(공장도가격기준)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추가요건이 있음. 따라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떡볶이의 주재료인 쌀 또는 쌀가루를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이 될 수없음. 이 경우 7.6%의 관세를 부담해야 함.
- 떡볶이(HS 1901.90)은 2020년~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22.1%의 대미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최고인기품목임. 지난 4년간 국내산 쌀을 사용하여

만든 떡볶이를 미국에 수출한 경우 837만 달러(약 113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표 4-13>)

<표 4-13> 떡볶이(1901.90) 한-미 FTA 활용시 미국 관세절감 혜택

| 수출년도 | 수출금액 (1,000달러) | 수출 증감율 | 기본관세 (A)% | FTA 특혜관세 (B)% | 관세혜택 (1,000달러) |
|-------|-------------------|-----------|--------------|---------------------|-------------------|
| 2020년 | 26,155 | 48.4 | 6.4 | 0.0 | 1,673 |
| 2021년 | 29,732 | 13.7 | 6.4 | 0.0 | 1,902 |
| 2022년 | 33,620 | 13.1 | 6.4 | 0.0 | 2,151 |
| 2023년 | 41,437 | 15.5 | 6.4 | 0.0 | 2,651 |
| 합계 | 130,944 | 22.7 | | | 8,380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기초로 연구자 작성

라. 소스류(고추장)

- 국내 P회사는 해외에서 수입한 혼합양념(고추다데기)를 사용하여 제조한 고추장(HS 2103.90)을 미국, 유럽,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함. 한-미 FTA, 한-EU FTA 및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표 4-14>와 같음.

<표 4-14> 고추장(2103.90)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 기본세율/ FTA | 고추장(2103.90) |
|--------------|--------------|---|
| 한-미 FTA | 6.4%/ 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EU FTA | 7.7%/ 0%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아세안 FTA | 45%/ 0% | 1.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제2103.90.9030호의 혼합조미료, 제2103.90.9090호의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

| | | |
|--|--|---|
| | |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고추장을 가공하기 위해 사용한 원재료명세서는 아래 <표-15>와 같음. 핵심재료인 고추양념, 혼합양념분말 및 물엿은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함.

<표 4-15> 고추장(2103.90)의 원재료명세서(BOM) 예시

| | | | | | |
|---------|-------|-------|-------|-----|--------------|
| 정제소금 | | | 0.00 | | 2501.00.9010 |
| 물엿 | | | 27.00 | | 수입산 1702 |
| 고추양념 | 28.82 | | | | |
| 고춧가루 | 39.00 | 11.24 | 11.24 | | |
| 생마늘 | 6.00 | 1.73 | 1.73 | | |
| 생양파 | 5.00 | 1.44 | 1.44 | 중국산 | 2103.90.9030 |
| 정제염 | 15.00 | 4.32 | 4.32 | | |
| 정제수 | 35.00 | 10.09 | 10.09 | | |
| 소 계 | | 28.82 | | | |
| 혼합양념분말 | 0.00 | | | | |
| 찐밀쌀분 | 61.00 | 0.00 | 0.00 | | |
| 고춧가루 | 19.00 | 0.00 | 0.00 | | |
| 정제염 | 10.00 | 0.00 | 0.00 | | |
| 포도당 | 6.00 | 0.00 | 0.00 | | |
| 마늘가루 | 4.00 | 0.00 | 0.00 | | |
| 소 계 | | 0.00 | | | |
| 고추분(염암) | | | 0.00 | | |

자료: 김석오(2023), "FTA원산지결정기준", 관세인재개발원 강의자료.

- 고추장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임. 고추장 생산에 사용된 주재료인 고추양념과 혼합양념분말은 완제품인 고추장과 동일한 HS 2103으로 분류되고, 원재료의 원산지는 중국산임. 따라서 CTH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함. 미국으로 수출되는 고추장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추장과 2단위 세번이 다른 고춧가루(HS 0902)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고추장(HS 2103.90)을 비롯한 장류는 2020년~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11.4%의 대미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인기품목임. 지난 4년간 국내에서 고춧가루 원재료부터 사용하여 만든 고추장을 미국에 수출한 경우 1921만 달러(약 259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표 4-16> 고추장(2103.90) 한-미 FTA 활용시 미국 관세절감 혜택

| 수출년도 | 수출금액 (1,000달러) | 수출 증감율 | 기본관세 (A)% | FTA 특혜관세 (B)% | 관세혜택 (1,000달러) |
|-------|-------------------|-----------|--------------|---------------------|-------------------|
| 2020년 | 67,707 | 31.8 | 6.4 | 0.0 | 4,333 |
| 2021년 | 77,573 | 11.3 | 6.4 | 0.0 | 4,964 |
| 2022년 | 75,715 | -2.4 | 6.4 | 0.0 | 4,845 |
| 2023년 | 79,314 | 4.8 | 6.4 | 0.0 | 5,076 |
| 합계 | 300,309 | 11.4 | | | 19,219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기초로 연구자 작성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within CTH’로 4단위 세번 이내에서 변경되었더라도 불인정 공정 이상의 생산공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임. 따라서 완제품인 고추장과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는 고추양념과 혼합양념분말을 사용한 경우에도 한국산으로 판정됨.
-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고추장은 40%의 관세가 있지만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는 0%임. 한-아세안 FTA의 고추장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기준과 고추류 완전생산 동시 충족기준 또는 ▲부가가치(RVC) 40%과 고추류 완전생산 동시 충족기준임
- 본 사례에서 어떤 기준을 선택하더라도 고추장의 주재료인 고추를 국내 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국내 P 회사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고추장은 40%의 고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마. 아이스바

- 국내 B 제과업체는 호주에서 수입한 유장을 사용하여 제조한 여러 종류의 아이스바(HS 2105.00)을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함. 미국의 기본관세는 종가세(17%)와 종량세(50.2C/Kg)가 합산 부과됨. EU의 기본관세는 종가세(7.9%)와 종량세(54 EUR/100Kg)가 합산 부과됨.
- 한-미 FTA 및 한-EU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표 4-17>와 같음.

<표 4-17> 아이스바(2105.00)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 기본세율/ FTA | 아이스바(2105.00) |
|-------------|---------------------------|--|
| 한-미 FTA | 17%+ 50.2C/Kg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5호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EU FTA | 7.9% + 54EUR/ 100Kg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아이스바를 가공하기 위해 사용한 원재료명세서는 호주산 유장(150원), 필리핀산 설탕(100원), 기타 국내산 재료(100원)으로 구성되었고, 수출가격은 500원이라고 가정함.
- 먼저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해 보면 CTH 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이스바 제조에 사용된 우유 성분은 국내산 또는 미국산을 사용해야 함. 따라서 호주산 유장을 사용하여 제조한 아이스바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이 경우 고관세를 부담해야 함.

-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아이스바 제조에 사용한 비원산지 우유(HS 4류)의 가격이 수출가격(공장도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하고, 비원산지 당분(HS 17류)의 가격이 수출가격(공장도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국산으로 인정됨.
- 아이스바(HS 2105.00)는 2020년~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31.6%의 대미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최고인기품목임. 지난 4년간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아이스바를 미국에 수출한 경우 최소 1320만 달러(약 178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표 4-18> 아이스바(2105.00) 한-미 FTA 활용시 미국 관세절감 혜택

| 수출년도 | 수출금액 (1,000달러) | 수출 증감율 | 기본관세 (A) | FTA 특혜관세(B) | 관세혜택 (1,000달러) |
|-------|-------------------|-----------|------------------|----------------|-------------------|
| 2020년 | 14,940 | 82.1 | 17%+50. 2C/Kg | 0.0 | 2,539 |
| 2021년 | 18,006 | 17.5 | | 0.0 | 3,061 |
| 2022년 | 21,718 | 20.7 | | 0.0 | 3,692 |
| 2023년 | 23,013 | 5.0 | | 0.0 | 3,912 |
| 합계 | 77,677 | 31.6 | | | 13,205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기초로 연구자 작성

사. 시사점

-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 품목인 김치, 냉동김밥, 떡볶이, 고추장, 아이스바는 미국등 FTA 상대국에서 고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으로서 큰 폭의 FTA 관세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주재료 완전생산 사용요건 등 매우 엄격한 원산지기준으로 인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어려워 FTA 활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굴절 현상 방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원산지기준이 필요하지만 위 사례에서와 같이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기준은 오히려 우리 수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3절 FTA 발효 이후 농식품의 교역변화 및 FTA 활용실태

1. FTA 체결이후 농식품 교역변화

가. FTA 체결국별 시장개방률 및 농식품 교역 동향

-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2024년 현재 20년이 경과 되면서 우리나라 교역액 중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비중은 77.9%(2023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²⁰¹⁾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의 80%가 FTA 체결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농업 부문 평균시장개방률은 72%로, 시장개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97.9%)이며, 칠레(71.2%), 아세안(67.4%), RCEP(69.0%), 중국(63.9%)과의 FTA는 평균에 비해 저조함.
- 한-미 FTA 시장개방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농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였고, 한-EU FTA 시장개방률은 96.3%로 한-미 FTA 다음으로 농산물 개방화 수준이 높음. 시장개방률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기회도 확대되는 것임.
- 영연방 FTA 시장개방률은 호주가 88.2%, 캐나다 85.2%, 뉴질랜드 85.3%로 축산물과 일부 식량작물 등을 중심으로 수입 개방이 확대되었지만, 미국 및 EU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표 4-19>).
- 우리 정부가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와 국내 농업계의 강력한 FTA 반발을 의식하여 칠레 및 아시아 국가와의 농업 협상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양허협상 기조를 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201) 관세청 FTA 포털, Yes FTA.

<표 4-19> 주요 FTA의 농업부분 시장개방률(%)

| 협정 | 미국 | EU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칠레 | 아세안 | 중국 | RCEP |
|-----|------|------|------|------|------|------|------|------|------|
| 개방률 | 97.9 | 96.3 | 88.2 | 85.2 | 85.3 | 71.2 | 67.4 | 63.9 | 69.0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 2023년 기준 FTA 체결국 대상 농식품의 총 교역액은 526억 3천만 달러로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지난 20년간 연평균 6.0%씩 증가했으며, 수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6.7%, 수입액 증가율은 6.0%로서 수입 증가율 보다 수출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4-20>)

<표 4-20> FTA 발효 20년간 농식품 교역액 및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04년 | 2008년 | 2012년 | 2016년 | 2020년 | 2022년 (A) | 2023년 (B) | 변화율 | | | |
|----|---------|---------|------------|---------------|----------------|----------------|----------------|----------------|----------------|------|---|
| | | | | | | | | 전년 대비 (B/A) | 연평균 (2004~23년) | | |
| 전체 | 교역액 | 17,409 | 28,057 | 35,213 | 36,423 | 41,848 | 57,176 | 52,634 | -7.9 | 6.0 | |
| | 수출 | 2,856 | 3,604 | 5,749 | 6,460 | 7,570 | 8,768 | 8,971 | 2.3 | 6.2 | |
| | 수입 | 14,552 | 24,453 | 29,467 | 29,963 | 34,278 | 48,408 | 43,662 | -9.8 | 6.0 | |
| | 무역수지 | -11,696 | -20,849 | -23,721 | -23,504 | -26,709 | -39,641 | -34,691 | 12.5 | - | |
| | FTA 체결국 | 수출 | 1 (0.0) | 339 (9.4) | 1,688 (29.4) | 3,694 (57.2) | 4,692 (62.0) | 7,023 (80.1) | 7,126 (79.4) | 1.5 | - |
| | | 수입 | 205 (1.9) | 3,655 (24.1) | 14,922 (63.2) | 24,820 (81.3) | 29,033 (84.7) | 40,227 (83.1) | 36,381 (83.3) | -9.6 | - |
| | | 무역수지 | -204 (2.3) | -3,316 (27.1) | -13,234 (69.4) | -21,126 (86.4) | -24,341 (91.1) | -33,204 (83.8) | -29,255 (84.3) | 11.9 |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전계자료. p.5 <표2>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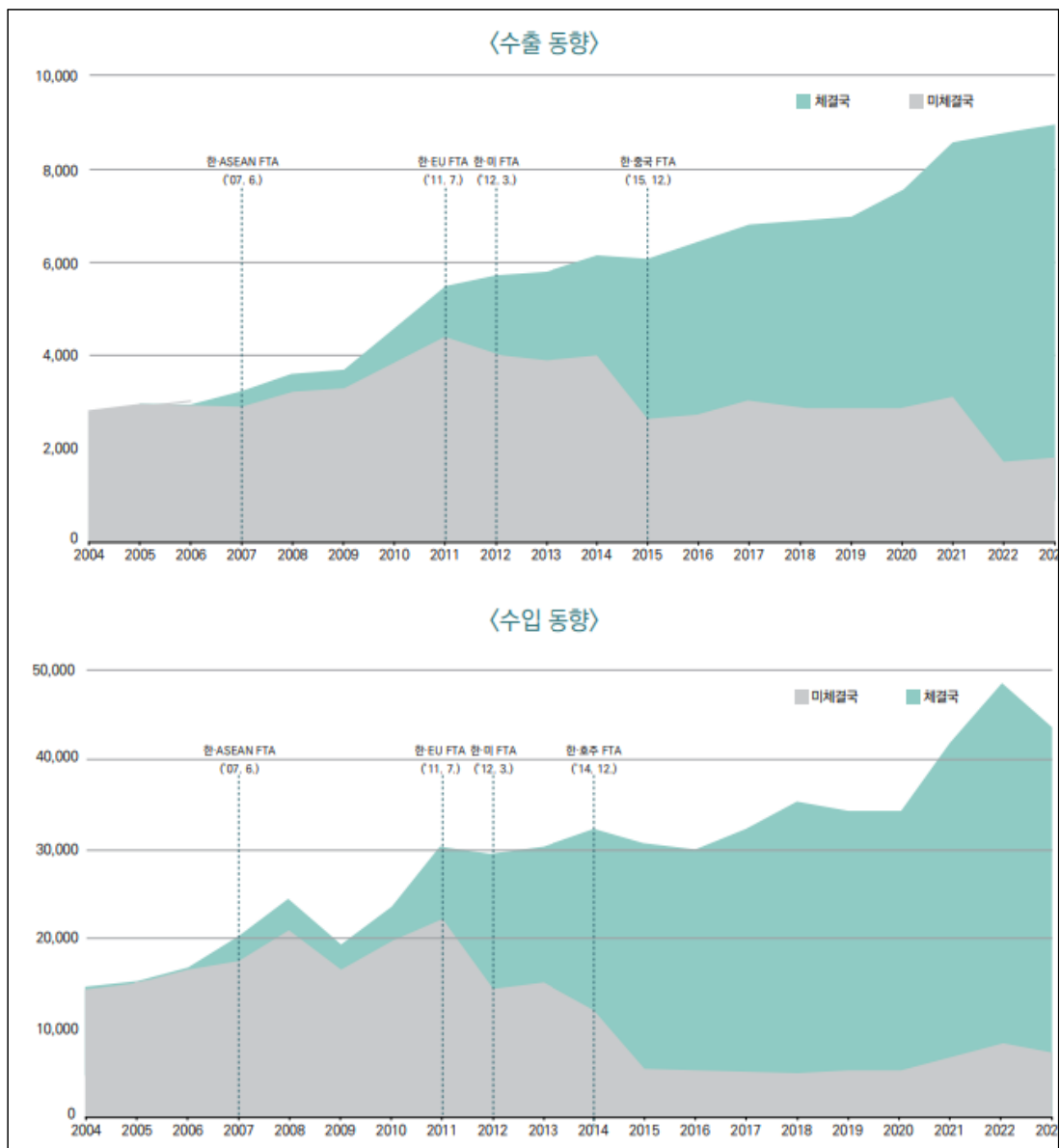
- FTA 체결국 대상 농식품 수출액은 2023년 기준 71억 3천만 달러, 수입액은 363억 8천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수입액의 79.4%와 83.3%를 차지함.²⁰²⁾ 전체 농식품 무역수지는 346억 9천만 달러 적자로 2022년 대비 12.5% 개선되었으며, FTA 체결국 대상 농식품 무역수지는 292억 6천만 달러 적자로, '22년 대비 11.9% 개선되었음.

2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2024 FTA체결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 FTA 체결 전후의 농식품 수출입 금액을 비교하면, FTA 발효 이후 FTA 체결국가간 수출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농식품 수입은 한-아세안, 한-EU, 한-미, 한-호주 FTA 발효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농식품 수출의 경우 한-ASEAN, 한-미, 한-중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4-4])

[그림 4-4] FTA 체결 여부에 따른 농식품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전계자료. p.5 [그림 2]에서 인용.

나. FTA 체결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2023년 기준 수출액이 큰 주요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김치, 홍삼류, 기타 음료, 기타 소스제품 등이며, FTA체결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보다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표 4-21>)
- 혼합조제식료품은 2023년 기준 FTA 체결국 대상 총수출액은 8억 4천만 달러로 2004년부터 20년간 연평균 28.6% 증가한 반면, 미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4.0% 감소하였음. 주요 수출국은 아세안 국가와 중국임.
- 라면류는 2023년 FTA 체결국 대상 총수출액은 9억 5천만 달러로 체결국 대상 2004년부터 연평균 27.8% 증가한 반면, 미체결국으로의 수출은 0%로 변화가 없음.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과 미국임.
- 김치는 2023년 기준 FTA 체결국 대상 총수출액은 1억 4천만 달러로 체결국 대상으로 동기간 연평균 33.8%가 증가한 반면, 미체결국으로의 수출은 -9.7% 감소하였음.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RCEP)과 미국이며, 최근 유럽, 캐나다, 호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 홍삼은 FTA 체결국 대상 수출은 연평균 29.6% 증가하였으나, 미체결국으로의 수출은 -2.2%로 감소하였음. FTA 체결 이후 딸기·배·샤인머스켓과 같은 신선 과일도 29.1%, 28.2%, 6.0% 증가하여 미체결국으로 수출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증가를 보였음.
- 떡볶이는 2023년 기준 총수출액은 85백만 달러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미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0% 성장에 불과함.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임.
- 건강음료는 2023년 기준 3억 95백만 달러로 20년간 연평균 31.5% 증가한 반면, 미체결국으로의 수출은 9.1% 증가에 그침. 주요 수출국은 중국 및 아세안임.

<표 4-21> 주요 농식품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04 | 2006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0 | 2022 | 2023 | 연평균 | |
|--------|------|------|------|------|------|------|------|------|------|------|-------|-------|--------|
| 혼합조제품 | 아세안 | 35 | 53 | 36 | 95 | 93 | 98 | 112 | 133 | 196 | 252 | 228 | 10.4 |
| | 중국 | 57 | 44 | 47 | 53 | 68 | 70 | 90 | 103 | 131 | 184 | 218 | 7.4 |
| | 체결 | 0 | 12 | 37 | 116 | 361 | 376 | 553 | 562 | 623 | 964 | 842 | 28.6 |
| | 미체결 | 385 | 398 | 376 | 484 | 314 | 343 | 264 | 311 | 264 | 188 | 178 | -4.0 |
| | 전체 | 386 | 409 | 414 | 599 | 675 | 720 | 817 | 873 | 887 | 1,152 | 1,020 | 5.2 |
| 라면 | 중국 | 11 | 15 | 29 | 28 | 29 | 35 | 75 | 93 | 149 | 189 | 215 | 16.8 |
| | 미국 | 41 | 20 | 20 | 20 | 22 | 26 | 36 | 50 | 82 | 76 | 127 | 6.1 |
| | 체결 | 0 | 4 | 15 | 17 | 66 | 86 | 217 | 312 | 458 | 622 | 796 | 27.8 |
| | 미체결 | 156 | 99 | 114 | 140 | 140 | 122 | 74 | 101 | 146 | 144 | 157 | 0.0 |
| | 전체 | 156 | 102 | 129 | 157 | 206 | 208 | 290 | 413 | 604 | 765 | 952 | 10.0 |
| 김치 | 일본 | 97 | 63 | 75 | 83 | 85 | 57 | 47 | 56 | 71 | 61 | 61 | -2.4 |
| | 미국 | 1 | 2 | 2 | 3 | 4 | 5 | 6 | 9 | 23 | 29 | 40 | 20.3 |
| | 체결 | 0 | 0 | 1 | 2 | 9 | 14 | 20 | 28 | 55 | 124 | 141 | 33.8 |
| | 미체결 | 103 | 70 | 84 | 97 | 98 | 70 | 59 | 67 | 90 | 16 | 15 | -9.7 |
| | 전체 | 103 | 70 | 85 | 98 | 107 | 84 | 79 | 97 | 145 | 141 | 156 | 2.2 |
| 고추장 | 일본 | 4 | 3 | 2 | 4 | 5 | 3 | 3 | 5 | 5 | 6 | 6 | 1.6 |
| | 체결 | 50 | 51 | 56 | 66 | 71 | 62 | 99 | 101 | 96 | 104 | 106 | 4.0 |
| | 미체결 | 0 | 2 | 0 | 1 | 1 | 2 | 0 | 0 | 0 | 4 | 0 | -100.0 |
| | 전체 | 50 | 53 | 56 | 67 | 72 | 64 | 99 | 101 | 96 | 108 | 106 | 4.0 |
| 인삼(홍삼) | 중국 | 5 | 6 | 2 | 11 | 27 | 27 | 12 | 34 | 35 | 50 | 49 | 12.8 |
| | 홍콩 | 25 | 15 | 29 | 25 | 20 | 37 | 12 | 17 | 11 | 9 | 20 | -1.2 |
| | 체결 | 0 | 0 | 1 | 2 | 5 | 4 | 17 | 39 | 37 | 54 | 55 | 29.6 |
| | 미체결 | 41 | 34 | 40 | 50 | 60 | 83 | 20 | 28 | 20 | 20 | 27 | -2.2 |
| | 전체 | 41 | 34 | 42 | 53 | 65 | 86 | 37 | 67 | 57 | 74 | 81 | 3.7 |
| 딸기 | 아세안 | 0 | 1 | 4 | 15 | 12 | 18 | 19 | 26 | 34 | 40 | 52 | 28.8 |
| | 홍콩 | 0 | 2 | 4 | 7 | 8 | 12 | 12 | 17 | 17 | 16 | 16 | 20.4 |
| | 체결 | 0 | 1 | 4 | 15 | 12 | 18 | 19 | 27 | 35 | 42 | 54 | 29.1 |
| | 미체결 | 4 | 5 | 8 | 12 | 13 | 15 | 15 | 20 | 19 | 17 | 17 | 7.7 |
| | 전체 | 4 | 6 | 12 | 26 | 24 | 33 | 34 | 48 | 54 | 59 | 71 | 16.1 |
| 배 | 미국 | 15 | 20 | 22 | 25 | 26 | 29 | 30 | 36 | 31 | 36 | 38 | 4.8 |
| | 아세안 | 1 | 1 | 2 | 2 | 1 | 3 | 9 | 19 | 10 | 12 | 11 | 13.6 |
| | 체결 | 0 | 0 | 2 | 2 | 27 | 33 | 41 | 56 | 43 | 51 | 51 | 28.2 |
| | 미체결 | 35 | 36 | 46 | 52 | 22 | 29 | 25 | 24 | 29 | 23 | 23 | -2.2 |
| | 전체 | 35 | 37 | 47 | 54 | 50 | 62 | 66 | 80 | 72 | 74 | 75 | 4.0 |
| 샤인머스켓 | 홍콩 | 0 | 0 | 0 | 0 | 0 | 0 | 1 | 0 | 0 | 8 | 9 | 33.3 |
| | 체결 | 10 | 10 | 14 | 16 | 17 | 20 | 23 | 27 | 27 | 29 | 30 | 6.0 |
| | 미체결 | 1 | 1 | 0 | 0 | 1 | 2 | 0 | 0 | 0 | 4 | 0 | -100.0 |
| | 전체 | 11 | 11 | 14 | 16 | 18 | 22 | 23 | 27 | 27 | 33 | 30 | 5.4 |

| | | | | | | | | | | | | | |
|-----------|-----|----|----|-----|-----|-----|-----|-----|-----|-----|-----|-----|--------|
| 단 감 | 말레이 | 0 | 0 | 0 | 0 | 0 | 0 | 3 | 3 | 3 | 2 | 0 | -24.7 |
| | 체결 | 0 | 0 | 0 | 0 | 0 | 0 | 19 | 17 | 16 | 19 | 14 | -3.7 |
| | 미체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100.0 |
| | 전체 | 0 | 0 | 0 | 0 | 0 | 0 | 19 | 17 | 16 | 21 | 14 | -13.7 |
| 파 프 리 카 | 일본 | 6 | 3 | 3 | 4 | 4 | 4 | 1 | 1 | 2 | 0 | 0 | -100.0 |
| | 체결 | 8 | 7 | 12 | 14 | 16 | 16 | 20 | 15 | 13 | 0 | 0 | -100.0 |
| | 미체결 | 0 | 0 | 0 | 1 | 1 | 0 | 0 | 0 | 0 | 0 | 0 | -100.0 |
| | 전체 | 8 | 7 | 12 | 15 | 17 | 16 | 20 | 15 | 13 | 0 | 0 | -100.0 |
| 떡 북 이 | 미국 | 3 | 3 | 4 | 5 | 4 | 4 | 5 | 10 | 15 | 18 | 16 | 9.7 |
| | 체결 | 33 | 31 | 35 | 36 | 49 | 52 | 51 | 47 | 62 | 81 | 85 | 5.1 |
| | 미체결 | 0 | 1 | 0 | 1 | 1 | 2 | 0 | 0 | 0 | 4 | 0 | -100.0 |
| | 전체 | 33 | 32 | 35 | 37 | 50 | 54 | 51 | 47 | 62 | 85 | 85 | 5.1 |
| 건 강 음 료 | 중국 | 1 | 3 | 9 | 17 | 25 | 29 | 37 | 37 | 54 | 76 | 110 | 27.0 |
| | 아세안 | 0 | 0 | 1 | 1 | 5 | 9 | 25 | 58 | 49 | 85 | 84 | 34.0 |
| | 체결 | 0 | 0 | 1 | 1 | 60 | 93 | 170 | 216 | 231 | 301 | 336 | 31.5 |
| | 미체결 | 11 | 21 | 38 | 6 | 91 | 87 | 44 | 57 | 35 | 42 | 59 | 9.1 |
| | 전체 | 11 | 21 | 39 | 65 | 152 | 179 | 214 | 273 | 266 | 342 | 395 | 20.6 |
| 가 정 간 편 식 | 미국 | 43 | 31 | 21 | 23 | 14 | 23 | 21 | 24 | 34 | 50 | 53 | 1.2 |
| | 체결 | 73 | 82 | 108 | 108 | 117 | 126 | 129 | 138 | 137 | 150 | 154 | 4.0 |
| | 미체결 | 0 | 3 | 0 | 1 | 1 | 2 | 0 | 0 | 1 | 4 | 0 | -100.0 |
| | 전체 | 73 | 85 | 108 | 109 | 118 | 128 | 129 | 138 | 138 | 154 | 154 | 4.0 |
| 과 자 류 | 일본 | 35 | 39 | 55 | 56 | 80 | 94 | 63 | 69 | 67 | 70 | 38 | 0.5 |
| | 체결 | 31 | 31 | 42 | 49 | 57 | 57 | 66 | 68 | 82 | 105 | 97 | 6.2 |
| | 미체결 | 0 | 2 | 0 | 1 | 1 | 2 | 0 | 0 | 0 | 4 | 0 | -100.0 |
| | 전체 | 31 | 33 | 42 | 50 | 58 | 59 | 66 | 68 | 82 | 109 | 97 | 6.2 |
| 채 식 제 품 | 미국 | 0 | 0 | 0 | 1 | 1 | 1 | 2 | 3 | 3 | 5 | 6 | 9.6 |
| | 체결 | 0 | 0 | 0 | 58 | 55 | 62 | 65 | 73 | 85 | 90 | 93 | 2.5 |
| | 미체결 | 0 | 0 | 0 | 1 | 1 | 2 | 0 | 0 | 0 | 4 | 0 | -100.0 |
| | 전체 | 0 | 0 | 0 | 59 | 56 | 64 | 65 | 73 | 85 | 94 | 93 | 2.4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전계자료. p.5 <표 3>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보완 작성.

- FTA 무역시대가 되면서 딸기, 배, 샤인머스켓 등 국내산 과일이 FTA 체결국으로 수출되는 등 무역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다. FTA 체결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 2023년 기준 수입액 급증 품목은 쇠고기, 옥수수, 돼지고기, 밀, 닭고기 등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밀의 경우 수입액의 90% 이상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었음.
- 쇠고기는 2023년 기준 총수입액은 38억 47백만 달러로 2004년부터 20년간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8% 증가한 반면, 비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은 -14.0%로 감소하였음.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호주임.
- 옥수수는 2023년 기준 FTA 체결국 대상 총수입액은 6억 9천만 달러로 연평균 19% 증가한 반면,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7% 증가에 그쳤음. 주요 수입국가는 EU,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임.
- 돼지고기는 2023년 기준 FTA 체결국 대상 총수입액은 19억 4천만 달러로 20년간 연평균 20.7% 증가한 반면, 미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1% 감소하였음. 주요 수입 대상국은 EU와 미국임.
- 밀은 2023년 기준 FTA 체결국 대상 총수입액은 15억 8천만 달러로 2004년부터 연평균 4.9% 증가한 반면, 미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0% 감소하였음. 주요 수입국은 호주 및 미국임.
- 닭고기는 2023년 기준 FTA 체결국 대상 총수입액은 2억 51백만 달러로 2004년부터 연평균 20.8% 증가한 반면, 미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1.3% 증가하였음.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 및 아세안임.
- 포도는 2023년 기준 FTA 체결국 대상 총수입액은 1억 6천만 달러로 2004년부터 연평균 14% 증가한 반면, 미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7.1% 감소하였음. 주요 수입국은 칠레 및 미국임.

○ 그 외 감자, 바나나, 대두, 보리, 양파, 오렌지, 키위, 체리 등의 민감품목들도 FTA 체결국의 수입증가율이 미체결국에 수입 증가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FTA 체결에 따른 양국간 무역증가 및 무역전환 효과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표 4-22>)

<표 4-22> 주요 농식품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04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2022 | 2023 | 연평균 | |
|------|------|-------|-------|-------|-------|-------|-------|-------|-------|-------|-------|
| 쇠고기 | 미국 | 103 | 197 | 422 | 522 | 764 | 1,035 | 1,635 | 2,624 | 2,210 | 17.5 |
| | 호주 | 355 | 680 | 634 | 753 | 943 | 1,096 | 1,116 | 1,483 | 1,378 | 7.4 |
| | 체결 | 0 | 0 | 0 | 523 | 1,710 | 2,271 | 2,885 | 4,449 | 3,813 | 19.8 |
| | 미체결 | 600 | 1,051 | 1,186 | 88 | 137 | 13 | 23 | 58 | 34 | -14.0 |
| | 전체 | 600 | 1,051 | 1,186 | 1,410 | 1,847 | 2,284 | 2,908 | 4,508 | 3,847 | 10.3 |
| 옥수수 | 브라질 | 265 | 37 | 73 | 587 | 390 | 480 | 148 | 697 | 1,075 | 7.7 |
| | 아르헨 | 40 | 1 | 60 | 329 | 136 | 297 | 195 | 1,899 | 906 | 17.9 |
| | EU | 1 | 2 | 3 | 181 | 37 | 15 | 35 | 201 | 348 | 21.1 |
| | 체결 | 0 | 5 | 0 | 1,142 | 1,464 | 865 | 1,479 | 830 | 686 | 21.8 |
| | 미체결 | 1,438 | 2,825 | 2,000 | 1,475 | 1,180 | 1,044 | 666 | 3,461 | 2,873 | 3.7 |
| | 전체 | 1,438 | 2,830 | 2,000 | 2,617 | 2,644 | 1,909 | 2,146 | 4,292 | 3,559 | 4.9 |
| 돼지고기 | EU | 209 | 400 | 298 | 516 | 637 | 710 | 950 | 1,131 | 905 | 8.0 |
| | 미국 | 44 | 250 | 184 | 391 | 403 | 393 | 602 | 577 | 599 | 14.8 |
| | 체결 | 55 | 90 | 113 | 1,036 | 1,138 | 1,314 | 1,808 | 2,093 | 1,938 | 20.7 |
| | 미체결 | 298 | 787 | 604 | 171 | 118 | 49 | 53 | 76 | 90 | -6.1 |
| | 전체 | 352 | 876 | 717 | 1,207 | 1,256 | 1,363 | 1,861 | 2,168 | 2,028 | 9.6 |
| 밀 | 호주 | 249 | 339 | 256 | 699 | 351 | 268 | 300 | 735 | 863 | 6.8 |
| | 미국 | 274 | 723 | 377 | 764 | 431 | 291 | 369 | 559 | 472 | 2.9 |
| | 체결 | 0 | 5 | 7 | 933 | 935 | 660 | 739 | 1,763 | 1,577 | 4.9 |
| | 미체결 | 665 | 1,309 | 1,095 | 856 | 290 | 363 | 276 | 39 | 111 | -9.0 |
| | 전체 | 665 | 1,314 | 1,102 | 1,790 | 1,225 | 1,023 | 1,014 | 1,801 | 1,688 | 5.0 |
| 닭고기 | 브라질 | 0 | 52 | 83 | 145 | 138 | 168 | 207 | 390 | 423 | 16.6 |
| | 아세안 | 16 | 20 | 32 | 47 | 63 | 62 | 113 | 183 | 199 | 14.3 |
| | 체결 | 0 | 20 | 33 | 146 | 175 | 98 | 166 | 223 | 251 | 20.8 |
| | 미체결 | 55 | 135 | 174 | 154 | 147 | 168 | 207 | 390 | 423 | 11.3 |
| | 전체 | 55 | 154 | 207 | 300 | 322 | 366 | 374 | 613 | 674 | 14.1 |
| 감자 | 미국 | 31 | 44 | 67 | 97 | 123 | 124 | 129 | 175 | 177 | 9.7 |
| | EU | 1 | 1 | 4 | 9 | 9 | 14 | 20 | 64 | 75 | 23.3 |
| | 체결 | 0 | 0 | 0 | 106 | 137 | 173 | 190 | 287 | 307 | 40.9 |
| | 미체결 | 47 | 59 | 82 | 15 | 11 | 0 | 0 | 1 | 2 | -15.4 |
| | 전체 | 47 | 59 | 83 | 121 | 148 | 174 | 190 | 288 | 308 | 10.4 |
| 바나나 | 아세안 | 87 | 154 | 209 | 245 | 305 | 276 | 286 | 227 | 247 | 5.7 |
| | 체결 | 0 | 154 | 209 | 248 | 310 | 287 | 304 | 263 | 282 | 2.7 |
| | 미체결 | 87 | 0 | 1 | 2 | 12 | 41 | 56 | 21 | 23 | -6.7 |
| | 전체 | 87 | 154 | 210 | 250 | 321 | 328 | 360 | 284 | 305 | 6.8 |
| 포도 | 칠레 | 13 | 69 | 86 | 138 | 172 | 108 | 100 | 72 | 70 | 9.2 |
| | 미국 | 18 | 37 | 33 | 45 | 47 | 40 | 74 | 36 | 35 | 3.6 |

| | | | | | | | | | | | |
|-----|------|-----|-----|-----|-----|-----|-----|-----|-----|-----|--------|
| | 체결 | 13 | 69 | 86 | 193 | 240 | 175 | 210 | 181 | 160 | 14.0 |
| | 미체결 | 28 | 41 | 37 | 3 | 2 | 0 | 1 | 1 | 1 | -17.1 |
| | 전체 | 42 | 110 | 123 | 195 | 242 | 175 | 210 | 182 | 160 | 7.4 |
| 대두 | 미국 | 374 | 280 | 353 | 120 | 161 | 114 | 85 | 141 | 176 | -3.9 |
| | 캐나다 | 1 | 0 | 2 | 4 | 2 | 13 | 7 | 31 | 27 | 20.6 |
| | 체결 | 14 | 16 | 21 | 28 | 26 | 29 | 25 | 33 | 31 | 4.3 |
| | 미체결 | 0 | 0 | 1 | 1 | 2 | 0 | 0 | 2 | 0 | -100.0 |
| | 전체 | 14 | 16 | 22 | 29 | 28 | 29 | 25 | 35 | 31 | 4.3 |
| 보리 | 호주 | 11 | 13 | 6 | 25 | 16 | 8 | 13 | 26 | 42 | 7.4 |
| | 캐나다 | 0 | 5 | 0 | 0 | 0 | 0 | 0 | 0 | 0 | -20.6 |
| | 체결 | 5 | 11 | 17 | 13 | 23 | 22 | 21 | 21 | 19 | 7.3 |
| | 미체결 | 0 | 0 | 0 | 1 | 2 | 0 | 0 | 4 | 0 | -100.0 |
| | 전체 | 5 | 11 | 17 | 14 | 25 | 22 | 21 | 25 | 19 | 7.3 |
| 양파 | 중국 | 0 | 10 | 7 | 19 | 1 | 15 | 17 | 34 | 49 | 6.9 |
| | 일본 | 0 | 0 | 0 | 0 | 0 | 4 | 1 | 1 | 0 | -12.9 |
| | 체결 | 0 | 11 | 13 | 14 | 21 | 15 | 17 | 15 | 15 | 2.7 |
| | 미체결 | 0 | 0 | 0 | 1 | 2 | 0 | 0 | 1 | 0 | -100.0 |
| | 전체 | 0 | 11 | 13 | 15 | 23 | 15 | 17 | 16 | 15 | 2.7 |
| 오렌지 | 미국 | 131 | 104 | 125 | 211 | 156 | 210 | 234 | 148 | 147 | 0.6 |
| | 체결 | 10 | 9 | 9 | 9 | 14 | 12 | 13 | 15 | 16 | 2.5 |
| | 미체결 | 1 | 0 | 0 | 1 | 2 | 0 | 0 | 1 | 0 | -100.0 |
| | 전체 | 11 | 9 | 9 | 10 | 16 | 12 | 13 | 16 | 16 | 2.0 |
| 키위 | 뉴질랜드 | 38 | 53 | 49 | 55 | 43 | 51 | 84 | 157 | 128 | 6.6 |
| | 체결 | 3 | 6 | 10 | 5 | 10 | 14 | 13 | 13 | 15 | 8.8 |
| | 미체결 | 1 | 0 | 0 | 1 | 0 | 0 | 0 | 1 | 0 | -100.0 |
| | 전체 | 4 | 6 | 10 | 6 | 10 | 14 | 13 | 14 | 15 | 7.2 |
| 체리 | 칠레 | 5 | 29 | 31 | 81 | 123 | 110 | 132 | 59 | 88 | 15.9 |
| | 체결 | 3 | 3 | 10 | 4 | 4 | 8 | 6 | 9 | 8 | 5.3 |
| | 미체결 | 0 | 0 | 0 | 1 | 2 | 0 | 0 | 0 | 0 | -100.0 |
| | 전체 | 3 | 3 | 10 | 5 | 6 | 8 | 6 | 9 | 8 | 5.3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전계자료. p.6 <표 4>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보완 작성.

2. 주요 FTA 별 농식품의 수출입 동향

- FTA 체결 과정에서 급속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농업 피해 우려가 높았고, 국내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가장 많았던 한-칠레 FTA, 한-EU FTA 및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민감품목의 수입 동향과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칠레 FTA는 발효된 지 20년이 지났고, 한-EU FTA는 13년, 한-미 FTA는 12년이 지난 상태임.(<표 4-23>)

<표 4-23> 주요 FTA 발효일

| FTA | 한-칠레 FTA | 한-EU FTA | 한-미 FTA |
|--------|----------|----------|-----------|
| 협정 발효일 | 2024.4.1 | 2011.7.1 | 2012.3.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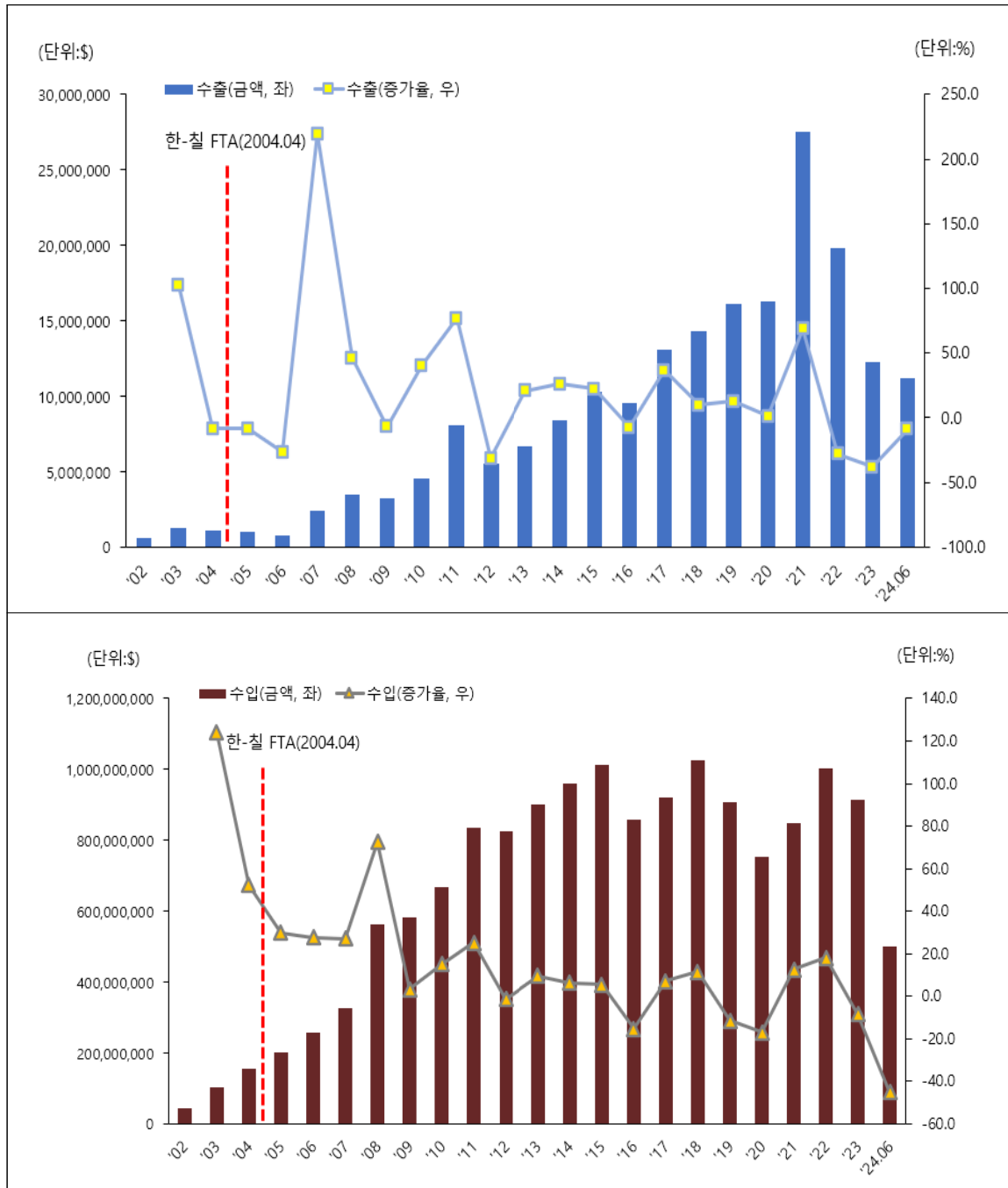
자료 : FTA 강국, 코리아

가. 한-칠레 FTA

- 2004년 FTA 발효전후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입액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액에 비해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
- 수출의 경우, 2002년~2004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4년 이후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함. 2008년 및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수출 증가율은(전년대비) 연도별로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 219.3%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임. 그러나 이후에도 큰 폭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음.
- FTA발효 초기에는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2021년에는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서

는 등 농식품 분야에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 다시 말해서 국내 농업 피해 우려가 많았던 한-칠레 FTA는 오히려 우리 농식품의 칠레 시장 진출에도 기회가 되고 있음.([그림 4-5])

[그림 4-5] 對칠레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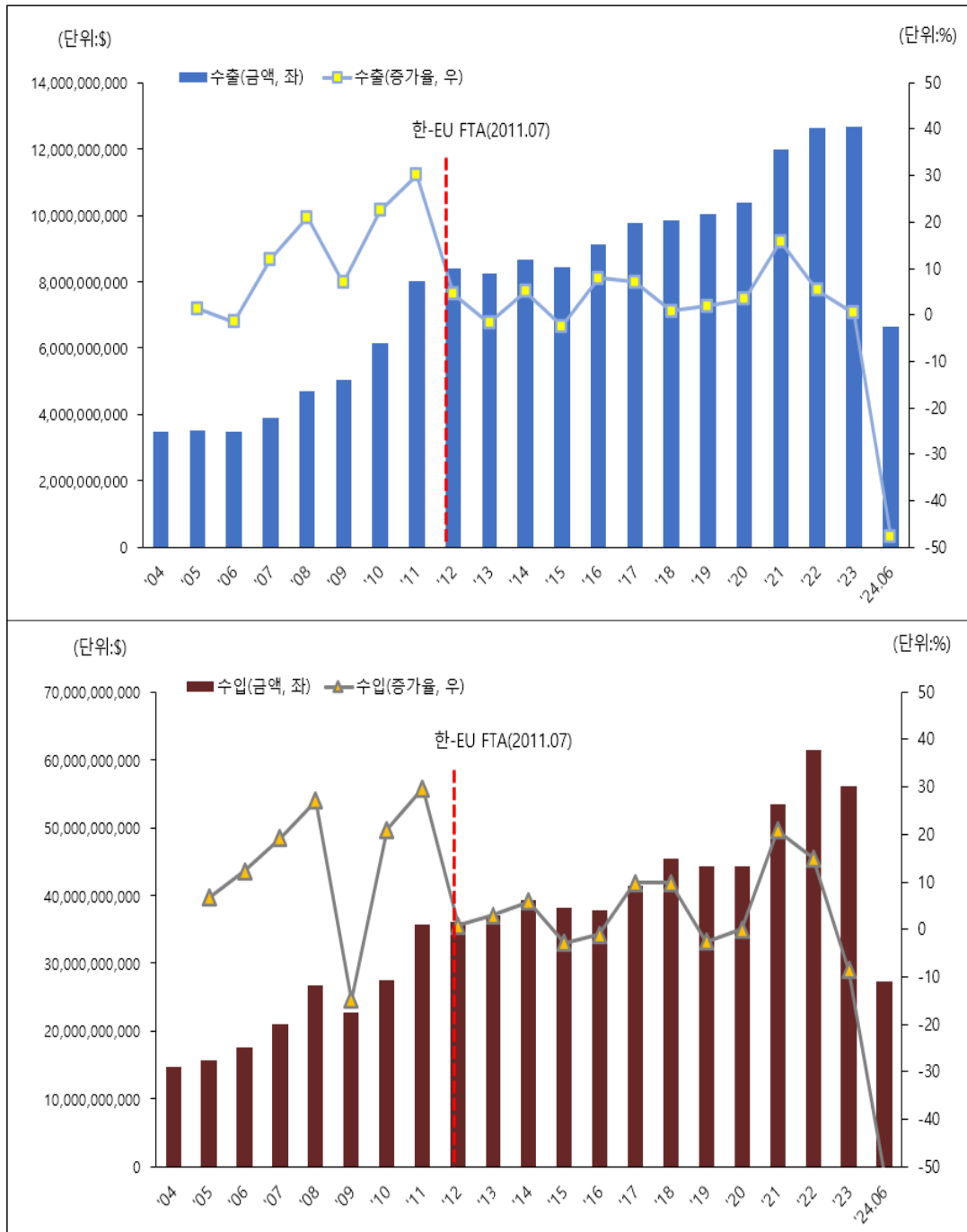


자료: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statistics/periodPerformance.do>) 활용하여 연구자가 작성

나. 한-EU FTA

- FTA 발효 이후 농식품 수출입에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입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수출액의 경우 발효 이전인 2004~2011년까지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효 이후인 2011년 이후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으며, 2015~2022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수입액의 경우 2008년과 2011년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
- 수출증가율은(전년대비) 연도별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수출입 금액이 증가. FTA 발효 직후인 2011년에 높은 성장률(30.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FTA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0년 이후에서는 수출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FTA 발효 이후에도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고 있어 EU와의 농식품 분야에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는 경향이 있어, 무역수지도 점차 개선되고 있음. ([그림 4-6])

[그림 4-6] EU산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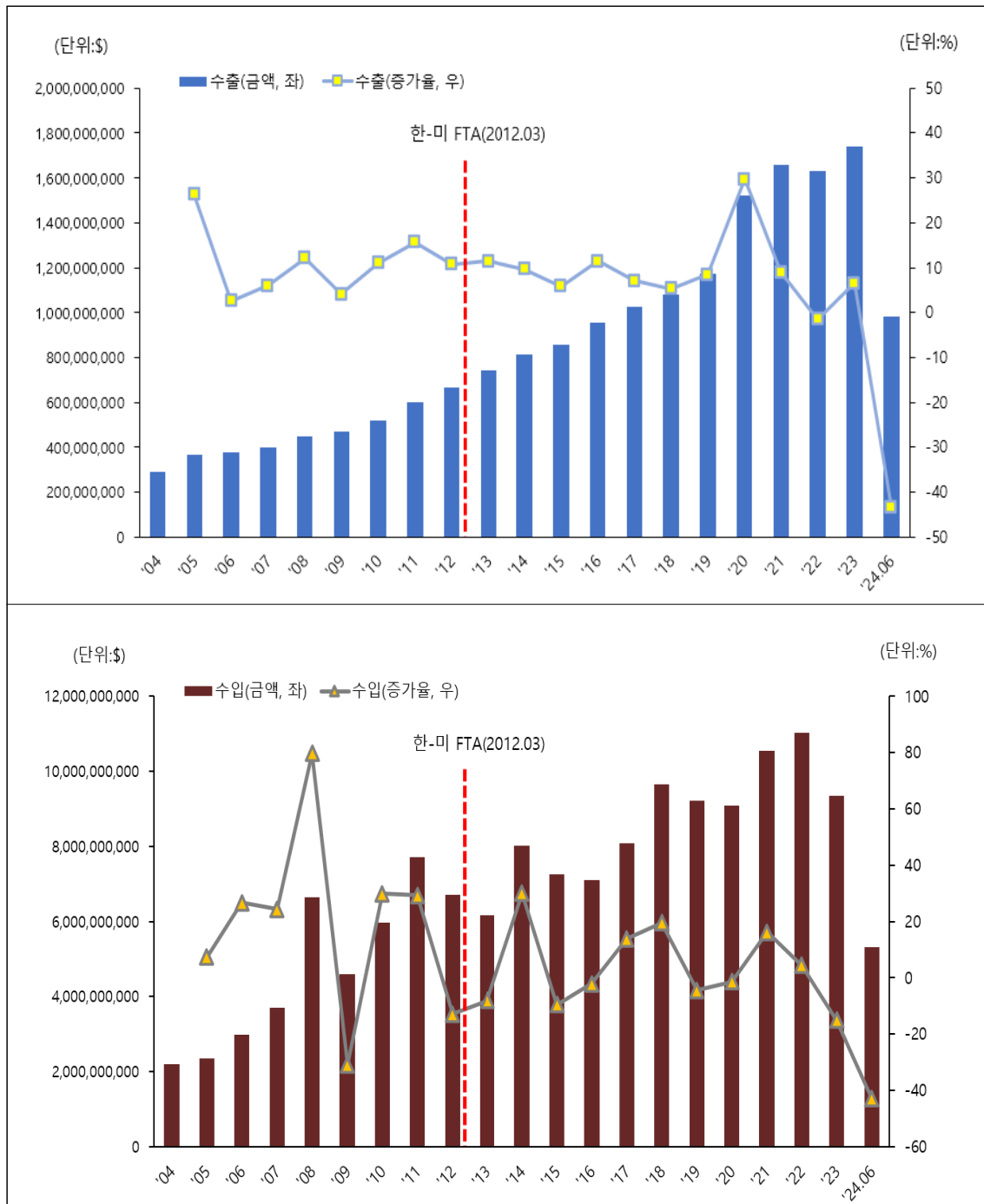
자료: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statistics/periodPerformance.do>) 활용하여 연구자가 작성

다. 한-미 FTA

1)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입 변화

- FTA 발효 이후 농식품 수출입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수출액의 경우 발효 이전인 2004 ~ 2011년까지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성장률 10% 수준이었으나, 발효 이후인 2014~2019년까지 큰폭의 증가세를 보임
- 수입액 역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액에 비해 유동적임. 협정 발효 전인 2008년과 2011년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이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수출증가율은(전년대비) 연도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29.7%의 높은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는 코로나19로 변수로 인한 것일 수 있음.
- 대미수출액과 대미수입액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고 있어 한-미 FTA 농식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적자가 진행되고 있음.([그림 4-7])

[그림 4-7] 對미국산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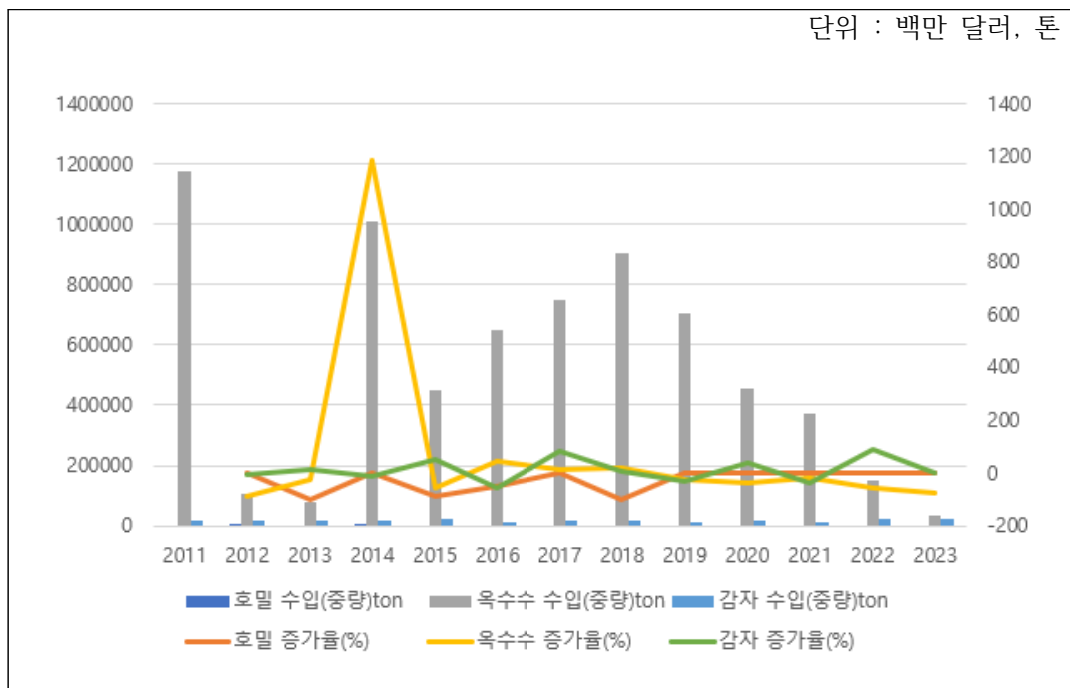


자료: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statistics/periodPerformance.do>) 활용하여 연구자가 작성

2) 한-미 FTA 발효 이후 민감품목의 수입 동향

- 한-미 FTA 협상 당시 민감품목으로 양허했던 호밀, 옥수수, 감자, 대두, 녹두,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 변화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호밀은 협정 발효이후에도 큰 변동없이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음. 옥수수는 협정 발효 직후인 2012년, 2013년에는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가 2014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부터 계속 감소세임. 2023년 수입액을 협정 발효 직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90.9% 감소하였음. 감자의 경우에도 2023년 수입액을 협정 발효 직전이 2011년과 비교하면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4-8])

[그림 4-8] 미국산 호밀, 옥수수, 감자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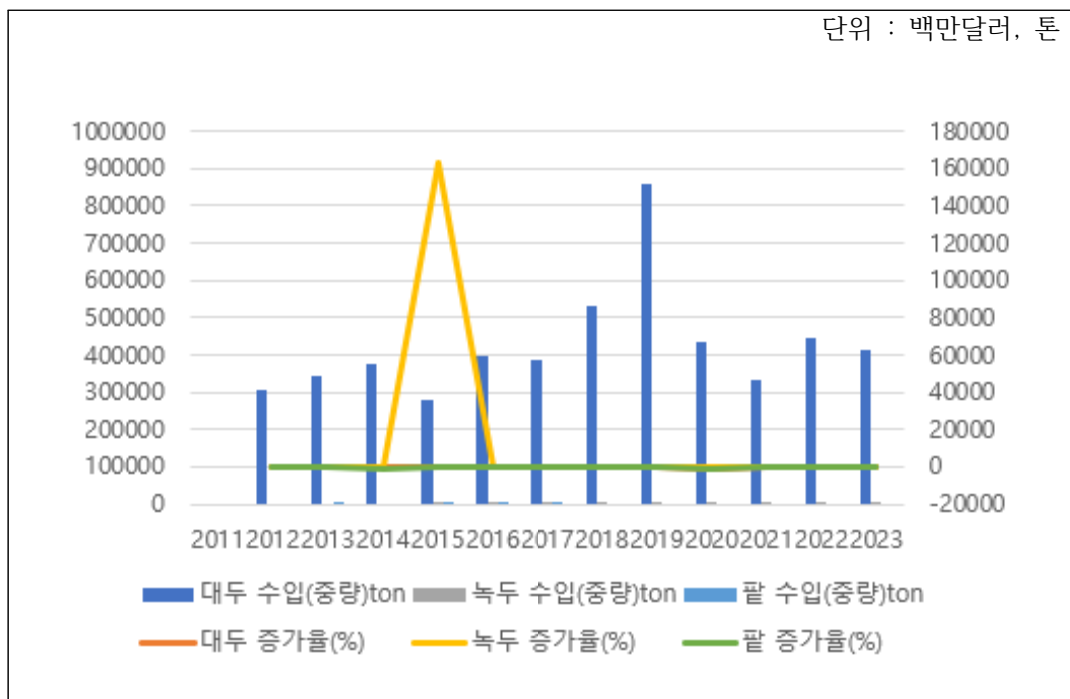


주: 수치는 호밀(HS1002900000), 옥수수(HS1005909000), 감자(HS0701900000) 통계 결과값

자료: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statistics/periodPerformance.do>) 활용하여 연구자가 작성

- 대두는 2013년까지 수입이 증가하다가 2015년, 2017년을 제외하고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입 증가. 그러나 2019년 수입이 급등한 이후 2019년 대비 수입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녹두는 2015년, 팥은 2013년에 수입금액과 수입량이 증가한 바 있음.([그림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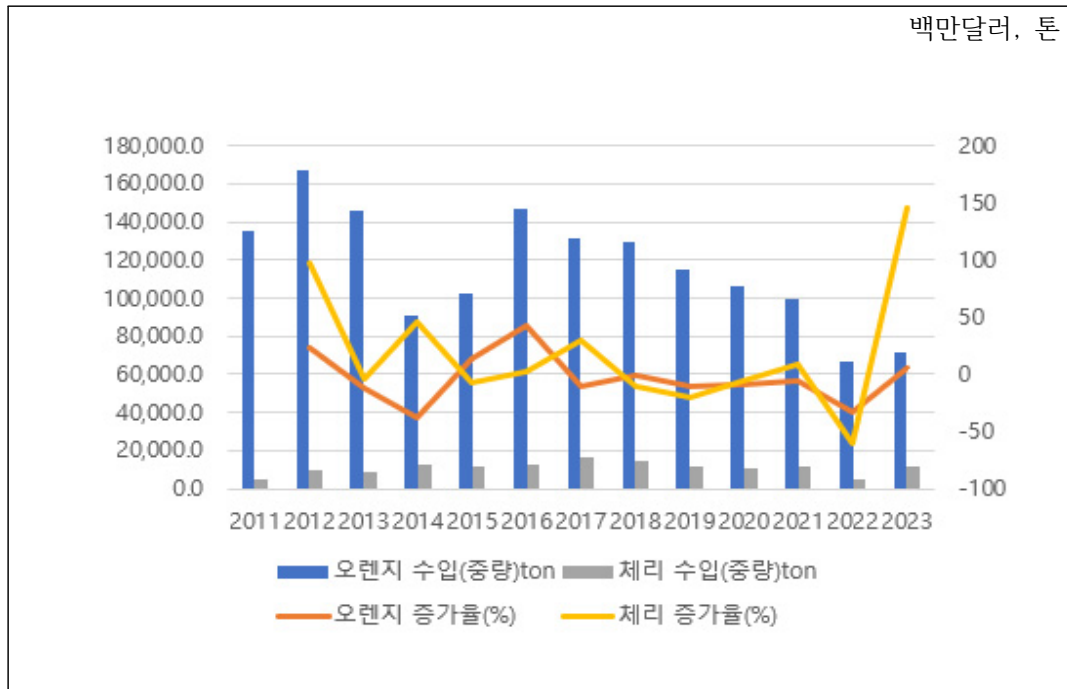
[그림 4-9] 미국산 대두, 녹두, 팥 수입 추세



주: 수치는 대두(HS1201901000), 녹두(HS0713319000), 팥(HS0713329000) 통계 결과값
 자료: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statistics/periodPerformance.do>) 활용하여 저자작성

- 오렌지는 협정 발효 직후인 2012년에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 추세임. 체리는 발효직후인 2012년과 2023년 전년대비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4-10])

[그림 4-10] 미국산 오렌지, 체리 수입 추세



주: 수치는 오렌지(HS0805100000), 체리(HS0809200000/HS809290000) 통계 결과값
 자료: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statistics/periodPerformance.do>) 활용하여
 연구자가 작성

- 쇠고기의 경우 FTA발효 직후인 2012년 오히려 -20%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023년에는 전년대비 수입금액이 -16.9%나 감소하였음.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협정 발효 직후인 2012년, 2012년에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2015년에 일시적인 큰 폭의 수입증가가 있었으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표 4-24>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 추세

(단위 : 백만달러, 톤)

| 연도 | 쇠고기 | | | | 돼지고기 | | | |
|------|------|--------|---------|--------|------|--------|---------|--------|
| | 수입금액 | 증가율(%) | 수입량 | 증가율(%) | 수입금액 | 증가율(%) | 수입량 | 증가율(%) |
| 2011 | 653 | 65.32 | 115,334 | 83.13 | 225 | 38.89 | 150,112 | 99.19 |
| 2012 | 522 | -20.06 | 95,082 | -17.56 | 391 | 73.78 | 120,115 | -19.98 |
| 2013 | 578 | 10.73 | 92,145 | -3.09 | 313 | -19.95 | 100,987 | -15.92 |
| 2014 | 764 | 32.18 | 101,774 | 10.45 | 403 | 28.75 | 108,083 | 7.03 |
| 2015 | 802 | 4.97 | 106,492 | 4.64 | 455 | 12.90 | 135,619 | 25.48 |

| | | | | | | | | |
|------|-------|--------|---------|-------|-----|--------|---------|--------|
| 2016 | 1,035 | 29.05 | 156,077 | 46.56 | 393 | -13.63 | 137,218 | 1.18 |
| 2017 | 1,256 | 21.35 | 177,445 | 13.69 | 455 | 15.78 | 152,890 | 11.42 |
| 2018 | 1,635 | 30.18 | 210,613 | 18.69 | 602 | 32.31 | 196,385 | 28.45 |
| 2019 | 1,746 | 6.79 | 235,716 | 11.92 | 495 | -17.77 | 181,901 | -7.38 |
| 2020 | 1,732 | -0.80 | 243,198 | 3.17 | 428 | -13.54 | 156,150 | -14.16 |
| 2021 | 2,094 | 20.90 | 249,950 | 2.78 | 450 | 5.14 | 139,439 | -10.70 |
| 2022 | 2,541 | 21.35 | 256,910 | 2.78 | 503 | 11.78 | 139,795 | 0.26 |
| 2023 | 2,112 | -16.88 | 245,686 | -4.37 | 536 | 6.56 | 161,840 | 15.77 |

주: 수치는 소고기 냉장(HS0201),냉동(HS0202), 돼지고기 냉장냉동(HS0203) 통계 결과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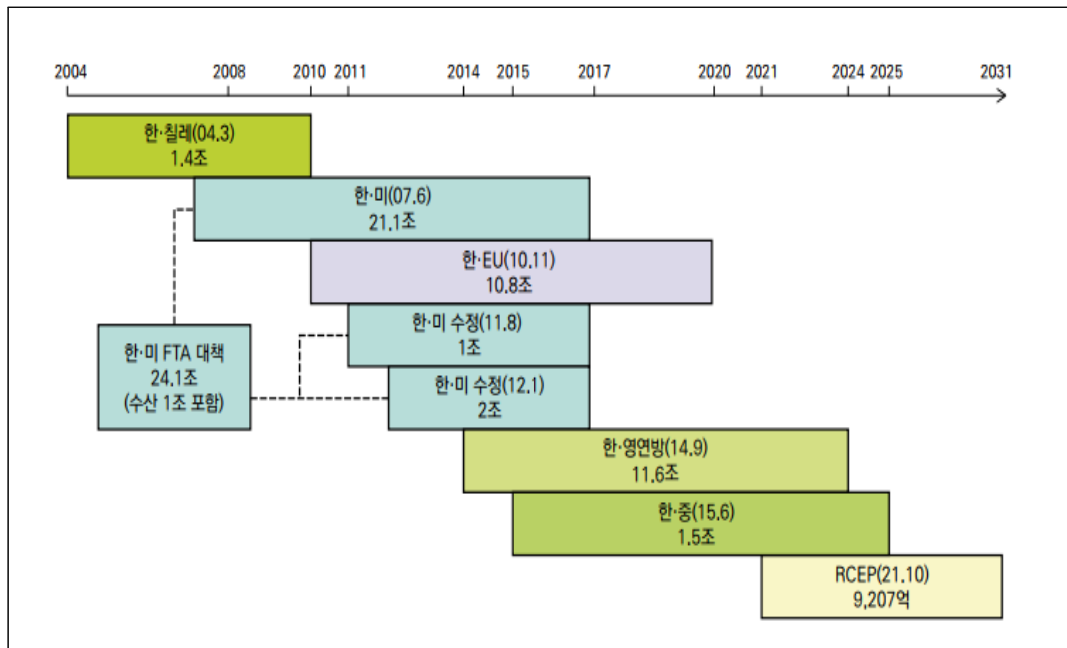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ttps://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작성

3. FTA 이행 20년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

- 포도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이 강한 한-칠레 FTA, 농업분야 상품양허의 개방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한-미 FTA 및 한-EU FTA는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가 높았음.
- 이에 따라 한-칠레 FTA는 쌀, 사과, 배 등 21개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칠레산 포도, 키위,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관세감축이 적용되었음.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였음.
- 한-EU FTA는 쇠고기, 감자, 치즈, 포도 등 민감품목에 대해 계절관세, TRQ,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 관세철폐기간을 적용하였음.
- 한-미 FTA도 민감농산물에 대해 양허제외,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적용하였음.
- 정부는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지원과 농업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4,800억원 규모의 FTA기금을 조성하였음. 또한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23조 1천억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 기금을 마련하였음.([그림 4-11])

[그림 4-11] 농업 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전개자료, [그림 6]에서 인용.

- 국내보완대책은 축산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과수원 경쟁력 제고, 농업인 역량 강화 및 경영 안정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 모든 사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예상 피해가 컸던 만큼 투입된 예산도 컸음.
- FTA 국내보완대책은 국내 농축산업 구조변화에 따라 규모화 및 생산성 증대 등 성장 중심의 지원 성과(축산)와 생산 기반 유지 및 고품질 전략 등 피해상쇄 중심의 지원 성과(과수)가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수혜 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농업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축산경쟁력제고 및 과수원예경쟁력제고 등 품목별경쟁력제고 분야는 예산 투입 규모가 크고 국내 축산 및 과수·원예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국내보완대책 지원 전·후 생산성 변화를 통해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음.

- 축산 분야는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후 국내 육류 소비 증가 영향으로 산업 규모가 성장함과 동시에 한-미, 한-EU,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등 대규모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됨. 이에 따라 생산의 규모화(농가당 사육 마릿수 증가, 대규모 사육 농가 비율 확대)와 생산성 향상(한우 판매 체중, 돼지 PSY, 육계 육성률, 산란계 산란율 증가) 및 품질 향상(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증가)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남.(<표 4-25>)

<표 4-25> 주요 축산업 생산 및 생산성 동향

| 구분 | | FTA 국내보완대책 구간 | | | |
|----|------------------|---------------|---------------|---------------|-----------------|
| | | 수립전 ('03~'07) | 전반기 ('08~'12) | 후반기 ('13~'17) | 최근 6년 ('18~'23) |
| 한우 | 사육마릿수 (천 마리) | 1,836 | 2,652 | 2,854 | 3,286 |
| | 농가당 사육마릿수 (천 마리) | 10 | 16 | 28 | 37 |
| 돼지 | 사육마릿수 (천 마리) | 9,218 | 9,328 | 10,366 | 11,187 |
| | 농가당 사육마릿수 (천 마리) | 744 | 1,318 | 1,948 | 1,882 |
| 육계 | 사육마릿수 (천 마리) | 5,139 | 7,042 | 8,187 | 9,099 |
| | 농가당 사육마릿수 (천 마리) | 34,015 | 45,165 | 52,287 | 59,365 |

주: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의 경우 한우 사육 규모별 농가 수는 2005년부터 집계되어 한우 산업 동향의 사육 마릿수 및 농가 수 통계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농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전계자료. <표6>에서 인용.

- 과수 분야는 시장개방의 영향의 직간접 여부에 따라 FTA 국내보완대책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FTA 체결로 인한 간접피해(수요 대체) 품목인 사과와 배는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 이후 생산성 향상과 소득기반 유지 효과를 보였으며, 직접 피해 품목인 포도와 생산·수요 대체 피해

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복숭아의 경우, 다양한 품종 재배 시도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보임.(<표 4-26>)

<표 4-26> 주요 과수산업 및 생산성 동향

| | | 단위: ha/호, 만 원/10a | | | | 단위: kg/10a | | | |
|-----|----------|-------------------|-------|-------|-------|------------|--|--|--|
| 구분 | | 2005년 | 2010년 | 2015년 | 2020년 | 단위 면적당 생산량 | | | |
| 사과 | 농가당 재배면적 | 0.78 | 0.85 | 0.84 | 0.73 | | | | |
| | 농가소득 | 321 | 297 | 358 | 322 | | | | |
| 배 | 농가당 재배면적 | 0.59 | 0.71 | 0.78 | 0.73 | | | | |
| | 농가소득 | 257 | 303 | 282 | 291 | | | | |
| 복숭아 | 농가당 재배면적 | 0.44 | 0.51 | 0.53 | 0.48 | | | | |
| | 농가소득 | 216 | 283 | 340 | 176 | | | | |
| 포도 | 농가당 재배면적 | 0.42 | 0.46 | 0.47 | 0.42 | | | | |
| | 농가소득 | 312 | 348 | 359 | 598 | | | | |
| 감귤 | 농가당 재배면적 | 0.86 | 0.78 | 0.74 | 0.64 | | | | |
| | 농가소득 | 214 | 215 | 162 | 216 | | | | |

주: 농가당 재배면적 및 소득자료는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기준으로 5개년씩 제시하였으며, 포도와 감귤의 소득자료는 노지포도, 노지감귤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전계자료, <표7>에서 인용.

- FTA 국내보완대책을 지원받은 축산농가는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생산비(노동시간, 방역치료비 등) 절감 효과를, 축산물 도축·가공업체는 도축 능력 제고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FTA 국내보완대책을 지원받은 과수 재배 농가는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농업소득 증대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됨.
- 지원 품목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FTA 국내보완대책은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을 통한 변동성 완화, 농기계임대 사업 지원을 통한 발작물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영 전반적인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남.

4. 농식품의 FTA 활용률 및 시사점

가. 농식품 FTA 활용실태

- 2016년~2022년까지 7년간 농림수산업품 FTA 수출활용률을 보면 50%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 전체 산업의 수출활용률 7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7> FTA별 우리나라 농식품 FTA 수출활용률

단위%

| 협정별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
| | 전체 | 농림수산업 | 전체 | 농림수산업 | 전체 | 농림수산업 | 전체 | 농림수산업 | 전체 | 농림수산업 | 전체 | 농림수산업 | 전체 | 농림수산업 |
| 칠레 | 78.6 | 50.1 | 77.6 | 30.5 | 85.0 | 20.1 | 79.6 | 20.4 | 68.6 | 42.0 | 63.6 | 54.7 | 66.3 | 61.5 |
| EFTA | 80.4 | 85.4 | 82.2 | 76.5 | 84.2 | 86.1 | 83.2 | 85.2 | 80.1 | 78.6 | 71.0 | 75.4 | 61.4 | 78.0 |
| 아세안 | 52.3 | 54.2 | 46.1 | 47.6 | 52.1 | 37.9 | 51.3 | 45.1 | 49.2 | 47.5 | 52.0 | 46.8 | 58.1 | 41.8 |
| 인도 | 65.8 | 59.6 | 67.5 | 49.9 | 70.9 | 30.6 | 73.0 | 41.7 | 74.6 | 64.8 | 77.8 | 57.7 | 79.5 | 66.6 |
| EU | 84.8 | 70.6 | 85.5 | 76.1 | 86.7 | 76.3 | 86.9 | 76.0 | 87.2 | 73.4 | 87.7 | 75.9 | 87.0 | 78.8 |
| 페루 | 83.3 | 32.0 | 78.2 | 36.5 | 79.5 | 44.2 | 84.7 | 25.2 | 68.7 | 25.1 | 75.3 | 35.8 | 83.6 | 22.1 |
| 미국 | 75.6 | 52.4 | 86.1 | 54.8 | 85.9 | 57.9 | 85.2 | 55.2 | 84.4 | 54.0 | 85.1 | 52.6 | 85.9 | 57.9 |
| 튀르키예 | 80.4 | 47.1 | 71.9 | 61.7 | 80.1 | 70.7 | 77.5 | 46.7 | 76.0 | 40.4 | 81.8 | 72.8 | 75.5 | 76.6 |
| 호주 | 77.4 | 55.3 | 80.1 | 68.0 | 82.7 | 72.5 | 82.8 | 72.7 | 80.9 | 65.5 | 80.1 | 66.9 | 81.8 | 64.7 |
| 캐나다 | 89.1 | 64.0 | 93.4 | 64.4 | 93.6 | 64.8 | 95.2 | 63.2 | 95.4 | 66.1 | 95.3 | 53.9 | 94.6 | 53.4 |
| 중국 | 33.9 | 34.6 | 49.7 | 51.6 | 54.9 | 73.8 | 57.2 | 76.4 | 65.0 | 51.6 | 64.7 | 62.8 | 63.3 | 62.3 |
| 뉴질랜드 | 31.8 | 38.5 | 35.3 | 49.9 | 36.0 | 62.0 | 41.2 | 55.1 | 42.8 | 33.6 | 34.4 | 43.9 | 28.0 | 48.3 |
| 베트남 | 36.9 | 36.6 | 50.4 | 29.3 | 47.8 | 40.4 | 46.1 | 53.7 | 44.6 | 48.0 | 48.4 | 48.5 | 54.0 | 45.5 |
| 콜롬비아 | 17.4 | 1.6 | 49.8 | 5.6 | 53.0 | 5.5 | 52.9 | 0.2 | 47.9 | 6.5 | 52.8 | 21.6 | 49.1 | 16.4 |
| 영국 | - | - | - | - | - | - | - | - | - | - | 90.2 | 78.8 | 89.3 | 75.6 |
| 중미 | - | - | - | - | - | - | - | - | - | - | - | - | 25.9 | 0.1 |
| RCEP | - | - | - | - | - | - | - | - | - | - | - | - | 39.1 | 9.3 |
| 전체 | 63.8 | 50.8 | 70.0 | 53.0 | 73.5 | 57.5 | 74.9 | 58.9 | 74.8 | 54.7 | 75.7 | 55.8 | 75.5 | 53.7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계서. [부록 2]에서 인용

- 발효된 지 10년 이상된 FTA별로 보면 칠레 61.5%, 아세안 41.8%, 인도 66.6%, EU 78.8%, 페루 22.1%, 미국 57.9%, 호주 64.7%, 캐나다 53.4%로 나타났음. EU를 제외하고는 농식품의 수출 활용률이 부진함을 알 수 있음.
- FTA 원산지규정 미활용 이유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이 2,779개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유효한 응답을 제시한 409개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였음.

<표 4-28> 수출규모별 FTA 원산지규정 미활용 이유

| 미활용 이유 |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 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 | 100억 원 초과 | 상관관계 |
|----------------------------------|---------|------------------|-------------------|--------------------|-----------|-------|
| 무관세 품목 | 2.80 | 2.94 | 2.89 | 2.68 | 3.18 | 0.43 |
| 관세 인하 폭이 낮아서 | 2.66 | 2.82 | 2.65 | 2.55 | 3.00 | 0.36 |
| 원산지요건 충족 미달 | 2.75 | 2.80 | 2.87 | 2.64 | 3.45 | 0.61 |
| 원자재의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 2.75 | 2.53 | 2.65 | 2.68 | 3.00 | 0.58 |
| FTA 특혜관세 활용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 3.28 | 2.88 | 2.80 | 2.50 | 2.55 | -0.93 |
| 전문인력 부족 | 3.39 | 2.98 | 2.83 | 2.73 | 2.55 | -0.96 |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 2.88 | 2.74 | 2.74 | 2.64 | 2.59 | -0.96 |
| 원산지증명서 발급 금전적 부담이 커서 | 2.73 | 2.49 | 2.52 | 2.23 | 2.32 | -0.88 |
| 원산지 검증 대비 관리 부담이 커서 | 2.87 | 2.66 | 2.59 | 2.68 | 2.55 | -0.80 |
| 수입국 바이어의 요청이 없어서 | 3.14 | 3.00 | 3.19 | 2.73 | 2.91 | -0.63 |
| 수입국 바이어가 우리나라 세관과 다른 HS 코드를 요구해서 | 2.48 | 2.44 | 2.74 | 2.45 | 2.59 | 0.29 |
| FTA 체결국이 아니어서 | 2.69 | 2.95 | 3.06 | 3.27 | 3.05 | 0.77 |
| 해외 세관당국의 통관절차 시 심사절차가 보다 엄격해서 | 2.75 | 2.65 | 2.74 | 2.68 | 2.50 | -0.73 |

주: 상관관계는 수출규모와 평균 점수와의 관계성을 나타내며,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규모가 클수록 해당 항목에 평균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게서, <표 6-16>에서 인용

- 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원산지 요건 충족 미달’과 FTA 미활용과의 상관관계가 0.61로 나타나 원산지규정이 FTA 활용의 장애요인이 됨을 나타내고 있음.
- 국가별 FTA 원산지규정 미활용 이유 중 ‘원산지요건 미충족’이 가장 높은 국가별로 보면 인도, 베트남, 태국,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 호주, 중국 순으로 나타남.

<표 4-29> 국가별 FTA 미활용 이유 중 ‘원산지요건 미충족’ 응답률

| 국가 | 인도 | 베트남 | 뉴질랜드 | 태국 | 필리핀 | 미국 | 호주 | 중국 |
|---------|------|------|------|------|------|------|------|-----|
| 응답률 (%) | 33.3 | 17.5 | 16.7 | 15.8 | 11.1 | 10.8 | 10.3 | 8.5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계서, <표 6-17>에서 발췌 인용

- 원산지요건을 충족치 못해서 FTA 활용을 하지 못한 주요 품목으로는 한약재, 낙농품, 커피류, 당류, 면류, 기타 조제식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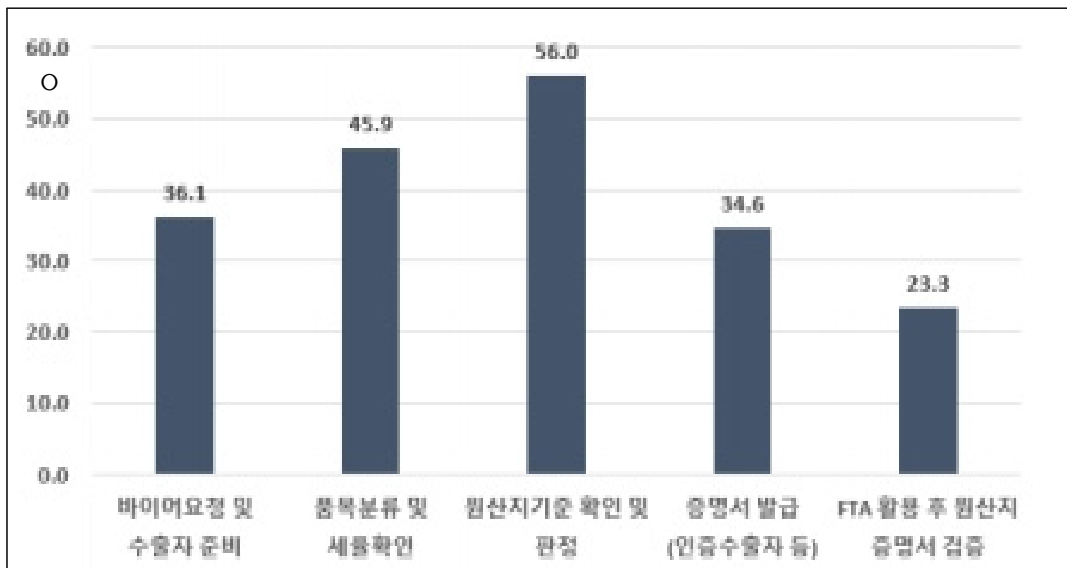
<표 4-30> 주요품목별 FTA 미활용 이유 중 ‘원산지요건 미충족’ 응답률

| 품목 | 한약재 (농산물) | 낙농품 | 커피류 | 당류 | 면류 | 기타조제식품 | 육류 | 음료류 | 소스류 |
|---------|-----------|------|------|------|------|--------|------|------|------|
| 응답률 (%) | 40.0 | 26.7 | 25.0 | 25.0 | 21.2 | 14.5 | 20.0 | 14.3 | 11.4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계서, <표 6-18>에서 발췌 인용

-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 중에서도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단계는 ‘원산지기준 확인 및 판정(56.0%)’으로 조사되었음. 다음으로 ‘품목분류 및 세율확인(45.9%)’ 단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 4-12] FTA활용 중 애로사항 경험 여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전계서. <그림 6-13>에서 인용

나. 시사점

- 2022년까지 농식품의 FTA 활용률은 5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으나 2023년에는 78.7%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³⁾ 농식 분야의 FTA 활용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21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기업 FTA 관세특혜 활용지원사업' 등 정부의 적극적인 FTA 활용수출 지원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표 4-31>)

<표 4-31> aT의 농식품 기업 FTA 관세특혜 활용지원 사업 실적

| 년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
| 지원업체 수 | 10 | 30 | 40 | 80 | 94 | 95 | 100 | 100 | 549 |
| 품목수 | 18 | 62 | 105 | 203 | 185 | 347 | 144 | 144 | 1,208 |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

203) 관세청 FTA포털, Yes FTA.

- FTA 미활용 이유를 FTA 원산지규정과 연계하여 설문조사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의 결과에 따르면, FTA 활용애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단계는 원산지기준 확인 및 판정 단계이었고, 수출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원산지규정이 FTA 활용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원산지기준 미충족으로 FTA 활용을 하지 못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가공식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엄격한 FTA 원산지규정이 K푸드의 수출증진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수출유망 농식품 중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의 FTA 원산지규정 중 수출확대에 장애가 되는 원산지규정을 분석하여 이를 변화된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제5장 FTA 농식품 분야 원산지규정 개선방향

제1절 FTA 원산지규정 개선의 필요성

1.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평가

-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건의 FTA는 모두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 협정별·품목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 체계를 갖고 있음. FTA 원산지규정은 FTA 체결국간, 무역창출과 투자확대, 무역갈절 방지 및 역외국 물품의 우회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FTA 원산지규정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오히려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역내국 간의 교역을 위축시키고, 원산지규정 준수비용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근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해외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K푸드 중 김치, 김밥과 덮밥, 떡볶이, 고추장 및 아이스바 등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의 한-미 FTA, 한-EU FTA의 원산지기준 적용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원산지기준 미충족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공식품의 원산지기준이 역내산 재료 사용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국내산 재료 수급이 어렵거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제4장제2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21건의 농식품 원산지규정을 분석해 보면, 가장 엄격한 WO 유형과 CC 유형을 합한 비중이 무려 79.1%에 달할 정도로 매우 엄격한 규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FTA 별로 보면 WO 유형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계 FTA(EFTA, EU, 튀르키예, 영국)의 원산지규정이 가장 엄격하고, 인도 및 중국과의 FTA가 그 다음으로 엄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근에 수출이 급증하는 쌀가공품(19류), 채소조제품(20류), 조제식료품(21류) 등 가공식품은 한-미 FTA, 한-EU FTA 협상 당시 국내 민감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측의 요구로 엄격한 규정이 반영된 것임.

2. 국내 농업의 FTA 경쟁력 향상

-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연평균 6.2%, 수입은 6.0% 증가하여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음.
- FTA 발효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농업 피해의 우려가 높았던 축산업, 과수업 분야는 FTA 국내보완대책기금 조성²⁰⁴과 정부의 적극적인 축산 경쟁력 제고, 과수원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역량강화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농업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지원정책에 따른 농업 경쟁력 향상으로 딸기, 배, 샤인머스켓, 단감, 파프리카와 같은 국내산 농산물이 오히려 FTA 체결국으로 수출되기에 이르렀음.
-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²⁰⁴ 금년 상반기 K푸드의 수출은 47.7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6.7% 증가하였음.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냉동김밥, 볶음밥, 떡볶이, 쌀음료, 막걸리 등 쌀가공식품으로 무려 41.4%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20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4년 상반기 K-Food* 수출 62.1억불 달성”, 2024.7.23.

- 쌀가공식품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65.3%)과 미국(60.7%)이고, 베트남(23.5%)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대표 K푸드인 김치 수출액은 전년대비 4.0% 증가를 기록하였지만 유럽은 40.3%, 중동 30.4%, 미국 18.9%의 놀라운 성장을 보였음.
- K푸드가 해외시장에서 대박이 난 이유에 대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K푸드 경쟁력의 원천을 ‘음악, 영화, 드라마 등 K-컬처’로 꼽았음. 한국의 대중문화가 먼저 퍼져나간 덕분에 한국의 음식산업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한류’라는 소프트웨어가 먼저 확산한 후 생산 시설 확대로 이어져 산업 전체 규모가 커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했음.²⁰⁵⁾
- 인기리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미국 기본관세와 관련, 김치 11.2%, 고추장·떡볶이·밀키트가 각각 6.4%, 과자류 10.4%, 채식제품 11.2%, 아이스바는 무려 17%+50.2/Kg임. 그러나 이 모든 제품의 한-미 FTA 특혜관세는 모두 0%임.

<표 5-1> 농식품 주요 수출상대국가의 관세율 비교

| 국가 | 관세율 | 김치 | 고추장 | 떡볶이 | 밀키트 | 과자류 | 채식제품 | 아이스바 | 과실조제품 |
|-----|-----|------|------|------|------|------|------|----------------|-------|
| 미국 | 기본 | 11.2 | 6.4 | 8.5 | 6.4 | 10.4 | 11.2 | 17.0+50.2 C/Kg | 6.0 |
| | FTA | 0 | 0 | 0 | 0 | 0 | 0 | 0 | 0 |
| EU | 기본 | 17.6 | 7.7 | 11.0 | 18.0 | 35.0 | 17.6 | 17.8+ | 18.4 |
| | FTA | 0 | 0 | 0 | 0 | 0 | 0 | 0 | 0 |
| 베트남 | 기본 | 32.0 | 30.0 | 35.0 | 15.0 | 15.0 | 32.0 | 20.0 | 30.0 |
| | FTA | 0 | 0 | 0 | 0 | 0 | 0 | 0 | 0 |

자료 : 연구자가 작성.

- K푸드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EU의 기본관세는 김치 17.6%, 고추장 7.7%, 떡볶이 11%, 밀키트 18%, 과자류 35%, 채식제품 17.6%, 과실조제품 18.4%이며, 이 모든 제품의 한-EU FTA 특혜관세는 모두

205) 헬쓰조선. “K-푸드 대박엔 이유가 있다… 美 하버드대 분석은?”. 2024.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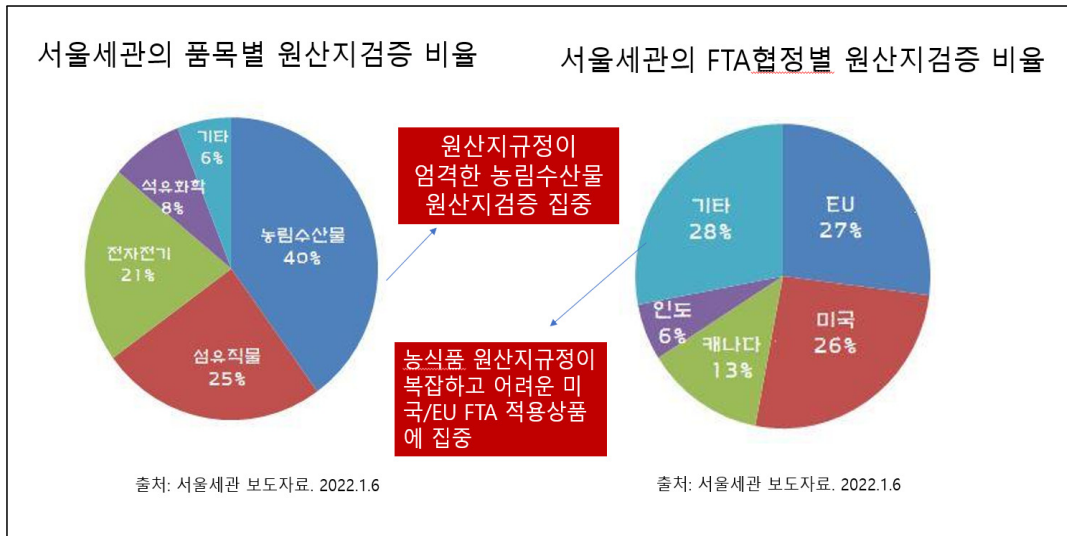
자료: 헬쓰조선(<https://health.chosun.com/>)

0%임. 따라서 수출식품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FTA 활용 수출이 필수라는 점을 알 수 있음. 그러나 K푸드 수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K푸드는 아쉽게도 한-미 FTA, 한-EU FTA의 원산지규정이 매우 엄격하여 FTA 활용수출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음.

3. FTA 원산지규정 개선협상 방향

-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초반부터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캐나다, 미국, EU 등 여러국가와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였음. 그러나 급속한 FTA 추진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농업의 피해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농업 분야의 상품양허는 민감농산물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물량제한(TRQ), 장기철폐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시장개방의 폭을 좁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였음.
- 원산지규정도 농업 분야는 최대한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도입하여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장려하고, 무역굴절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데 정책적 중심을 두었음. 아울러 동시다발적으로 급속하게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국가별,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 및 산업영향 분석이 미진한 상태에서 원산지규정 협상이 진행되기도 하였음.
- 이에 따라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은 부메랑이 되어 K푸드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수출증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FTA 마다 이질적인 원산지규정은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관리 비용과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음.
- 서울세관의 품목별 원산지검증 및 협정별 원산지검증 분석자료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이 엄격한 농림수산물에 원산지검증이 집중되고 있고, 농식품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채택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원산지검증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5-1] 서울세관의 품목별·협정별 원산지검증 비율



자료 : 서울세관 보도자료(2022.1.6.)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의 연구결과에서도 FTA의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농식품 수출과 FTA 수출활용률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음
- 지난 20년간 국내농업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체질 강화 지원으로 FTA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었던 축산업과 과수산업의 경쟁력도 오히려 강화되었음. 따라서 농식품의 FTA 원산지규정 뼈대를 수립하던 20년 전 국내 농업현황 및 농식품 무역구조와 지금의 상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되었음. 이런 관점에서 FTA 원산지규정 중 K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정은 대폭 손볼 때가 되었음.
- 아울러 기후변화 및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국내 농산물의 생산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고, 농산물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의 FTA 원산지규정도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절 FTA 원산지규정 개선방향

1. 기본 추진방향

- 농식품에 대한 FTA 원산지규정은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과 무역갈절을 차단하기 위한 범위에서 설정하되, 우리 농식품의 FTA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수출친화적 원산지규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검토대상 협정은 발효된 지 10년 이상된 협정으로서 FTA 체결국과의 수출 과정에서 엄격한 FTA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었던 품목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완전생산 재료 또는 역내산 재료 사용방식으로 규정된 원산지규정은 중립적인 충분생산공정으로 중심으로 검토하되, 대상품목은 수출이 급증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푸드테크 기술의 발전, 콜드체인의 도입, 첨단화된 소분 및 상품 세트 기술 등을 반영하여 최소허용 제한규정의 완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의 전반적인 원산지규정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표 5-2>)

<표 5-2> 농식품 원산지규정 개선 추진방향

| 구분 | 원산지규정 개선 추진방향 |
|---------|-----------------------------------|
| 기본방향 | 보호무역주의적 원산지규정에서 수출친화적 원산지규정 |
| 개선대상 협정 | 발효된 지 10년 이상된 협정 |
| 세부방향 | 역내산 재료 원산지기준 중심 → 충분생산공정 중심 |
| 대상품목 | 수출이 급증하는 가공식품(18류, 19류, 20류, 21류) |
| 일반기준 | 최소허용제한규정(미소기준) 완화 |

2. FTA 원산지규정 개선대상 협정

- 현재 시행되고 있는 21건의 FTA 협정 중 발효된 지 10년 이상된 FTA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등 10개임. 이 중에서 FTA 관세특혜 수출실익이 없는 한-싱가포르 FTA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함.(<표 5-3>)

<표 5-3> 발효 10년 이상된 FTA의 수출실적 및 수출활용률

| | FTA 체결국 | 발효년도 | FTA 활용농식품 수출실적(2023년) (백만불) | | 농식품 FTA수출활용률 (2022년) |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RI) |
|---|---------|------|--------------------------------|-------|-------------------------|------------------------|
| | | | 금액 | 비중(%) | | |
| 1 | 칠레 | 2004 | 9 | 0.4 | 64.2 | 6.95 |
| 2 | EFTA | 2006 | 5 | 0.2 | 80.8 | 7.82 |
| 3 | 아세안 | 2007 | 610 | 29.2 | 45.9 | 6.57 |
| 4 | 인도 | 2010 | 26 | 1.2 | 67.1 | 7.77 |
| 5 | EU | 2011 | 393 | 18.8 | 80.1 | 8.16 |
| 6 | 페루 | 2011 | 1 | 0.0 | 20.4 | 6.40 |
| 7 | 미국 | 2012 | 931 | 44.6 | 58.8 | 6.16 |
| 8 | 튀르키예 | 2013 | 10 | 0.5 | 81.7 | 8.11 |
| 9 | 호주 | 2014 | 103 | 4.9 | 64.1 | 6.52 |
| | 합계 | | 2087 | 100.0 | | 7.06 (평균) |

주: 농식품 수출실적은 특혜대상 수출금액 기준임. 자료: 관세청 FTA 활용지도. 2023년 4분기.

자료: 연구자가 관세청 FTA 포털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자료를 기초로 작성

- 위 9개의 FTA 중 연간 FTA 활용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서 9개 FTA 수출액 중 44.6%를 차지하며, 아세안 29.2%, EU 18.8%임. 미국, 아세안, EU로 수출되는 비중을 모두 합치면 92.6%로서 거의 대부분을 점유함. 따라서 농식품 수출비중이 높은 미국, 아세안, EU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표 5-3>)

- 미국, EU, 아세안의 농업부분 시장개방률은 미국과 EU는 각각 97.9%, 96.3%인데 비해, 아세안은 67.4%로 매우 저조함. 미국, EU 및 아세안으로의 농식품 분야 FTA 특혜대상 수출액과 농식품 전체 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미국과 EU는 각각 70.9%, 72.2%인데 비해, 아세안은 발효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FTA 특혜대상 수출비율은 33.3%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표 5-4>)

<표 5-4> FTA 원산지규정 검토대상 협정 비교

| 구분 | 한-미 FTA | 한-EU FTA | 한-아세안 FTA |
|--------------------------|-----------|----------|-----------|
| 발효일자 | 2012.3.15 | 2011.7.1 | 2007.6.1 |
| 농업부분 시장개방률(%) | 97.9 | 96.3 | 67.4 |
| 농식품수출액(A) (2023)/백만불 | 1,314 | 544 | 1,832 |
| 특혜대상수출액(B) (2023)/백만불 | 931 | 393 | 610 |
| B/A | 70.9 | 72.2 | 33.3 |

자료: 연구자가 관세청 및 KATI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시장개방률이 매우 높은 미국과 EU의 FTA의 경우에도 FTA 미활용금액이 여전히 30%에 달하고 있고, 아세안의 경우에는 무려 67%의 수출이 FTA를 미활용하고 있음. FTA 미활용 이유는 농업부분 시장개방률과도 관계있겠지만 엄격한 원산지규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22년 기준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률은 미국 58.5%, 아세안 45.9%로 저조한 반면 EU는 80.1%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에서 조사한 농식품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지수는 FTA 수출활용률이 가장 높은 EU가 8.16으로 가장 높고, 아세안 6.57, 미국 6.16으로 전체 평균 7.06보다 낮았음.(<표 5-3>)
-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규정이 엄격하면 원산지기준 충족이 어려워 FTA 활용수출을 포기하게 되므로 FTA 활용률이 저조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EU FTA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나왔음. 반대로 원산지기준이 덜 엄격한 아세안 및 미국과의 FTA 수출활용률은 훨씬 저조함.

FTA 수출활용률은 제1류에서 제24류 전체 품목의 수출활용률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각 개별품목의 수출활용률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님. 가공식품이 분류되는 제19류~제22류의 원산지기준은 품목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기준이 한-미 FTA 및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보다 더 완화된 기준이 있음. 제4장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추장의 경우 한-EU FTA의 원산지기준이 가장 완화된 기준(within CTH)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므로 FTA 원산지규정과 FTA 활용 수출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및 생산공정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3. 최소허용기준 완화

- FTA 원산지규정 중에서 품목별 원산지기준 이외에 수출식품의 원산지 결정에 애로를 야기하는 규정 중 최소허용기준이 있음.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미미한 수준일 때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특별기준임.
- 산업구조 및 원료의 수급 상황에 따라 국내에서 모든 원재료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역외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임.
- 최소허용기준은 혼합양념이나 조제식료품과 같이 다양한 원재료와 미소한 분량의 소스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 EU, 아세안과의 FTA에서도 모두 최소허용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허용기준치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함.
- 미국, EU 및 아세안 FTA 모두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10% 이하일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화된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표 5-5>

<표 5-5> 최소허용기준 협정문 문안

| FTA | 협정문 문안 |
|-----------|--|
| 한-미 FTA | <p>제6.6조(최소허용수준)</p> <p>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6-가에 따라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
| 한-EU FTA | <p>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p> <p>가.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p> <p>나. 비원산지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p> |
| 한-아세안 FTA | <p>제10조(최소허용수준)</p> <p>1.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p> <p>가. 통일상품 및 부호체계 제50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한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

-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낙농품 관련제품, 채소류, 곡물 및 곡물조제품, 과일 및 과일조제품, 당류 및 코코아 조제품 등 특정 제품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최소허용기준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음.(<표 5-6>)

<표 5-6> 한-미 FTA 최소허용기준 적용배제 대상 제품

| 대상제품 | 최소허용기준 사용제한 원료 |
|------------------|--|
| 수산물 | 제3류 |
| 우유성분 제품 | 제4류(낙농품), 우유고형분을 사용한 조제품(1901.10, 1901.90, 2105), 우유드링크(2202.90), 사료(2309.90) |
| 채소류 | 0703.10, 0703.20, 0709.59, 0709.60, 0710.21-0710.80, 0711.90, 0712.20, 0712.39, 0713.10, 0714.20 |
| 곡물류 및 곡물조제품 | 1006, 1102. 1103, 1104, 1901.20, 1901.90 |
| 과실류, 과실조제품, 과실음료 | 0805, 2009.11-2009.39, 2106.90, 2202.90 |
| 복숭아, 배, 살구 | 2008 |
| 동식물성 유지 | 1501-1508, 1512, 1514, 1515 |
| 당류 및 코코아조제품 | 1701-1703, 1806.10 |

- 한-미 FTA 협상 당시 민감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도입한다는 기초하에 세번변경기준을 완화하는 최소허용기준이 국내 농업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하여 우리측의 요구로 최소허용기준 적용배제 조항을 채택한 것임.
- 그러나 한-미 FTA 발효 12년이 지나면서 가공식품의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되면서 최소허용기준 적용배제 조항은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K푸드의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제3장 제5절 최소허용 적용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오메기떡(HS 1901.90)에 사용된 미량의 베트남산 쌀가루(HS 1103.19)는 최소허용 적용배제 원재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93%이상이 되었음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FTA 발효 이후 지난 20년간 우려와 달리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은 대폭 향상되었고,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가공식품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국내 농업생산 및 무역환경이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한-미

FTA의 최소허용배기준 적용배제 조항을 개선하여 K푸드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동 조항은 우리측의 요구로 반영된 것이고, 역내 교역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미측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됨.(<표 5-7>)

<표 5-7> 한-미 FTA 최소허용기준 조항 개선방안

| 현행 | 개선방안 |
|--|--|
| 제6.6조(최소허용수준) 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 ...(이하 생략) | 제6.6조(최소허용수준) <부속서 6-나> 최소허용기준 적용배제 물품 <삭 제> |

제3절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 검토

1. 주요 농식품의 수출 및 원산지기준 현황

- 2023년 기준 수출액이 큰 주요 농식품은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기타 음료, 기타 소스제품 등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나타났음. 품목별로 살펴보면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통 식품인 김치, 장류의 증가세도 두드러졌음.(<표 5-8>)

<표 5-8> K-푸드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현황

| 구 분 | 2022.1.1.~2022.12.31. | 2023.1.1.~2023.12.31. | 증감률 |
|----------|-----------------------|-----------------------|------|
| 농림수산식품 | 11,963.9 | 12,023.3 | 0.5 |
| □ 농림축산식품 | 8,825.4 | 9,027.9 | 2.3 |
| ◆ 신선 | 1,578.3 | 1,486.8 | △5.8 |
| - 김치 | 140.8 | 155.6 | 10.5 |
| - 딸기 | 58.6 | 71.1 | 21.2 |
| - 포도 | 34.3 | 46.1 | 34.6 |
| ◆ 가공 | 7,247.1 | 7,541.1 | 4.1 |
| - 라면 | 765.4 | 952.4 | 24.4 |
| - 과자류 | 621.7 | 659.1 | 6.0 |
| - 음료 | 513.3 | 572.4 | 11.5 |
| - 쌀가공식품 | 181.8 | 216.3 | 18.9 |
| - 장류 | 98.6 | 111.0 | 12.7 |
| ◆ 수산 | 3,138.5 | 2,995.4 | △4.6 |
| - 김 | 647.6 | 791.5 | 22.2 |
| - 참치 | 602.3 | 563.5 | △6.4 |
| - 굴 | 79.6 | 86.0 | 8.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1.17.

- K-푸드의 수출성장세를 지속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수출의 비중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FTA 미활용 수출의 원인을 엄격한 원산지기준과의 관계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농식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HS 2단위별 미국, EU 및 아세안과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비교해 보면, 제1류~제14류의 기초농수산물은 EU와 아세안은 대부분 완전생산(WO), 미국은 WO에 준하는 특정세번을 제외하는 CC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가공식품이 분류되는 제15류~제24류의 원산지기준을 보면, CTH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충분생산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채소·과일·견과류 및 곡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은 역내산 재료 사용요건을 추가한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특히, K-푸드가 속하는 제19류, 제20류, 제21류, 제22류에서 역내산 재료 사용요건이 집중되어 있어.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K-푸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임.(<표 5-9>)

<표 5-9> 농식품 원산지기준 비교

| 류 | 한-미국 | 한-EU | 한-아세안 |
|-----|----------------------------------|---------------------------------------|------------------------|
| 01류 | CC | WO | WO |
| 02류 | CC ex from chicken of 0105 | WO | WO |
| 03류 | CC | WO | WO |
| 04류 | CC ex from 1901.90, 2106.90 | WO | WO ex/유장/치즈 RVC 45 |
| 05류 | CC | WO | WO |
| 06류 | CC | WO(제6류)+MC(50) | WO |
| 07류 | CC | WO | WO |
| 08류 | CC | WO(제8류 모든 과실, 견과류)+MC(30) of Ch.17 | WO |
| 09류 | CC / CTS CTSH ex from 0901.21 | WO | WO ex.혼합물/계피 RVC 40 |
| 10류 | CC | WO | WO |
| 11류 | CC /CC ex from 1006 | WO(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제23류) | WO /CC ex from 10류 |
| 12류 | CC | WO | RVC 40.ex 10류 |
| 13류 | CC /CC ex from 121120 | MC(50) of heading 1301 / MC(50) / CTH | WO |
| 14류 | CC | WO | WO |
| 15류 | CC | CTH / 개별규정 | CTH / RVC 40 |
| 16류 | CC | 제1류에서 생산된 것 다만, 제3류 WO | CC / 개별규정 |

| | | | |
|-----|---------------------------------|--|--|
| 17류 | CC / CTH | CTH / 개별규정 | CTH / RVC 40 |
| 18류 | CC / CTH / CTSH | CTH +MC(30) of Ch.17 | CTH / RVC 40 |
| 19류 | CC /CC ex from 1006 | CTH +WO of Ch.4, heading 1006, Ch.11+MC(30) of Ch.17 | 1901: CTH +Ch.4,10,11 WO RVC 40+Ch.4.10.11 WO 기타 : CTH / RVC 40 |
| 20류 | CC ex from 0701+20류의 주석요건 충족 | 개별규정 | CTH / RVC 40 ex.김치 RVC 60 |
| 21류 | CC / CTH / 개별규정 | CTH / 개별규정 | CTH / RVC 40 ex. 고추장·혼합조미료 CTH+Ch.7,9 WO |
| 22류 | CC ex from 2106.90/개별규정 | CTH / 개별규정 | CTH / RVC 40 ex. 맥주 RVC 40 + Ch.12, 13 WO |
| 23류 | CC / CTH / 개별규정 | CTH / 개별규정 | CTH / RVC 40 |
| 24류 | CC / CTH / 개별규정 | WO / CTH / 개별규정 | WO CTH / RVC 40 |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Yes FTA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2. 주요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K-푸드 중 대표 품목인 김치(HS 2005.99), 떡볶이(HS 1901.90) 냉동김밥·덮밥(HS 1904.90), 고추장 등 혼합조제품(HS 2103.90), 아이스바(HS 2105) 중심으로 수출친화적이면서 FTA 무역갈절을 방지할 수 있는 FTA 원산지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함.

가. 김치(HS 2005.99)

1) 수출 현황 및 원산지기준

- 김치는 K-푸드를 대표하는 식품으로 전 세계 37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진 나라는 캐나다(47.5%), 미국(37.4%), 독일(32.8%), 영국(15.9%), 네덜란드(14.8%) 등 미주권 및 유럽 지역임.(<표 5-10>)

<표 5-10> 2023년 주요 국가별 김치 수출 현황

| 구분 | 일본 | 미국 | 네덜란드 | 영국 | 캐나다 | 독일 |
|-------------|--------|--------|-------|-------|-------|-------|
| 수출액 (천불) | 61,490 | 39,989 | 7,380 | 6,152 | 5,463 | 1,703 |
| 증가율(%) | 0.8 | 37.4 | 14.8 | 15.9 | 47.5 | 32.8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2단위 변경기준과 제20류 주(Note)의 추가요건이 있고, 한-EU는 김치의 생산에 사용되는 채소(제7류, 제8류, 제12류)는 완전생산요건 및 역외산 설탕 사용제한 요건이 있음. 한-아세안 FTA는 60% 역내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됨.(<표 5-11>)

<표 5-11> 김치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

| 협정 | 기본세율/FTA | 원산지결정기준(HS 2005.99) |
|-------|----------|--|
| 한미FTA | 11.2%/0% |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과 제07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001호 내지 제2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p> <p>※ Chapter 20 Note : 냉동하거나, 물·간수 또는 천연 주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하거나, 또는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 내지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과실과 혼합되어 포함되어 있는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
| 한-EU | 17.6%/0% |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 |

| | | |
|-------|------------------|---|
| FTA | | 실,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한-아세안 | 8%/0% (말레이시아) | 1. 김치: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치 생산에 사용되는 주재료 중에서 고춧가루, 양파, 마늘, 생강 등 일부 재료는 국내산 수급 문제 및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한-미 FTA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한-EU FTA의 김치 재료 완전생산기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또한 한-아세안 FTA의 60% 부가가치기준도 다른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비율 40% 보다 현저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수출에 불리한 구조임.
- 2022년 2월에 발효된 RCEP의 원산지기준인 ‘CTH 또는 RVC 40%’ 수준으로 완화하여 김치의 FTA 활용수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만, 김치의 생산공정을 고려하면서 무역굴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TH 보다는 CC로 조정함이 합리적일 것임.(<표 5-12>)

<표 5-12> 김치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 FTA | 현행 | 개선방안 |
|-----------|-----------------------------|--------------|
| 한-미 FTA | CC ex. 0701 + Ch.20 Note | CC / RVC 40% |
| 한-EU FTA | WO | CC / RVC 40% |
| 한-아세안 FTA | RVC 60% | CC / RVC 40% |

다. 떡볶이(HS 1901.90)

1) 수출 현황 및 원산지기준

- 떡볶이는 최근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K-푸드로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진 나라는 독일(132.9%), 영국(60.6%), 네덜란드(50.6%), 프랑스(46.4%), 베트남(33.8%), 미국(28.3%), 말레이시아(10.3%) 등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지역 국가임.(표 5-13>).

<표 5-13> 2023년 주요 국가별 떡볶이 수출 현황

| 구분 | 미국 | 네덜란드 | 베트남 | 말련 | 영국 | 프랑스 | 독일 |
|---------|--------|-------|-------|-------|-------|------|-------|
| 수출액(천불) | 27,963 | 5,603 | 6,123 | 2,634 | 1,796 | 837 | 740 |
| 증가율(%) | 28.3 | 50.6 | 33.8 | 10.3 | 60.6 | 46.4 | 132.9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떡볶이의 원산지기준은 한-미 FTA, 한-EU FTA, 한-아세안 FTA 모두 주재료인 쌀 및 쌀가루 완전생산요건이 적용됨. 한-EU FTA와 한-아세안 FTA는 떡볶이에 사용되는 우유성분도 역내산 사용요건을 추가하는 등 매우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고 있음.(<표 5-14>)

<표 5-14> 떡볶이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

| 협정 | 기본세율/FTA | 떡볶이 원산지결정기준(HS 1901.90) |
|---------|----------|---|
| 한-미 FTA | 6.4%/0% | 1.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EU FTA | 7.6%/0%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 제1006호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한-아세안 | | 1.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품: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떡볶이의 재료는 쌀가루, 소맥분, 고춧가루, 마늘, 고추장, 고추양념, 건조파, 무추출물, 멸치추출물, 정제염, 주정, 물엿, 혼합제재 등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지만 가장 핵심재료는 쌀가루임.
- 떡볶이의 핵심재료인 쌀가루를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는 한-미 FTA,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충족이 불가하여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 2022년 2월에 발효된 RCEP의 원산지기준인 ‘CC’ 수준으로 완화하여 떡볶이의 FTA 활용수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RVC 40%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수출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떡볶이는 20여가지의 다양한 식재료와 소스를 사용하여 가공하므로 CC 또는 RVC 40%만으로도 충분한 생산기준 공정에 부합함.<표 5-15>

<표 5-15> 떡볶이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 FTA | 현행 | 개선방안 |
|-----------|--|--------------|
| 한-미 FTA | 쌀 및 쌀가루 완전생산기준 | CC / RVC 40% |
| 한-EU FTA | 쌀, 쌀가루, 소맥분, 우유성분 완전생산요건 및 역외산 설탕 30% 제한 | CC / RVC 40% |
| 한-아세안 FTA | 쌀, 쌀가루, 소맥분, 우유성분 완전생산요건 | CC / RVC 40% |

다. 곡물가공품(HS 1904.90)

1) 수출 현황 및 원산지기준

- 냉동김밥 및 냉동덮밥 등 쌀가공품은 떡볶이와 함께 미주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K-푸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진 나라는 캐나다(84.6%), 미국(31.6%)이며, 필리핀(32.6%) 등 동남아국가로 확대되고 있음.<표 5-16>

<표 5-16> 2023년 주요 국가별 쌀가공품 수출 현황

| 구분 | 미국 | 중국 | 캐나다 | 필리핀 |
|---------|---------|--------|--------|--------|
| 수출액(천불) | 122,558 | 40,692 | 21,434 | 13,882 |
| 증가율(%) | 31.6 | 5.2 | 84.6 | 32.6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쌀가공품의 원산지기준은 한-미 FTA 및 한-EU FTA는 주재료인 쌀을 역내산 사용요건이 적용됨, 한-아세안 FTA는 완화된 기준인 CTH와 RVC 40% 선택기준이 적용됨.(표 <5-17>)

<표 5-17> 쌀가공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 협정 | 기본세율/FTA | 원산지결정기준(HS 1904.90) |
|----------|--------------------|---|
| 한-미FTA | 14%/0%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EU FTA | 8.36%+46EUR /100kg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806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과 곡분(듀럼밀과 경립종옥수수 및 그들의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상대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한-아세안 | | 1.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낱알상의 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 위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국 및 EU로 수출되는 김밥, 덮밥, 핫반 등 쌀가공식품은 반드시 국내산 쌀을 사용한 경우에만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14%, EU는 8.36%+46유로/Kg의 고관세를 부담해야 함.
- 냉동김밥의 재료는 쌀밥, 김, 단무지, 맛살, 우엉, 당근, 오뎅, 시금치, 참기름, 깨소금 등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지만 가장 핵심재료는 쌀밥임.
- 김밥의 핵심재료인 쌀을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는 한-미 FTA, 한-EU FTA 원산지기준 충족이 불가하여 수출에 장애가 되는 실정임. 국내산 쌀 사용 원산지기준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한-아세안 FTA(CTH/RVC 40%) 또는 RCEP(CC)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표 5-18>)

<표 5-18> 쌀가공품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 FTA | 현행 | 개선방안 |
|-----------|--|--------------|
| 한-미 FTA | 쌀 국내산 조건 | CC / RVC 40% |
| 한-EU FTA | 쌀, 쌀가루 및 모든 곡물 완전생산요건 및 역외산 설탕 30% 제한 요건 | CC / RVC 40% |
| 한-아세안 FTA | CTH / RVC 40% | 현행 유지 |

라. 고추장(HS 2103.90)

1) 수출 현황 및 원산지기준

- 고추장은 한식 조리에 필수적인 조제식료품으로 미국과 동남아시아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진 나라는 필리핀(18.6%), 베트남(15.7%), 태국(9.1%), 호주(8.2%), 미국(4.8%)임. (<표 5-19>)

<표 5-19> 2023년 주요 국가별 떡볶이 수출 현황

| 구분 | 미국 | 중국 | 일본 | 베트남 | 필리핀 | 태국 | 호주 |
|-------------|--------|--------|--------|--------|--------|--------|--------|
| 수출액 (천불) | 79,314 | 48,663 | 33,741 | 16,981 | 16,115 | 12,509 | 13,675 |
| 증가율(%) | 4.8 | 13.8 | -10.3 | 15.7 | 18.6 | 9.1 | 8.2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고추장의 원산지기준은 한-미 FTA에서는 CTH, 한-EU FTA에서는 ‘within CTH’으로 4단위 변경없이도 불인정 공정 이상의 생산공정만 있으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한-아세안 FTA에서는 고추장의 주재료인 고추 및 고춧가루는 완전생산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한-미 FTA 및 한-EU FTA에 비해 매우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채택하였음.(<표 5-20>)

<표 5-20> 고추장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 협정 | 기본세율/ FTA | 고추장(2103.90) |
|-----------|--------------------------------|--|
| 한-미 FTA | 6.4%/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EU FTA | 7.7%/0%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아세안 FTA | 배: 45%/0% 필: 7%/0% 태: 5% | 1.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제2103.90.9030호의 혼합조미료, 제2103.90.9090호의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추장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성형 제조한 메주를 발효 원으로 하고 숙성 전에 메주가루, 물엿, 고춧가루, 마늘, 양파, 식염 등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함. 고추장은 최소한 8개월 이상 발효기간을 거쳐야 제맛을 내는 조제식품임. 그러나 수출용 고추장은 생산시간 및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부분 숙성 없이 속성으로 가공하고 있음.
- 속성 가공을 위해 수입한 고추양념(2103.90)과 혼합양념분말(2103.90)을 사용하는데, 완제품인 고추장(2103.90)과 6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한-미 FTA의 CTH 기준 및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미국 수출용 고추장에 대해서는 6.4%의 관세가 부과되며, 베트남 수출용 고추장은 45%의 관세 부과대상임. 동일한 6단위 세번으로 분류되는 원재료 사용을 허용하는 한-EU FTA 원산지기준은 충족 가능함.
- 고추장의 주재료인 고춧가루를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과 고추장의 생산기간 및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역외에서 조달한 고추혼합양념을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표 5-21>)

<표 5-21> 고추장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 FTA | 현행 | 개선방안 |
|-----------|-------------|-------------|
| 한-미 FTA | CTH | CTH/RVC 40% |
| 한-EU FTA | within CTH | 현행 유지 |
| 한-아세안 FTA | 고춧가루 완전생산요건 | CTH/RVC 40% |

라. 아이스크림(2105.00)

1) 수출 현황 및 원산지기준

-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2023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달러에 육박하며 K-푸드 수출 효자 상품이 되었음. 전 세계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시원한 간식의 수요가 늘어난 데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됨.²⁰⁶⁾
- 아이스크림의 주요 수출국가는 미국, 필리핀, 캐나다 등이며,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진 나라는 중국(119%), 호주(95.4%), 캐나다(39.7%), 태국(20.1%), 필리핀(17.1%)임.(<표 5-22>)

<표 5-22> 2023년 주요 국가별 아이스크림 수출 현황

| 구분 | 미국 | 필리핀 | 캐나다 | 중국 | 베트남 | 호주 | 태국 |
|-------------|--------|--------|--------|-------|-------|-------|-------|
| 수출액 (천불) | 23,013 | 11,648 | 10,192 | 8,574 | 5,391 | 1,933 | 1,675 |
| 증가율(%) | 5.9 | 17.1 | 39.7 | 119.0 | -14.8 | 95.4 | 20.1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아이스크림의 원산지기준은 한-미 FTA에서는 아이스바의 주재료인 우유 성분은 역내산 재료 사용 조건임. 한-EU FTA에서는 역외산 우유 성분을 수출가격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한-아세안 FTA는 주재료인 우유 성분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CTH 또는 RVC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표 5-23>)

206) 문화일보. “K-아이스크림 역대 최대 수출… 세계입맛 녹였다”. 2024.1.10.

<표 5-23> 아이스크림(2105.00)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 기본세율/ FTA | 아이스바(2105.00) |
|----------|--|--|
| 한-미 FTA | 17%+ 50.2C/Kg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0401호부터 제0405호까지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EU FTA | 7.9% + 54EUR/ 100Kg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 한-아세안 | 필리핀:10% /0% 베트남: 30%/0% 태국: 30%/3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이스크림을 포괄하는 빙과류는 원유, 유가공품 및 먹는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한 아이스크림류, 빙과, 아이스크림 믹스류, 식용얼음을 말함.²⁰⁷⁾
- 빙과류는 유지방의 함유량에 따라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① 아이스크림: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
 - ② 아이스밀크: 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
 - ③ 샤베트: 무지 유고형분 2% 이상
 - ④ 빙과 : 무지 유고형분 2% 미만

207)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시행 2024. 7. 1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⑤ 저지방 아이스크림: 조지방 2% 이하, 무지 유고형분 10% 이상
 - ⑥ 비유지방 아이스크림: 조지방 5% 이상, 무지 유고형분 5% 이상.
-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아이스크림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제4류에 속하는 우유성분의 원산지가 중요함. 한-미 FTA에서는 아이스크림의 원료 중 역내산 우유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만 원산지를 인정함. 한-EU FTA에서는 역외산 우유성분의 가치가 수출가격의 30% 이내이어야 하고, 역외산 당분의 가치도 수출가격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복잡하고도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적용됨. 한-아세안 FTA는 CTH 또는 RVC 40% 선택기준을 적용하여 우유성분의 함량이나 가치와 관계없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
- 아이스크림은 미국에서는 17%+50.2센트/Kg, EU에서는 7.9%+54유로/Kg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서 수출가격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현재의 한-미 FTA는 아이스크림의 수출증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고, 한-EU FTA도 역외산 우유 재료와 설탕 재료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신상품의 개발과 수출을 저해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용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주재료인 유고형분을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과 수출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원재료 중심에서 충분가공 중심으로 원산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표 5-24>)

<표 5-24> 아이스크림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선방안

| FTA | 현행 | 개선방안 |
|-----------|-------------------------------|-------------|
| 한-미 FTA | 역내산 우유 사용조건 | CTH/RVC 40% |
| 한-EU FTA | 역외산 우유 30% + 역외산 당류 30% 제한 | CTH/RVC 40% |
| 한-아세안 FTA | CTH/RVC 40% | 현행 유지 |

제6장 결론

-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지난 20년간 21건 59개국과의 FTA가 체결·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수출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7.9%는 FTA 체결국이 점하고 있으며, 농식품은 80%가 FTA 체결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FTA 체결 효과로 인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은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른 K푸드 수요 증가와 FTA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 FTA 특혜관세의 범위는 FTA 특혜관세율과 FTA 원산지규정에 의해 좌우됨.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될 거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제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어야 최종적으로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FTA 원산지기준은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관건이 되므로 어떠한 형태, 어느 수준의 원산지기준을 어떻게 설계하고 도입하느냐에 따라 수출입 기업의 원재료 소싱, 생산공정, 가격결정 및 해외 판로 개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는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음. 원산지규정은 FTA 무역굴절을 막고, 역내간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원산지기준은 역내생산원칙과 충분생산원칙, 직접운송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HS 코드 단위의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기준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불인정공정,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포장용기 등 다양한 보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국내외 학자들이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수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저렴한 품질 좋은 역외산 원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이 기체결 21건의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바탕으로 FTA 원산지규정이 농식품 수출과 FTA 수출활용률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농식품 수출 및 수출활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증되었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수출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FTA 활용 애로 요인 중 원산지 기준 불충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발효된지 10년 이상된 FTA 중 농식품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한-미 FTA, 한-아세안 FTA, 한-EU FTAA의 품목별 농식품 원산지기준을 살펴보면 완전생산재료 사용요건 또는 역내산 재료 사용요건과 같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원재료 수급여건상 불가피하게 역외산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최근 해외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김치, 떡볶이, 냉동 김밥, 고추장, 아이스크림 등 대표적인 K푸드 제품들이 미국, 유럽 및 동남아시아로 수출될 때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관세를 부과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미국, EU 등 주요국가와의 FTA 협상 당시 농업 분야 시장개방에 대한 반발로 인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데 치중하면서 역내산 재료 사용요건 중심의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도입하였음.
- FTA 농업분야 시장 개방 이후 지난 20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피해의 우려가 높았던 축산 부문과 과수 부

문에서 생산성의 증대와 농업 체질 개선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년간 연평균 6.2%의 농업분야 수출증대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였음.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의 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보호주의 위주로 만들었던 농식품 분야의 원산지기준을 변화된 무역구조와 상황에 맞게 수출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발효된지 10년 이상된 협정 중에서 K푸드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EU, 아세안과의 FTA를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원산지규정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원산지규정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은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보호무역주의적 원산지규정에서 수출친화적 원산지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역내산 재료 사용조건 원산지기준에서 역내에서 충분한 생산공정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완전 생산 재료 또는 특정 세번제의 요건을 축소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실질 변형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대상품목은 수출이 급증하는 가공식품(18류, 19류 20류, 21류)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하되, 대표적인 수출 유망 K푸드인 김치, 떡볶이, 곡물가공품, 고추장, 아이스크림의 원산지기준을 CTH와 RVC 40% 중심의 RCEP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한-미 FTA의 최소허용기준 중 특정 재료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스와 재료가 사용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기준을 완화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수출유망 농식품 중 원산지기준이 불합리하여 수출장애가 되는 품목 중심으로 원산지기준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원산지규정 개선협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향후 개정 협상에서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불인정공정기준과 같은 규정도 수출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21건의 FTA 원산지규정이 모두 이질적이어서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 사용에 따른 ‘스파게티 볼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전체 FTA 원산지규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가급적 심플한 원산지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의 FTA관세절감 효과는 수출액의 3.3%로 조사된 바 있음. 이는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3.1% 보다 높은 수치로서 농식품의 수출가격 경쟁력 및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FTA 활용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음. 또한 농식품의 수출에 따른 국내 부가 가치 유발 효과 및 취업 유발 효과도 반도체·자동차·조선업 등 주력 산업보다 농수산물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농식품 수출 진흥이 주력 산업 못지 않게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하여 K-컬처 영향으로 해외수출의 전성기를 맞은 K-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이 늘고 있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수출친화적인 원산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선행될 경우 2027년 농식품 수출목표 15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 고 문 헌

- 관세청 Yes FTA, “한눈에 보는 2024년 1분기 FTA 활용지도”.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2008),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상현·정대희·김경필·박슬기·차원규·이상현(2023),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FTA 원산지규정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석오(2021), “FTA 원산지규정·결정기준“. 관세인재개발원 강의자료.
- 김석오(2023), “FTA 원산지규정·결정기준“. 관세인재개발원 강의자료.
- 김석오(2024), “FTA 원산지규정·결정기준“. 관세인재개발원 강의자료.
- 남경수·명수환·곽혜선·구혜민·손찬호(2024),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3.1.26.),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출범”.
- 농림축산식품부(2024), 「FTA 원산지규정·결정기준 직원 특별교육교재」.
- 산업통상자원부(2019), 「주요 교역국의 일반원산지제도 조사」.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4.2.),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
- 서울신문(2021.3.11.), “몸까지 절인 김치..중당국 “알몸 절임배추, 수출용 아냐”.
- 서울본부세관(2020),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사례 60선」. 관세청종합솔루션(YesFTA)
- 이명구·정재완·정재호(2021), 「FTA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청람
- 이영달(2017),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세인북스.
- 이영달(2022), “FTA 원산지규정·결정기준“. 관세인재개발원 강의자료.
- 이병훈·어명근·정대희·박한울·윤영석·한보현·서진교(2014),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추증대 전략 연구(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병훈·윤영석·박한울(2016), “FTA 원산지규정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위수 회귀분석방법을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57(2):1-29, 한국농업경제학회.
- 이데일리. “웃통 벗고 배추 뒤적...중국산 ‘알몸 절임’김치 쇼크.

2021.3.21.

- 이병훈·어명근·정대희·박한울·윤영석·한보현·서진교(2014),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1/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병훈·윤영석·박한울(2016),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 - 분위수 회귀분석방법을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57(2): 1-29, 한국농업경제학회.
- 조미진(2020), “한·미 FTA의 원산지규정 준수비용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8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 최천식(2023), “품목분류 3대 핵심이슈”, 관세인재개발원 강의교재.
- 최흥석·류원택(2004), 「원산지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농축산물 품목분류 및 HS 코드 도감」
- 한국원산지정보원(2022), 「품목분류」. FTA분야 원산지관리 기본서.
- 한국원산지정보원(2023), 「FTA분야 원산지관리기본서 원산지결정기준」.
- 한국소비자원(2019), 「FTA소비자 후생 체감도 조사분석」.
- 한국세정신문, “관세청, 페루산 녹두 한해 생산량 32배 수입“, 2023.4.3.
- 현대건강식품,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가공품은 먹어도 되나”. 2023.9.28.
- Anson, J., O.Cadot, A. Estevadordal, J.de Melo, A. Suwa-Eisenmann, and B. Tumurchudur.(2005), “Rules of Origin in North-South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 an Application to NAFT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3.
- Cadot, O. and J. de Melo, A Estevadeordal , A. Suwa-Eisenmann, and B. Tumurchudur(2002), “Assessing the Effect of NAFTA’s Rules of Origin”. Mimeo.
- Eki Kim(2013), Free Trade Agreements and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 법무법인 율촌.
- John J. Barcelo III(2006), "Harmon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WTO System," Cornell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No.06-049, Cornell Law School.
- Krishna, K. and A.O. Krueger(1995),“Implementing Free Trade Agreement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A. V. Deardoff and R.M Stern eds.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pp.149-187.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Krueger. A(1993), “Free Trade Agreement as Protective Devices: Rules of Origin, NBER Working Paper N 4352

Richard Baldwin(2006), "Multilaterilising Regionalism :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k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Working Paper 12545, National Breau of Economic Research.

WCO(2015), “Study on the use of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based rules” i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관세법령 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tradedata.go.kr/cts/index.do>

관세행정관련국제협약, <https://www.customs.go.kr/kcs/>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index.do>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nongnet.or.kr/>

무역통계정보포털, <https://www.bandtrass.or.kr/index.do>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

한국원산지정보원, <https://www.origin.or.kr/>

aT KAMIS, <https://www.kamis.or.kr/customer/main/main.do>

WCO, <https://www.wcoomd.org/en/topics/origin/>

WTO, <https://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Code of Federal Regulations,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subpart-A/section-134.1>

농식품 FTA 원산지규정 해설 및 활용방안 연구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처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ICTC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1513호

연락처 02-6251-2723, ictcglobal@ictckorea.com

인쇄처 디자인 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